

연구보고서 2017-20

# 다양한 가족의 제도적 수용성 제고 방안



변수정 · 박종서 · 오신휘 · 김혜영

**【책임연구자】**

변수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주요 저서】**

다양한 가족의 출산 및 양육실태와 정책과제-비혼 동거가족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공저)

동아시아 국가의 다문화가족 현황 및 정책 비교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공저)

**【공동연구진】**

박종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오신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위원

김혜영 숙명여자대학교 정책산업대학원 교수

연구보고서 2017-20

**다양한 가족의 제도적 수용성 제고 방안**

발행일 2017년 12월

저자 변수정

발행인 김상호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5층)

전화 대표전화: 044)287-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록 1994년 7월 1일(제8-142호)

인쇄처 (주)다원기획 044)865-8115

가격 8,000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ISBN 978-89-6827-472-5 93330

## 발간사 <<

한국 사회의 가족이 변화하고 있다. 가족 형태의 변화와 다양화 현상 속에서 우리는 부(父)와 모(母), 그리고 그들의 자녀로 대표되던 전통적인 가족 유형만으로는 이제 우리 사회의 가족을 설명하고 이해하는 데 무리가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인식적·정책적 수용 욕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은 ‘다양한 가족에 대한 포용성 제고’를 정책 과제로 포함해 ‘한부모 가족 지원체계 강화’, ‘비혼·동거가족에 대한 사회·제도적 차별 개선’, ‘포용적 가족관 형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어떠한 형태의 가족이라도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고, 나아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사회적 지지를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전통 가족 이데올로기가 강한 한국 사회에서 형성된 법·제도나 정책들은 성별 분업이 뚜렷한 핵가족과는 달리 다양한 가족들이 지니는 특수한 상황, 조건들에 대해 섬세하게 고려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특정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법 또는 정책이 있지만, 일반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에서 특정 가족 형태가 배제되는 일은 우선적으로 방지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제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방향은 가족 유형을 구분 짓기보다는 가족정책 또는 가족 복지 서비스 등에서 여러 가족 상황을 고려하여 정책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인간과 가족의 삶에 중요한 의식주와 관련된, 비교적 오래되고 큰 틀이 갖추어진 제도들, 그리고 사회 현상에 따라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정책, 그

안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등이 우리 사회의 가족을 어떻게 상정하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가족과 관련된 제도 및 정책들이 변화하는 가족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가족과 관련된 제도와 정책들을 분석해 봄으로써 이에 대한 답을 찾아 보고자 한다. 또한 일반 국민은 가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특히 다양한 가족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지를 함께 살펴본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족에 대한 수용 정도를 파악하고 여러 유형의 가족이 우리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가족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사점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변수정 부연구위원의 책임하에 수행되었고, 박종서 연구위원, 오신힬 전문연구원, 숙명여자대학교 김혜영 교수가 연구진으로 함께 하였다. 끊임없는 고민이 필요했던 연구에 기꺼이 참여해 준 연구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 연구 과정마다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본원의 김유경 연구위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김지연 연구위원과 익명의 평가위원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한다. 또한 본 연구를 위해 조언을 해 준 여러 전문가들과 본인의 삶을 공유해 준 연구 참여자들에게 특히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내용은 연구자의 개별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둔다.

2017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김 상 호

# 목 차

Abstract .....	1
요 약 .....	3
<b>제1장 서 론 .....</b>	<b>7</b>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9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13
<b>제2장 이론적 검토 .....</b>	<b>23</b>
제1절 한국 사회 가족의 변화 .....	25
제2절 주요 가족 관련법과 다양한 가족 .....	36
<b>제3장 다양한 가족에 대한 정책적 환경 I: 소득·건강·주거 영역 .....</b>	<b>69</b>
제1절 소득 영역 .....	71
제2절 건강 영역 .....	90
제3절 주거 영역 .....	102
제4절 소결 .....	112
<b>제4장 다양한 가족에 대한 정책적 환경 II: 임신·출산 및 양육 영역 .....</b>	<b>123</b>
제1절 임신 및 출산 영역 .....	125
제2절 자녀 양육 영역 .....	149
제3절 일가족 양립 영역 .....	160
제4절 소결 .....	173

---

<b>제5장 다양한 가족에 대한 문화적 수용 환경</b> .....	<b>187</b>
제1절 혼인 관련 인식 .....	189
제2절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인식 .....	199
제3절 가족 관련 전통적 이념에 대한 인식 .....	221
<b>제6장 결론 및 시사점</b> .....	<b>239</b>
제1절 결론 .....	241
제2절 시사점 .....	245
<b>참고문헌</b> .....	<b>257</b>
<b>부 록</b> .....	<b>265</b>

## 표 목차

〈표 1-1〉 본 연구의 제도 및 정책 검토 기준 .....	14
〈표 1-2〉 본 연구의 검토 대상 제도 및 정책(사업) .....	15
〈표 1-3〉 심층면접 개요 .....	19
〈표 1-4〉 다양한 가족 관련 현장 전문가 .....	20
〈표 1-5〉 다양한 가족 심층면접 참여자 .....	20
〈표 2-1〉 18~49세 미혼인구의 변화(1990~2016) .....	27
〈표 2-2〉 미성년 자녀 유무별 이혼 건수 및 구성비(2006~2016) .....	29
〈표 2-3〉 가구별 비율 변화(1990~2015) .....	30
〈표 2-4〉 한부모가구 구성 비율의 변화(1990~2015) .....	31
〈표 3-1〉 부양가족연금액 개요 .....	75
〈표 3-2〉 부양가족연금액 지급 대상 세부 요건 .....	76
〈표 3-3〉 분할연금 수급자 현황 및 추이 .....	78
〈표 3-4〉 유족의 범위 .....	80
〈표 3-5〉 유족연금 수급자 현황 및 추이 .....	81
〈표 3-6〉 2017년 수급자 선정 기준(가구 규모별, 급여 종류별) .....	82
〈표 3-7〉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가구 범위 .....	83
〈표 3-8〉 가정 해체 방지 관련 별도 가구 보장을 위한 가구 분리 시 기준 .....	86
〈표 3-9〉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 기준(총족) .....	88
〈표 3-10〉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 .....	92
〈표 3-11〉 건강보험 적용 인구 현황 .....	93
〈표 3-12〉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 인정 기준 중 부양 요건 .....	95
〈표 3-13〉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 인정 기준 중 소득 요건 .....	97
〈표 3-14〉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경감 및 면제 .....	101
〈표 4-1〉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권자 기준 .....	130
〈표 4-2〉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지원신청 자격 및 신청권자 ...	132
〈표 4-3〉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가족 수 산정 기준 .....	133

〈표 4-4〉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지원 대상 기준 .....	136
〈표 4-5〉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가족 수 산정 기준 .....	137
〈표 4-6〉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 대상 기준 .....	139
〈표 4-7〉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 가족 수 산정 기준 .....	140
〈표 4-8〉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대상 기준, 바우처 신청자격 및 신청권자 .....	142
〈표 4-9〉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가족 수 산정 기준 .....	143
〈표 4-10〉 모자보건사업 세부사업별 지원 대상, 신청 기준, 가족 수 산정 기준 .....	144
〈표 4-11〉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자격(수급권자) .....	150
〈표 4-12〉 보육료·양육수당 신청권자 .....	151
〈표 4-13〉 보육 서비스 종일형 자격 사유 중 돌봄 필요, 기타 유형 및 증빙서류 .....	153
〈표 4-14〉 아이돌봄 지원사업 정부지원 자격 구분 .....	157
〈표 5-1〉 ‘결혼’에 대한 일반 국민의 견해(2006~2016) .....	190
〈표 5-2〉 ‘이혼’에 대한 일반 국민의 견해(2006~2016) .....	191
〈표 5-3〉 ‘부부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면 이혼하는 게 낫다’에 대한 유배우 여성(15~49세)과 미혼 남녀(20~44세)의 태도 .....	192
〈표 5-4〉 ‘자녀가 있어도 이혼할 수 있다’에 대한 유배우 여성(15~49세)과 미혼 남녀(20~44세)의 태도 .....	192
〈표 5-5〉 ‘아버지나 어머니 중 누구라도 혼자서도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에 대한 유배우 여성(15~49세)과 미혼 남녀(20~44세)의 태도 .....	193
〈표 5-6〉 ‘재혼’에 대한 일반 국민의 견해(2006~2016) .....	194
〈표 5-7〉 ‘사별이나 이혼 후에는 재혼을 통해 새 삶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에 대한 유배우 여성(15~49세)과 미혼 남녀(20~44세)의 태도 .....	195
〈표 5-8〉 ‘남녀가 결혼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에 대한 일반 국민의 태도 .....	195
〈표 5-9〉 ‘남녀가 결혼할 생각이 있다면 먼저 함께 살아 보는 것도 좋다’에 대한 유배우 여성(15~49세)과 미혼 남녀(20~44세)의 태도 .....	196
〈표 5-10〉 ‘결혼과 무관하게 함께 살 수 있다’에 대한 유배우 여성(15~49세)과 미혼 남녀(20~44세)의 태도 .....	197

〈표 5-11〉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에 대한 일반 국민의 태도 .....	198
〈표 5-12〉 ‘결혼하지 않아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에 대한 유배우 여성(15~49세)과 미혼 남녀(20~44세)의 태도 .....	198
〈표 5-13〉 다양한 가족의 문화적 수용성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의 주요 내용 .....	199
〈표 5-14〉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201
〈표 5-15〉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조건’에 대한 태도 .....	203
〈표 5-16〉 ‘가족에 포함된다고 생각하는 가구 형태’에 대한 미혼 남녀의 태도(중복 응답) ...	205
〈표 5-17〉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 수준 .....	206
〈표 5-18〉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응답자의 편견 수준 .....	207
〈표 5-19〉 응답자가 생각하는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본인의 편견 정도에 대한 비교 .....	209
〈표 5-20〉 고용이나 교육현장 또는 사회생활 등에서 가족 유형에 따른 차별을 법적으로 금지할 필요성에 대한 생각 .....	210
〈표 5-21〉 ‘다양한 가족보다는 전통가족 중심의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한 생각 .....	212
〈표 5-22〉 ‘전통가족보다 다양한 가족에게 정부 차원의 소득 지원 혜택이 더 주어져야 한다’는 견해에 대한 생각 .....	213
〈표 5-23〉 ‘전통가족보다 다양한 가족에게 정부 차원의 건강 지원 혜택이 더 주어져야 한다’는 견해에 대한 생각 .....	215
〈표 5-24〉 ‘전통가족보다 다양한 가족에게 정부 차원의 주거 지원 혜택이 더 주어져야 한다’는 견해에 대한 생각 .....	217
〈표 5-25〉 ‘전통가족보다 다양한 가족에게 정부 차원의 출산 및 양육 지원 혜택이 더 주어져야 한다’는 견해에 대한 생각 .....	218
〈표 5-26〉 ‘전통가족보다 다양한 가족에게 정부 차원의 일가족 양립 지원 혜택이 더 주어져야 한다’는 견해에 대한 생각 .....	219
〈표 5-27〉 ‘전통가족보다 다양한 가족에게 정부 차원의 혜택이 더 주어져야 한다’는 견해에 대한 생각 .....	220

〈표 5-28〉 부모 생활비 주 제공자(2006~2016) .....	222
〈표 5-29〉 '부모 부양'에 대한 일반 국민의 견해(2006~2016) .....	223
〈표 5-30〉 '부모 부양의 책임 주체'에 대한 생각 .....	225
〈표 5-31〉 '자녀가 있으면 노후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에 대한 기혼 여성(15~49세)과 미혼 남녀(20~44세)의 태도 .....	227
〈표 5-32〉 '자녀 양육의 책임 주체'에 대한 생각 .....	228
〈표 5-33〉 '부모 부양과 자녀 양육 책임 주체'에 대한 생각 .....	229
〈표 5-34〉 '아내는 자신의 경력을 쌓기보다는 남편이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에 대한 유배우 여성(15~49세)과 미혼 남녀(20~44세)의 태도 .....	230
〈표 5-35〉 '남편이 할 일은 돈을 버는 것이고 아내가 할 일은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것이다'에 대한 유배우 여성(15~49세)과 미혼 남녀(20~44세)의 태도 .....	231
〈표 5-36〉 '부부 중 가족의 주된 생계 책임 주체'에 대한 생각 .....	233
〈표 5-37〉 '부부 중 자녀 돌봄 책임 주체'에 대한 생각 .....	234
〈표 5-38〉 '아이는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더 잘 키울 수 있다'에 대한 유배우 여성(15~49세)과 미혼 남녀(20~44세)의 태도 .....	235
〈표 5-39〉 '아이는 부모가 모두 있는 가정에서 자라야만 잘 자란다'는 견해에 대한 생각 .....	237
〈표 6-1〉 (참고) 본 연구의 검토 대상 제도 및 정책(사업)별 비교 .....	254

## 그림 목차

[그림 1-1] 연구체계 .....	17
[그림 2-1] 혼인 건수와 조혼인율의 변화(1970~2016) .....	26
[그림 2-2] 18~49세 미혼 인구의 변화(1990~2016) .....	28
[그림 2-3] 이혼 건수 및 조이혼율의 변화(1970~2015) .....	29
[그림 3-1] 국민연금 가입 실태(2015년 7월 기준) .....	74



---

# Abstract <<

## Policy Implications for Embracing Diverse Families

Project Head · Byoun, Soo-J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ether current institutions and policies on family embrace diverse forms of family in Korea and to provide implications for improved policy.

First of all, this study reviews changing trends of marriage and family formation and the changes in the traditional ideas about family. Next, we review laws and policies in income security, health coverage, and housing support programs as a base domain of family life. We then review laws and policies related to pregnancy, childbirth, and child-rearing. Through the review, we figure out the point of view on family in each policy and how much the policy understands diverse situations in many types of family. In-depth interviews are also implemented. In addition, we conduct online surveys to understand cultural acceptance of diverse families among the public.

The study finds that some policies have inconsistencies within a point of view on family. Also, the findings of the study indicate that current family policies are designed without understanding about diverse situations of families. Moreover,

## 2 다양한 가족의 제도적 수용성 제고 방안

we find that a particular type of family needs special supports in some parts but policies have not considered those parts yet. Furthermore, a de facto marriage is considered in policies without consistency. Some policies admit de facto relationships, but others do not.

Finally, this study provides some suggestions to create environments that diverse forms of family could live without discrimination in Korean society. In particular, a concrete point of view on family in the phase of developing policy and system is needed. Although each institution and each policy could not consider all kinds of family forms, diverse situations of different family forms should be considered enough in policy making process. We continuously need to seek to have improved policies that truly embrace diverse forms of family in Korea.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전통적으로 가족이라 하면 떠오르는 구조인 부모와 자녀, 거기에 가끔은 조부모가 더해진 구조만으로는 더 이상 가족을 정의할 수 없을 만큼 우리 사회의 가족은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

한국 사회는 오랫동안 유교적 가치가 중시되었고, 그에 따라 가족에 대한 전통적 관념들이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어 전통가족 이데올로기, 가족 중심주의, 가족책임주의 등 가족을 둘러싼 전통 이념 속에서 우리의 가족은 구조기능주의적 관점에서 이해되어 왔다. 핵가족 안에서 남성은 생계를 책임지고 여성은 가정과 자녀를 돌보는 주체로 제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구조가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으로 생각되어 왔다. 따라서 그 이외의 구조를 가진 가족들은 잠재적으로 병리적이거나 일탈한 가족 혹은 비정상적인 가족으로 보여 왔다. 여기에 제도나 정책은 한 사회의 역사·문화적 배경 안에서 논의되고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제도나 정책들이 이러한 가족의 모습을 전제하고 기대하고 있을 수 있다.

법·제도나 정책이 현대 가족의 새로운 모습을 반영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전통적인 틀을 유지해간다면 가족을 위한 제도가 오히려 일부 가족만을 위한 제도로 남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족의 변화가 두드러지는 시점에서 현재 우리의 제도가 가족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가족의 다양한 모습을 얼마나 포괄하고 있는지를 정리 및 점검하고 가족의 관념과 관련된 인식 및 가치관 등 문화적인 차원에서의 수용성 정도를 파악해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주요 연구 결과

제도 및 정책(사업) 검토는 가족생활의 기본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소득·건강·주거 영역과 출산 및 양육 영역에서 임신·출산, 자녀 양육, 일 가족 양립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이때 검토 기준은 기본적으로 가족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법적 혼인 또는 혈연과 관련된 기준, 가족의 정의나 범위와 관련된 기준, 남성생계부양 모델 등 성역할 구분에 대한 기준을 살펴본다. 또한 가족의 다양성에 대한 포괄성 정도를 알기 위해서 특정 가족 유형에 대한 내용과 관련된 기준, 다양한 가족의 상황에 적절하지 않은 조건이나 내용 등을 기준으로 살펴본다. 이 때, 다양한 가족의 상황에 대한 기준은 제도나 정책 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는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 다양한 가족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해 알아본다. 이에 더해, 국민인식조사를 통해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인식, 가족 내 성역할에 대한 인식, 전통가족에 대한 인식 등을 살펴본다.

검토 결과, 제도나 정책이 가진 가족에 대한 관점이 일관적이지 않거나 명확한 관점이 없는 경우들을 볼 수 있다. 소득 영역에서 살펴본 국민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나타나는 가족은 대부분 배우자와 자녀가 기본이고 부모나 형제에 대한 조건은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기초적으로는 「민법」을 기준으로 가족을 보고는 있으나 제도를 관통하는 가족의 기준이 정확히 드러나지는 않아 보인다. 건강 영역에서 살펴본 건강보험제도에서도 가족에 대한 명확한 범위나 원칙에 의한 접근이 부족해 보였고 가입자 조건 등에서도 가족의 범위에 대한 통일된 규정이 부재해 보인다. 출산 영역에서는 모자보건사업 내에서도 가족 수 산정이나 범위가 상이한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혜택을 받기 위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신청 과정에서 신청 가능한 자들이 가족으로

한정되어 있는 경우를 종종 발견할 수 있으나 이 또한 신청권자의 기준이 무엇인지 불명확하고 반드시 가족으로 제한하는 것은 정책 의도나 가족의 상황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

기존의 정책 및 제도가 다양한 가족의 상황을 면밀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설계되어 있는 점, 즉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를 통해 제도가 있지만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찾아볼 수 있다. 가족 내에 부모가 모두 존재하지 않거나, 자녀 돌봄을 도외줄 수 있는 조부모나 형제자매 등 주변 자원이 없는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 연속되는 가족의 경우까지 고려하지 않는 등 정책적 배려가 부족한 부분들이 발견된다. 또는 갑자기 일어나는 상황이 통제 가능하도록 돕는 정책적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특정 가족에게 더욱 필요하지만 현재 정책적 지원이 부족한 부분도 발견된다. 예를 들면, 기초적인 신체 건강에서 나아가 성인과 그 자녀의 성장에 더욱 중요할 수 있는 정신건강에 대한 지원은 매우 필요해 보이지만 부족한 상태이다. 그리고 자녀 양육 방법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상황도 매우 많아 이러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고민이 필요한 실정이다.

혼인관계에 대한 규정과 일관성이 부족한 부분도 발견된다. 현재 정책이나 제도에서 사실혼 관계에 대한 인정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여전히 지원 대상이 직접 부부가 되는 사업에서는 사실혼이 인정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한 제도 안에서도 어떤 경우는 인정되고 또 다른 경우는 인정되지 않는 등 기준이 혼재되어 있어 사실혼 관계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보인다.

다양한 가족에 대한 문화적 환경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국민인식 조사에서는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는 다양한 가족 형태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면서도 개개인 스스로는 다양한 가족에 대한 편견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편견에 있어 사회적-개인적 수준에 차이를

보인다. 또한 국민들은 차별 금지를 명문화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지를 보이고 있다.

### 3.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제도 및 정책 점검으로 찾아낸 결과들을 바탕으로 시사점을 제시한다. 우선 향후 제도나 정책 수립은 가족에 대한 일관된 관점을 가지고 설계할 필요가 있다. 이미 시행 중인 정책과 제도에서는 가족의 상황에 대한 이해를 통해 개선이 가능한 부분을 발굴하고 고쳐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임신·출산 및 양육과 관련된 부분은 국가에서 책임지고 지원을 한다는 인식이 들도록 보편적인 사례에서 벗어나 있는 산모나 영아, 그리고 가족까지도 지원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가족의 상황에 대한 이해는 향후 가족정책 설계에서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다. 핵가족이 우리 사회의 대표 가족이라는 전제에서 벗어나 설계 단계부터 다양한 경우의 수를 고려해 배제되는 가족이 없도록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혼인관계에 대한 규정을 검토하는 것을 시작으로 제도 및 정책 설계 시 사실혼 인정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특정 가족에 대한 사회·문화적 편견 제거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궁극적으로 특정 가족 유형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모든 가족에게 편리하고 긍정적인 영향으로 돌아올 수 있는 변화로 기대된다.

\*주요 용어: 다양한 가족, 수용성, 가족정책, 문화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가족(家族)이 변화한다. 한국 사회에서 가족이라 하면 떠오르는 구조는 미혼인 남성과 여성이 만나 법적 부부가 되고 그 둘이 낳은 자녀, 결국 생물학적 부모와 자녀, 거기에 가끔은 조부모가 더해진 구조가 가장 흔히 생각하는 가족일 것이다. 그러나 이 보편적인 가족의 모습만으로는 더 이상 가족을 정의할 수 없을 만큼 세상에는 다양한 모습의 가족이 살아가고 있다.

가족의 변화는 결혼의 변화와 함께 이루어져 왔다. 우리 사회의 가족에 대한 개념에서는 ‘결혼(엄격하게는 혼인신고를 통한 법적 혼인)’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전통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결혼은 가족을 이루는 첫 번째 단계인 동시에 일생 동안 한 번만 경험해야 하는 것이고 결혼 후에는 그 틀을 깨지 않아야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한 번 부부의 연을 맺으면 그 후의 행복과 관계없이 가족을 위해, 특히 자녀를 위해 평생을 함께 하는 것이 바른길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어떠한 상황이든 가족을 유지해야만 옳다고 여겨지기보다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면서 과거와 달리 이혼이 전보다 거부감이 덜한 선택지가 되었고 그에 따라 가족의 모습도 달라졌다. 이에 더해 결혼하지 않고 가족생활을 해 나가는 생활 방식까지 결혼의 모습, 가족의 모습은 변화했다.

이러한 변화와 동시에 우리 사회에서는 오랫동안 유교적 가치가 중시되었고, 그에 따라 가족에 대한 전통적 관념들이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

기도 하다. 전통가족 이데올로기, 가족중심주의, 가족책임주의 등 가족을 둘러싼 전통 이념 속에서 우리의 가족은 구조기능주의적 관점에서 이해되기 일쑤였다. 즉 출산, 양육, 교육, 사회화, 경제적 안정, 정서적 지지 등 가족의 기능이라 여겨지던 많은 기능들을 모든 가족이 각각 무리 없이 수행할 때 사회 전체가 구조적으로 잘 흘러간다고 보는 관점에서 가족의 순기능이 매우 중시되었다. 그러면서 핵가족 안에서 남성은 생계를 책임지고 여성은 가정과 자녀를 돌보는 주체로 제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구조가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으로 생각되었다. 따라서 그 외의 구조를 가진 가족들은 잠재적으로 병리적이거나 일탈한 가족 혹은 비정상적인 가족으로 보인 것이다. 그런데 제도나 정책은 한 사회의 역사·문화적 배경 안에서 논의되고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제도나 정책들이 순기능을 자동 수행하는 가족의 모습을 전제하고 기대하고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가족이 다양화되는 동시에 가족 내 개인화가 이루어지면서 가족의 기능, 가족구성원 간의 관계, 가족 구조 등의 변화로 전통적 가족규범은 점차 약화되어 가는 현상이 대세로 자리 잡아 가는 지금, 과연 우리 사회 제도나 정책은 변화하는 가족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을까? 본 연구는 이 질문으로부터 시작한다. 전통적으로 가족을 규정함에 있어 법적 혼인, 혈연, 친족 관계가 중요한 만큼 사회 제도 또한 그 기초와 문화를 담은 채로 형성되어 온 것은 당연한 현상일 것이다. 법이나 정책이 현대 가족의 새로운 모습을 반영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전통적인 틀을 유지해간다면 가족을 위한 제도가 오히려 일부 가족만을 위한 제도로 남을 것이다. 따라서 가족의 변화가 두드러지는 시점에서 현재의 제도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제도가 변화하는 사회에 눈을 뜨고 존재하는 가족 형태를 최대한 담으려 노력할 때 진정으로 우리 사회의 가족을 더욱 강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현재 제도가 가족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가족의 다양한 모습을 얼마나 포괄하고 있는지 정리 및 점검을 통해 분석해 보고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기본 목적이다.

다양한 가족이 우리 사회의 제도에서 배제되거나 인식적으로 편견이 존재하는 것은 부부 가족에게도 문제이지만 가족 내에 아동이 존재할 때 더욱 문제가 될 수 있다. 모든 아동은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 내에서 보호받아야 한다. 다양한 가족을 수용하려는 노력이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다양한 가족에 대한 포용성 제고’라는 정책과제로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 그 동안 비(非)전통적인 가족에 대한 편견이 존재했었다는 인정인 동시에 이렇게 정책적으로 수용하려는 노력만큼 한 걸음 또 발전하고 있는 모습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정책과제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늘어나고 있으나 사회적 수용성이 높지 않은 상황을 인지하고, 생계 및 양육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는 다양한 가족 유형에 대한 지원 체계와 사회·제도적 차별 개선, 포용적 가족관 형성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지 강화를 위해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저출산 현상의 심화로 어느 때보다 집중적으로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기존의 제도나 정책에서 전제하고 있는 가족의 모습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가족의 모습이 각기 다르게 다양해졌고, 축소되거나 약화된 가족의 기능들이 있지만 여전히 가족이 기능을 하고 있는 부분은 자녀 출산 및 양육 기능일 것이다. 그리고 출산과 양육은 전통가족만의 기능이 아니라 여러 다양한 가족 안에서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소식에서는 미혼모나 한부모가족의 양육 사각지대에 대한 뉴스를 종종 들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고운맘카

드'(현 국민행복카드)는 건강보험료가 미납되면 신청할 수 없다. 미혼모 등 사회적 편견 속에서 일자리를 찾거나 유지하기 힘든 경우는 건강보험료 미납이 일어나기 쉬운 환경이고 그에 따라 임신·출산에 도움이 되는 국가적 지원마저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연합뉴스, 2015). 임신이나 출산과 같이 긴급한 상황에 대해서는 국가의 지원을 일단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가족의 상황과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이러한 문제를 경험하는 시민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도 되는 문제로 간과할 수 있다. 하지만, 가족의 모습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고 그에 따라 현재는 소수만 경험할 수 있는 일도 계속해서 사례가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지금부터 나타나는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는 정책뿐 아니라 가족의 기본적 생활을 지지하는 가족정책은 이제 가족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포괄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가족의 안정적인 기본 생활과 출산 및 양육 과정에 관련된 제도 및 정책들에 녹아 있는 가족에 대한 관점을 검토해 현 제도 및 정책이 우리 사회의 변화하는 가족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기본 목적이다. 또한 이러한 검토 과정을 통해 전통적인 형태 외로 간주되는 형태의 가족들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거나 이러한 가족들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측면 등 현 제도의 한계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이와 함께 제도 및 정책은 사회적 합의하에서 발전하는 만큼 가족의 관념과 관련된 인식 및 가치관 등 문화적인 차원에서 일반국민의 다양한 가족에 대한 수용 정도를 파악해 현 수준에 적합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1. 연구 내용

본 연구는 총 6장으로 구성된다. 먼저 제1절에서 본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을 살펴보았다. 제2장에서는 이론적 검토를 통해 가족의 의미와 기능 그리고 가치관 변화 등을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가족과 관련된 주요 법이라 할 수 있는 「민법」과 「건강가정기본법」을 우리 사회에 다양한 가족이 출현한 현재 시점에서 바라본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가족 구성의 근간이 되는 혼인의 변화와 가족의 다양성을 통계로 살펴본다.

제3장부터 제5장까지는 다양한 가족에 대한 제도적 수용 정도를 알아본다. Williamson(2000)에 따르면 제도는 사회적 배태성(social embeddedness), 제도적 환경(institutional environment), 조직적 차원(organizational level), 개인적 차원(individual alignment)으로 구분될 수 있다. 사회적 배태성은 거시적 차원의 제도로 전통, 문화, 규범이나 관습과 같이 비공식적인 차원의 제도를 의미하고 규칙과 관련된 공식적인 제도들은 제도적 환경에 포함된다(왕혜숙, 2013, p. 75에서 재인용). 즉 분석의 대상인 법·제도 및 정책은 공식적인 제도, 엄격히 말해 제도적 환경(institutional environment)에 해당하고, 인식과 관련된 문화는 비공식적 제도(social embeddedness)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제도적 수용성은 제도적 환경과 비공식적 제도를 거쳐 점검한다. 제3장과 제4장은 법이나 제도 및 정책이 가족이 어떻게 투사되어 있는지를 분석한다. 이 과정을 통해 다양한 가족이 우리의 제도에서 어떻게 포용되고 배제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제도나 정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활용하는 분석 틀에는 다섯 가지 기

## 14 다양한 가족의 제도적 수용성 제고 방안

준을 적용한다. 첫 번째, 기본적으로 제도나 정책이 가족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사회에서 전통가족으로 대변되던 구성이 ‘혼인한 부부(와 그 자녀)’였기 때문에 일단 법적 혼인의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본다. 두 번째, 그 제도나 정책 안에서 정의하고 있는 가족, 또는 가족의 범위를 살펴본다. 세 번째, 전통 핵가족에 대한 기대처럼 남성생계부양 모델과 같이 성역할에 대한 구분이 녹아 있지는 않은지를 살펴본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가족을 바라보는 관점을 살펴보는 것에 더해, 가족의 다양성에 대한 포괄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네 번째 기준을 적용해 제도나 정책 안에서 별도로 측정 가족 유형에 대한 내용과 관련한 기준이 있는지 점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다양한 가족의 상황에 적절하지 않은 조건이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등의 기준을 가지고 살펴본다. 이때 앞의 네 가지 기준은 명문화된 정책과 제도의 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에 주로 활용되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기준인 다양한 가족의 상황을 이해했는지에 대한 점검은 직접 찾아내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을 직접 만나 경험을 들어보면서 찾아보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표 1-1〉 본 연구의 제도 및 정책 검토 기준

구분	기준	목적
1	법적 혼인 또는 혈연 관련 기준	기본적으로 가족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점검
2	가족의 정의나 범위 기준	
3	남성생계부양 모델 등 성역할 구분에 대한 기준	
4	특정 (별도)가족 유형에 대한 내용 관련 기준	가족의 다양성에 대한 포괄 정도 검토
5	다양한 가족의 상황에 적절하지 않은 조건 및 내용 등과 관련된 기준(심층면접)	

이러한 분석 기준을 적용해 살펴볼 제도 및 정책은 다음과 같다. 제3장에서는 가족의 기본 생활과 관련된 소득·건강·주거 영역에 대한 제도들을 살펴보고, 이어서 제4장에서는 가족정책의 주요 영역인 임신·출산 및 양육 영역에 포함되어 있는 제도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족생활의 기본 영역인 제3장에서 다루는 제도들은 비교적 오래되고 그 규모면에서도 큰 틀로 자리 잡혀 있는 제도들이 주를 이룬다. 반면 제4장에서 다루는 임신·출산 및 양육 영역의 제도들, 특히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부분들은 작은 사업 단위의 규모들이 주를 이루기도 한다. 따라서 제도의 복잡성이나 내용의 범위가 영역별로 상이할 수 있다는 점은 불가피한 부분이다. 그럼에도 비교의 수준을 맞추기 위해 제도나 정책을 점검할 때 위와 같은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제도에서 지원 내용과 지원 대상, 그리고 신청권자와 관련된 내용을 주로 점검한다. 그 이유는 지원 내용, 대상, 신청권자 등과 관련된 내용이 본 연구에서 보고자 하는 혼인이나 혈연 기준, 가족 범위에 대한 규정, 또는 가족 관계를 기준으로 한 자격들이 나타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표 1-2〉 본 연구의 검토 대상 제도 및 정책(사업)

구분	분야	제도 및 정책(사업)
가족 생활 기본 영역	소득 영역	국민연금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건강 영역	국민건강보험제도
	주거 영역	주거임대 지원제도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주거자금 지원제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디딤돌 구입자금대출

16 다양한 가족의 제도적 수용성 제고 방안

구분	분야	제도 및 정책(사업)
임신·출산 및 양육 영역	임신 및 출산 영역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제도
		모자보건사업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등록관리 및 의료비 등 지원 - 난청조기진단
	자녀 양육 영역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일가족 양립 영역	보육사업
		보육료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아이돌봄 지원사업		
	초등돌봄교실	
	일가족 양립 지원제도	
	모성보호제도(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및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제도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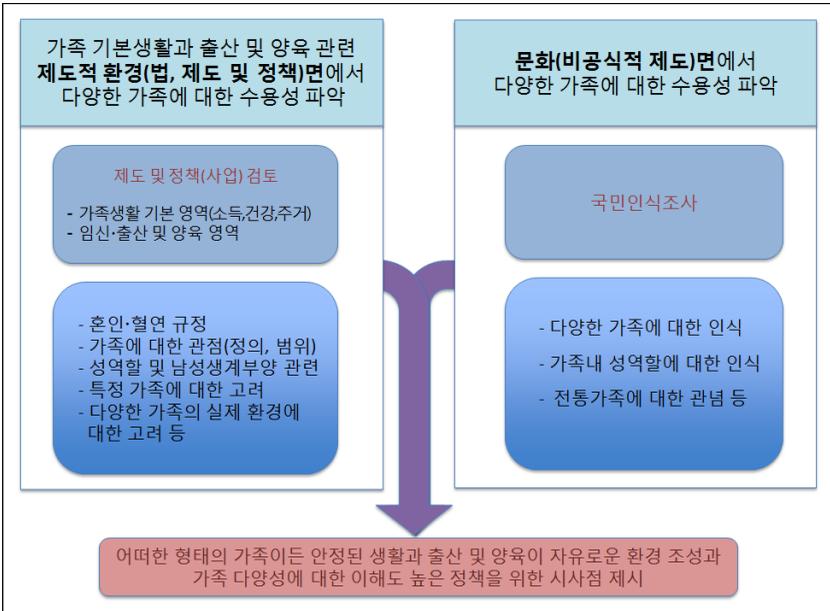
다양한 가족에 대한 문화적 수용성을 살펴보는 마지막 방법은 제5장의 국민의 인식을 통해서이다. 앞서 설명한 제도에 따르면, 문화 또한 비공식적인 제도이다. 다양한 가족을 바라보는 시선이 가족들이 피부로 느끼는 수용성에는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부분일 것이다. 따라서 법, 제도와 정책이 완벽하고 현장에서의 문제점이 사라진다고 해도 선입견이나 편견을 담은 인식이 사회에 만연한다면 다양한 유형의 가족들이 생활해 나가는 데 불편함이 남아 있을 수 있다. 나아가 다양한 가족에 대한 법, 제도나 정책 설계 및 수정에 있어서도 국민적 합의나 사회적 동의를 이루어지지 않으면 추진이 어려운 경우들이 종종 있다. 이 때문에 국민인식은 그 문화를 형성하고 그 문화에 알맞은 제도 및 정책 설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이미 밝혀진 가족과 관련된 견해들

을 2차 자료를 활용해 알아보고, 본 연구의 조사를 추가적으로 더해 다양한 가족, 전통가족에 대한 관념 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파악하고자 한다.

마지막 제6장에서는 법, 제도 및 정책에서 나타난 가족 및 다양한 가족들의 경험, 국민인식 등 다방면으로 다양한 가족에 대한 제도적 수용성 점검 결과를 통해 다양한 가족이 사회제도에서 차별받거나 배제되지 않고 어떤 가족이든 안정된 생활과 출산 및 양육이 자유로운 환경 조성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이상에서 논의한 본 연구의 흐름은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1-1] 연구체계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가족이 어떠한 유형의 가족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별도의 정의는 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본 연구가 특정 가족을 대상으로 한 정책을 검토하거나 그에 대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고 우리 사회에 현재 나타난 다양한 가족 유형들이 전반적으로 사회 제도 안에 녹아 있는 모습을 들여다보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의미하는 ‘다양한 가족’은 그 형태나 경계를 구분 짓지 않되 다양한 가족이 전통적인 핵가족의 변화에서 시작하므로 ‘법적으로 혼인한 부부와 그 자녀’ 외의 가족 구성이나 형태를 포괄하는 의미로 이해하도록 한다.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가족의 다양성을 다시 이분화하는 결과가 될 수 있어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있으나 이 연구에서 의미하는 ‘다양한 가족’에 대해 규정해야 하기에 불가피하게 정의한다.

## 2. 연구 방법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문헌연구, 기존의 조사자료를 활용한 2차 분석, 전문가 자문, 국민인식 조사 등의 연구 방법을 활용한다. 이론적 검토를 위해 선행연구 고찰을 하고, 가족 모습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가구 구성 변화, 이혼율 등 기존의 통계자료를 활용한다. 이러한 2차 자료는 국민인식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서도 활용한다. 이는 국민인식을 알아봄에 있어서 혼인 관련 인식이나 가족과 관련된 전통적 이념에 대한 인식 등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그 외에 본 연구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국민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전화조사를 실시한다. 이 전화조사에 대해서는 제5장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또한 전문가 자문을 통해 연구 내용을 점검한다. 마지막으로 심층면접이 본 연구의 방법 중 하나로 포함되는데 심층면접 필요성 및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앞서 제시한 정책과 제도 검토 시 활용하는 분석 기준에서 다섯 번째 기준인 다양한 가족의 상황에 적절하지 않은 조건 및 내용 등과 관련된 기준이 사실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 조건을 적용해 문서화된 제도나 정책 내용에서 다양한 가족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내용 등을 찾아내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를 보완하고 다양한 가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심층면접을 실시한다. 이는 변화되는 가족의 욕구를 파악할 수 있으면 이에 대해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가족 유형과 관련되어 현장에서 일하는 전문가 및 다양한 가족의 구성원들의 직접적인 목소리를 통해 제도가 현장에서 다양한 가족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심층면접은 2017년 6월부터 9월까지 하였으며, 면접당 1시간에서 2시간 사이에 이루어졌다. 면접마다 시작 전에 면접 참여자에게 면접에 대한 자발적 참여 의사 및 녹취에 대한 사전 동의를 구하였다. 모든 심층면접은 본 연구의 연구진이 진행하였다.

〈표 1-3〉 심층면접 개요

구분	내용
참여자	- 총 8명의 다양한 가족과 관련된 전문가(A집단) - 총 9명의 다양한 가족 구성원 개인(B집단)
방식	반구조화된 개별 혹은 그룹 심층면접
소요기간	2017. 6. ~ 2017. 9.
소요시간	면접 1건당 1~2시간 소요
내용 보관	면접 참여자 동의하에 녹취
진행	연구진

## 20 다양한 가족의 제도적 수용성 제고 방안

본 연구의 심층면접에 참여한 현장 전문가는 저소득 모자가정 입소시설, 한부모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미혼모협회, 여성단체 등에서 활동하는 전문가 8인이다.

〈표 1-4〉 다양한 가족 관련 현장 전문가

구분	기관 유형	인터뷰 대상	대상자 코드
1	저소득 모자가정 입소시설	원장, 사무국장(2인)	A1, A2
2	한부모(미혼부모)가족지원센터	팀장	A3
3	건강가정지원센터	사무국장	A4
4	미혼모협회	회장	A5
5	여성단체	대표(3인)	A6, A7, A8

또한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포함되어 있는 구성원들 9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 내용을 연구에 포함한다.

〈표 1-5〉 다양한 가족 심층면접 참여자

구분	가족 구성	인터뷰 대상	연령(만)	취업 여부	대상자 코드
1	(이혼)모 + 자녀 2	모	43	취업	B1
2	(이혼)모 + 자녀 1	모	36	취업	B2
3	(미혼)모 + 자녀 1	모	38	취업	B3
4	(미혼)모 + 자녀 1	모	32	비취업	B4
5	(미혼)모 + 자녀1	모	22	비취업	B5
6	(미혼)부 + 자녀2	부	23	비취업(공익근무)	B6
7	(사별)남, 자녀1 + (미혼)여	사실혼 여성	46	취업(자영업)	B7
8	미혼 남성 + 미혼 여성	미혼 여성	33	비취업(대학원생)	B8
9	조부모 + 손녀1	조모	70	비취업	B9

다만 심층면접을 통해 다양한 가족들이 현실에서 경험하는 불합리성은 문서화된 제도 및 정책을 점검하는 과정에서는 드러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가족들이 현실에서 직접 느끼는 한계점이 제도 검토 과정에서 발견된 내용과 부합할 경우 제도 검토 시에 심층면접 내용을 함께 제시한다.

하지만 제도 설명, 정책 대상 등을 점검하는 과정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분명 실제 생활에서는 장애를 경험하는 내용들, 즉 제도 검토만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 설명 과정에 포함하는 것이 다소 어색할 수 있기 때문에 제도 분석 내용을 다루는 제3장과 제4장의 소결 부분에서 심층면접을 통해 발견한 부분을 별도로 제시하고자 한다.

심층면접을 통해 발견되는 부분은 매우 미시적이고 협소한 내용들일 수 있다. 하지만, 이 사소한 부분들이 다양한 가족의 상황을 어떤 분석을 통한 것보다 정직하게 보여주는 부분으로 본 연구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심층연구에서 지적되는 다양한 가족의 상황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부분들이 아직은 소수의 의견이고 현재 사회적 이슈로 크게 다루어지지 않더라도 이러한 불편함을 느끼는 사례가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하고, 이러한 사례가 증가할 수 있다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 제 2 장

## 이론적 검토

제1절 한국 사회 가족의 변화

제2절 주요 가족 관련법과 다양한 가족



# 2

## 이론적 검토 <<

### 제1절 한국 사회 가족의 변화

본 절에서는 한국 사회에 나타난 다양한 가족을 이해하기 위한 전제로 가족의 변화를 우선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통계를 통해 변화된 모습을 확인하고, 가족의 기능이나 전통적인 가치관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문헌검토를 통해 알아본다.

#### 1. 결혼 상태와 가족 형태의 변화

한국 사회의 가족의 변화를 생각해 본다면 결혼의 변화에서 그 시작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즉 미혼, 기혼, 이혼, 재혼 등 결혼 상태(marital status)의 변화에 따른 가족의 변화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절에서는 우선 결혼의 변화에서 나타나는 특성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과거에는 일정한 연령이 되면 결혼을 하고, 그 결혼 상태는 배우자 한 쪽의 사망 전에는 대체로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평생 동안 한 번도 결혼을 하지 않거나(never married), 법적 혼인을 하지 않고 결혼생활(cohabitation)을 하거나, 이혼을 하거나(divorced), 또는 재혼을 하는(remarried) 등 결혼 형태나 상태가 다양화되었다. 이러한 결혼 상태나 형태의 다양화는 가족 혹은 가구 유형의 다양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결혼 상태와 관련된 통계들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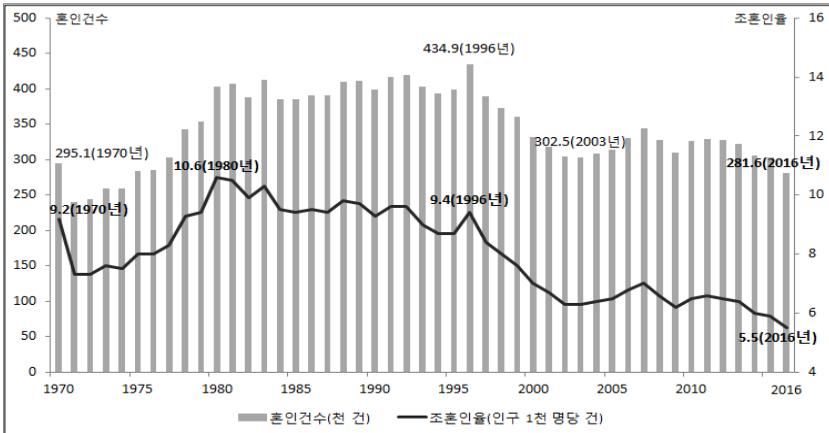
우선 법적 혼인율의 변화이다. 혼인 건수는 1996년 약 43만 4900건 정도로 최고조에 이른 뒤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지만 전반적으로는 매우

## 26 다양한 가족의 제도적 수용성 제고 방안

낮은 건수를 기록하고 있다. 2016년 현재 약 28만 1600건으로 20년 사이에 65% 수준으로 혼인 건수가 감소하였다(그림 2-1 참조). 인구 1천 명당 혼인 건수를 보여주는 조혼인율은 1980년 10.6건에서 2016년 5.5건으로 대략 절반 정도 하락한 셈이다. 이러한 혼인율의 변화는 미혼인구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그림 2-1] 혼인 건수와 조혼인율의 변화(1970~2016)

(단위: 천 건, 인구 1천 명당 건)



자료: 통계청. (2017. 3. 22.). 2016년 혼인·이혼통계 보도자료를 이용해 저자 재구성.

미혼 인구의 변화는 18~49세 인구 중 미혼인 인구를 분류해서 알아보았다. 매해 18~49세 인구수는 변화하므로 비율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미혼 인구는 1990년도 35.2%에서 2015년에는 46.7%로 증가하였다. 아래 <표 2-1>에 제시된 2000년도 미혼 인구는 15세부터의 인구를 포함하고 있어 그 수가 다른 연도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많다. 따라서 1990년도부터 2015년도의 통계를 활용하여 변화를 비교해 보면, 25~29세 미혼 인구가 1990년도에 39.6%였던 데 반해, 2015년도에는 83.9%로 두 배 이상 미혼의 비율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초혼 연령이 포함된 30~34세

를 보면, 1990년도의 미혼 비율은 9.7%에서 2015년도 46.9%로 4배 이상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그 외에 35~39세 미혼인구 비율도 1990년도와 비교해 2015년도에 8배 이상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1〉 18~49세 미혼인구의 변화(1990~2016)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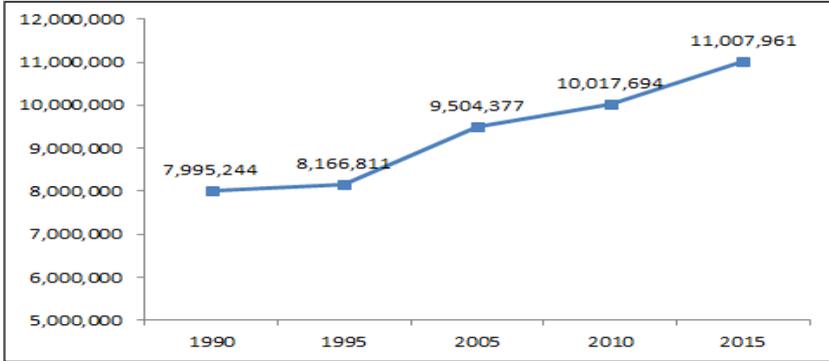
구분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인구수	%	인구수	%	인구수	%	인구수	%	인구수	%	인구수	%
18~24세	5,721,688 (6,226,945)	91.9	5,355,886 (5,799,773)	92.3	7,270,902 (7,539,770)	96.4	4,755,577 (4,907,926)	96.9	4,352,865 (4,434,013)	98.2	4,637,857 (4,714,376)	98.4
25~29세	1,718,045 (4,333,500)	39.6	1,947,586 (4,137,913)	47.1	2,278,879 (4,036,978)	55.6	2,591,335 (3,671,847)	70.6	2,743,190 (3,538,948)	77.5	2,539,383 (3,024,909)	83.9
30~34세	407,880 (4,207,714)	9.7	557,047 (4,230,239)	13.2	797,870 (4,038,228)	19.5	1,237,923 (4,036,282)	30.2	1,469,486 (3,665,348)	39.8	1,698,003 (3,607,875)	46.9
35~39세	99,612 (3,201,210)	3.1	206,369 (4,133,864)	5.0	313,708 (4,186,953)	7.5	535,108 (4,112,785)	13.0	806,770 (4,039,147)	19.7	988,968 (3,774,150)	26.2
40~44세	32,419 (2,539,269)	1.3	70,768 (3,071,101)	2.3	149,966 (3,936,336)	3.8	250,616 (4,123,041)	6.1	424,288 (4,131,423)	10.3	715,644 (4,207,927)	17.0
45~49세	15,640 (2,176,880)	0.7	29,155 (2,464,295)	1.2	61,132 (2,952,023)	2.1	133,818 (3,900,889)	3.4	221,095 (4,073,358)	5.4	433,036 (4,259,407)	10.2
계	7,995,244 (22,665,528)	35.2	8,166,811 (23,837,185)	34.3	10,872,457 (26,865,288)	40.5	9,504,377 (24,812,780)	38.3	10,017,694 (23,972,238)	41.8	11,007,961 (23,588,644)	46.7

주: 자료상 연령 구분의 한계로 15~24세에 해당하는 수치임.

자료: 통계청. (각 연도). 인구주택총조사.

[그림 2-2] 18~49세 미혼 인구의 변화(1990~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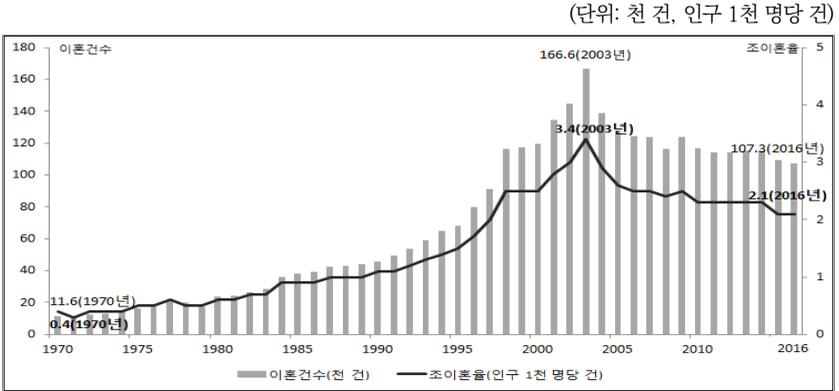
(단위: 명)



자료: 통계청. (각 연도). 인구주택총조사.

지금까지 혼인 건수의 변화와 연동된 미혼인구의 변화를 살펴보았다면, 이제 이혼 건수의 변화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혼은 1970년대부터 지속적인 상승 패턴에서 1990년 이후 더욱 극적인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2003년 정점을 찍은 후 2005년까지는 눈에 보이게 하락하였지만 그 후 현재까지는 1990년대 이후 이런 상승 이전으로 되돌아갈 만한 하락 패턴은 보이지 않고 있다. 인구 1천 명당 건수를 보여주는 조혼인율(그림 2-1 참조)과 조이혼율을 비교해 보면, 그래프상 조혼인율이 정점이었던 1980년에는 조혼인율이 10.6건, 조이혼율은 0.6건이었다. 그 후 1990년 조혼인율은 9.3건, 조이혼율은 1.1건이었다. 그리고 이혼율이 정점을 이루었던 2003년을 비교해 보면, 조혼인율은 6.3건, 조이혼율은 3.4건으로 조혼인율과 조이혼율 사이의 차이가 줄어들고 있다. 그 후 조혼인율은 약간 상승 후 하락 패턴을 보이고 조이혼율은 하락 후 유지하는 패턴을 보이며 진행되고 있다. 2016년 현재 조혼인율은 5.5건, 조이혼율은 2.1건으로 나타나고 있어 혼인 대비 이혼하는 인구가 과거와 비교해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3] 이혼 건수 및 조이혼율의 변화(1970~2015)



자료: 통계청. (2017. 3. 22.). 2016년 혼인·이혼통계 보도자료를 이용해 저자 재구성.

이혼 시 미성년 자녀가 어느 정도 있는지 그 비율을 보면, 미성년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의 이혼은 2016년 5만 1천 건으로 전체 이혼의 47.5%를 차지하고 있다. 2006년에는 전체 이혼 중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의 이혼이 60.8%로 10년 전과 비교해 그 비율이 점차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으나, 여전히 이혼 중 절반에 가까운 비율은 자녀가 있는 가족임을 알 수 있다.

<표 2-2> 미성년 자녀 유무별 이혼 건수 및 구성비(2006~2016)

(단위: 천 건, %)

구분	2006	구성비 (%)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구성비 (%)
계*	124.5	100.0	124.1	116.5	124.0	116.9	114.3	114.3	115.3	115.5	109.2	107.3	100.0
미성년 자녀 있음	75.7	60.8	72.8	63.0	68.5	62.9	60.1	60.3	59.0	57.2	52.8	51.0	47.5
1명	33.4	26.8	32.2	28.5	31.5	30.0	29.0	29.9	30.1	30.0	27.8	27.3	25.5
2명	36.9	29.6	35.2	29.8	31.9	28.3	26.7	26.2	24.7	23.3	21.2	20.0	18.6
3명이상	5.5	4.4	5.4	4.7	5.1	4.6	4.4	4.1	4.2	3.9	3.8	3.7	3.5
미성년 자녀 없음	48.2	38.7	50.9	52.9	55.1	53.7	53.9	53.7	56.1	58.1	55.6	55.4	51.7

주: \* 미상 포함.

자료: 통계청. (2017. 3. 22.). 2016년 혼인·이혼통계.

지금까지 확인했듯이 결혼의 상태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각각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그리고 이러한 결혼 상태의 감소·증가는 가족의 변화까지 초래하였다. 미혼인구의 증가는 1인 가구의 증가에 기여하였고, 이혼의 증감은 한부모가족의 비율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제 가구별 비율 변화를 보면, 1인 가구의 수와 비율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물론 독거노인가구의 증가로 그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앞서 확인한 미혼인구의 증가도 1인 가구의 증가를 가속화하고 있고, 이 1인 가구 통계에는 결혼의 또 다른 형태인 동거 생활을 하는 인구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한부모가구는 1990년 전체 가구의 7.8%를 차지하는 수준이었으나 2015년 현재는 10% 정도로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3〉 가구별 비율 변화(1990~2015)

(단위: 가구, %)

구분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전체 가구	11,354,540 (100.0)	12,958,181 (100.0)	14,311,807 (100.0)	15,887,128 (100.0)	17,339,422 (100.0)	19,111,731 (100.0)
1인 가구	1,021,481 (9.0)	1,642,406 (12.7)	2,224,433 (15.5)	3,170,675 (20.0)	4,142,165 (23.9)	5,211,133 (27.3)
한부모 가구 <sup>1)</sup>	888,823 (7.8)	959,972 (7.4)	1,123,854 (7.9)	1,369,943 (8.6)	1,594,138 (9.2)	1,886,362 (9.9)

주: 1) 일반 가구 중 한부(모)와 미혼 자녀로만 구성된 가구, '조부(모)+미혼 손자녀' 가구는 제외.

2) 괄호 안 숫자는 전체 중 해당 가구의 비율.

자료: 통계청. (각 연도). 인구주택총조사.

한부모가구를 조금 더 상세하게 알아보면, 1990년에는 전체 한부모가 구 중 사별한부모가구(56.0%)인 경우가 가장 큰 비율인 동시에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1990년에는 전체 한부모가구 중 8.9%를 차지 하던 이혼한부모가구는 2015년 37.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 1990 년과 비교해 그 수도, 비율도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더해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미혼한부모의 증가이다. 1990년 약 8만5000가구이던 미혼한부모가구는 2015년 현재 약 21만 4000가구로 1990년 전체 한부모가구 중 9.6%에서 2015년 현재는 11.4%로 증가하였다. 과거와 비교해 사별한부모가구의 숫자는 큰 변화가 없고 이혼과 미혼 한부모가구의 숫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결과적으로 사별한부모가구의 비율은 꾸준히 감소하는 반면 이혼 및 미혼 한부모 가구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2-4〉 한부모가구 구성 비율의 변화(1990~2015)

(단위: 가구, %)

구분	유배우	사별	이혼	미혼	계
1990	226,731 (25.5)	497,837 (56.0)	78,861 (8.9)	85,394 (9.6)	888,823 (100.0)
1995	216,067 (22.5)	526,320 (54.8)	123,969 (12.9)	93,616 (9.8)	959,972 (100.0)
2000	252,917 (22.5)	502,284 (44.7)	245,987 (21.9)	122,666 (10.9)	1,123,854 (100.0)
2005	327,864 (23.9)	501,095 (36.6)	398,532 (29.1)	142,452 (10.4)	1,369,943 (100.0)
2010	412,793 (25.9)	473,753 (29.7)	522,865 (32.8)	184,727 (11.6)	1,594,138 (100.0)
2015	457,798 (24.3)	511,468 (27.1)	702,853 (37.3)	214,243 (11.4)	1,886,362 (100.0)

주: 일반 가구 중 '부+미혼자녀'와 '모+미혼자녀'로 구성된 가구, '조부 또는 조모+미혼손자녀' 가구는 제외, 가구주 기준.

자료: 통계청. (각 연도). 인구주택총조사.

현재 통계를 통해 증감을 확인할 수 있는 점은 1인 가구, 한부모가구, 미혼부모가구 등의 증가라 할 수 있다. 여기에는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살거나, 이혼 후 혼자 사는 1인 가구, 이혼 후 자녀와 함께 사는 한부모가구, 결혼을 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해 양육하는 미혼한부모가구, 혹은 다양한 가족 상황에 따른 조손가구 등 결혼 상태의 변화와 함께 다양화 된 가족의 유형을 살펴볼 수 있다. 통계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결혼을 하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동거가구가 있을 수 있고, 더 나아가 결혼은 원치 않지만 자녀는 기르는 비혼한부모가구 등 세분화된 가족 형태가 우리 사회에 공존하고 있다. 통계를 통해 파악되는 한부모가구는 현재 10% 안팎이다. 전체 가구에서 10%라는 비율은 낮다고 할 수 있지만, 무시할 수는 없는 비율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 한부모가구만 보았을 때도 그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통계로는 확인되지 않지만 동거가구의 증가 등을 고려한다면 우리 사회에서 전통적으로 가족이라고 여겨오던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형태 외의 모습을 한 가족들의 증가는 어느 정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전통적인 핵가족을 중심으로 한 제도나 정책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고, 가족이 다양해짐에 따라 더욱 빈번하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 2. 가족 기능 및 전통적 가치관의 변화

가족은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로서 그 기능을 수행해 왔다. 가족은 우선적으로 성적·경제적·출산·교육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되었다(Murdock, 1949; 양옥경, 2000에서 재인용). 구체적으로 보면, 필수적인 의식주 공급을 통해 인간 생존을 보장해 주는 역할을 한다(Moroney, 1976; 한국가족학회, 1995에서 재인용). 그리고 사회에 새로운 구성원을 재생산하고, 그 구성원의 사회화 및 안전과 정서적 지지의 기능을 수행한다(Leslie & Korman, 1989; 한국가족학회, 1995에서 재인용). 또한 가족은 구성원의 출산과 사회화 기능에 더해 생산 활동으로 사회에 재화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협조에 기여하기도 한다(Strong & Devault, 1992; 서병숙 등, 2002에서 재인용).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가족의 주요 기능을 정리해 보면, 성과 애정적 기능과 함께 출산 및 양육

의 기능을 통해 노동력의 재생산 기능을 담당한다. 그리고 가족 구성원의 사회화, 교육과 정서적 지지와 보호의 기능을 통해 심리적·신체적·문화적 안정을 유지하게 하는 역할을 가족의 기능이라고 볼 수 있다(이진숙, 신지연, 윤나리, 2010).

이러한 가족의 다양한 기능 중에서 어떠한 기능은 과거에는 강했지만 현대에 와서 약화되기도 하고, 국가나 사회가 개입하는 기능도 생겨나는 등 가족의 변화에 따라 가족의 기능 면에서도 변화가 일어났다. 성과 애정 기능, 자손의 재생산 기능은 저출산, 단산 등으로 그 기능이 약화되는 측면이 있다. 또한 현대 사회로 오면서 가족의 자녀 교육 기능, 그리고 돌봄 기능은 사회에서 가족의 역할을 분담하면서 가족 기능의 변화를 발견할 수 있다. 반면 자녀 및 가족 구성원의 정서적인 안정과 관련된 기능 등은 강화되기도 하였다(최경석 등, 2008).

사회 변화로 가족의 기능만 변화한 것이 아니라 가족 가치관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이혼에 대한 수용이 과거에 비해 높아지고, 결혼 또는 재혼 등 혼인에 대한 인식 변화에서 가족 가치관의 변화를 발견할 수 있다(최경석 등, 2008). 이러한 변화 속에서 가족 집단으로의 이익을 중시하고, 개인보다 전체를 우선하던 전통적 가치관에서 가족 내 구성원 각각이 존중되면서 점점 개인주의화되는 방식으로 변화한 것이다(김희자, 2008; 최경석 등, 2008).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던 한국의 전통가족 이데올로기와 가족주의에도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어느 사회, 어느 민족, 어느 시대이든 가족이 중요하지 않은 상황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가족은 그 안에 구성원을 포함하고 있고, 그로 인해 구성원 개인의 중요성 또한 강조되고 있다. 특히 1960년대 말부터 서구 사회를 중심으로 이혼율 상승, 동거 및 혼외출산 증가 등의 현상이 얹혀서 사회 변화가 일어났고

(Aassve, Billari, & Spéder, 2006), 이러한 현상은 자연스럽게 가족의 변화로 이어지면서 가족에서의 ‘다원화’, ‘개인주의화’, ‘탈제도화’ 현상들로 나타났다(서수경, 2002). 이에 따라 가족의 유형은 과거보다 다양화되고, 단위로서의 가족보다 가족 구성원 개인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서구보다는 시기적으로 후에 나타났지만 한국 사회에서도 1980년대 이후 이혼율의 꾸준한 상승(통계청, 2017. 3. 22.)과 전통적이라고 생각했던 유형에서 벗어난 가족 형태 증가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사회의 가족도 개인주의화되는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하지만 여전히 사회 곳곳에서 전통적인 핵가족의 모습이 정상적인 것처럼 여겨지거나, 가족의 책임과 역할이 중요한 분야나 상황들을 찾아볼 수 있다. 많은 것들이 현대화되었고 가족도 변화하였지만 우리 사회나 문화에는 깊게 밴 전통가족 이데올로기나 가족주의의 특성들이 남아 있는 것이다.

가족주의(familism)는 문화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개념으로, 어느 문화에서나 공통적인 개념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이지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가족 간의 연대의식이나 상호간의 지지, 혹은 의무 등 다차원적인 가족 가치를 아우르고 있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Mendez-Luck, Applewhite, Lara, & Toyokawa, 2016). Sabogal, Marín, Otero-Sabogal, Marín, Perez-Stable(1987)은 ‘개인과 그 가족의 강력한 정체 및 애착과 가족 구성원 간의 강한 충성심, 호혜, 연대감’으로 가족주의를 설명했다.

한국은 일본, 중국, 대만 등 동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가족주의가 강한 편에 속하는 국가이다. 개인주의와 가족주의에 대한 견해를 묻는 “자신의 행복이나 이익보다는 가족의 행복과 이익을 우선으로 놓아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대만에서는 10명 중 8.3명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장 가족주의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나머지 3개 국가를 비교해

보면, 일본은 10명 중 5명, 중국은 10명 중 6.8명이 동의한 데 비해, 한국은 10명 중 7.9명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나 개인보다는 가족을 우선하는 특징을 보였다(Iwai & Yasuda, 2009; Ochiai, 2011에서 재인용).

한국의 뿌리 깊은 유교사상과 관계가 깊은 가족주의는 두 가지 의미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이 지적되기도 하였다(윤홍식, 2012). 영어의 ‘familism’ 과 ‘familialism’이라는 두 단어가 동일하게 ‘가족주의’로 번역되면서 의미가 혼동되는 것이다. 우선 집단으로서 가족의 이해가 가족 안의 개인에 대한 이해보다 앞서야 하는 의미의 가족주의는 ‘familism’을 의미하는데(Neufeldt & Furalnik, 1997; 윤홍식, 2012에서 재인용), 이렇게 가족이라는 집단이 중요하고, 개인은 그 가족 안에 속한 것으로 이해한다는 면에서 ‘가족중심주의’라 볼 수 있다(최재석, 1976; 서선희, 2003). 반면 Wikipedia에서는 ‘familialism’이라는 단어는 가족의 구성원을 돌보는 것에 대한 책임이 정부보다는 가족에 있음을 강조하고, 그래서 남성 가장, 돌봄 주체인 여성, 그리고 그들의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을 사회가 그 기능을 하는 데 있어 중심이자 주요 단위로 보는 이데올로기로 설명하고 있다(“familialism”, n.d.) 이렇게 가족 내에 분명한 역할이 있고, 그에 따라 가족이 경제적 부양과 돌봄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복지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familialism’은 ‘가족책임주의’로 구분지어 볼 수 있다(윤홍식, 2012).

이렇게 가족주의는 비슷하면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는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한다. 이러한 가족주의가 한국 사회의 여러 법·제도 및 정책 등과 같은 제도적 환경(institutional environment) 안에 스며들어 있어 제도 및 정책이 그 대상을 개인보다는 가족 단위로 하고 있으며, 가족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면서 그 가족 안에서 개인이 보호받고 자라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장경섭, 진미정, 성미애, 이재림, 2013). 우리

사회의 제도적 환경이 이러한 가족주의를 상정하고 있다면 완전한 가족으로 생각해 왔던 부모와 생물학적 자녀로 구성된 가족 이외의 가족들은 배제되거나 그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가족들로 구분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가족이 더 이상 같은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고, 가족주의가 이념적으로 약화되어 가는 시대에 과거와 같은 기준으로 가족에 대한 기대나 요구가 이어지는 것 그 자체로도 문제이고 또 다른 문제를 낳게 되어 있다.

## 제2절 주요 가족 관련법과 다양한 가족

본 연구는 이어지는 제3장과 제4장에서 기존의 제도 및 정책을 앞서 제시한 분석 기준을 활용해 검토할 것이다. 분석 대상이 되는 제도 및 정책에는 가족생활에 기본이 되는 분야와 출산 및 양육에 관련된 분야에 해당하는 기존 제도와 정책이 포함된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는 가족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과 가족정책의 기초라고 볼 수 있는 「건강가정기본법」이 따로 존재하고 있다. 이 두 가지 법은 가족을 정의하고 가족에 대한 개념을 다루고 있을 뿐 아니라 다른 제도나 정책에서 가족에 대한 근거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가족과 관련해 기초적인 법이다. 따라서 분석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이 두 가지 법이 가족의 모습을 어떻게 담고 있는지 기본적으로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 판단된다.

법이란 우리의 삶을 규정하는 강제적 규범이자 규칙이라는 점에서 특정 사회의 인간의 삶을 안내하는 최소한의 규칙을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법은 사회의 정당한 정치권력이 그 사회의 정의 실현이나 질서 유지를 위해 정당한 방법으로 제정되어야 한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적 기준을 제공하는 동시에 이를 강제하는 일련의 사회생활 규칙으로 정의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처럼 법을 개인의 사회생활을 강제하는 규정으로 해석할 경우, 다른 사회제도에 비해 가족 제도는 여타 제도와의 공통적 속성에도 그러한 강제적 지침을 둘러싼 논란의 여지가 상당한 것이 사실이다. 즉 가족의 형성과 유지는 각 시대의 관습적 행위와 규범을 받는 것이기도 하지만, 법체계 성립 이전부터 존재해 왔던 인간 특유의 관습과 기호가 반영된 문화적 산물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가족 생활을 강제하는 도덕적 기준을 둘러싼 정당성과 적실상의 이견이 팽팽하게 맞설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근대 이후 가족은 다른 행위에 비해 특별한 개인적 감정과 취향에 좌우되는 정서적이고 관계적인 것으로 변화해 왔다. 따라서 법률이 개인의 특정한 정서심리적인 관계를 어느 범주까지 강제할 수 있으며 해야만 하는지, 혹은 강제하고 규제할 경우 개인의 취향과 선택을 얼마나 형평성 있게 인정하고 보장할 수 있을 것인가는 상당히 논쟁적일 수밖에 없다.

통상 법은 무엇을 강제하고 보장할 것인가 하는 규범적 기준을 가지고 개인의 정서, 신체적 유대 방식의 정당성이나 제도적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또한 그러한 기준 규범에 따라 독특한 개인 간 결합과 이로 인한 가족 및 친족 구성의 범주를 법으로 강제 또는 규제하고, 필요시 보호 및 보장의 범위를 설정하고 있다. 인간 사회의 모든 사회제도가 제도로서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가족제도 역시 법률 적용의 범주가 되는 것은 마땅하다. 그럼에도 가족제도는 개인의 정서와 욕구, 때로는 친밀성에 대한 개인적 취향이 반영되어 있으면서 시간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해 왔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동시에 다른 한편에서는 끊임없이 변화해왔다고는 하나 오랫동안 가족은 인간의 기본적이고 생리적인 욕구를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사회관습과 제도로 존속해온 것도 사실이다. 그

러한 측면에서 가족에 대한 개인 및 사회의 희구가 강하고, 이것은 때로 가족 신화를 만들어 유포하고 개인에게 강제해 온 측면 또한 없지 않다. 특정 집단이나 개인의 경험이 가족 신화나 이데올로기로 가공되고 유포될 경우 그만큼 가족에 대한 객관적 이해는 어려워지며, 다양한 가족의 삶을 박제시키면서 가족의 개념과 정의의 문제를 낳게 된다.

더욱이 후기 근대 사회에서는 특정한 형태의 가족의 삶이 보편적이라고 생각할 만큼 수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우위를 차지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가족의 개념과 정의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기도 쉽지 않으며, 특정한 가족의 형태나 삶의 방식만을 표준적이고 정당한 것으로 간주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가족생활은 개인의 생애주기에 따라 그 형태와 기능이 지속적으로 변할 뿐만 아니라 사회 변동과 조응하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변화를 경험하기 때문이다. 특히 개인 및 가족의 사회경제적 위치가 부유하는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가족 삶의 변동은 유동하는 개인의 노동시장 지위에 좌우되면서 더욱 다양한 변화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김혜영, 2014, 2016). 따라서 가족에 대한 적실한 이해를 위해서는 사람들이 희구하는 이념형적인 가족과 실제 삶을 구분해서 살펴보아야 함은 물론 가족 구성의 관계적 요소나 가족기능의 변화, 혹은 이와 연관된 다양한 법과 제도의 간극 등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절에서는 최소한의 도덕적이고 강제적인 규범으로서 법체계가 어떻게 가족을 정의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그러한 법률적 규정이 보다 유연하고 다양해진 가족 삶의 방식이나 형태와 어느 정도 조응하는가를 살펴본다. 이는 법과 제도 역시 인간 행위의 산물이지만, 그것이 명문화되고 제도화되는 순간 다시 인간 행위를 규제하는 조건으로 등장하기 때문이다. 즉 특정 사회의 법과 제도는 해당 사회구성원의 행위 및 그에 내재한 의식의 산물이지만, 그것이 구성된 이후에는 사회구성원의 행위와 의식

성향을 규제하는 것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사회 변동과 함께 구성원의 가치와 행위 양식은 변화하고, 이러한 변화와 상응하여 법제도 역시 변화하기 마련이지만(김자영, 강승묵, 2011), 때로는 사회구성원의 규범과 행위의 변화에 정합적인 속도와 내용으로 변화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개인들의 가치와 행위 변화에도 법, 제도가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일정 부분 개인의 삶에 왜곡된 방법으로 개입하거나 그것을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 역시 사실이다.

가족을 연구하는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 역시 지속적으로 이러한 점에 관심을 기울여왔으며, 수차례의 개정에도 현재의 가족법 역시 가족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에 주목해 왔다. 즉 2005년도 호주제 폐지라는 획기적 변화를 가져온 개정 가족법이 가족의 현대성을 여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과거에 비해 다양하고 유연해진 오늘의 가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특정한 가족을 암묵적으로 배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실상 가족이나 가족생활 및 가족관계를 규정하는 법들은 매우 다종다양하다. 가족을 명시한 법률들을 구체적으로 가족의 범주를 명시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 가능한데, 가족을 명시하지 않은 채 가족의 개념이나 명칭을 사용하는 법률은 매우 상이한 수준에서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이은정, 2006). 뿐만 아니라 가족의 범주를 명시하고 있는 법률 역시 그 개념은 각기 상이하게 사용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예컨대 300여 개의 실정법에서 가족의 개념이나 범위를 가정, 가구, 세대주, 동거가족, 부양가족, 직계친족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으며, 법률마다 '가족'에 관해 다른 정의나 범위를 사용하고 있음이 명확하게 확인되고 있다(김용화, 2008).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족의 개념을 비교적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민법」이고 가족 관련한 국가, 사회 및 개인의 역할을 명문화한 것

은 보편적 가족정책 선언의 기초가 된 「건강가정기본법」이라는 점에서 두 법에서 명시된 가족의 정의와 범주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가족’이 명시된 법률은 다양하나, 대체로 개별법들의 근거는 「민법」이나 사회적 통념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족의 개념과 범주 등을 명확히 하고 있는 「민법」과 「건강가정기본법」에서 규정하는 가족의 개념과 범주가 실제 가족의 현실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 또는 실제 가족의 현실과 얼마나 유리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는 일은 곧 가족 관련법의 적실성을 확인하는 작업이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한국인들의 가족의식이 변화하면서 더욱 다양화되는 가족의 형태와 삶의 방식이 법과 제도에서 충분히 고려되고 있지 못하다면, 현재 법, 제도의 가족 개념 및 이념의 적실성이 쉽게 부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법 규정의 변화 역시 촉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1. 민법

가족을 규율하는 법률의 제정 및 개정의 기준이 되는 법은 당연히 「헌법」이다. 어떠한 법률이나 명령도 「헌법」에 위배될 수 없는데, 이는 「헌법」이 국가의 최고법인 동시에 국가의 운영원리 및 통치조직과 국민의 기본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김엘림, 조승현, 2005; 성미애, 2009에서 재인용). 그러나 현재 우리 「헌법」은 ‘가족’에 대한 개념 정의는 물론 그 범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는 않고 있다. 다만 「헌법」 제36조 제1항에서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고 선언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이는 국가가 가족을 중요한 사회제도로서 인정하고 보호하며, 가족이 수행하는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해야 함을 명시적

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따라서 이 조항은 가족이라는 공동체에서 개인과 가족이 향유하는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을 국가가 보호한다는 자유권적 방어권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박선영, 윤덕경, 박복순, 김혜경, 2008).

그러나 「헌법」에서는 가족에 대한 명문화된 정의나 범주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가족의 개념과 범주에 대한 논란이 적지 않다. 혹자는 「헌법」은 결국 「민법」상 가족 개념을 수용하고 있다고 보기도 하며(이은정, 2006), 「민법」의 가족 개념이 「헌법」의 가족 개념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거나 개념적 일치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제기하기도 한다. 다만 가족법 개정 이후 헌법재판소는 ‘오늘날 가족은 일반적으로 부모와 미혼자녀로 구성되는 현실의 생활공동체로 대부분의 가족이 소가족의 형태를 보여주며, 승조사상과 경로효친과 같은 미풍양속은 법의 문제가 아닌 사회·문화·윤리의 문제’라고 규정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2005. 2. 3., 2001 헌가 9,10,11 내지 15, 2004 헌가5(병합) 결정; 이은정 2006에서 재인용). 이로써 「헌법」에서 의미하는 가족은 주로 ‘혼인’, ‘혈연’ 및 ‘생활공동체’의 개념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되나(이은정, 2006) 여전히 가족을 둘러싼 해석이 분분한 것 역시 사실이다. 예컨대 가족을 부모와 자녀의 포괄적인 생활공동체로서 상호간의 보호·양육 및 교육, 생활공동체라는 입장(최갑선, 2003)이 있으며, 혼인으로 구성된 최소 단위의 공동체(장영수, 2003)거나 혼인·혈연 또는 입양의 형태로 구성되고, 동거하면서 상호 협동하는 비교적 영구적인 생활공동체라는 입장(권영성, 2004)도 있다. 그런가 하면 부부 및 부모 자녀로 이루어지는 ‘혈연’ 공동체(강경근, 2004)라는 주장도 제기될 만큼 실제로 지칭되는 의미와 범주에 관해서는 각기 다양하게 해석·주장되고 있다(이은정, 2006; 김용화, 2008에서 재인용).

이에 비해 가족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는 「민법」은 가족에 대한 법률적 정의를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 통상 가족법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민법」 제4편(친족)과 제5편(상속) 부분인데, 이는 ‘가(家)’와 ‘족(族)’을 중심으로 한 친족관계와 가족관계를 기본 바탕으로 하는 재산상속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법」의 친족편인 제4편은 ‘제1장 총칙, 제2장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제3장 혼인, 제4장 부모와 자, 제5장 후견, 제6장 친족회, 제7장 부양’, 상속편인 제5편은 ‘제1장 상속, 제2장 유언, 제3장 유류분’으로 되어 있다(「민법」 제4편, 제5편). 2005년 개정 이전까지 한국의 가족법은 가족공동체의 원칙과 가족승계 원칙, 타성혼인의 원칙을 핵심으로 부계혈통 계승을 목적으로 한 호주제도와 호주제도의 파생 요소가 친족법의 거의 모든 분야에 적용되어 있었다. 따라서 가족제도가 비록 역사적·사회적 산물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민법」의 친족법은 「헌법」 이념의 실현에 장애를 초래하고, 「헌법」 규범과 현실의 괴리를 고착시키는 데 일조하는 측면이 없지 않았다(손현경, 2011). 이에 여성계와 학계에서는 「민법」 개정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가족법은 1962년 12월 29일 1차 개정을 시작으로 2016년 12월 20일 법률 제14409호 일부개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의 개정작업이 이루어졌으나, 가장 획기적인 변화는 2005년, 2007년 개정법에서 확인된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2005. 2. 3., 2001 헌가 9.10.11.12.13.14.15, 2004헌가5(병합)) 결정에 따라 호주제를 폐지하고, 이에 따라 호주가 존재하지 않는 가족의 범위를 조정하였으며(제779조), 자녀의 성과 본에 관하여는 부모가 혼인 신고 시 협의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도록 허용하였고(제781조),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1997. 7. 16. 95헌가6 내지 13(병합)] 이후 동성동본금

혼조항이 근친혼의 금지 규정(제809조)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2005년에 가족법이 개정되면서 호주제도는 폐지되었음에도 호주에게 부과된 ‘가족 범위’에 대한 규정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장혜경, 김은지, 김영란, 김소영, 선보영, 김수완, 2013). 이는 당시 이 조항까지 삭제하면 가족이 해체 될 것으로 우려하는 보수적 여론과 호주제 폐지에 따른 국민의 정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입법적 선택으로 설명된 바 있다(김용화, 2008; 우병창, 안경희, 전해정, 2013). 결국 호주와 그와 관련된 조항은 폐지되었지만, 호주에게 부과된 가족 규정은 여전히 존치하고 있는 것이다(김자영, 강승묵, 2011).

그러나 말 그대로 가족에 대해서는 그 범위만이 언급되어 있을 뿐 가족의 구성 요건이나 효력은 명문화하지 않고 있다. 가족 간에 특별한 권리나 의무에 관한 규정은 없으며, 가족의 부양의무, 상속권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장혜경, 김은지, 김영란, 김소영, 선보영, 김수완, 2013). 결론적으로 「민법」에서조차 가족이라는 용어가 자주 사용되는 단어는 아니며, 오히려 가족보다는 친족, 혈족이란 용어가 여전히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친족이나 혈족과 같은 용어의 사용이 익숙지 않을 만큼 개인화되고 있음에도 현행 「민법」이 우리의 가족문화와 역사를 반영한 친족, 혈족, 인척의 개념을 주요하게 수용하여 그러한 범주 내에서 가족 관련 법률 효과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수차례의 개정에도 가족법은 여전히 전통적인 혈족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손현경, 2011).

## 가. 민법에 나타난 가족의 범주

현행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는 ①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②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777조에서는 친족의 범주로 ①8촌 이내의 혈족, ②4촌 이내의 인척, ③배우자를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혈족이란 혈연관계가 있는 친족으로, 「민법」에서는 자연스럽게 혈족을 기본으로 양자관계의 성립으로 생기는 친족관계를 법정 혈족에 포함시키고 있다. 인척이란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말한다(「민법」 제769조 인척의 계원).

이런 점에서 본다면, 「민법」 제779조의 가족은 친족보다 좁은 개념임이 분명하며, 가족의 범위를 모든 혈족에서 직계혈족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방계혈족 중에서 형제자매는 가족으로 인정하되,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혈족을 가족에 포함하고 있다. 이는 가족의 범위를 모든 인척이 아닌 배우자의 직계혈족으로 제한하는 것임을 명시한 것인 동시에 자녀를 데리고 재혼하는 부부들은 입양이라는 방법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가족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인척 개념은 여전히 혈족주의에 근거한 것이라는 점에서 현행 「민법」상 가족의 개념 역시 혈족주의를 근간으로 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다만 호주제 폐지를 기점으로 명문화된 부계혈통주의에서는 벗어나고 있다. 즉 부계혈통주의는 폐기되었지만, 가족은 여전히 혈연과 혼인에 따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장혜경, 김은지, 김영란, 김소영, 선보영, 김수완, 2013).

단일한 형태의 가족만이 존재했던 시대도 없었지만, 오늘날의 가족은 과거에 비해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가족의 형태적 다양성이 증가하고 있

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가치와 문화의 공존은 특정 가족에만 부여해왔던 도덕적 정당성 또한 크게 약화시키고 있다. 2015년 인구센서스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유자녀 유배우 가구와 같은 전형적 핵가족의 비율은 32.3%로 측정 시점마다 감소하고 있으며, 현재 27.2%의 비중을 보여준 1인 가구가 향후 십년 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여주는 가구가 될 것임이 확실시되고 있다(통계청, 2017. 4. 13.). 또한 유자녀가구라 할지라도 재혼가족이나 국제결혼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비중이 작지 않으며, 부계우선성의 정당성이 크게 약화된 맞벌이 맞돌봄 가족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더욱이 급증세를 보여주는 1인 가구에는 실상 결혼을 선택하지 않거나 연기하는 독신인구나 결혼관계의 해체나 종료로 혼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이혼자의 증가는 재혼의 증가와도 연계되는 만큼 오늘날에 와서는 유자녀가족에서조차 혼합가족(blended family)의 비중이 적지 않다. 특히 급증하는 비정형 가구는 기성의 제도화된 방식 외의 가족 구성이나 개인 간 유대 및 결속의 추구가 시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이지만, 정작 이제까지 가족을 범주화하는 관계도식으로는 이들 관계를 정의하지 못하는 한계가 노출된다. 즉 혈연이나 제도적인 혼인에 기초한 가족 정의 방식은 현존하는 가족의 삶의 다양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미 다양한 방식의 삶을 선택한 가족들을 암묵적으로 비제도적인 가족으로 규정하게 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다만 가족관계의 양계화나 성평등의 측면, 그리고 생활단위로서의 가구구성 복잡성과 다양성이 부분적으로 개정 「민법」에 반영되어 있다. 예컨대 부계나 모계를 떠나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 여부에 따라 가족을 판단하고 있다. 즉 배우자의 부 또는 모(장인이나 장모), 형제자매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라면 가족으로 간주되나 자녀의 배우자(며느리, 사위)나 부

모(예: 시부모)도 생계를 공유하지 않으면 가족이 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전에 비해 가족 범주의 성불평등성을 개선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또한 「민법」이 개정되기 전, 가족은 동일한 호적에 기재된 자로 규정되어 배우자와 자녀는 물론 장남의 배우자나 손자녀가 가족이 되고, 부모와 자녀, 형제자매라 할지라도 호적에 입적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족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민법」 개정으로 생계나 호적 입적 여부와 관계없이 직계혈통과 형제자매는 가족으로 규정되고 있다. 또한 개정을 통해 부모와 자녀를 넘어 조부모와 손자녀도 가족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어 개정된 「민법」의 경우 가족의 범주가 확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해석에 따른 헌법적 가족은 부부와 미성년 자녀로 구성되는 생활공동체적 가족을 지칭하고 있음에 비해, 「민법」에서는 생계 공유와 무관하게 직계혈통과 형제자매를 중요시하고 있다. 따라서 동거하지 않는 조부모 이상의 직계존속이나 손자녀 이하의 직계비속까지도 가족 범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런 점에서 「헌법」과 「민법」의 가족 개념이 상호 불일치하는 측면이 발견된다(장혜경, 김은지, 김영란, 김소영, 선보영, 김수완, 2013). 이에 대해 이은정(2006)은 양성평등과 개인의 존엄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 입법자는 넓은 형성의 자유에 따라 가족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으므로 「민법」의 가족 범위 규정이 「헌법」 이념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유의미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상호 간에 가족이라고 인식하는 현실적 가족 범주에 비해 「민법」의 가족 범주는 보다 넓으며(성미애, 2009), 또한 지나치게 혈통 중심적이라는 사실이다. 더욱이 실질적인 상호작용이나 부양책임의 가족 범주가 좁아지고, 이들의 관계조차 개인이 강조되는 현실과는 일정한 거리가 발견된다.

나아가 「민법」에서 규정하는 가족의 범주가 일반인들의 정서와 차이가

있는 부분도 발견된다. 「민법」 제779조의 제1항 2호 및 제2항에서 규정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에는 직계존속의 배우자인 계부나 계모와 같은 관계도 존재하지만 직계비속의 배우자, 즉 며느리나 사위도 포함된다(김성숙, 2006). 이에 대해 손현경(2011)은 계부모에 대한 가족 인정의 문제와 달리 동거하지 않는 자녀의 배우자(며느리나 사위)를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국민 정서와 상충됨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배우자의 직계혈족'에는 혼인 외의 자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부모(시부모와 처부모)는 물론 자녀와 함께 재혼하는 경우에는 계자녀도 포함되는데, 이때 혼인 외의 자를 일률적으로 가족으로 인정하는 것과 함께 배우자의 부모에 대해서 생계를 공유하는지를 기준으로 가족인지 아닌지 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주장이 뒤따른다(손현경, 2011). 더욱이 실제로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생활할 가능성이 높은 계자녀를 인척으로 간주하여 생계를 같이하는지에 따라 가족 여부를 규정하는 것은 세간의 심리정서적 범주와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사실은 앞으로의 가족은 더 이상 혈연성만을 고집할 수 없을 정도로 유연하고 개방적인 '그 무엇인가'가 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 제대로 포착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단순한 젠더 평등을 넘어 성별, 세대, 민족, 국가의 경계가 이완되는 개인 간 교류와 유대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점차 개인들이 획득하는 소속감이나 가치, 유대의 토대가 비단 '혈연'에만 기반을 두고 있지 않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혈연에 기초하지 않은 다양한 유대관계를 통해 상호 보살핌, 공유·친밀성을 주고 받으며 다양한 비혈연적 가족을 구성해 가고 있으며, 이러한 관계 맺음 역시 매우 중요하다(이은정, 2006).

## 나. 민법에 나타난 혼인

혼인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남녀가 일정한 규칙과 절차에 따라 부부가 되는 일’ 혹은 ‘제도적인 관계로서 남녀의 법적 결합’으로 규정되어 있다(서종희, 2010). 이는 혼인의 구성을 양성에 기반을 둔 법률적 관계로 규정하는 사회적 통념이 반영된 것이다. 따라서 사전적 의미와 같이 혼인관계를 남녀의 상호 부양과 정서적 결합에 기초한 생활공동체임을 법률적으로 승인하는 것으로 정의한다면, 법률적 요건이 당사자의 의지보다 더욱 중요해진다. 즉 혼인에서 당사자들의 주관적 감정이나 의사보다는 법적 보호의 요건에 부합하는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가가 매우 중요한 쟁점으로 등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혼인의 법률적 요건에 관한 것은 「민법」의 제4편 제3장에서 다루고 있다.

제4편 제3장 혼인 관련 법체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혼인은 신고에 따른 법률적 혼인으로서 형식혼주의를 따른다. 이는 1922년 12월 7일 제령 제13호에 따라 전환된 이래 지금까지 고수되고 있다. 따라서 법률적 혼인이 성립하려면 일정한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현행 「민법」은 혼인성립 요건을 형식적 요건과 실질적 요건으로 구분하고 있다. 실질적 요건으로는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 혼인적령에 달하였을 것, 근친혼이 아닐 것, 중혼이 아닐 것 등이고, 형식적 요건으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다(김주수, 김상용, 2011).

혼인을 통해 부부는 법률상 가족, 즉 배우자로서의 친족 관계가 성립됨은 물론 동거 및 동재, 공동부양 등 다양한 협조 사항이 발생한다. 실제로 우리나라 법률은 부부의 상호부양의무, 동거협조의무, 일상가사대리권과 채무연대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생필품 구입비나 식비와 같이 부부와

그 자녀가 생계를 함께하기 위해 발생하는 거래 행위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장혜경, 김은지, 김영란, 김소영, 선보영, 김수완, 2013). 또한 혼인 전이라도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자유이며, 「민법」 제830조 부부 별산제에 의거해 부부가 재산을 각자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다(장혜경, 김은지, 김영란, 김소영, 선보영, 김수완, 2013).

그러나 여전히 우리 사회의 결혼은 제도화된 혼인, 즉 법률혼 중심의 현행 혼인제도를 중요시하고 이를 법제도화 하고 있어 변화하는 미혼남녀의 행태와는 일정 정도 유리되는 측면 또한 확인된다. 그뿐만 아니라 새롭게 등장하는 개인의 대안적 유대와 성적 지향이 상이한 사람들에 대한 개인선택권의 인정 등은 향후 우리나라의 혼인 및 가족에 관한 법제도가 넘어야 할 주요한 과제들이다. 예컨대 혼인관계와 유사함에도 결혼제도 밖에 다양한 생활공동체가 존재한다. 특히 그 가운데서도 개인 간의 성애적 관계를 근간으로 하는 사실혼, 동거, 동성결합 등이 있다. 실제로 비제도적인 가족으로 분류되는 이들 가운데는 그들의 결합 방식에 대한 사회적 인정을 요구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박선영, 윤덕경, 박복순, 김혜경, 2008; 장혜경, 김은지, 김영란, 김소영, 선보영, 김수완, 2013).

그러나 동성혼의 경우에는 혼인을 한 남성과 한 여성의 결합으로 정의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을 고려한다면, 이들을 혼인관계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는 결국 「헌법」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인다. 이들의 주장은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보장과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에 의거하여 그 타당성의 논거를 찾을 수 있다. 즉 「헌법」 제10조와 제11조는 당연히 혼인과 가족생활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헌법」에서는 제36조에서 이를 별도로 규정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기본이념인 개인의 존엄과 혼인뿐 아니라 가족생활에서 양성평등을 기초로 보

장하는 것을 강조해 왔다(「헌법」 제36조). 하지만 이미 「헌법」 제10조를 통해 우리나라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 추구권이 인간의 본질이며 고유한 가치임을 천명해 왔다. 이러한 개인의 인격권, 행복추구권은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자기운명결정권에는 성적자기결정권, 특히 혼인의 자유와 혼인에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 「헌법」은 인간을 자기결정권을 지닌 창의적이고 성숙한 개인으로 상정하고 있으며, 「헌법」 제10조와 제36조를 통해 혼인의 자유와 혼인의 보호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후자는 다분히 법률혼이라는 특정 형태의 혼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 반면, 전자는 이성적이고, 창의적인 개인의 혼인자유를 보호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계약결혼이나 사실혼, 동성혼의 의미와 가치의 해석 등 새로운 혼인 형태를 둘러싼 논란의 근거가 되고 있다(조홍석, 2007). 실제로 후자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는 조항을 근거로 혼인을 한 남성과 한 여성의 결합으로 이해하고, 동성혼이 인정되려면 「헌법」 제36조 제1항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정종섭, 2014). 또한 몇몇 판결의 경우, 「헌법」과 「민법」 등에서 혼인을 남녀의 결합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혼인한 사람들을 부부(夫婦), 남편과 아내, 혹은 부(夫)또는 처(妻)라는 용어로 칭하고 있으며 이것이 성구별적 함의를 내포하고 있다고도 말한다. 또한 자녀와의 관계적 측면에서는 부모(父母)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만큼 이미 혼인은 남녀의 결합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헌법」 조항이 반드시 이성애에 기초한 결혼관을 강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즉 이러

한 지칭의 사용은 가부장적 가족문화가 온전한 우리 사회에서 일방적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은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동성혼 금지의 근거가 되기보다는 양성의 관계적 평등성을 규정하는 주장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서종희, 2010; 성중탁, 2017에서 재인용). 또한 「민법」 제826조 등에서는 ‘부부’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남녀의 결합을 전제하는 듯하지만, 이것이 동성의 혼인을 금지하는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민법」 제807조에서는 ‘만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809조와 제810조에서는 금지하는 혼인의 조건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민법」에서 혼인의 명시적 금지는 근친혼과 중혼으로 규정되고 있을 뿐이다. 더욱이 혼인에 관한 현행 「민법」 규정의 문언, 입법자의 입법취지, 세계사회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무조건적인 금지만을 주장하기 어려워지는 것이 사실이다(성중탁, 2017).

한편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남성과 여성이 부부로 생활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이를 우리는 통상 사실혼이라 칭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혼은 혼인할 의사가 없는 동거(同居) 관계와는 구별되고 있다. 사실혼은 부부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만 하고 단순히 혼인신고만 누락된 것이지 혼인관계와 동일하게 간주하고 있어 실제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장혜경, 김은지, 김영란, 김소영, 선보영, 김수완, 2013; 우병창, 안경희, 전해정, 2013). 사실혼 관계의 실체는 혼인한 부부와 차이가 없고 다만, 혼인신고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법률혼과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보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에도 혼인한 부부 사이와 같이 ‘동거·협조·부양해야 할 의무’(「민법」 제826조)와 ‘정조의 의무’가 있으며, 보험이나 연금 관계 법령에서 법률혼 배우자와 동등하게 취급된다. 또한 사실혼 관계를 부당 파기한 당사자는 다른 배우자에게 손

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지만,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법률 효과는 받지 못하게 된다(장혜경, 김은지, 김영란, 김소영, 선보영, 김수완, 2013).

그러나 사실혼과 동거의 구분은 쉽지 않은데, 혼인의사의 합치와 공동 생활 여부만으로 사실혼과 동거는 실제로 삶에서 큰 차이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더구나 동거를 선택하는 동기나 목적도 다양하기 때문에, 동거를 혼인의사가 없는 것으로만 전제하기도 어렵다(변수정, 김혜영, 백승흠, 오정아, 기재량, 2016). 동거를 구분함에 있어서 혼인을 전제로 결혼 전에 하는 동거는 혼전동거로 보고, 결혼 의도가 약한 동거를 혼외동거로 분류하거나 구분하기도 하지만, 서구의 경우 이러한 구분에 큰 의미를 두지는 않는다. 결혼 제도 밖의 실질적 파트너관계는 ‘de facto relationship’, ‘de facto marriage’, ‘common-law marriage’ 등으로 표현하지만 결국 이러한 용어들은 사실상 같은 의미로 여겨지기 때문이다(박선영, 윤덕경, 박복순, 김혜경, 2008). 따라서 이들이 함께 살고 있는 동안 이들이 공유하는 삶의 조건이나 특별한 유대에 대한 사회적 고려의 필요성 또한 적지 않다. 과거에 비해 노동시장의 압력이 커지고 노동의 시간과 리듬에 가족의 삶이 우선적으로 조정되면서 현대인들은 가족 구성과 유지의 부담을 안고 있으며, 실제로 안정적인 심리정서적 관계 교환의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제도적인 결혼관계 중심의 혼인 원리를 강조하는 것은 실제 사회구성원들의 삶을 외면하는 것일 수 있다.

#### 다. 민법에 나타난 부모자녀 관계: 친자의 규정과 자녀의 성(姓)과 본(本)

가족법이 가족의 문제에 대해 직접 개입 하는 경향이 세계적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 예컨대 가족에서 일어나는 범법행위는 「형법」, 이혼·사망 등으로 인한 가족원의 재산 분배에 관련된 것은 「재산법」을 따르도록 한

다. 이러한 현상으로 부부간 사적 합의의 강화와 함께 가족법의 중심이 배우자 관계(partnering)에서 점차 부모-자녀 관계(parenting)로 이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성인의 관계는 당사자의 합의와 선택에 초점을 두면서 점차 배우자 사이의 선택 보다는 아동보호로 그 중심이 옮겨가고 있는 것이다(정연택, 2010). 이러한 경향은 우리 사회에도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는데,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가족법 개정에서는 양성평등의 원칙과 아동에 대한 권리보호가 부분적으로 규정되고 있다.

일차적으로 부모자녀 관계는 「민법」의 부모와 자녀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친자법에 따라 규정된다. 「민법」 제4편 친족 제4장 부모와 자, 제844조 내지 제927조에 따르면 부모자녀 관계는 “혈연에 기초한 친생친자(친생자)와 법률규정에 기초한 법정친자”로 구분된다. 혈연에 기초한 친생자는 법률적으로 승인된 부부로부터 출생 여부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婚中子, 婚生子, 嫡出子, 嫡子)’와 ‘혼인 외의 출생자(婚外子, 庶子, 私生兒)’로 구분 가능하다(장혜경, 김은지, 김영란, 김소영, 선보영, 김수완, 2013). 물론 이러한 구분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경우에는 혼인 중의 출생자와 혼인 외 출생자는 친자 관계의 성립과 효력 등에서 매우 상이하다. 즉 법률혼인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출생과 함께 그 정당한 지위를 취득하는 ‘생래(生來)의 혼인 중의 출생자’와 출생 이후 부모의 혼인이나 부의 인지에 의해 결혼관계에 따른 자녀의 신분을 획득하는 ‘준정(準正)에 의한 혼인 중의 출생자’가 있다. 하지만 혼인제도 외부에서 태어난 자녀 가운데에는 출생 후에도 부 또는 모가 인지를 못하거나 인지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이들을 우리는 사생아(私生兒)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자녀에 대한 부 또는 모의 인지가 매우 중요하고, 이는 다시 생부(生父) 또는 생모(生母)가 혼외자를 자기의 자녀로 인정함으로써 법률상 친자관계가 형성되는 ‘임의인지’와 조정이나 재판에 따라 타의로 친자

관계를 승인받는 ‘강제인지’로 구분 가능하다. 또한 법정친자의 유형으로는 적모서자(嫡母庶子), 계모자(繼母子), 양자(養子)를 상정할 수 있으나, 1990년 「민법」 일부개정에 따라 현행법상 법정친자에는 양자만이 가능하다(장혜경, 김은지, 김영란, 김소영, 선보영, 김수완, 2013).

그러나 오늘날 섹슈얼리티 관련 규범과 문화가 크게 변화하면서 당사자의 동의 여부가 가장 중요한 성관계의 기준이 되고 있다. 그러나 젠더 차이로 인한 성관계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자녀 출산 방식의 다양성과 이에 대한 사회적 인정 방식에 대한 진지한 검토 또한 필요하다. 가족에 대한 의식이 크게 변화하고 있음에도 아직 대다수의 한국인들은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자녀 출산을 크게 지지하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이것이 그러한 행위 자체에 대한 부정인지 제도혼을 통한 출산과 양육의 어려움이 매우 큰 상황에서 결혼 없는 자녀 출산의 낙인을 감수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럼에도 과거에 비해 혼전·혼외 성관계가 늘어나는 우리 사회의 현실에서 혼중자와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한 두드러진 차별을 규정하는 현행법은 재고될 필요가 있다. 한 해 출생자가 35만 명 내외임에 비해 낙태는 물론 자녀 유기 및 해외입양 건수가 적지 않은데, 이는 바로 우리 사회가 혼인 외 출생자에게 가하는 법률·제도적, 문화적 낙인 효과가 작지 않기 때문이다. 혼전이나 혼외 관계는 개인 남녀의 선택이지 그로 인해 태어난 자녀의 선택과는 무관한 일임에도 혼인 외 출생 자녀가 경험하는 차별과 사회적 배제는 상당하다. 따라서 이러한 차별의 정당성이 약화되는 만큼 혼외자 보호를 위한 법 개정 작업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

한편 2005년 「민법」 개정 이전에는 ‘성(姓) 불변의 원칙’에 따라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경우에조차 성을 변경 혹은 포기하거나 본(本)을 변경할 수 없었지만, 2005년 개정법에서는 제781조 제6항에서 자의 복리를 위

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게 되는 변화가 확인된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성과 본의 변경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동안 우리의 성씨제도는 부계 혈통을 기초로 형성되어 왔으며, 이러한 전통에 따라 「민법」에서 자(子)는 부(父)의 성과 본을 따른다고 규정해 왔으나, 2008년 1월부터 부모가 혼인신고 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따를 수 있게 되었다(「민법」 제781조 제1항)(김자영, 강승묵, 2011). 하지만 실질적으로 특별한 협의 과정이 없다면, 태어난 자녀는 아버지의 성씨를 따르도록 되어 있어 실제로 엄마의 성(姓) 선택을 위한 협의 과정이 생략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즉 현행법상 자녀가 모의 성씨를 따를 수 있도록 한 의도는 거의 성취될 수 없으며(손현경, 2011), 이는 여전히 부성 승계의 우선성이 유지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한편 자녀의 성씨를 친부모나 법정부모의 성과 본으로의 변경을 인정하는 「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르면 이러한 성(姓)의 변경은 자녀복리를 위한 것으로 한정되는 것인 동시에 부모 외 제3자의 성과 본으로의 변경 가능성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여전히 우리 사회의 「민법」이 혈족 및 혈통 주위에 입각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성씨 변경은 입양 등의 법정 혈족이 되지 않는 한, 인척으로서 부(父)나 모(母)의 성씨로 변경할 수 없다. 이러한 법률은 통상 성인 남녀의 혼인 상황은 당사자 개인 및 사회적 여건에 따라 한두 번은 물론 그 이상의 혼인 역시 가능해지는 상황임을 감안한다면, 자녀의 연령이나 재산 문제 등의 이유로 법정 혈족관계를 형성하지 못할 가능성 또한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이 입양 등에 따른 법정혈족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관계에서 인척인 부

또는 모의 성씨를 따르는 것이 과연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야기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특정한 사례를 일반화할 필요가 없으며, 무엇보다 부모에 의한 자녀 보호 및 부양의 책임과 관점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비록 법적 관점에서의 혼인에 따라 부차적으로 발생한 관계일지라도 혼인을 통해 사실상의 부 또는 모의 관계로 그들을 자녀로 보호해야 하는, 즉 ‘사실상의 친자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미 가족의 구성 방식이 다양해지고, 가족의 제도적 안정성이 약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혈통주의에 기반을 둔 부모자녀 관계의 강조는 자칫 자녀 돌봄의 사각지대를 초래할 수 있다. 이혼가정에서 동거하지 않는 부 또는 모가 자녀의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거나 돌봄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비율이 매우 낮음은 이미 확인된 사실이다(김은지, 장혜경, 황정임, 최인희, 김소영, 정수연, 2015). 이러한 맥락에서 혈통주의를 완화하고 자녀복리가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성씨 변경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손현경, 2011).

## 2. 건강가정기본법

경제위기를 기점으로 자본의 무한확장과 이동, 그리고 이와 연동된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실업과 강도 높은 글로벌 경쟁의 일상화로 이어지면서 그동안 가부장적 사회구조와 성별체계의 근간을 담당해 왔던 가족구성원의 원리를 약화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그 결과 저출산·고령화와 혼인을 감소 및 이혼을 저하라는 인구학적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독신 및 만혼 인구의 증가나 가족의 제도적 안정성 약화와 같은 가족 위험은 사회구조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라는 인식의 확산을 가져다주게 되었다.

따라서 국가 차원의 대응책 마련의 필요성이 논의되기 시작하였으며, 「건강가정기본법」도 그러한 노력의 하나였다고 볼 수 있다(김혜영, 2012).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으로 보편적인 가족정책 추진이 선언되고, 이로 인한 가족정책의 추진체계가 마련될 수 있었다. 동시에 요보호 중심의 사후치료적인 가족서비스에서 가정 중심의 통합적이고 사전예방적인 서비스의 중요성이 인식되었음은 「건강가정기본법」으로 인한 긍정적 성과의 하나로 볼 수 있다(조희금, 박미석, 2004).

그러나 「건강가정기본법」은 법 제정 과정에서부터 다양한 논란과 비판에 봉착하게 되었는데, 이는 주로 「건강가정기본법」이 상정하는 ‘건강가정’의 개념과 가족의 정의 및 가족에 대한 국가의 개입 방식 등과 연관되어 있다(안병철, 2009; 김혜영, 2012). 뿐만 아니라 가족이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 구성되는 상황에서 가족정책은 ‘가족’이 제도와 구조로서 경험하는 ‘사회적 위험들(social risks)’에 주목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음에도 여러 가족 관련 법안 가운데 유독 「건강가정기본법」이 가족이 구조로서 경험하는 위험보다는 ‘가정적 위험’에 대한 국가 개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의 기본적인 관점과 역할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게 되었다(김인숙, 2007).

가족정책은 가족을 구성함으로써 개인들이 당면하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을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한 국가의 개입이며 지원이어야 하는데, 「건강가정기본법」은 사회적 노력보다는 개별 가족의 노력과 리질리언스(resilience) 증진을 위한 개인 및 지역, 국가사회의 노력을 강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현재의 가족위험은 개인과 개별 가족을 넘어 다양한 돌봄노동의 연대와 분담체계 구축의 필요성, 즉 가족 돌봄의 사회적 분담에 대한 분명한 비전과 이와 관련된 청사진이 제시될 필요가 있지만, ‘건강가정’의 담론은 사전적 예방서비스를 통해 최소의 비용으로 가족 고유의

가치와 기능의 효과적 복원을 강조하는 측면이 없지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논란은 ‘건강가정’이라는 용어 사용으로 가족을 둘러싼 이념적 논란으로까지 증폭된 바 있다. 당시 경합을 벌인 다른 가족(지원) 법안들에 비해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기능을 상실하지 않도록 사전적인 개입과 지원을 통해 가족문제를 예방함으로써 가족의 건강성을 유지, 복원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해온 측면에서 동법이 특정한 가족 형태, 즉 ‘건강가정’을 이념형적으로 상정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김혜영, 2012).

### 가. 건강가정기본법에 나타난 가족의 개념과 범주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을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제3조 1항)로 정의하고, ‘가정’을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이 일상적인 부양, 양육, 보호, 교육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제3조 2항)로 정의하면서 가족과 가정을 구분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을 ‘건강가정’이라 정의하고(제3조 3항), “건강가정을 저해하는 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와 가족의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의 가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제3조 4항)을 ‘건강가정사업’이라 명명하고 있다(이소영, 2012).

「건강가정기본법」의 가족 개념은 「민법」의 가족 개념에 준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으나, 엄밀하게 말해 「민법」과 「건강가정기본법」의 가족 개념이 동일한 것은 아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민법」에서는 기본적으로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가 가족인 것으로 하고,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생계를 같이하는

때' 가족으로 간주하고 있음(「민법」 제779조)에 비해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르면, '가족'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로 규정하면서 친족관계의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건강가정기본법」의 가족 개념은 정책의 대상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법」의 가족 개념과 같은 위치에서 파악할 수 없다는 주장도 없지 않아 「건강가정기본법」이 「민법」보다 더 넓은 범주로 가족을 개념화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전경근, 2015).

전반적인 법조항을 통해 「건강가정기본법」에서 상정한 가족 개념은 가족 구성원들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면서 부양, 양육, 보호, 교육의 기능이 이루어지는 생활공동체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민법」이나 기타 법과는 달리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과 가정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다만 '가족'은 제도적인 가족의 개념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음에 비해 제도적 가족이 가지는 한계나 문제점의 해법으로서 각기 다른 개개의 가족 구성원들이 생활하고 살아가고 있는 '생활공동체'의 개념으로 '가정'이라는 용어를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두 용어 모두 정책의 대상이자 주체로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법 내에서도 혼용되고 오용되는 측면이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건강가정기본법」의 제4조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서는 '모든 국민은 가정의 구성원으로서'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제3조 정의에서 보면, '가정'이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라고 정의하고 있어 제4조에서처럼 국민 모두가 가정의 구성원이 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왜냐하면 독신자, 독거노인가구는 생활공동체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조숙현, 2008; 김용화, 2008에서 재인용). 따라서 굳이 두 가지 용어를 구분하고 사용하는 것의 의미와 필요성을 찾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비단 용어 사용의 문제만은 아니다. 「건강가정기본법」을 비판하는 입

장에 따르면, 가족 정의가 ‘비현실적’이며,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괄하지 못한다고 보고 있다. 물론 이러한 비판에 따라 개정안에는 1)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공동체 2)「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을 위탁, 양육하는 공동체 3)후견인과 피후견인으로 이루어진 공동체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후 다른 조항에서는 여전히 법률혼 중심의 전통적 가족가치관이 관통하고 있음이 확인되며, 사실혼이나 다양한 이유로 동거나 대안적 유대관계를 맺고 있는 비제도적인 가족 구성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강희경, 2005; 안병철, 2009).

또한, 동법에 따르면 가족은 또한 공동생활을 통해 부양과 양육, 보호와 교육의 기능을 수행하는 곳으로 개념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가족 개념의 토대는 이성애적 질서에 기반을 둔 결혼과 자녀 출산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 실제로 동법 제8조 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는 규정을 통해 이성애적인 관계에 기초한 제도적 결합으로서의 혼인과 자녀 출산을 모든 사회구성원이 인식해야 하고, 암묵적으로 이것을 국민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혼인과 출산이 개인의 취향과 선택에 따른 것으로 변화해 가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혼인과 출산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는 당위론적 규정이 「건강가정기본법」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시대착오적인 가족 개념을 갖고 있다는 주장의 근거로 사용되기에 충분하다. 특히 저출산을 둘러싼 위기담론은 여성을 ‘출산하는 몸’의 이미지로 고착화하는 부정적 효과를 갖고 있으며, 아울러 여성의 몸은 남성과 달리 출산율이나 낙태 및 혼외 출생 발생 비율들과 뒤섞여 호명되면서 이른바 가족위기 담론의 논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또 다른 차별을 낳고 있다(조은, 2008; 이소영, 2012).

## 나. 건강가정과 가족의 형태적 다양성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의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의 가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제3조 4항)을 ‘건강가정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건강가정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고, 본 3조 4항에 의거할 경우 가족의 부양과 양육 및 보호, 교육의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는 가족원들의 생활공동체는 곧 건강가정으로 규정될 수 있다. 그렇다면 통상 부모의 역할 수행이나 자녀부양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나 부모관계의 구성에 변화를 경험한 가족, 예를 들면, 한부모가족, 무자녀가족, 재혼가족 혹은 독신가구 등은 건강가정의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가족의 건강성은 가족의 형태나 구조가 아닌 기능에 있다는 주장에도(송혜림, 성미애, 진미정, 이승미, 2005), 다양한 가족의 형태는 건강하지 않은 가정으로 이해되고 분류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건강가정기본법」에서 가족의 기능적 요건으로 제시된 가족의 부양과 양육 및 보호, 교육은 적어도 유자녀가족 구조에 적합한 기능들이다. 인구센서스의 가구 분류에 기초한 자료를 포함하여 한국인들의 가족의식 변화를 보여주는 여러 자료들을 볼 때, 공통적으로 제도적 가족의 형태적 비중과 함께 특정 가족이 갖는 도덕적 정당성이 크게 약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오늘날 더욱 다양해지는 비정형 가구 및 가족에서는 이러한 기능 수행의 필요성은 물론 일부 기능의 변형과 상실 현상을 경험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이들 가족은 건강하지 않은 가족으로 분류되어 그러한 기능 수행을 위한 공적 개입이 필요한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적어도 단일한 가족의 형태와 구성 방식이 갖는 규범적 적실성이 크게 약화되는 현실에서 건

강가정이라는 용어는 이미 그 표현 안에 건강하지 못한 가정에 대한 가치 판단을 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특정한 가족형태를 특권화 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비판을 받게 된다(이소영, 2012).

#### 다. 가족문제와 가족위기 개입 및 해법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 배경과 이념을 살펴볼 수 있는 「건강가정기본법」 제1조에 따르면 동법의 목적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 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함’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가족정책은 가족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모든 지원정책인 동시에 건강한 가정생활 영위를 위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다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수단으로 이해할 수 있다(김혜영, 2012).

특히 건강가정을 옹호하는 학계에서는 ‘가정 문제 예방을 위한 가장 적극적인 방법의 하나는 교육을 통해 접근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실제로 「건강가정기본법」에서는 결혼 준비 교육, 부모 교육, 가족 윤리 교육, 가족가치의 실현 및 가정생활 관련 교육(「건강가정기본법」 제32조)의 실시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가족 기능의 강화를 통한 가족문제의 해결을 주장하는 논리 자체가 가족위험의 요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해법으로 제시된 교육 또한 적실한 것이 아닐 수 있다. 시장적 위기가 가족의 원리와 구성 방식을 관통하는 현재의 가족위기 현상을 ‘국가 및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따라 해결하기 보다는 교육을 통한 국민 계도로서 위기 극복이 가능하다는 인식은 상당

히 시대착오적인 것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혹자는 「건강가정기본법」을 ‘가족 책임주의적 가족기본법’이라고 비판한 바 있는데 “가족 밖의 요인과의 관련성을 간과한 채 가족 안에서만 문제의 해결점을 찾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이재경, 2004; 안병철, 2009에서 재인용).

이에 대해 「건강가정기본법」 제정에 참여한 학자들은 “만약 국가에 일방적으로 가정 복지의 책임을 전가한다면, 이는 가정을 국가에 예속시키고 가정의 주체성과 자율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는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가정 복지의 향상을 위해 국가가 책무를 가짐과 동시에 개별 가정 스스로도 건강한 가정을 영위하기 위한 권리와 의무”가 동시에 필요하다고 주장한다(조희금, 박미석, 2004). 이러한 주장 자체가 문제거나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압축적인 경제성장 과정에서 우리의 가족은 동원된 가족주의 이념의 충실한 수행자로서 산업사회의 폐해를 고스란히 가족 내적 문제로 수용하고 가족원의 돌봄을 전담해 왔다. 이런 점에서 현재의 가족위기는 가족의 무책임에 기인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지나치게 무거운 가족기능의 수행이라는 중압감에 시달린 개별 가족들이 오롯이 전담해온 가족 부양과 재생산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되면서 발생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현재 한국의 가족들이 경험하는 위기는 단순한 관계적 위기나 가족의식의 변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가족문제의 해법을 개인화 또는 개별 가족화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다고 본다.

이런 점에서 가족건강성의 회복보다는 가족원 돌봄을 둘러싼 가족의 과부담을 사회가 분담하고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제시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논리로 초저출산 위기의 해법으로 출산과 혼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국민교육이나 홍보에 따른 전형적 가족의 구성과 가족의 기능성 회복이 다양한 가족 형태의 인정이나 부 또는 모의 경제사회적 상

황에 구애받지 않는 보편적 아동지원정책보다 더욱 긴급하고 중요하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물론 비용 측면에서는 전자가 훨씬 부담이 적을 수 있으나 그것의 효과성이나 접근 방식의 측면에서는 충분한 적실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대학교육 경험자의 비율이 매우 높고, 구직 및 직장생활에서의 경쟁 압박이 일상화되어 있는 우리 사회에서 현재 가족 구성의 지연과 회피 및 기능 약화를 국민 재교육을 통한 가족가치의 재무장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현재의 위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가족건강성 확보라는 명분으로 기능적 약화나 변형을 경험한 다양한 가족들을 암묵적으로 ‘건강성 회복’이 필요한 가정으로 분류할 위험이 적지 않다. 오히려 현재 다양한 가족들이 출현하고 있으며, 이들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적어도 과거와 같은 가족 구조와 유형으로는 오늘의 사회를 살아가기 어려움을 방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3. 법과 가족의 실제

지금까지 가족, 혼인, 가족 기능 등 가족과 관련된 규정을 담고 있는 「민법」과 「건강가정기본법」을 살펴보았다. 한 가지 법에서는 그 법에 적절하게 가족을 정의하고 범위를 말하고 있을 것이다. 「헌법」은 가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지만 가족과 관련한 조항을 보면,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명시되어 있다(「헌법」 제36조). 우선 ‘혼인과 가족생활’이라는 부분에서 혼인이 가족을 이루는 바탕이 된다는 것을 볼 수 있고, 가족 내에서 개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헌법」 이외에 가족의 범위를 찾아볼 수 있는 법들에 대해 정리한 성미애(2009)는 「헌법」에서는 개인의 존엄을 유지하는 데 가족이 중요한 역

할을 한다고 강조하고 있고, 양성평등에 바탕을 둔 가정생활을 강조하는 모습에서 가족에 대해 자유주의적인 입장을 엿볼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헌법」 이외의 여러 법들에서는 「헌법」보다 좀 더 구체적인 가족의 범위를 찾아볼 수 있고 법마다 가족에 대한 범위 규정이 각기 상이한 것을 보여주었다(성미애, 2009). 예를 들어 앞서 살펴본 「민법」에서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민법」 제779조)로 가족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가족관계를 나타내는 문서인 가족관계증명서에 나타나는 가족은 본인, 부모·양부모, 배우자, 자녀 등 부모와 생식가족이 등록된 가족의 범위로 나타난다(「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또한 「소득세법」 50조(기본공제)에 따르면, ‘거주자와 배우자, 60세 이상의 거주자의 직계존속, 20세 이하의 거주자의 직계비속,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의 거주자의 형제자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위탁아동’을 가족으로 보고 있다.

이와 같이 가족에 대한 다양한 규정은 법의 목적에 따라 그에 맞는 가족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해도 일관성이 매우 부족해 보이는 상황이다. 하지만 법에 나타난 가족을 들여다보면 가족의 범위를 정하는 기본은 혼인과 혈연이 바탕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여전히 전통적인 가족주의가 우리의 제도 안에 묻어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법에서 정하는 가족을 뒤로 하고 현실에서 가족을 생각해 보면 가족의 정의와 구분이 쉽지만은 않다. 가족은 무엇이며 한마디로 ‘가족은 무엇이다’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다. 또한 어디까지가 나의 가족일까에 대해 ‘누구까지 나의 가족이다’라고 단정 짓기도 어렵다. 과거의 개념과 현재의 개념이 다를 수 있고, 우리 문화 속에서 이해되는 가족이나 그 범

위와 다른 국가나 문화에서 이해되는 가족의 개념이나 범위는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사회사업가협회(the National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 NASW)는 “가족은 우리(미국) 문화에서 기본적인 사회화 주체인 동시에 기본 경제적 단위”(NASW, 1999; Leung, Erich & Kanenberg, 2005에서 재인용)라고 그 문화 안에서 이해되는 가족을 개념화하기도 하였다. 또한 과거보다 가족이 변화한 현대에는 가족의 의미와 범위가 생각하는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가족이란 하나의 정의에 모두가 동의하기에는 어려운 개념이다(Trost, 1988).

그만큼 가족에 대한 정의는 다양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가족은 “서로에 대해 특정 임무를 가지고 주거를 함께하는 구성원들이 모인 기본적인 집합체”(Barker, 1995), 또는 “자신들 스스로 가족이라고 생각하면서 전형적인 가족의 임무를 수행하는 2인 이상의 사람들”(NASW, 1990:1995; 서병숙, 이정숙, 김혜경, 이신숙, 왕석순, 이현, 2002에서 재인용)이라고 기능적인 측면에서 넓게 이해되기도 하고, 다른 학자는 “사회적으로 인정 받은 관계의 이성인 성인 두 명을 포함하고, 그 성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함께 생활하는 두 성인 사이의 한 명 이상의 자녀 또는 입양자녀”(Murdock, 1949)의 구성으로 생물학적 관계를 포함하여 구조적으로 구체화된 가족, 특히 핵가족을 정의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Murdock(1949)의 가족에 대한 개념은 가족의 다양성의 측면에서 바라보면 편협한 시각으로 Lévis-Strauss(1966) 등의 학자들로부터 비판받기도 했다. 우리나라에는 가정, 가구, 가문, 가족 등 가족과 관련된 단어들이 많다. 이러한 단어들에 들어 있는 요소들을 이용해 가족을 정리해 보면, ‘혼인, 혈연, 입양, 또는 특수한 관계에 기반을 두어 상호유대와 정서적 융합의 성격을 가지고 공동생활을 하는 단위’(이효재, 1983)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관계를 포함하는 가족에 대한 개념을 들여다보면, 혼인과 혈연이 기본적인 관계이고

한 가지 관계를 추가한다면 입양 관계까지 더해 혼인, 혈연, 입양 관계가 가족의 개념에 기본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여러 세대가 함께 사는 가족의 유형이 많았던 과거에서 조금 더 최근으로 와서 생각해 보면 핵가족이라는 형태가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흔한 유형의 가족일지 모른다. 가장 전통적이면서도 보편적으로 생각되어 온 핵가족이라 하면 아마도 Murdock(1949)이 정의한 가족과 아주 흡사한 '혼인한 부부와 그들의 미성년 자녀'로 이루어진 구성을 떠올릴 것이다. 이 구성 안에서 애정을 바탕으로 자녀 양육을 해나가는 가족을 보편적으로 전통적인 가족이라 생각해 왔다면, 전통가족이 더 이상 보편적이지 않은 현재는 '가족은 무엇이다'라는 단일화된 정의나 개념화를 시도하기 보다는 사회 변화와 가족의 생활양식 등을 고려한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이해가 보다 필요할 것이다.



제 3 장

다양한 가족에 대한 정책적  
환경 I: 소득·건강·주거 영역

제1절 소득 영역

제2절 건강 영역

제3절 주거 영역

제4절 소결



# 3

## 다양한 가족에 대한 정책적 << 환경 I: 소득·건강·주거 영역

본 장에서는 가족의 안정된 기본 생활 영역의 제도 및 정책을 위주로 살펴보고자 한다. 소득 영역에서는 국민연금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건강 영역에서는 국민건강보험제도, 주거 영역에서는 주거 임대 지원 정책과 주거자금 지원제도에 대해 논의한다.

### 제1절 소득 영역<sup>2)</sup>

#### 1. 국민연금

##### 가. 적용 대상

국민연금 적용 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이다. 이 중 공무원, 군인, 교직원 및 별정우체국 직원과 노령 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 중 60세 미만의 특수 직종 근로자, 조기노령 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는 제외된다(「국민연금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즉 특수직역연금에 가입되어 있거나 국민연금 수급권을 취득하여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거나 보장받는 경우, 피부양자에 해당될 수 있는 미성년자가 아닌 모든 국민은 가입 대상이 되는 것이다. 한편 「국민연금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법」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사용

2) 이하의 기술 중 별도의 출처 표시가 없는 제도별 내용 설명은 「국민연금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각각의 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http://www.nps.or.kr>), 2017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보건복지부, 2017a)의 내용을 정리한 것임을 밝힌다.

되고 있거나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외의 외국인은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된다.

국민연금 가입자 종류는 크게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된다. 사업장가입자는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주한 외국 기관으로서 1명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사업장 상호 간에 본점과 지점·대리점·출장소 등의 관계에 있고 그 사업 경영이 일체로 되어 있는 경우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가 해당된다. 2015년 7월 29일부터는 18세 미만이라도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인 경우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으며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가입하지 않을 수 있다(국민연금공단, 201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역시 본인의 희망에 따라 사업장가입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제도 설계상 사업장에 속한 근로자와 사용자는 모두 사업장가입자에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지역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경우에 당연 적용 된다. 다만 다른 공적연금에서 퇴직연금(일시금), 장애연금을 받는 퇴직연금 등의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고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27세 미만인 자, 사업장가입자 등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는 지역가입자에서 제외된다. 또한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납부예외자가 될 수 있다.

임의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아니지만, 60세 이전에 가입 신청을 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형태이며, 임의계속가입자는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60세에 달한 자가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

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기를 원할 경우 65세에 달할 때까지 신청에 의하여 가입자격을 유지하는 것이다.

상기 네 가지 가입자 유형은 전 국민을 포괄하기 때문에 제도 설계상 가입자 배제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특수지역연금과 같은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되어 보장을 받는 경우, 아직 소득활동을 하지 않거나 이미 연금을 수급하는 등의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인을 포함하여 어느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한편 적용 대상은 기본적으로 개인이기 때문에 가입에 있어 특별히 가족적 접근을 취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는 소득활동을 통한 보험료 납입이 가능하다면 어떠한 가족이라도 제도권 안에 들어올 수 있음을 뜻한다고도 볼 수 있다.

이러한 적용의 보편성에서도 불구하고 실제로 국민연금 가입 현황을 보면(그림 3-1), 노후소득보장에 있어 위험가능성이 있는 계층이 있다. 첫째는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한 지역가입자 내의 납부예외자와 장기체납자이다. 제도적으로 배제한 것은 아니나 이처럼 현실적으로 보험료 납부예외나 체납을 하는 배경에는 가족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혼)한부모나 미혼부모의 경우 노동시장에서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를 구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울뿐더러 자녀 돌봄을 위해 시간제나 일용직 직종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불안정한 근로 형태와 낮은 소득수준은 생계의 시급성과 서로 맞물려 보험료 납부예외나 체납으로 연결되고, 이에 따라 노후소득보장은 취약해지게 된다. 현재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나, 그 대상은 1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중 월평균 보수가 140만 원 미만인 근로자로 직장가입자만 가능한 상황이다(보건복지부, 2015).

둘째, 1049만 명(2015년 7월 기준) 수준의 적용제외자이다. 상당한 규모의 적용제외자 중 특히 위험가능성이 높은 계층은 바로 전업주부이

74 다양한 가족의 제도적 수용성 제고 방안

다. 특히 이들은 소득이 없는 관계로 강제 적용이 어렵기 때문에 신청 방식의 임의가입 형태만 가능하다. 하지만 이러한 특수성은 [그림 3-1]에서 알 수 있듯이 임의가입자의 작은 규모로 귀결된다. 이를 두고, 장경섭, 진미정, 성미애, 이재림(2015)은 국민연금이 전업주부들을 남성부양자의 피부양자로서 바라본다고 설명하고, 김경희, 박기남, 박찬용, 정동철, 강은애, 홍지수(2011)는 전통적 가족 형태와 이에 따른 기능으로서의 제도적 요소가 잔존한 것으로 국민연금이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에 근거한다고 하였다. 일부 타당한 부분도 있지만, 이는 노동시장 구조 및 특성이 변화함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2016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통계청, 2017. 6. 21.)에 따르면, 맞벌이 가구는 2015년 대비 12만 5000가구(2.4%) 증가하였고, 그 비중은 유배우 가구의 44.9%로 전년 대비 1.0% 포인트 증가하였다. 점진적인 추세이기는 하나 맞벌이 부부의 증가는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의 설명력을 점차적으로 약화시키게 될 것이다. 하지만 전업주부와 같은 적용제외자의 노후소득보장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현실에서의 미가입 문제는 결국 그들이 이루고 있는 가족의 노후소득에 영향을 주게 된다.

[그림 3-1] 국민연금 가입 실태(2015년 7월 기준)

가입 대상자 3187만 명				
적용제외자 1049만 명	가입자 2138만 명			
	당연가입자 2095만 명			임의(계속) 가입자 43만 명
	지역가입자 844만 명		사업장가입자 1251만 명	
	납부예외자 458만 명	장기체납자 112만 명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5).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p. 31 재구성.

## 나. 급여

국민연금 급여에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이 있다. 연금 가입은 개인 단위이지만, 급여에는 유족연금과 같이 가족을 고려한 특성도 있다. 여기서는 가족과 관련성이 높은 급여로 노령·장애·유족연금에 포함되어 있는 ‘부양가족연금액’과 노령연금의 한 가지 형태인 ‘분할연금’,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거나 연금 수급자였던 사람이 사망 시 가족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 1) 부양가족연금액

국민연금 급여 중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은 ‘기본연금액×지급률+부양가족연금액’으로 급여액이 산정된다. 부양가족연금액은 수급권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배우자, 자녀 또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가급여이다. 국민연금법 제3조에 “이 법을 적용할 때 배우자, 남편 또는 아내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이때 배우자는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한다.

〈표 3-1〉 부양가족연금액 개요

지급 대상	요건	급여 <sup>1)</sup>
배우자	사실혼 포함	연 25만 2090원
자녀 [배우자가 혼인 전에 얻은 자녀(계자녀) 포함]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녀	연 16만 8020원(1인당)
부모 [배우자의 부모 부 또는 모의 배우자(계부모) 포함]	60세 이상 <sup>2)</sup>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부모	연 16만 8020원(1인당)

주: 1) 부양가족연금액은 2017년 4월 ~ 2018년 3월 적용이며, 매년 물가변동률에 따라 적용.

2) 부모의 연령 요건 상향 조정: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자료: 국민연금공단. (2016). 2017년 알기쉬운 국민연금(사업장 실무안내). p. 73;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http://www.nps.or.kr>)에서 2017. 6. 15. 인출 및 재구성.

한편 부양가족연금액은 <표 3-2>에서 알 수 있듯이 실질적인 부양관계에 한해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판별하기 위하여 '동거'라는 추가적 요건을 활용하고 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배우자와 자녀는 실질적인 부양관계에 있다고 간주하나 가출·실종 등으로 명백하게 부양관계 성립이 되지 않을 경우 급여는 지급되지 않는다. 또한 배우자가 혼인 전에 낳은 자녀, 계부모 등은 주거를 같이해야 부양관계가 있다고 본다. 부모라도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부양관계로 인정된다. 그 외에도 연령 조건으로 19세 이상 60세 미만(연령 상향 조정 반영)은 부양가족이 아닌 근로활동 대상으로 보고 있으며 장애등급 2급 이상의 가구원은 연령에 관계없이 부양 대상으로 간주한다.

<표 3-2> 부양가족연금액 지급 대상 세부 요건

대상자	인정기준	입증자료
가. 배우자·자녀	- 인정 - 단 가출·실종 등의 사유로 명백하게 부양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불인정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류
나. 배우자가 혼인 전에 얻은 자녀	-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에만 인정	
다. 부모	-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인정 -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정기적으로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을 한 경우에만 인정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류, 통장사본 등 경제적 지원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라. 부 또는 모의 배우자(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에만 인정	
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와의 관계는 위 가목부터 라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나, 수급권자와의 관계는 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에만 인정	

자료: 「국민연금법」 시행령 [별표 1], 대통령령 제27959호. 2017. 3. 27. 타법 개정.

지금까지 살펴본 부양가족연금액은 국민연금이 개인 단위의 적용을 함에도 생계 차원에서 가족을 보호한다는 측면을 보여준다. 특히 부양가족연금액은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에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가족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가족을 배우자, 자녀, 부모에 한정하여 부양 측면에서 정형화된 가족을 제시하며 ‘동거’라는 추가적 요건을 통해 실질적인 부양을 중시한다. 동시에 배우자와 자녀(계자녀 제외)는 ‘동거’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가족의 이상적인 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이는 혈연관계 중심의 접근을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혈연관계 중심의 접근은 부모의 경우 주거를 달리 해도 경제적 부양을 증명할 수 있으면 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계부모나 계자녀는 증명 여부의 절차가 없다는 규정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한편 부모는 배우자와 자녀(계자녀 제외)와 달리 ‘동거’ 여부를 적용하고, 배우자의 부양가족연금액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아 배우자-자녀-부모 순서의 부양 우선순위를 알 수 있다.

## 2) 분할연금

분할연금은 노령연금 내의 한 가지 급여 형태로 이혼한 자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였던 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2분의 1로 나누어 지급받는 급여(부양가족연금액 제외)이다. 이때 혼인기간은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기간을 뜻하며 5년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배우자였던 자가 노령연금수급자여야 하고 본인이 연금 수급 연령인 60세(수급 연령 상향규정 적용)에 도달해야 하며, 수급권 취득 후 배우자였던 자에게 생긴 사유로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 또는 정지되어도 분할연금은 계속 지급된다. 그러나 2016년 12월 30일부터는 혼인기간 중 연금액 형성에 기여한 정도를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하

여 분할 비율을 당사자의 협의 또는 법원의 재판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되었고,<sup>3)</sup> 분할연금 지급 사유 발생 이후 청구가 가능했던 것이 이혼일로부터 3년 이내 미리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단, 수급연령 기준은 변동 없음).

〈표 3-3〉 분할연금 수급자 현황 및 추이

(단위: 명, %)

구분	2007	2009	2011	2013	2015	2016
남	191 (13.4)	470 (13.4)	776 (12.7)	1,227 (12.5)	1,758 (11.9)	2,334 (11.8)
여	1,239 (86.6)	3,037 (86.6)	5,330 (87.3)	8,608 (87.5)	13,071 (88.1)	17,496 (88.2)
계	1,430 (100.0)	3,507 (100.0)	6,106 (100.0)	9,835 (100.0)	14,829 (100.0)	19,830 (100.0)

자료: 국민연금공단. (각 연도). 국민연금통계연보.

현재 분할연금은 증가 추세에 있다(표 3-3). 2007년 1430명이었던 수급자 수는 2011년 6106명, 2015년 1만 4829명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특히 여성이 전체 수급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데(2016년 88.2%), 이마저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분할연금 수급이 60세(수급연령 상향규정 적용)부터 가능하다는 것을 고려할 때, 여성 수급자가 많다는 것은 이전의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이 크게 작동했던 시기의 전업주부와 같은 적용제외자가 다수 포함되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한편 분할연금은 연금 수급 조건으로 이혼 전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 5년 이상의 혼인기간 규정을 두고 있다. 이혼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액은 당시 배우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보험료 납입 금액이 상이하고 이에 따라 급여 수준 또한 변동되기 때문에 5년이라는 규정이 이혼 후 분할연금 수급자의 최소한의 소득 보장을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분할연금

3) 법적 혼인기간에는 별거나 가출 등으로 실제로 같이 산 기간은 다를 수 있다는 배경이 있기도 하다.

과 본인의 노령연금이 중복 수급 가능한 것으로 볼 때, 이는 재산분할에 초점을 둔 것으로 보이며, 결과적으로는 최소한의 결혼생활 기간을 암묵적으로 전제한 형태가 되었다.

2016년 11월 30일부터는 전 배우자와의 재혼 시 분할연금을 포기하면 분할된 두 연금은 하나로 합쳐지고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분할연금 자체에는 부양가족연금액이 산정되지 않는다. 즉 이혼 후 분할연금 수급자가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녀를 양육하게 될 경우 부양가족연금액을 수급하지 못하게 되는 구조이다(단 분할연금 수급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이 없을 때 해당).

### 3) 유족연금

유족연금은 노령연금 수급권자,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 대상 기간의 3분의 1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등이 사망했을 때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이며, 사망한 가입자의 가입기간이 길수록 연금액이 늘어나는 구조이다.<sup>4)</sup>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위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된다(표 3-4). 앞서 살펴본 부양가족연금액과 같이 실질적인 부양관계와 이에 대한 추가적 요건으로서의 ‘동거’를 기준으로 유족 여부를 판단하고 (조)부모와 (손)자녀에 있어 연령과 장애등급(2급 이상)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한편 수급 조건 중 자녀의 연령을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손자녀와 조부모를 포함시킨 것으로 보아 부양가족연금액보다 넓은 가족의 범위에서 접근함을 알 수 있다. 반면 계(손)자녀와

4) 기본연금액이 늘어나는 것으로 부양가족연금액 수준은 동일하다.

계(조)부모는 부양가족연금액과 다르게 급여 대상자 범위로 인정하지 않아 보다 혈연관계 중심적인 것 또한 알 수 있다.

한편 유족연금과 관계된 급여로 사망일시금이 있다. 이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하였으나 유족이 없어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 더 넓은 범위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장제부조적·보상적 성격의 급여로 기존 유족의 범위에 형제자매, 사망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 그 범위가 포함되며 이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된다.

〈표 3-4〉 유족의 범위

대상자	인정기준	입증자료
가. 배우자·자녀 - 배우자: 사실혼 포함 - 자녀: 25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인정 - 단 가출·실종 등의 사유로 명백하게 부양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불인정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류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류, 재학증명서·재직증명서·요양증명서·사업자등록증·건물등기부등본 등 주거를 달리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통장사본 등 경제적 지원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부모 - 배우자의 부모 포함 - 60세 이상(수급 연령 상향 조정 적용)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인정 -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가)당사자의 학업·취업·요양·사업·주거의 형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나 나)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정기적으로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을 한 경우에 인정	
다. 손자녀 -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손자녀의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있더라도 특수한 사유로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만 인정 -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가)당사자의 학업·취업·요양·사업·주거의 형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주거를 달리하고, 손자녀의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있더라도 특수한 사유로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나 나)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정기적으로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을 한 경우에만 인정	•특수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증명서 등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라. 조부모 - 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 60세 이상(수급 연령 상향 조정 적용)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조부모와 주거를 같이하는 조부모의 자녀가 없거나, 자녀가 있더라도 특수한 사유로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만 인정 -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가)당사자의 학업·취업·요양·사업·주거의 형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주거를 달리하고, 조부모와 주거를 같이하는 조부모의 자녀가 없거나, 자녀가 있더라도 특수한 사유로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나 나)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정기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한 경우에만 인정	

자료: 「국민연금법」 시행령 [별표 1].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http://www.nps.or.kr>)에서 2017.

현재 유족연금 수급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표 3-5). 2007년 32만 377명이었던 수급자 수는 2011년 45만 9700명, 2016년 65만 9124명으로 늘어났다. 이 중 배우자의 규모가 가장 크고, 큰 폭은 아니지만 그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2007년 88.64%→2016년 91.19%), 그 외의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는 모두 비중이 낮아지고 있다. 특히 손자녀, 조부모의 경우 수급자의 비중이나 규모가 매우 낮은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는데, 이는 신규 수급자 충원보다는 기존 수급자들의 규모가 유지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3-5〉 유족연금 수급자 현황 및 추이

(단위: 명, %)

구분	2007	2009	2011	2013	2015	2016
배우자	283,993 (88.64)	346,337 (89.16)	412,967 (89.83)	483,811 (90.24)	560,572 (90.84)	601,047 (91.19)
자녀	13,967 (4.36)	15,496 (3.99)	15,858 (3.45)	17,428 (3.25)	17,803 (2.88)	17,504 (2.66)
부모	21,202 (6.62)	25,351 (6.57)	29,928 (6.51)	34,099 (6.36)	38,048 (6.17)	40,026 (6.07)
손자녀	982 (0.31)	869 (0.22)	719 (0.16)	600 (0.11)	434 (0.07)	327 (0.05)
조부모	233 (0.07)	225 (0.06)	228 (0.05)	223 (0.04)	227 (0.04)	220 (0.03)
계	320,377 (100.0)	388,458 (100.0)	459,700 (100.0)	536,161 (100.0)	617,084 (100.0)	659,124 (100.0)

자료: 국민연금공단. (각 연도). 국민연금통계연보.

유족연금은 손자녀와 조부모를 포함하고, 자녀의 연령을 25세 미만으로 하는 등 부양가족연금액에서 바라보는 가족의 범위보다는 넓은 의미로 접근한다. 하지만 실질적인 부양관계와 동거, 혈연관계, 그 밖의 획일적인 장애등급(2급 이상) 등 부양가족연금액 인정의 주요 특성들을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한편 유족연금 수급의 우선순위를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로 하고 있어 제도적으로 우선시하는 가족의 범위에 대한 관점을 엿볼 수 있다.

##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가. 보장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적용은 선별적 접근을 기본으로 한다. 법 제1조에서 명시하듯이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빈곤한 사람이 주요 대상이 된다. 빈곤한 사람 여부, 즉 수급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sup>5)</sup>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을 뜻하며 그 기준은 <표 3-6>과 같다.<sup>6)</sup> 이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 및 보장 단위는 기본적으로 가구이고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선정 기준을 적용한다.<sup>7)</sup> 이에 더하여 부양의무자 규정을 둬으로써 가족의 부양의무를 강조함과 동시에 가족 단위 중심의 접근을 취한다.

<표 3-6> 2017년 수급자 선정 기준(가구 규모별, 급여 종류별)

(단위: 원)

가구 규모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생계급여	495,879	844,335	1,092,274	1,340,214	1,588,154	1,836,093	2,084,033
의료급여	661,172	1,125,780	1,456,366	1,786,952	2,117,538	2,448,124	2,778,710
주거급여	710,760	1,210,213	1,565,593	1,920,973	2,276,353	2,631,733	2,987,113
교육급여	826,465	1,407,225	1,820,457	2,233,690	2,646,923	3,060,155	3,473,388

주: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1인 증가 시마다 7인 가구 기준과 6인 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자료: 보건복지부. (2017a). 2017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p. 51.

5) 소득평가액 (실제소득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 그 밖의 추가적인 지출요인)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6) 급여 종류 중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7)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을 단위로 하여 급여를 행할 수는 있다.

보장가구에 포함되는 사람에 대한 우선적 판단은 「주민등록법」 시행령과 「민법」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민법」에서 정의하는 가족<sup>8)</sup>에 해당하지 않는 ‘동거인’은 수급자가 될 수 없어 혼인과 혈연을 가족의 중심적 가치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것<sup>9)</sup>을 주된 조건으로 하고 있어 생활공동체를 보장가구의 기본 단위로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중에 배우자(사실혼 포함)는 주민등록표 세대 여부, 생계나 주거의 조건을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아 가족 형성의 기본적 요건이라는 입장을 취하며<sup>10)</sup> 부모, 형제자매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조건을 적용한다.

〈표 3-7〉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가구 범위

보장가구 해당	세부 요건
①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으로서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	- 동거인 제외: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민법」을 기준으로 가족이 아닐 경우 동거인
② ①에 해당하지 않으나, ①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혼 포함)나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30세 미만 미혼자녀가 주거를 달리하면서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의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생계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장기관 판단 시 수급자 가구에서 분리
③ ①에 해당하지 않으나, ①에 해당하는 사람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①에 해당하는 사람 중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이 그의 부양의무자가 되는 경우	- 예) 부모와 주소를 달리하는 학생이라도 부모로부터 생계비 지원을 받는 등 생계를 같이할 경우, 동일 보장가구로 판단 -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은 주 소득원 1인 한정 - 주민등록표상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더라도 가구원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의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나 형제자매가 생계 및 주거를 함께하고 있는 경우 보장가구에 포함

8) ①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②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9)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주거를 같이하는 것과 관계없이) 소득 공유, 생활비 지원, 병원 입원, 직업전문학교 입소 등.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 (주민등록 세대 분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동일한 주거에서 같이 살고 있는 경우.

10) 물론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도 동일하게 적용하지만, 소득수준과 연령을 적용한다는 차이가 있으며, 30세 이전과 미혼이라는 조건은 가족의 부양 범위로 간주한다고 볼 수 있다.

84 다양한 가족의 제도적 수용성 제고 방안

보장가구 해당	세부 요건
④ ①에 해당하는 사람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이면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li> <li>•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 양육</li> <li>•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li> </ul> </li> <li>-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 또는 사망한 배우자의 태아를 임신하는 경우</li> <li>- 「난민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난민으로 동법 제32조에 따라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li> </ul>
보장가구 제외	세부 요건
① 현역군인 등 법률상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생계보장을 받고 있는 사람	- 사회복지요원, 상근예비역은 보장가구 포함
② 외국에 최근 6개월간 통산하여 90일을 초과하여 체류 중인 사람	- 91일이 되는 날 보장 중지
③ 교도소·구치소·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사람	-
④ 보장시설수급자	-
⑤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
⑥ 가출 또는 행방불명인 자	- 신고된 지 1개월이 지났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⑦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과 생계와 주거를 달리하는 자	-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⑧ 재외국민(생계나 주거를 같이하여도)	- 단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를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재등록하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가 실제 생계가 곤란할 경우 예외적으로 수급자로 보장 가능

자료: 보건복지부. (2017a). 2017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pp. 32-41 재구성.

이러한 보장가구는 가구에 속하는 모든 가구원을 보장하지만, 별도 가구로 분리하여 보장하기도 한다. 별도 가구 보장의 유형에는 수급자가 주거가 없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보장시설에 있거나 대리양육 및 친인척 가정이나 일반 가정에서 위탁보호를 받는 급여위탁 별도 가구 보장, 가정해체 방지를 위한 보장, 자립지원 별도 가구 보장이 해당된다. 특히 가정해체 방지 가구 보장은 가구 전체로는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나 가구를 분리하면 급여 종류별로 자격 기준이 되어 해당 급여를

수급하게 하는 것으로 경제적으로 취약할 수 있는 가구를 빈곤의 위협에서 보호한다. 여기에는 부양의무 미성립 별도 가구 보장과 가구 분리 시 기준 충족 별도 가구 보장이 있다. 전자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으로 인해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이 어려운 가구 중 부양의무자와 법률상 부양의무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가구원은 별도의 가구로 분리하여 그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급여 종류별 수급자로 보장한다. 여기에는 (외)조부모와 같이 사는 18세 미만 손자녀(20세 이하의 중·고등학생, 대학생 포함) 가구, (조)부모·(손)자녀(가구)로 이루어진 가구 중 독립한 다른 자녀 또는 부모의 직계존속으로 인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초과한 경우 등이 해당한다.<sup>11)</sup> 후자의 경우에는 다양한 사례가 해당되는데, 관련된 내용은 <표 3-8>과 같다. 이를 살펴보면 가구 분리 시 급여 종류별 기준을 충족하는 별도 가구에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이혼·사별한 자녀와 거주하는 부모가족, 장애인이 포함된 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포함됨을 알 수 있다. 이때 결혼(이혼·사별)한 자녀의 집에 거주하는 부모의 가구 조건에서 자녀는 ‘미혼모·부’인 자녀, 사별한 며느리·사위가 포함되나 사실혼 상태의 자녀는 결혼한 자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여러 상황들을 별도로 보장하기 위한 노력에는 다양한 환경을 고려하여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기 쉬운 가구 형태를 빈곤의 위협에서 보호해야 한다는 제도 본연의 목적과 함께 빈곤으로 인한 가족 해체를 예방하고자 하는 관점이 담겨 있음을 볼 수 있다.

11) (조)부모 중 1인 이상이 노인·장애인·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인 경우, 가구원이 (손)자녀(가구)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4급 등록장애인으로 보장이 필요한 경우, 그 밖의 가구 특성으로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별도로 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중 1개에 해당해야 한다.

86 다양한 가족의 제도적 수용성 제고 방안

〈표 3-8〉 가정 해체 방지 관련 별도 가구 보장을 위한 가구 분리 시 기준

별도 가구 유형	세부 요건
① 형제·자매의 집에 거주하는 다음의 사람 또는 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5세 이상 노인</li> <li>-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4급 등록장애인</li> <li>- 만성·희귀난치성질환 등으로 6개월 이상의 치료·요양·재활을 요하는 사람</li> <li>- 임신부(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사람)</li> <li>- 18세 미만의 사람(20세 이하의 중고등학교 재학생 포함, 대학생 포함)</li> <li>- 이혼·사별한 한부모가정, 미혼 한부모가정</li> <li>- 질병·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사람으로 근로능력평가를 통해 보장기관장이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한 사람</li> <li>- 교정시설에 6개월 이상 수용되었던 사람으로서 출소한 지 1년 이내(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의 거주기간은 제외)인 사람</li> </ul>
② 자신의 주거에서 함께 살고 있는 배우자가 없는 형제자매의 소득인정액 때문에 주거급여 선정 기준을 초과하는 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부가구, 부모자녀로 구성된 가구, 부 또는 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한부모가정 포함)</li> </ul>
③ 결혼한 자녀 또는 이혼·사별한 자녀의 집에 거주하는 부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녀에는 미혼모·부인 자녀, 사별한 며느리·사위가 포함</li> <li>- 자녀가 사실혼 상태인 경우에는 결혼한 자녀로 불인정</li> </ul>
④ (외)조부모의 집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손자녀(20세 이하의 중·고등학생, 대학생 포함) 세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의 사망 또는 행방불명·가출·유기·방임 등으로 부모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li> </ul>
⑤ (외)손자녀의 집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외)조부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5세 이상의 (외)조부모에게는 부양능력이 있는 자녀가 없는 경우에 한함</li> </ul>
⑥ (조)부모의 집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정(손)자녀로서, 한부모가정의 부 또는 모가 세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사람</li> <li>-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가 있는 사람</li> <li>- 미혼모 또는 미혼부(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제외),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li> <li>- 배우자의 복역 또는 군복무로 배우자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li> <li>※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보호받는 가구가 아니라도 가구의 특성이 한부모가구에 해당하면 적용 가능</li> </ul>
⑦ (조)부모의 집에 거주하는 (손)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우자와 이혼·사별한 (손)자녀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4급 등록장애인</li> <li>- 배우자와 이혼·사별한 (손)자녀로 만성·희귀난치성 질환자 및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li> </ul>

별도 가구 유형	세부 요건
	등으로 6개월 이상 치료·요양·재활을 요하는 경우 - (조)부모로부터 직접 부양을 받는 결혼한 (손)자녀나 (손)자녀의 배우자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4급 등록장애인인 경우 - (조)부모로부터 직접 부양을 받는 결혼한 (손)자녀의 가구에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이 전혀 없는 경우
⑧ (조)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30세 이상의 (손)자녀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4급 등록장애인인 배우자가 없는 (손)자녀 - 만성·희귀난치성 질환자 및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으로 6개월 이상 치료·요양·재활을 요하는 미혼이거나 이혼·사별 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손)자녀

자료: 보건복지부. (2017a). 2017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pp. 42-49 재구성.

## 나. 부양의무자

한편 보장 가구로서의 접근 외에도 가족적 관점을 알 수 있는 부분은 바로 부양의무자 기준이다(표 3-9). 여기에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 구분되며, 이를 판단하기 위해 부양능력을 판정한다. 부양능력은 부양의무자의 실제 소득을 기초로 산출되는 판정소득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토대로 측정산식에 따라 없음·미약·있음으로 결정된다.

〈표 3-9〉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족의 부양의무자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과 그들의 배우자로 보고 있다. 하지만 수급(권)자의 배우자가 사망하는 등의 혼인관계 소멸 시 사망한 자의 가족(직계혈족)과의 부양의무 관계는 소멸된다. 즉 제도에서 나타나는 부양의 관계는 철저히 혈연과 혼인의 유지를 전제로 한다. 하지만 장애인이 있는 가족이나 한부모가족 등 특수한 상황의 가족에게 부양의무를 지우지 않

는 부분은 이들의 생계를 보장함과 동시에 실제 수급을 하려는 대상 가구의 제도 편입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 수급(권)자의 소명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은 이혼, 폭력, 상해, 학대 등으로 인한 가족관계 해체로 실질적인 부양을 받지 못하는 가족에게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이들을 보호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은 소득과 재산, 타 부양 이행 여부 판단, 근로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하지만 이 중 ‘혼인한 딸이나 혼인한 딸에 대한 친정부모인 부양의무자’에 대한 규정은 주목할 만하다.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기준을 적용하여 부양능력 여부나 미약함을 평가하는 상황에서 아들에 대한 기준은 없으나 혼인한 딸(여성)에 대한 별도의 조항을 둔 것이다. 이는 여성의 사회적 취약성을 전제함과 동시에 아들은 부모 부양을 해야 한다는 전통적인 가치관이 깔려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3-9〉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 기준(총족)

부양능력 판정 유형	세부 요건
①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딸 등)이 없는 경우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계부, 계모 등)가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아닌 경우> - 수급(권)자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배우자의 부모 - 수급(권)자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권)자의 친자녀가 아닌 사망한 배우자의 친자녀 - 수급(권)자의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며느리·계부·계모는 부양의무자 해당 없음 - 친양자의 경우, 본래의 친부모와 자녀(상호간에 부양의무자 아님) - 부양의무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부양의무자 기구원 수에 산정하지 않음) - 부양의무자의 배우자로 외국인인 사람(부양의무자 기구원 수에 산정)

부양능력 판정 유형	세부 요건
<p>②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재산이 기준 미만인 부양의무자</li> <li>- 자신의 주거에서 타 부양 이행중인 부양의무자</li> <li>* 타 부양 이행 적용대상: 직계존속인 부모, 조부모 등,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인 직계비속</li> <li>* 별도의 재산 기준 적용</li> <li>- 부가급여를 지원받는 부양의무자</li> <li>*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각종 수당을 지원받는 가구, 장애인연금 차상위 계층 부가급여를 지원받는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아동양육비 및 아동교육지원비를 지원받는 가구</li> <li>- 자립 지원을 위한 소득기준 완화 적용 부양의무자</li> <li>* 별도의 소득·재산 기준 적용</li> <li>- 재산기준 특례적용 부양의무자</li> <li>- 수급자인 부양의무자</li> <li>- 일용근로자인 부양의무자</li> <li>* 별도의 재산기준 적용</li> <li>- 혼인한 딸이나 혼인한 딸에 대한 친정부모인 부양의무자</li> <li>* 혼인한 딸: 배우자와 이혼·사별한 딸, 미혼모인 딸 포함</li> <li>* 별도의 소득·금융재산 기준 적용</li> <li>- 가구원에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부양의무자</li> <li>* 별도의 소득·재산기준 적용</li> </ul>
<p>③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 미달한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li> <li>* 부양비는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으로 산정하여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 결정에 반영, 부양비 초과율은 15%, 30% 두 가지로 구분 &lt;부양비 적용 제외 대상자&gt;</li> <li>- 주거가 다른 직계존속을 부양 중인 부양의무자</li> <li>- 두 수급(권)자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li> <li>* 그중 한쪽에 대한 부양의무자에게는 부양비를 부과하지 않음</li> <li>-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4급 등록장애인인 부양의무자</li> <li>- 직계비속에 양육비를 지원하는 부양의무자</li> <li>* 양육비가 부양비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부양비로 부과</li> </ul>
<p>④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양의무자가 부양불능 상태인 경우</li> <li>-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li> <li>*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 상태로 정상적인 가족기능을 상실하여 정서적·경제적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수급(권)자가 소명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인정</li> <li>- 수급(권)자가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보장기관장이 확인한 경우</li> </ul>

자료: 보건복지부. (2017a). 2017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pp. 53-75 재구성.

한편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함에도 서류상 부양의무자의 존재 등으로 인해 수급자가 될 수 없는 사각지대에 있는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지적이 그동안 있어 왔다. 정부에서도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를 국정 과제로 설정하고, 2017년 11월부터 소득·재산 하위 70%의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2018년 10월에는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을 추진 중에 있다(보건복지부, 2017. 9. 15.). 이러한 정부 정책의 추진은 빈곤층 보호라는 제도적 목적 달성이 그 배경에 있지만, 결과적으로 제도가 바라보는 가족의 범위가 생계와 주거를 중심으로 한 관계로 그 방향성이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제2절 건강 영역<sup>12)</sup>

### 1. 국민건강보험

#### 가. 적용 대상

국민건강보험의 적용 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모두이며 이들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 구분된다. 단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수급하거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은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범위에서 모두 제외된다.<sup>13)</sup> 그러나 이들은 제도에서의 배제가 아닌 별도

12) 이하의 기술 중 별도의 출처 표시가 없는 제도별 내용 설명은 「국민건강보험법」과 해당 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www.nhis.or.kr>)의 내용을 정리한 것임을 밝힌다.

의 제도로 의료보장을 받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국민건강보험의 적용과 이에 대한 급여 혜택은 사회보험의 특성상 보험료 납부가 전제된다. 보험료는 ‘가입자’에게 부과되는데, 기본적으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된다(표 3-10). 직장가입자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공무원 및 교직원이 해당하며,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를 비롯한 현역병 등은 제외되고, 가입자 단위(개인)로 보험료를 부과한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를 말하며 세대 단위로 보험료가 부과된다. 여기서 말하는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과 그 배우자, 형제·자매로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면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뜻한다.<sup>14)</sup> 즉 국민건강보험은 적용 대상 측면에서 볼 때,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세대가 기본적인 가족의 단위라고 할 수 있겠다.

- 
- 13) 자격 변동으로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의료보호 대상자 중 건강보험 적용을 신청한 사람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 14) 상기 피부양자의 정의는 2017년 4월 18일에 개정된 것으로 소득 및 재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세부 기준은 2017년 11월 30일 기준으로 입법예고는 완료되었으나, 미공표되었고 추후 개정 및 확정 후 공표될 예정이며,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전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보수나 소득이 없는 사람으로 명시되었다.

## 92 다양한 가족의 제도적 수용성 제고 방안

〈표 3-10〉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

구분	내용	비고
직장가입자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공무원 및 교직원	<직장가입자 제외> -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전환복무 된 사람 및 군간부후보생 - 선거에 당선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않는 공무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sup>1)</sup>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되거나 탈퇴 가능)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	

주: 1) 비상근 근로자 및 교직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및 시간제공무원과 교직원,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근로자가 없거나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자료: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법률 제14557호, 2017. 8. 9.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348호, 2017. 10. 1. 일부개정.

관련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기준 건강보험 적용 인구는 5076만 명으로 전체 의료보장 인구의 97.1%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직장 자격에 따른 적용 인구는 3668만 명으로 건강보험 적용 인구의 72.2%, 지역 자격에 따른 적용 인구는 1409만 명으로 27.8% 수준을 보여 직장가입자의 비중이 월등히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가입자 1인당 부양가족 수는 직장 및 지역 가입자 모두 계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고, 직장가입자가 지역 가입자보다 다소 높다. 특히 지역가입자는 본인 외에 약 1명을 부양하고 있는 수준이다(2016년 기준 직장가입자 1.24명, 지역가입자 0.99명).

〈표 3-11〉 건강보험 적용 인구 현황

(단위: 천 명, 천 세대)

구분	2010	2012	2014	2016	
의료보장	50,581	51,169	51,757	52,273	
건강보험	합계	48,907	49,662	50,316	50,763
	직장	32,284	34,106	35,602	36,675
	-가입자	12,764	13,991	15,141	16,338
	-피부양자	19,620	20,115	20,461	20,337
	부양률(명)	1.54	1.44	1.35	1.24
	지역	16,523	15,556	14,715	14,089
	-세대주	7,940	7,835	7,749	7,665
	-세대원	9,482	8,738	8,060	7,607
	부양률(명)	1.19	1.12	1.04	0.99
의료급여	1,674	1,507	1,441	1,509	

주: 연도 말 기준 직장가입자는 이종가입자 포함. 지역세대수는 비가입세대주 세대 포함.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2017). 2016년 건강보험통계연보. p. 50 재구성.

한편 적용 인구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직장가입자는 피부양자 기준을 통해 가족의 범위가 정의된다. 우선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 기준 중 부양 요건은 다음의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표 3-12).

첫째, 보험료를 납부하는 직장가입자 가족 중심의 피부양자 요건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입자와 배우자 각각의 입장에서는 동일하게 부모에 해당하지만 직장가입자의 부모인 직계존속의 경우, 혈연으로 연결된 부모 외에 재혼한 배우자가 포함되는 반면, 배우자의 경우 직계존속인 부모 외에 계모, 계부 등 배우자 혈족의 배우자는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그 외에도 배우자의 형제·자매 역시 제외되는데, 「민법」에서는 이들이 생계를 같이한다면 가족으로 인정하고 있다.

둘째, ‘동거’ 여부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이 변동된다. 사위나 며느리와 같은 직계비속의 배우자나 처와 전남편 사이의 출생 자녀, 남편과 전처 사이의 출생 자녀와 같은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경우 비동거 시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이는 「민법」상에서 정의되는 가족의 범위 중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은 생계를 같이해야 한다는 전제조건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으며, 다른 관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입자의 혈연 관계를 중시함을 알 수 있다.

셋째, ‘혼인’ 여부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이 변동된다. 가입자의 직계비속(자녀, 손·외손 이하)과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피부양자의 세부 요건으로 혼인 여부를 적용하고 있다. 특히 비동거 시 미혼이 아닌 경우에는 피부양자로 적용되기 어렵고,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는 동거를 하더라도 혼인한 경우 피부양자 범위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배경에는 혼인을 통해 새로운 가구가 형성되면 그 가구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서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고, 혼인 시 소득활동을 하거나 할 수 있다는 전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이혼·사별한 형제자매의 경우, 보수나 소득이 없어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고 있어도 혼인 경력으로 인해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2항에서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보수나 소득이 없는 형제·자매는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3항에 따른 구체적 기준에서는 혼인 여부로 대상자를 구분하고 있는 것이다.<sup>15)</sup> 만약 피부양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혼인 경력이 있는 형제·자매가 가계 사정으로 건강보험료 체납이 상당 기간 발생할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sup>16)</sup> 이러한 ‘혼인 여부’에 따른 피부양자 적용 여부와 앞서 언급한 직장가입자 중심의 피부양자 요건에 따른 배우자의 계부모 등의 피부양자 적용 제외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 행위로 간주하고 개선을 권고하기도 하였다(국가인권위원회, 2017).

15) 물론 <표 3-13>의 제11호 규정이 있기는 하나, 이는 예외규정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16)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할 경우,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한편 위에서 언급한 부양 요건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9억 원(형제·자매의 경우 3억 원)을 넘는 경우에는 부양 요건을 인정하지 않는다(표 3-12). 단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과 보훈보상 대상자로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은 부양 요건이 적용된다. 이는 사회연대 차원에서 경제적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제도의 합리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부양을 지양함과 동시에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차원의 접근이라고 할 수 있겠다.

〈표 3-12〉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 인정 기준 중 부양 요건

가입자와의 관계	부양 요건	
	동거 시	비동거 시
1. 배우자	- 부양 인정	- 부양 인정
2. 부모인 직계존속		
가. 부모(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재혼한 배우자 포함)	- 부양 인정	- 부모(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재혼한 배우자 포함)와 동거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나. 법률상의 부모가 아닌 친생부모(이하 "친생부모"라 한다)	- 부양 인정	- 친생부모의 배우자 또는 동거하고 있는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3. 자녀(법률상의 자녀가 아닌 친생자녀 포함)인 직계비속	- 부양 인정	- 미혼인 경우 부양 인정
4. 조부모·외조부모 이상인 직계존속	- 부양 인정	- 조부모·외조부모 이상인 직계존속과 동거하고 있는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5. 손·외손 이하인 직계비속	- 부모가 없거나,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 미혼으로서 부모가 없는 경우 부양 인정
6. 직계비속의 배우자	- 부양 인정	- 부양 불인정
7. 배우자의 부모인 직계존속	- 부양 인정	-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동거하고 있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96 다양한 가족의 제도적 수용성 제고 방안

가입자와의 관계	부양 요건	
	동거 시	비동거 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8.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이상인 직계존속	- 부양 인정	-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이상인 직계존속과 동거하고 있는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9. 배우자의 직계비속	- 미혼인 경우 부양 인정	- 부양 불인정
10. 형제자매	- 미혼으로 부모가 없거나, 있어도 부모가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 미혼으로 부모 및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부모 및 동거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11. 배우자,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비속	- 위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해당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고 있음을 공단이 확인한 경우 부양 인정	

주: 1)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9억 원(형제·자매의 경우 3억 원)을 넘는 경우에는 부양요건을 인정하지 않음.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포함)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 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은 부양 요건을 적용함.

3) 상기 부양 요건은 2018년 7월 1일 시행 기준으로 개정 예정임(2017년 11월 30일 기준으로 입법예고는 완료되었으나, 미공표되었음).

자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 보건복지부령 제512호, 2017. 8. 4. 타법개정.

〈표 3-13〉에서 알 수 있듯이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 기준에는 부양 요건 외에도 소득 요건이 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의 합계액, 연금소득액 등 소득 종류별 금액 및 합계액의 상한선이 설정되어 있고, 이를 모두 충족해야 피부양자 자격이 주어진다. 이러한 소득 요건은 부담능력이 있는 사람의 무임승차를 예방하고,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특히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기혼자인 경우 부부 모두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규정은 경제적 능력에 따른 보험료 부과외의 배경 외에도 생계 또는 부양의 우선적·기본적 관계는 혼인에 따라 형성된 가족(특히 부부)이 중심이라는 관점이 전제된 것으로 보인다.

〈표 3-13〉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 인정 기준 중 소득 요건

구분	내용
1.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가.	영 제41조 제1항 제1호·제2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4000만 원 이하
나.	영 제41조 제1항 제3호의 사업소득이 없을 것. 단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되는 사업소득 요건 충족 시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봄 1)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과 「보호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인 경우: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
다.	영 제41조 제1항 제4호·제6호의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의 합계액이 4000만 원 이하
라.	영 제41조 제1항 제5호의 연금소득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2000만 원 이하
2.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폐업 등에 따른 사업 중단 등의 사유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게 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으로 발생한 사업소득을 제외하면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등 관계 자료에 따라 공단이 인정 한 경우에는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봄
3.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기혼자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4.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1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기준금액에 대하여 「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고려하여 증액 또는 감액하여 개정

주: 상기 소득 요건은 2018년 7월 1일 시행 기준으로 개정 예정임(2017년 11월 30일 기준으로 입법예고는 완료되었으나, 미공표되었음).

자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보건복지부령 제512호. 2017. 8. 4. 타법개정.

한편 지역가입자는 세대 단위로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보험료를 납부하는 세대주 중심 가족관계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진다. 즉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관계가 핵심이며, 세대 구성원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인정되거나 세대를 달리하여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거나 기존의 직장가입자가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되는 등의 다양한 상황에 따라 제도가 바라보는 가족(부양)의 범위도 변동된다. 또한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보험료를 납부한다는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동거인도 해당 세대에 포함된다. 단 세대주와 혈연 또는 생계 유지에 관계없는 동거인의 경우, 세대 분리를 신청하여 지역보험료를 별도로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생계 유지에 관계없는 동거인은 세대주를 기준으로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제외한 관계인 자로 형제·자매는 세대 분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보험료를 체납한 기간에 한해서만 소급 세대 분리가 가능하며, 기존에 납부한 보험료는 소급이 불가하다.

적용 대상 측면에서 볼 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두 가지 유형에서 바라보는 가족의 범위는 상이하며 통일된 원칙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직장가입자는 피부양자에 있어 혼인, 혈연관계, 동거 등의 복합적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적용하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된 구성원이 기준이 된다. 「주민등록법」상 ‘동거인’은 민법에서 정의하는 가족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사람이 해당되기 때문에 (세대 분리는 할 수 있지만) 포괄성의 측면에서는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보다 그 범위가 넓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가입 자격의 변화 등은 가족 관계(부양 측면)를 더욱 복잡하고 불명확하게 한다.

한편 최근 입법예고(2017. 7. 19.~2017. 8. 28.) 완료 후 2018년 7월 1일 시행예정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보건복지부, 2017. 7. 18.)에 따르면,<sup>17)</sup> 연소득이 종합과세소득 합산 2

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초과, 재산과표의 합이 5억 4000만 원을 초과하면서 연소득이 2인 가구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초과 등의 상황에 있을 시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의 자격 전환, 형제·자매의 원칙적 지역가입자 전환 등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요건이 강화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동시에 이혼·사별한 비동거 자녀·손자녀·형제·자매(노인, 청년, 장애인 취약계층만 해당)는 미혼으로 간주하고 피부양자로 인정, 배우자의 새 부모도 소득·재산 등 다른 요건 충족 시 피부양자로 인정할 계획이다. 이는 앞서 언급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적극 수용한 것으로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 하지만 피부양자 요건 강화 중 고소득·고재산 피부양자의 지역가입자로의 전환은 보험료 부과라는 측면에서는 가입자 간 보험료 부과체계 합리성 및 형평성 확보에 적절할지 몰라도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됨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 적용 제외는 가족의 범위가 경제력에 따라 구분되고 분리되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원칙적인 형제·자매의 지역가입자로의 전환을 통해 직장가입자 유형에서 바라보는 가족의 범위가 축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 나. 보험료 부담(경감)

건강보험 가입자(직장·지역)는 기본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보험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소득수준 등 경제력이 미약하거나 떨어지는 등 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계층에는 보험료 경감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는 재해, 섬·벽지·농어촌 등 거주 지역에 대한 경감 외에도 가입자 특성에 따른 경감 규정이 있는데 관련 내용은 <표

17) 2017년 11월 30일 기준 미공표.

3-14)와 같다.

여기서 나타나는 주요한 특징은 지역가입자의 경감 유형이 직장가입자에 비해 다양하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특정한 상황에서는 직장가입자에 비해 지역가입자의 경제적 취약성이 높다는 전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세부 요건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역가입자 경감 조건 중 (연)소득 기준은 360만 원 이하이고, 과표재산 요건은 '6000만 원 이하/6000만 원 초과~9000만 원 이하/9000만 원 초과 1억 3500만 원 이하'이다. 기본적으로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과표재산 요건에 따라 경감률이 차등 적용된다.<sup>18)</sup> 반면 직장가입자는 휴직으로 인한 소득 감소에 따른 보험료 경감이 대표적이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경감은 소득 및 재산 요건으로 인해 그 규모는 작을 수 있으나, 지역가입자 세대의 가구원 연령, 가구 형태, 성별, 건강 상태 등 다양한 가구 내지는 가족 형태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도적 수용성을 높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과 같은 경우가 그러하다. 물론 소득 요건과 과표재산만을 기준으로 경감률에 차등을 둘 경우 보다 다양한 가구가 포함될 수 있지만, 제도의 적용 여부 내지는 사각지대가 아닌 추가적인 혜택이라는 차원에서는 일반적인 가족에 비해 다양한 가족을 보다 배려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유형을 규정함으로써 이 외에 경제적으로 열악할 수 있는 그 외의 가족들은 배제된다는 한계 역시 지닌다.

18) 등록장애인·국가유공자 중 상이자와 70세 이상 노인 가입자만 있는 세대의 경우, 소득 금액 360만 원 이하, 과표재산 1억 3500만 원 이하이면 된다. 단 등록장애인·국가유공자 중 상이자의 경우에는 장애등급에 따라 경감률이 차등 적용된다.

〈표 3-14〉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경감 및 면제

가입 유형	경감 및 면제 유형	내용
직장가입자	휴직자 경감	① 무보수 휴직 - 휴직 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100분의 50 경감 ② 유보수 휴직 - 휴직 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와 휴직기간에 해당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 차액의 100분의 50 경감 ③ 육아휴직 - 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보수와 상관없이 휴직 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100분의 60 경감 - 육아휴직 기간의 휴직 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에 상한 250만 원 적용 ※ 상기 사항은 소득월액보험료에는 해당하지 않음
	국외근무자 경감	- 1개월 이상 국외체류자로서 국내에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보험료 50% 감면 - 1개월 이상 국외체류자로 인한 감면 또는 면제는 출국 월의 다음달부터 입국 월까지 적용됨 ※ 1개월 이상 국외체류자로서 국내에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 보험료 전액 면제
지역가입자	65세 이상 노인 경감	- 가입자 중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 소득금액과 과표재산 요건에 따라 10~30% 경감
	70세 이상 노인 경감	- 70세 이상 노인 가입자만 있는 세대 * 부부인 경우, 배우자가 70세 이하라도 가능 - 소득금액과 과표재산 요건에 따라 30% 경감
	한부모가족 (조손가정 포함), 소년소녀가정 경감	- 소득금액과 과표재산 요건에 따라 10~30% 경감 ① 한부모가족: 21세 미만 직계비속을 부양하고 있는 한부모 가족 세대 - 직계비속이 21세 이상이라도 군복무 중 또는 학생이거나 수용시설 수용 등의 경우는 인정 - 상기 경우가 아니라도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된 21세 이상 자녀가 기혼자(이혼 포함)이거나 행방불명이 명확할 경우 경감 가능 ② 소년소녀가정: 21세 미만 가입자로만 구성된 세대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 경감	- 소득금액과 과표재산 및 장애등급 요건에 따라 10~30% 경감
장기수용 (행방불명), 만성질환 경감	- 소득금액과 과표재산 요건에 따라 10~30% 경감 ① 장기수용(행방불명) - 생계 유지에 책임이 있는 가입자가 6개월 이상 장기수용(행방불명)인 세대	

가입 유형	경감 및 면제 유형	내용
		② 만성질환 - 가입자가 폐질환, 만성신부전증, 고엽제후유의증 등 기타 유사한 만성질환으로 6개월 이상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곤란하고,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해 생계가 극히 어려운 세대
	55세 이상 여자 단독 세대	-55세 이상 65세 미만 여자로만 구성되어 있는 단독 세대 * 가족관계증명서상 직계비속이 확인된 경우 경감이 불가 하나 출가한 딸(주민등록거주 불명등록, 실종선고, 행방 불명 등)만 있는 경우에는 인정 - 소득금액과 과표재산 요건에 따라 10~30% 경감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www.nhis.or.kr>)에서 2017. 9. 10. 인출 및 재구성.

### 제3절 주거 영역<sup>19)</sup>

주거 지원 영역에서는 주거임대와 주거자금 지원 내용으로 나누어 검토한다. 주거임대는 공공주택 유형으로 지원하는 내용들이 포함되는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장기전세, 분양전환 공공임대, 기존주택 매입임대, 기존주택 전세임대 등 다양한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이 있어 본 연구에서 모든 주거 지원 내용을 다루는 데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상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주거임대에서는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과 주거자금 지원에서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과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19) 주거 지원 내용은 지원별 사업안내서가 따로 있지 않아 ‘2016년도 주택업무편람(국토교통부)’과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http://www.bokjiro.go.kr))’의 주거임대와 주거자금에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함.

## 1. 주거임대

우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간단히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 임대주택은 “저소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고, 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한다. 그리고 전세임대주택은 “기존 주택을 임차하여 저소득 서민에게 전대(轉貸)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 가. 국민임대주택

#### 1) 지원 내용

국민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 지원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자체가 건설·공급하여 30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국토교통부, 2017, p. 256)을 의미하고, 지원 내용은 “시세의 6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의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복지로 홈페이지).

#### 2)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은 기본적으로 무주택세대주여야 하고, 소득요건에 있어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또는 70% 이하, 토지, 건물 1억 2,600만 원 이하, 자동차 2,489만 원 이하”의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복지로 홈페이지).

우선공급이 가능한 조건을 보면, “사업지구 철거민 등과 사회보호계층

등, 납북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피해자 보호가족 포함), 귀환국군포로,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세대주,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비닐 간이공작물거주자 등, 그리고 신혼부부”가 우선공급 대상이 된다(복지로 홈페이지). 여기에서 말하는 사회보호계층에는 “①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 ②「장애인복지법」 규정에 따라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자 ③국가 유공자 또는 그 유족, 5/18민주 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입주 자격을 충족하는 자 중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국가 보훈처장이 인정하는 자 ④장기복무 제대군인 ⑤북한이탈주민 ⑥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⑦비정규직 근로자 ⑧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⑨소년소녀가정으로서 시장 등이 추천하는 자 ⑩가정위탁아동 보호자 ⑪65세 이상 고령자 ⑫가정폭력 피해자 ⑬범죄 피해자 ⑭탄광근로자 ⑮해외 거주 재외동포”가 포함된다(복지로 홈페이지).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혼부부는 법적인 혼인관계를 증명해야 하는 것으로 법적 혼인에 대한 기준이 국민임대주택 지원에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사회보호계층에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을 포함해 가족의 형태 중에서 한부모가족을 명시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그 외에도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아동 보호자’, ‘북한이탈주민’ 등을 사회보호계층에 포함하고 있다.

## 나. 행복주택

### 1) 지원 내용

행복주택은 “공공용지, 도시재생용지, 공기업 보유 등 도심 내 다양한

용지를 활용하여 직주근접이 가능한 임대주택을 짓고 사회활동이 황성한 계층에게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주변시세 60~80%) 공급”하는 서비스 이다(국토교통부, 2017, p. 215).

## 2)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지원 대상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산단근로자”이다(복지로 홈페이지). 이 중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선정 기준을 살펴본다.

지원 대상별 선정 기준(모집공고일 기준)을 살펴보면, 먼저 대학생은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인근(연접 시·군 포함) 대학교 재학생 또는 인근 지역 거주하거나 인근 대학행복주택 공급고등학교를 졸업, 중퇴 후 2년 이내로 부모로부터 독립한 취업준비생으로 소득은 본인, 부모 합계 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여야 하고, 자산은 본인 총 자산 7200만 원, 자동차 미소유”에 해당되어야 한다(복지로 홈페이지).

사회초년생은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인근에서 소득이 있는 업무 수행 또는 인근에 거주하는 예술인으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의 자 중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자로 소득은 본인 소득이 평균 소득의 80% 이하(세대 100% 이하), 자산은 본인 총자산 1억 9900만 원, 자동차 2500만 원”이어야 한다(복지로 홈페이지).

다음으로 신혼부부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는 무주택자)으로서, 건설지역 또는 연접 지역 내에서 소득 있는 업무 수행 또는 인근에 거주하는 예술인, 대학생인 결혼 5년 이내인 사람(예비신혼부부 포함)으로, 소득은 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 자산은 세대 내 총자산 2억 2800만 원, 자동차 2500만 원”의 조건에 맞아야 한다(복지로 홈페이지).

행복주택에서도 역시 신혼부부를 지원하고 있는데 법적인 부부에 한정된다. 청약장 등의 확인을 통해 예비신혼부부까지 입주 대상자에 포함하고는 있지만, 결국 입주 시에는 혼인신고가 완료되어야 한다.

또한 대학생의 경우 소득기준에 있어서 본인과 부모 소득의 합계로 기준을 정하고 있다. 대학생 선정기준에서 “...부모로부터 독립한 취업준비생”이 해당하고 있는데 소득 산정에서는 본인과 부모의 합계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즉 부모가 소득에 관계없이 자녀에게 전혀 지원을 하지 않거나 그러지 못하는 상황에 있더라도 부모의 소득이 자녀의 지원 수혜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다.

#### 다. 전세임대주택

##### 1) 지원 내용

전세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으로 지원 대상 가구가 직접 “원하는 기존 주택을 선정하고 공공사업자가 기존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복지로 홈페이지).

##### 2)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전세임대주택 입주 대상자는 저소득층, 신혼부부, 소년소녀가정, 청년 등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주요 지원 대상자별 기준을 확인해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등 영세민에 대해서는 1순위가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은 세

대주 요건을 제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 10호) 중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의 비율이 30% 이상인 자,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며 영구임대주택 자산 기준 이하인 자”이고 2순위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이며 영구임대주택 자산 기준 이하인 자,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이며 영구임대주택 자산 기준 이하인 자”이다. 이때 “영구임대주택 자산 기준(2017년도)은 총자산 가액 1억 6700만 원, 자동차 가액 2522만 원)이고, 동일 순위 경쟁 시에는 자활프로그램 및 경제활동 참여기간, 해당 지역 연속 거주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저축 납입 일정 회수 등의 배점을 합산하여 우선순위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복지로 홈페이지).

공동생활가정에서 지원 대상은 “저소득층인 장애인, 보호아동, 노인(중증 노인성질환으로 요양이 필요한 자는 제외), 저소득 미혼모·부 및 저소득 부, 성폭력 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 탈성매매여성, 가출청소년, 갱생보호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북한이탈주민, 노숙인 중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운영을 희망하는 기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입주자로 선정을 요청하는 자”가 해당한다(복지로 홈페이지).

청년은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해당 대학 소재지 외의 시(특별시·광역시 포함한다)·군 또는 해당 대학 소재지 시(광역시 포함)·군 안에서 교량 등 연륙되지 않은 섬 지역 출신 대학생 및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사람(졸업유예자 포함)으로서 직장에 재직 중이 아닌 자”)이 대상이 된다. 이때 “1순위는 기초수급자(생

계, 의료), 한부모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2순위는 장애인(월평균 소득 100% 이하,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 3순위는 일반 가구 대학생”이 된다(복지로 홈페이지).

신혼부부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혼인 5년 이내인 생계 또는 의료 급여 수급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자”로 여기에도 우선순위가 있다. “1순위는 혼인 3년 이내, 유자녀(또는 임신), 2순위는 혼인 3년 초과 5년 이내, 유자녀(또는 임신), 그리고 3순위는 혼인 5년 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이다(복지로 홈페이지).

그리고 “소년소녀가정, 교통사고유자녀가정(교통안전공단 추천), 대리양육가정, 친인척위탁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복지시설 또는 중앙아동자립지원센터 추천) 아동, 청소년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 및 무주택세대 구성원” 또한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이 외에도 부도공공임대아파트 퇴거자, 보증거절자, 주거취약계층 등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복지로 홈페이지).

전세임대주택 지원자 선정은 소득과 자산이 기준이 된다. 소득 기준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통계청 자료에 따라 활용한다. 현재 “소득 50%는 3인 이하 244만 2224원, 4~5인 281만 5138원, 6인 297만 6334원, 소득 70%는 3인 이하 341만 9114원, 4~5인 394만 1193원, 6인 416만 6868원, 소득 100%는 3인 이하 488만 4448원, 4~5인 563만 275원, 6인 595만 2668원”에 해당한다(복지로 홈페이지).

자산 기준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자산 기준에 따라 총자산 가액 1억6700만 원, 자동차 가액 2522만 원”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복지로 홈페이지).

전세임대주택도 마찬가지로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가 해당하고 그 안에 혼인기간에 따라 순위가 정해져 있어 법적 혼인의 기준을 찾아볼 수 있다.

지원 대상에서 가족 유형 부분을 찾아보면, 우선 한부모가족이 있다. 1순위 대상이 생계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가족이다[기존 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7조(입주자 선정)]. 그 외에 소년소녀가정, 교통사고유자녀가정, 대리양육가정, 친인척위탁가정 등이 전세임대주택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청년 지원 내의 순위에서도 한부모 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등이 순위 결정에 대상이 되고 있고, 공동생활가정 지원 대상에는 보호아동, 저소득 미혼모·부 및 저소득 부, 가출청소년,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북한이탈주민 등이 포함되어 있어 주로 부모 한쪽이나 양쪽 모두 부재한 가족 등에 대한 지원, 혹은 우선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복지로 홈페이지).

## 2. 주거자금 지원

주거 지원의 또 다른 형태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는 데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전세 시와 구매 시에 해당하는 자금 지원 내용을 살펴본다.

### 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 1) 지원 내용

전세자금대출은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 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의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3억 원, 지방2

억 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 지원한다. 이때 대출한도는 가구당 8000만 원, 수도권 지역은 1억 2000만 원으로 전세 가격의 70%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단 “신혼부부 및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는 수도권 1억 4000만 원, 지방 1억 원” 까지 지원한다(복지로 홈페이지).

대출이율은 “소득별, 임차보증금 구간별에 따라 2.3%에서 2.9%까지의 이율을 적용하는데 부부 합산 연소득 4000만 원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확인서를 발급받는 가구는 1.0%, 다자녀 가구는 0.5%, 장애인·다문화·노인부양·고령자가구, 신혼부부는 0.7% 우대금리를 적용(중복적용 불가)”한다. 이 지원에 대해서는 “2년 이내 일시상환이 기본이고, 4회 연장으로 최대 10년까지” 지원이 가능하다(복지로 홈페이지).

## 2) 지원 대상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지원 대상은 기본적으로 ‘무주택 세대주’이다. 상세히 보면, “대출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중 부부 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신혼부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및 재개발지역 이주자는 6000만 원까지 허용)의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에 해당한다. 이때 “부부 합산 연소득 4000만 원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은 증명서류 제출 시 금리를 1.0%포인트 우대”받을 수 있다(복지로 홈페이지).

전세자금대출에서는 신혼부부라는 법적 혼인에 대한 규정과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특정 가족 유형으로는 한부모가족이 있음을 볼 수 있다.

## 나. 디딤돌 구입자금대출

### 1) 지원 내용

주택을 구입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은 그 한도가 '가구당 2억 원 이내'이다. 대출이율은 “소득별로 연2.25%에서 3.15%까지 적용되는데, 다자녀가정은 0.5%포인트, 장애인·생애최초·다문화가정·신혼부부는 0.2%포인트, 우대금리, 청약저축 장기 가입자는 가입기간 1년(12회 납입)이상 0.1%포인트, 3년(36회) 이상 0.2%포인트 우대”가 적용된다(복지로 홈페이지).

### 2)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구입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로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 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5억 원 이하의 주택” 구입시 해당된다. 선정 기준은 “부부 합산 연간급여(소득)가 6000만 원(생애최초는 7000만 원) 이하이고,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를 적용한다.

주택구입자금대출 지원 내용에서는 신혼부부 및 부부 기준에서 법적 혼인에 대한 규정을 찾아볼 수 있고, 다양한 가족에 대한 우대 내용으로 찾아볼 수 있는 특정 가족 유형은 다문화가족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제4절 소결

### 1. 제도 검토 내용

#### 가. 소득 영역

국민연금은 적용 대상에 있어 개인 단위로 접근하고 급여는 개인과 가족을 모두 고려한다. 부양가족연금액과 같이 노령연금, 유족연금 등 다른 급여의 세부 항목으로 포함된 부가급여 형태, 이혼과 같은 특정 사유 발생 시 지급되는 분할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지급되는 유족연금 등을 볼 때, 가족 우선의 급여 제공이나 가족 보호 성격의 정도는 다른 제도(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급여의 종류와 내용에는 부양의 성격이 있지만 개인 단위의 가족 부양 의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우선 국민연금을 부양가족연금액, 분할연금, 유족연금 내용 각각에 대해 본 연구의 제도 검토 기준에 따라 정리해 보고자 한다. 국민연금의 급여액 산정에서 ‘기본연금액×지급률+부양가족연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부양가족연금액에서는 가출·실종 등의 특이 사유가 아닌 이상 배우자와 자녀는 기본적으로 급여 대상이 되고,<sup>20)</sup> 부모까지가 기본 대상이다. 이때 배우자는 법적 혼인관계뿐 아니라 사실혼 관계도 포함된다. 즉 여기서 가족은 배우자, (계)자녀, (계)부모(배우자 부모 포함)로 「민법」보다 작은 범위의 가족 개념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부양가족연금액에서 배우자와 자녀는 동거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부모는 주거를 달리하여도 정

20) 자녀의 경우 연령 조건을 두고 있기는 하나, 주거를 같이하거나 세대가 같이 등록되어 있어야 하는 등의 별도 요건은 적용하지 않는다. 이 요건에 대해 두 급여 모두 제외되는 제외된다.

기적인 경제적 지원을 증명하면 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계자녀나 계부모는 무조건 주거를 같이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 혈연관계 중심의 접근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분할연금은 이혼한 자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나누어 지급받는 급여로 여기에서는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라는 조건을 두고 있는데, 이는 이혼 후 분할연금 수급자의 최소한의 소득 보장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결과적으로 최소한의 결혼생활 기간을 암묵적으로 전제한 형태가 되었다.

유족연금은 노령연금 수급권자, 장애연금 수급권자, 일정 가입기간 조건을 갖춘 가입자 등이 사망했을 때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지급하게 되는데 이때 유족의 범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이다(계(조)부모, 계(손)자녀는 제외). 유족이 없는 경우 더 넓은 범위 형제자매, 사망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확대되어 사망일시금이 지급된다.

국민연금은 사실혼 인정, 분할연금에서의 혼인기간 설정, 부양가족연금과 유족연금에는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로 이어지는 부양 또는 상속의 우선순위와 혈연 중심적 접근이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다양한 가족에 대한 고려 상황을 생각해 보면, 보험료 납부 예외나 체납을 하게 되는 어려움의 배경에 가족 형태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으며, 전업주부와 같은 적용제외자(임의가입자격 부여)의 미가입 문제는 결과적으로 가족의 소득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다는 점을 찾아볼 수 있다. 즉 이 제도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보편적인 제도이지만, 남성생계부양 모델로 시작해, 비정규직이나 경력단절 여성근로자들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족 구조에서는 가입자가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결국 가입 장벽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가입한

다 해도 가입기간과 지속성이 추후 연금수급액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는 구조에서는 가족 구조에 따라 돌아오는 연금액에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연금과 다르게 적용 대상과 급여 제공 모두 가구(가족)를 중심으로 접근한다.<sup>21)</sup>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서 가정 해체 방지를 위한 별도 가구 보장과 같이 가족에 대한 생계보호에 중점을 둔다. 동시에 가족의 부양 의무를 규정하기도 한다. 이 제도는 기본적으로 「민법」의 가족(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보장 가구에 포함되는 사람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으로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인데,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나 형제·자매의 경우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해야 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있지만 배우자와 자녀에 대해서는 조건을 두지 않으며,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하는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sup>22)</sup>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필요시 가정 해체 방지를 위한 별도 가구 보장으로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결혼·이혼·사별한 자녀와 거주하는 부모가족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고려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이때 결혼(이혼·사별)한 자녀의 집에 거주하는 부모의 가구 조건에서 자녀는 ‘미혼모·부’인 자녀, 사별한 며느리·사위가 포함되나 사실혼 상태의 자녀는 결혼한 자녀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사실혼이라는 관계에 대한 인정이 한 제도 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21)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인을 단위로 하여 급여를 행할 수 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조 제3항).

22) 단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라는 별도의 규정이 있고, 주거를 달리하면서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의 소득활동을 할 경우, 생계를 달리하는 것으로 판단하면 수급자 가구에서 분리한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부양의무자로 수급(권)자 1촌의 직계혈족과 그들의 배우자를 설정하고 있는데, 수급(권)자의 배우자가 사망하는 등 혼인관계 소멸 시 사망한 자의 가족(직계혈족)과의 부양의무 관계가 소멸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부양관계는 혈연·혼인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 시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요건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아동양육비 및 아동교육지원비를 받는 가구와 '(이혼사별, 미혼모 포함)혼인한 딸이나 혼인한 딸에 대한 친정부모인 부양의무자'가 포함되어 있어(별도의 소득·금융재산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여성 가구(가족)의 취약성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다.

현재 정부는 비수급 빈곤층 보호를 위한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를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추진 중에 있다. 이러한 정부 정책 추진은 결과적으로 제도가 바라보는 가족의 범위가 생계와 주거를 중심으로 한 관계로 그 방향성이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나. 건강 영역

국민건강보험의 적용 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모두가 해당되며,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세대가 기본적인 가족의 단위라고 할 수 있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요건에서 알 수 있는 가족적 특성은 첫째, 보험료를 납부하는 직장가입자 가족 중심의 피부양자 조건이라는 것이다. (관련 세부 규정은 개정 및 확정·공표 후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지만) 현재 직장가입자와 달리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반드시 혈연관계에 있어야 하고, 이들의 형제·자매는 피부양자에서 제외된다. 둘째, 동거 여

부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이 변동될 수 있다. 그러나 배우자와 (미혼)자녀는 비동거 시 다른 가구원과의 동거나 소득수준을 고려하지 않아 기본적인 가족 구성의 전제로 보는 반면, 그 외의 경우에는 비동거 시 다른 가구원과의 동거 여부와 소득수준을 감안하여 적용한다. 특히 사위나 며느리와 같은 직계비속의 배우자나 처와 전남편 사이의 출생 자녀, 남편과 전처 사이의 출생 자녀와 같은 배우자의 직계비속은 비동거 시 추가적 요건 없이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아 생계 공동체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직장가입자의 혈연관계가 중심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혼인 여부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의 변동이 있다. 여기에서 혼인은 소득활동을 하거나 할 수 있다는 전제와 새로운 가구 형성으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는 전제가 있다. 가입자의 직계비속(자녀, 손·외손 이하)과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경우 피부양자 세부 여건으로 혼인 여부가 적용된다. 비동거 시 미혼이 아닌 경우 피부양자 적용이 어렵고,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는 동거를 하더라도 혼인한 경우 피부양자 범위에서 제외된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혼인, 혈연, 동거 등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는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조건과 달리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세대가 기본 단위이고, 세대 분리가 가능하기는 하지만 원칙적으로 동거인도 포함된다. 보험 급여 혜택 차원에서는 세대만 같이 한다면 오히려 포괄성이 높다고도 할 수 있다. 지역가입자에서는 경제력이 미약하거나 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계층을 대상으로 보험료 경감 혜택을 주고 있는데, 주로 가구원 연령, 가구 형태, 성별, 건강 상태 등에 따른 다양한 가족의 보험료 경감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 물론 소득 요건과 과표재산 기준이 있지만, 휴직자 경감이 대표적인 직장가입자의 경감 혜택인 데 비하면, 지역가입자에서는 가족 형태와 관련된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는 차이를 보인다. 지역가입자에서 특정 가족에 대한 지원은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55세 이상 여자 단독 세대 등이 대표적인 예다. 이는 현재 보험료 부과체계의 특수성으로 직장가입자는 보험료 부담에 있어 피부양자의 상황이 고려되지 않지만, 지역가입자는 세대별로 소득,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보험료 경감 정책은 제도의 적용 여부 내지는 사각지대가 아닌 추가적 혜택의 차원에서 다양한 가족을 배려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유형을 규정함으로써 그 외의 가족들은 배제된다는 한계도 있다.

한편 다양한 가족에 대한 상황이 제도 내에서 고려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가족들이 직접 경험을 공유해 주는 부분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사회적 지지가 없는 경우, 전 배우자(동거자)의 변심, 폭력, 또는 동시에 감당하기 힘든 일(임신, 출산, 헤어짐, 폭력 등) 등을 경험한 가족 구성원이 있는 경우 상담이나 심리적 치료가 필요하지만 정신건강에 대한 지원은 아직 부족한 상태이다. 하지만 이 정신건강은 자녀의 성장 발달에도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배려가 어떤 식으로 마련될 수 있을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정리하면 건강보험이라는 전체 제도에서 봤을 때, 가족에 대한 명확한 범위나 원칙에 따른 접근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족의 범위에 대한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지역가입자의 통일된 규정이 없을뿐더러 가입자 간 자격 변동은 이를 더 복잡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본 2018년 7월부터 시행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의 내용 역시 보험료 부과와 형평성 제고 차원에 초점이 맞춰진 나머지 가족 및 부양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관점은 여전히 부재한 것으로 보인다. 혼인 경력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 차별 금지 등은 긍정적이라 할 수 있으나, 고소득·고재산 피부양자의 지역가입자로의 전환은 피부양자

자격을 경제력을 근거로 판단하고 있다. 그 외에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사이에서의 부양 범위 포함 여부 등의 제도적 차이와 가입자 간 자격 변동에 따른 (부양)가족 범위의 복잡성 등은 여전히 남아 있다. 한편 이러한 상황의 근본적인 배경에는 건강보험제도 시행과 확대 등의 과정에서부터의 정치적·역사적·상황적 특수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 다. 주거 영역

주거 영역에서는 주거임대를 통한 지원과 주거자금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다. 주거임대에서는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을 살펴보고, 주거자금 지원에서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과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을 살펴보았다.

검토한 모든 지원에서 신혼부부일 경우가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는데 모두 법적 혼인을 근거로 하고 있었다. 혼인보다 시기적으로 앞서서 주거지를 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현실로 예비신혼부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기는 하지만, 입주 시에는 혼인신고 확인을 통해 입주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족은 법적으로 혼인을 한 부부가 이룬 가정으로 한정 짓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족 유형에 따른 지원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 주거임대에서 행복주택에는 특정 가족에 대한 우선지원이나 대상인 경우가 없지만 국민임대주택과 전세임대주택에서는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 아동 보호자’ 등이 우선순위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한부모가족은 전세자금대출에서도 금리 우대를 받고 주택구입자금대출에서는 다문화가족이 우대 금리를 적용받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

## 2. 심층인터뷰를 통한 검토 내용

제도 점검으로 드러난 부분 이외에 제도 점검 과정에서는 특징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다양한 가족들의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 지적된 부분들을 제시한다. 앞서 연구 방법에서 설명하였듯이, 심층인터뷰를 통해 제시되는 내용들은 그 내용이 매우 미시적일 수 있지만, 제도나 정책 분석으로 사각지대를 찾으려 해도 찾아지지 않는 부분을 찾는다는 점에 의의를 두고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재산 기준에 따라 수급 여부가 결정되는 상황에서 이혼(미혼)한부모가 전남편(동거자)의 채무로 인해 자동차를 본인 소유로 공유한 상황에서 남편의 폭력 등 긴급한 상황에 자녀를 데리고 나와 거처를 알리지 않고 지내는 경우 그 자동차가 여성의 재산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언급되었다.

*“제 앞으로 자동차가 한 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전남편) 앞으로는 뭐든지 할 수 없었고 그나마 제가, 뭐든 제 앞으로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도. 자동차도 제 돈으로 샀지만, 제 명의로 된 자동차가 십년 넘은 게 제 명의로 하나가 돼 있었어요. 근데 제가 험터로 나왔잖아요. 그 차를 가지고 오지도 않았고. 증거가 너무나 확실하잖아요. 자동차가 소득으로 잡혀서.”(B1)*

*“아기 아빠가 신용불량이 있어서 제 앞으로 된 차를 타고 다니는데 집 나올 때 그 차는 그대로 두고 도망 나옴 나왔는데, 결국 그 차가 끝까지 붙어서 아무것도 지원 대상이 안 되고. 정말 정말 힘들었어요. 저는 차를 끈 적이 없어요. 제가 사고가 크게 난 적이 있어서 트라우마가 생겨서 면허증이 없어요. 여기저기 가서 해결해 보려고 저는 면허증도 없는데 제가 무슨 차를 끌고 다니냐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뭘 상담을 하러 가도 그게 재산으로 되는 거예요. 아니 뭘 재산이 있어요, 빚밖에 없는데... 나중에는 “안 해, 안 해.” 이렇게 되더라고요.”(B3)*

인터뷰 대상자들도 기본적으로 자동차가 본인의 재산으로 설정되어 있어 수급 대상이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현장 점검 등을 통해 본인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명확히 확인된다면 그 자동차를 본인의 재산으로 인정하고 있는 원칙에서 예외적인 상황으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노력을 했지만 쉽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차를 폐기하기까지의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건강 영역에서는 보험을 통해 많은 부분이 커버되고 있지만, 심리치료가 필요한 가족들이 많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사회적 지지가 없는 경우, 전 배우자(동거자)의 변심, 폭력, 또는 동시에 감당하기 힘든 일(임신, 출산, 헤어짐, 폭력 등) 등을 경험한 가족 구성원이 있는 경우 상담이나 심리적 치료가 필요하지만 정신건강에 대한 지원은 아직 부족한 상태이다. 하지만 이 정신건강은 자녀의 성장 발달에도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배려가 어떤 식으로 마련될 수 있을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장 전문가들이 이 정신건강에 대한 아쉬움을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기관에 입소하면 직원들이 1:1 케어 많이 하지만 여기는 주거 지원 시설이라 상담하는 거에는 한계가 있어요. 심리상담치료사업비가 국고 지원으로 나오지만 어머니들의 상처가 제대로 치료될 만큼의 지원이 안 돼서...(A1) 상담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중간에 끊기기도 하고, 희망이 없거나 사회에 적응하고 싶은데 너무 어려워하는 경우는 동기부여도 필요하고 해서 상담을 꾸준히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안되는 게 아쉬워요.”(A2)*

*“심리적으로 정말 심각한 상황에서 도움을 주고자 할 때는 저희 기관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역량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전문 심리 상담소를 연계해드리는데, 거기서도 지원 사업비가 몇 회는 무료 뭐 그런 게 있지만 아쉬웠지만, 상담을 2~3번 받는다라고 해서 완치되는 건 아니고 정말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는데, 처음엔 무료였지*

*만 회차가 지나갈수록 상담비는 본인이 대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서 또 막히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상담시간이 많기는 하지만 거의 수박 겉핥기식으로, 심층적으로 되기에는 아무래도 비용적인 부분에서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상담 부분이. 그러니까 상담받고 싶은데 상담 비용이 조금 많이 지원되는 부분에서 적고...”(A3)*

현재 건강보험 가입으로 기본적인 병원에 가는 것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커 보이지 않지만, 심리적인 건강을 챙기기까지는 여력이 없는 상황이었다. 어려운 일을 동시에 경험하는 가족들을 대상으로는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등 도움이 필요해 보였다.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어른들의 심리 상태는 아이들의 성장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또한 자녀들도 한쪽 부모의 손실 등을 고려한다면 심리·정서 지원이 필수적일 수 있다.



제 4 장

다양한 가족에 대한 정책적  
환경 II: 임신·출산 및 양육 영역

제1절 임신 및 출산 영역

제2절 자녀 양육 영역

제3절 일가족 양립 영역

제4절 소결



# 4

## 다양한 가족에 대한 정책적 << 환경 II: 임신·출산 및 양육 영역

앞선 제3절이 가족생활의 기본이 되는 의식주에 관련된 영역들에 대한 논의였다면, 본 절은 자녀 출산과 양육 관련 영역을 중점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한국은 현재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으로 인하여 2006년부터 '제1차 새로마지플랜 2010'으로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시작하여 현재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까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가족의 개별 영역이라 여겼던 출산과 양육이 더 이상 가족단위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과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임을 인식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제 저출산 문제는 국가 수준의 문제임을 강조하고 있고, 출산과 양육이 정책의 대상이라는 것도 당연시 되고 있다.

현재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내에 '다양한 가족에 대한 포용성 제고' 정책과제가 포함되면서 국가적으로 전통가족 외의 다양한 가족 유형에 대한 수용적인 정책이 점진적으로 추구하고 있다는 것 또한 엿볼 수 있다.

### 제1절 임신 및 출산 영역

출산·양육 및 돌봄과 관련된 지원 제도는 비교적 오래되지 않은 제도나 정책들이기 때문에 가족단위 설계보다 개인단위 설계가 있을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제4장의 검토 영역인 임신, 출산, 양육에 관한 영역들 중에서 우선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제도 및 정책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임신·출산 및 양육 지원 영역은 다양한 사업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임신·출산 관련 사업들은 산모건강과 아이건강에 대한 지원 내용

의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제도’, ‘모자보건사업’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부분 포함되어 진행되고 있다. 이 두 사업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상의 임신·출산 영역인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사회책임시스템 확립’ 과제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사업이기도 해서 본 연구에서는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제도’, ‘모자보건사업’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내용을 위주로 살펴보고자 한다. 임신 및 출산 영역의 지원에서 혈연, 혼인, 가족 등의 기준과 성인지적 관점의 부족 및 가부장적 관련 사항이 포함된 내용들을 위주로 살펴본다.

## 1.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제도<sup>23)</sup>

### 가. 지원 내용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진료비를 전자바우처(국민행복카드)로 일부 지원하는 제도”로 2008년 12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임산부가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용을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해 지정요양기관에서 결제한다. 지원 금액은 임신 1회당 50만 원이며 다태아일 경우 90만 원의 지원이 이루어진다(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별 소개).

### 나. 지원 대상 및 신청권자

지원 대상은 “임신헌인서로 임신이 확진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

---

23)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제도 내용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이트([www.socialservice.or.kr](http://www.socialservice.or.kr))의 내용임.

양자 중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자”가 해당한다. 단 이때 의료급여를 받는 수급권자, 주민등록말소자, 급여정지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별 소개). 다시 말해, “산부인과 전문의가 작성한 임신확인서로 인심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 중인 사람”을 말한다(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 제2조).

신청은 임신부 본인이 직접 하거나 가족이 방문신청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임신부 본인의 신청이 원칙이나, 고위험임신으로 본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는 가족이 대리 신청을 할 수 있고 이때 임신부와 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야 한다(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별 소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 제3조(임신·출산 진료비 신청·지급 등) 제5항에 따르면,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그리고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임신부를 대신하여 본 사업에 신청을 할 수 있는 가족이다(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 제3조). 하지만 임신부의 상황은 다양하고 가족의 대리신청이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

또한 본 지원의 대상은 임신부 중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이다. 이때 체납이 6개월 된 경우는 이 지원에서 제외된다. 열악한 환경의 임신 기간과 출산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그에 따른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다. 최소한의 환경에서 출산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보장망을 만드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제가 3주쯤에 임신을 알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병원을 못 간 거예요. 국민행복카드 알고는 있었는데 임신 사실을 입증해가지고 신청해야 되잖아요. 산부인과 가서 확인증 받아서...근데 처음에 가서 그 확인받을 그런 돈조차 없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썼어요.”(B5)*

## 2. 모자보건사업<sup>24)</sup>

모자보건사업은 ‘모성건강’,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모성건강’에서는 주로 표준모자보건수첩 제공, 임신부 배려 캠페인 등 임신부 모두가 대상이 되는 내용이므로 제외하고 그 외의 사업에서 혼인, 혈연, 가족, 양성평등과 관련된 내용을 찾아본다.

모자보건사업의 근거법이 되는 「모자보건법」을 보면,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와 제10조(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대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사나 연구, 또는 그 외의 필요한 조치를 통해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에 대해 정기적인 건강진단 또는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등 보건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하여야한다(「모자보건법」 제3조, 제10조)고 명시하고 있어 모자의 건강 유지와 증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 가.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 1) 지원 내용

본 사업은 산전관리가 취약한 환경에 있을 수 있는 청소년산모에 대한 임신 및 출산 관련 의료비를 지원한다. 그에 따라 산모와 태아가 모두 건

24) 모자보건사업의 내용은 ‘보건복지부. (2017b). 2017 모자보건사업 안내.’의 내용임.

강한 임신기간을 지내고 출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지원 금액은 임신 1회당 120만 원으로 카드 수령 후 분만예정일 이후 60일 까지 사용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2017b, pp. 35-36).

## 2) 지원 대상 및 신청권자

모자보건사업의 하나인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는 만 18세 이하 산모 중 본 사업에 지원한 신청자이다. 만 18세 연령은 “임신헌인서상 ‘임신헌인일’ 기준으로 지원 대상자의 신청일 기준”으로 판단한다(보건복지부, 2017b, p. 36).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신청권자는 임신부 본인이나 그 가족으로 되어 있다. 이때 임신부 본인이 아닌 청소년산모의 가족이 서비스 신청을 대신할 경우 가족은 「민법」 제779조의 가족 범위를 따른다. 즉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리신청인이 될 수 있다. 가족이 신청할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보건복지부, 2017b, pp. 40-41).

하지만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사업’의 추진 배경에 ‘청소년산모의 특성상 사회적 노출 기피, 부모와의 관계 단절 등으로 산전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명시하고 있어, 청소년산모가 가족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사업개요에서는 인정하고 있다. 즉, 본 사업은 청소년산모가 가족과 단절된 경우가 많고 그에 따라 주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미 인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있는 청소년 산모에 대해 취약한 상태로 산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도움을 주는 사업이므

로 이러한 사업에서 신청인이 본인이 아닐 경우 대리신청 가능자를 가족으로 한정하는 것은 사업의 본질과 사업에서 이미 인정한 청소년산모의 환경과는 괴리가 있는 신청인 기준으로 볼 수 있다.

〈표 4-1〉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권자 기준

구분	내용
신청권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신부 본인 또는 그 가족</li> <li>- 임신부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고위험 임신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위임장을 가지고 대리신청 가능</li> <li>- 가족의 범위: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으로서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li> </ul>
제출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산모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li> <li>- 지원신청서 및 임신확인서</li> <li>- 주민등록등본</li> <li>• 청소년산모 가족이 대리신청하는 경우</li> <li>- 지원신청서 및 임신확인서</li> <li>- 주민등록등본</li> <li>-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 청소년산모와의 가족관계를 입증(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할 수 있는 서류</li> </ul>

자료: 보건복지부. (2017b). 모자보건사업안내.

## 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 1) 지원 내용

본 사업은 난임부부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난임이 더 이상 개별 가정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임을 인지하고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 사업이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고액의 시술비를 부담해야 하는 난임부부에게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시술에 대한 시술비를 일부 지원하여 자녀를 낳고자 하는 부부가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저출산 극복 정책 중 하나이다(보건복지부, 2017b, p. 99).

이 지원 사업은 기본적으로 중산층까지 포함한 보편지원이다. 난임치료에 대한 시술비가 고액인 점과 단회에 그치지 않고 여러 번 시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 빈번하다는 것을 고려해 중산층도 시술비에 대한 부담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 내용은 차이가 있지만 중산층도 포함하는 저출산 대응책의 하나이다.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 횟수와 지원 범위가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체외수정에 대해서는 신선배아 최대 4회, 동결배아 3회, 그리고 인공수정은 최대 3회까지 지원하고 있다.

## 2) 지원 대상 및 신청권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사업 명칭에도 나타나 있듯이 부부를 그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부부는 물론 ‘법률적 혼인관계 상태에 있는 난임부부’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족의 기본 단위가 혼인한 부부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법적 혼인을 이루어야 한다. 현재 동거 및 사실혼 가족을 매우 적극적으로 가족의 한 유형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은 사회적 환경이기 때문에 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나 정책은 물론 법적 부부를 의미한다. 하지만 이 사업의 필요성을 확인해 보면, ‘아이를 원하는 가정이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 출산지원정책 필요’에 따라 ‘출산에 있어서 의료적 장애를 제거’하는 정책으로 명시되어 있다. 여기에서 ‘가정’은 혼인관계를 기반으로 한 가정인 것이다. 사업 목적에도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게 하여 행복한 가정을 영위케 하고...”(보건복지부, 2017b, p. 99)라는 부분을 찾아볼 수 있다. ‘희망하는 자녀’와 ‘행복한 가정’ 영위를 위한 지원은 법적 부부에게 국한되는 것이다. 따라서 법적 혼인을 기반으로 하지 않지만 생

활을 함께 하는 동거가족, 혹은 사실혼 가족은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원은 법적 혼인 상태의 부부이지만, 난임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사실혼 관계에서 자연임신을 시도하였으나 임신이 되지 않은 경우도 난임기간으로 인정”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7b, p. 139). 하지만 난임기간은 시술 지원 시에 필요한 정보로 사실혼 관계에서의 임신 시도를 인정하는 것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는 것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결국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법적 부부가 되어야만 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이렇게 난임기간 산정에서 사실혼 상태의 기간을 인정하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향후 사실혼임을 증명하는 부부에게도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두는 정도의 움직임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사업의 대리 신청인의 범위는 난임부부의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로 한정되어 있다.

〈표 4-2〉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지원신청 자격 및 신청권자

구분	내용
신청 자격	1)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2)법적 혼인 상태에 있는 난임부부로서 접수일 현재 부인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 3)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재외국민 주민등록 관련 법령: 「주민등록법」 제6조, 제24조 참조
신청권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은 원칙적으로 난임부부가 하되, 불가피한 경우 난임부부의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가 신청 가능</li> <li>- 난임부부의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가 신청 시에는 가족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 및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li> </ul>

자료: 보건복지부. (2017b). 모자보건사업안내.

### 3) 가족 수 산정 기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서 가족 수를 산정하는 대원칙은 ‘부부와 동일 거주지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이다. 직계존비속 중 별도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자는 가족 수 산정에서 제외되지만, 본 사업에서는 직계존속인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등과 직계비속인 아들, 딸, 손자녀 등을 가족으로 포함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7b, p. 108).

〈표 4-3〉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가족 수 산정 기준

구분	내용
가족 수 산정 기준	[대원칙: 대상 부부와 동일 거주지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만을 가족 수로 합산, 직계존비속의 경우 소득이 있어 별도로 보험료를 납부한다면 가족 수에서 제외]  -난임부부와 그 자녀 및 손자(재혼가정의 경우 이전 혼인의 자녀 및 손자 포함) -난임부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은 직계존속 중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지 않은 피부양자(직장가입자) -난임부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은 직계존속 중 동일 세대의 세대원으로서 피보험자(지역가입자) -난임부부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로 다른 경우 부부 각각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은 직계존속 중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지 않은 자

자료: 보건복지부. (2017b). 모자보건사업안내.

### 다.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영유아에 대한 이 사업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난청조기진단, 취학전 아동실명예방 등 영유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통해 장애를 예방하고 정상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에서 지원 대상 및 선정기준이 있는 사업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과 난청조기진단으로 이 두 사업을 중점으로 살펴본다.

### 1) 지원 내용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 사업은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 가정의 의료비 지출 부담을 덜어주어 치료 포기나 그로 인한 영아의 장애 및 사망을 예방하는 사업이다. 또한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지 않도록 한다. 그리고 저출산 대응책의 하나로 태어난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지원 체계로 볼 수 있다(보건복지부, 2017b, p. 205). 미숙아는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보건복지부, 2017b, p. 212)를 의미하고, 선천성이상아는 ‘출생 후 28일 이내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이상으로 진단받은 환아로서, 출생 후 6개월 이내 선천성이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를 지원한다(보건복지부, 2017b, p. 216).

신생아 난청조기진단사업은 저소득층 가구의 신생아에게 청각선별검사비와 청각선별검사 결과 재검으로 판정된 경우는 난청 확진 검사비를 지원한다(보건복지부, 2017b, pp. 278, 281).

### 2) 지원 대상 및 신청권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이다. 그리고 다자녀(3명 이상)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인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이 이루어진다(보건복지부, 2017b, p. 206). ‘미혼모 등 혼인신고가 안된 상태에서 출생한 미숙아에게도 의료비를 지원’(보건복지부, 2017b,

p. 222)하고 있어, 부모의 혼인 상태가 영아에 대한 지원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원 신청을 해야 하는데 신청방법은 ‘보건소 등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로 등록된 자의 부모가 의료비지원신청서, 퇴원 또는 퇴원 전 중간진료비영수증, 출생증명서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생아 주민등록 소재지의 부모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 이때 신생아 주민등록을 완료한 후 신청해야 하는데 부득이하게 그 이전에 신청하게 되는 상황에서는 부(父)와 모(母)의 거주지가 다른 경우 모(母)의 거주지를 우선적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신청이 편리한 보건소에 신청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보건복지부, 2017b, p. 210).

여기에서 영아의 어머니 거주지상의 관할 보건소를 우선적으로 한다는 것은 모의 출산 사실은 확인이 용이하고 그에 따라 모자(母子) 관계 확인 또한 용이하기 때문이며 중복 신청을 방지할 수 있다. 그러나 영아의 모(母)가 가정 내에 존재하지 않아 아버지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미혼부도 현재 자녀의 출생신고가 가능해짐에 따라 모(母)나 부(父)의 거주지 중 한쪽의 보건소에 신청 가능한 것이 적절해 보이는 상황에서 모(母)의 거주지를 우선적으로 한다고 명시한 것을 계속 유지한다면, 신청절차의 편의성에서 벗어나 여전히 모(母)를 자녀에 대한 주 양육자로 판단한다는 사실로 보일 여지가 있다.

신생아 난청조기진단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가구와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가구의 신생아이다. 여기에 3명 이상 다자녀 가구에서 출생한 신생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7b, p. 278).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출산 예정일 3개월 전부터 출산 후 1개월 이내에 관할 보건소에 신청’(보건복지부,

2017b, p. 282)하도록 되어 있다. 이 사업에서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과 달리 신청을 누가 해야 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표 4-4〉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지원 대상 기준

구분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난청조기진단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시·군·구(보건소) 관할 지역에 주소지를 둔 저소득층 가구의 신생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 가구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가구
	·다자녀(3명 이상)가구에서 출생한 신생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첫째아 이후 출생한 쌍둥이(삼태아 등 포함)는 모두 셋째아로 인정 -상기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보건소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자료: 보건복지부. (2017b). 모자보건사업안내.

### 3) 가족 수 산정 기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과 난청조기진단 사업의 가족 수 산정 기준은 동일하다. 즉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사업에서는 사업 대상 신생아를 포함하여 그 부모와 동일 거주지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을 가족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서도 역시 별도 건강보험료 납부자는 가족 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다.

(표 4-5)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가족 수 산정 기준

구분	내용
가족수 산정 기준	<p>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가족 수를 산정하며 신생아를 가족 수에 포함(가족 수 산정 시점은 신생아 출생일)</p> <p>[대원칙: 미숙아(선천성이상아)/난청조기진단 지원 대상 신생아 부모와 동일 거주지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만을 가족 수로 합산, 직계존비속의 경우 소득이 있어 별도로 보험료를 납부한다면 가족 수에서 제외]</p> <p>-미숙아(선천성이상아)/난청조기진단 지원 대상 신생아 부모와 그 자녀(재혼가정의 경우 이전 혼인의 자녀 포함)</p> <p>-미숙아(선천성이상아)/난청조기진단 지원 대상 신생아 부모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은 직계존비속 중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지 않은 피양양자(직장가입자)</p> <p>-미숙아(선천성이상아)/난청조기진단 지원 대상 신생아 부모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은 직계존비속 동일 세대의 세대원으로서 보험료를 납부하는 자(지역가입자)</p> <p>-미숙아(선천성이상아)/난청조기진단 지원 대상 신생아 부모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로 다른 경우 부모 각각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은 직계존비속 중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지 않은 자</p> <p>*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미숙아(선천성이상아)부모/난청조기진단 지원 대상 신생아와 동일한 직계존비속이라도 별도의 건강보험 가입한 경우 “가족수 및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지 않음(직계존비속 부부 중 1인은 가입자이고, 1인은 배우자의 피양양자인 경우 모두 가족 수에서 제외)</p>

자료: 보건복지부, (2017b). 모자보건사업안내.

## 라.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

### 1) 지원 내용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을 통해 3대 고위험 임신질환인 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으로 진단받은 고위험 임신부의 의료비를 지원하여 건강한 출산 및 모자건강을 보장한다(보건복지부, 2017b, pp. 355-356). 입원치료비 중 비급여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90%에 대해 1인당 지원한도 300만 원 내에서 지원한다(보건복지부, 2017b, p. 363).

## 2) 지원 대상 및 신청권자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구성원인 자’로 ‘3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자’이다(보건복지부, 2017b, p. 358).

이 사업의 지원을 받기 위해 지원 신청이 가능한 자는 일단 환자 본인이다. 다만 환자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울 때에는 ‘가족관계 입증서류 제출과 함께 배우자, 2촌 이내 혈족 또는 직계 존비속의 대리신청이 가능’(보건복지부, 2017b, p. 365)하다. 그리고 환자 본인이나 지정된 가족 모두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건소장의 판단하에 ‘방문간호사, 의료기관, 지인 등으로부터 대리지원 신청’(보건복지부, 2017b, p. 365)이 가능하다.

모자보건사업 내에서도 지원 신청이 가능한 자에 대한 기준이 상이함을 확인할 수 있다.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은 결국 ‘지인’까지 지원 신청을 대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신청이 가능한 대리인의 범위가 넓다는 측면에서 임신부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지원 절차일 수 있다.

(표 4-6)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 대상 기준

구분	내용
지원 대상	(소득)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구성원인 자 (질환)3대 고위험 임신질환(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으로 진단 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자 * 분만 결과, 자궁 내 태아 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 * 지원 제외자: 외국 국적인 자(단 결혼이주여성<체류자격: F6>, 난민협약에 따른 난민, 북한이탈주민, 영주귀국사할린 한인 제외) 및 국외 이주자
신청 가능한 자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 대상자의 진단·소득·분만일자 기준에 적합한 환자 본인 -환자 본인이 신청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가족관계 입증서류를 제출할 때, 배우자·2촌 이내 혈족 또는 직계 존비속의 대리 신청은 가능 * 세대 간 분리 등으로 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관계 입증이 곤란할 경우에 한해,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요 -위의 경우가 모두 곤란한 경우, 보건소장이 판단하여 방문간호사, 의료기관, 지인 등으로부터 대리지원 신청을 받을 수 있음

자료: 보건복지부, (2017b). 모자보건사업안내.

### 3) 가족 수 산정 기준

가족 수 산정 시 가족에 포함되는 기준은 ‘주민등록을 같이하고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 직계 존비속’(보건복지부, 2017b, p. 359)이다. 즉 형제, 자매와 부모, 자녀, 그리고 조부모, 손자녀 등을 가족으로 포함하고 있다.

이때 ‘배우자 및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가족원에 포함’되며, ‘2촌 이내의 혈족, 직계 존비속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더라도 소득이 있는 경우(별도의 건강보험료 납부)는 가구원에서 제외’된다. 또한 ‘법적 혼인 여부를 증명할 수 없는 사실혼의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등본 2촌 이내의 혈족, 직계 존비속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더라도 소득이 있는 경우(별도의 건강보험료 납부)는 가구원에서 제외’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7b, p. 359).

## 140 다양한 가족의 제도적 수용성 제고 방안

〈표 4-7〉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 가족 수 산정 기준

구분	내용
가족 수 산정	-주민등록을 같이하고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 직계 존비속 * 배우자 및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가족원에 포함 * 2촌 이내의 혈족, 직계 존비속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더라도 소득이 있는 경우(별도의 건강보험료 납부)는 가구원에서 제외 * 법적 혼인 여부를 증명할 수 없는 사실혼의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등본 2촌 이내의 혈족, 직계 존비속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더라도 소득이 있는 경우(별도의 건강보험료 납부)는 가구원에서 제외

자료: 보건복지부. (2017b). 모자보건사업안내.

### 마.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1) 지원 내용

본 사업은 저소득층의 0~24개월 영아에게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과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보건복지부, 2017b, p. 385).

#### 2) 지원 대상 및 신청권자

기저귀 지원은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한다. 즉 한 가구에 다둥이가 있을 경우 영아마다 지원이 이루어진다(보건복지부, 2017b, p. 389).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 대상 중 지정된 ‘산모의 질병이나 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거나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아동, 한 부모(부자·조손)가정인 경우’(보건복지부, 2017b, p. 389)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만 2세 미만 영

아'이다. 이때 외국인 영아에 대해서는 부모 중 한쪽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보건복지부, 2017b, p. 390).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권자는 '지원신청서 서식상 신청인이 바우처 실 사용자'가 되는데, '영아 부모의 신청이 원칙'이며, 부모 명의로 각각 카드를 발급하면 바우처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신청자가 부모가 아닐 경우, 또는 주양육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에는 영아의 양육을 주로 담당하는 자가 지원 신청을 하여 바우처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이때 주로 양육을 담당하는 자는 주민등록등본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한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또는 후견인이나 법정대리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친족, 후견인 및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는 영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장, 위탁가정의 위탁모, 또는 관계공무원 등이 신청권자가 될 수 있다(보건복지부, 2017b, p. 391).

〈표 4-8〉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대상 기준, 바우처 신청자격 및 신청권자

구분	내용
지원 대상	(기저귀)기준중위소득 40% 이하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 별로 지원 *의료급여 수급 가구 포함(「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함. 타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국가유공자, 의사상자 등) 제외) (조제분유)기저귀 지원 대상 중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 단 영양플러스사업,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사업의 조제분유 지원과 중복되지 않아야 함. -산모의 질병·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가정인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내지 제5조의2에 따른 부자 또는 조손 가정에 한함
바우처 신청 자격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만 2세 미만 영아 -외국인의 경우 부모 중 어느 한쪽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경우 허용 *지원 제외자: 부모 모두 외국 국적인 자(난민협약에 따른 난민, 북한이탈주민,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제외) 및 국외 이주자
바우처 신청권자	신청인이 바우처 실사용자 -영아 부모의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지급된 바우처를 공동 사용할 수 있음. 이 경우, 각각 부모 명의의 카드 발급 필요 -부득이 부모의 사정으로 지원 신청이 어렵거나, 또는 주양육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에는 영아의 양육을 주로 담당하는 자가 지원 신청을 하여 바우처 카드를 발급 및 사용할 수 있음 *주민등록등본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한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또는 후견인·법정대리인 **부모, 가족, 친족, 후견인 및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영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자(사회복지 시설장, 위탁가정의 위탁모 등) 또는 관계공무원 ※영아의 부모 이외의 신청권자는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자료: 보건복지부. (2017b). 모자보건사업안내.

### 3) 가족 수 산정 기준

가구원 수에 포함되는 대상은 ‘영아와 영아의 부모(사실혼 관계를 포함), 그리고 영아의 부모와 주민등록을 같이하고,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영아의 2촌 이내 혈족, 직계존비속’이다(보건복지부, 2017b, p. 394). 앞서 검토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지원에서도 영아 부모의 혼인 여부가 영아에 대한 지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처럼, 이 사업에서도 영아

가 대상이기 때문에 부모의 혼인 여부에 따라 영아에 대한 지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가족 수 산정 시 영아의 부모 및 영아의 형제자매는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하여, 영아의 부모가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등재된 경우, 별도의 주민등록지 가족 수 모두를 합산한다. 그리고 2촌 이내의 혈족이나 직계존비속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더라도 소득이 있는 경우(별도의 건강보험료 납부)는 가구원에서 제외한다(보건복지부, 2017b, p. 394).

〈표 4-9〉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가족 수 산정 기준

구분	내용
가족 수 산정	-출생아(영아) -영아의 부모(사실혼 관계 포함) -영아의 부모와 주민등록을 같이하고,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영아의 2촌 이내의 혈족, 직계존비속 *영아의 부모 및 영아의 형제자매는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영아의 부모가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등재된 경우, 별도의 주민등록지 가족 수 모두 합산 *2촌 이내의 혈족, 직계존비속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더라도 소득이 있는 경우(별도의 건강보험료 납부)는 가구원에서 제외 *단 동일 주민등록·건강보험 등재자라도 해외 장기체류로 확인된 가족은 가구원 수에서 제외. 교도소 수감, 현역군인 복무, 공익요원의 훈련소 입소 등도 동일하게 처리

자료: 보건복지부. (2017b). 모자보건사업안내.

〈표 4-10〉 모자보건사업 세부사업별 지원 대상, 신청 기준, 가족 수 산정 기준

구분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미숙아·선천성이상아 등록관리 및 의료비 등 지원	난청조기진단		
지원 대상	만 18세 이하, 산모 중 분 사업에 지원한 산모자	법률적 혼인관계 상 태에 있는 난임부부	-기초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서 출생한 마취아 및 선천성 이상아 -다자녀(영양)상가에서 출생한 마취아 및 선천성이상아인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첫배아 이후 출생한 생동(임태아 등 포함)은 모두 생애비용 안정 기금을 원칙으로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보건소장)이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정	-사군·구(보건소) 관할 지역에 주소지를 둔 저소득층 가구의 산모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생계·의료 및 의료급여 수급 가구 -기초 중위소득 72% 이하 가구 -다자녀(영양)상가에서 출생한 산모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지원 제외자: 외국 국적인 재단, 결혼이주여성(체류자격: F6), 난민, 영구귀국사별된 한인 재외민 및 귀국 이주자	(기저귀)중위소득 40% 이하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의료급여 수급가구 포함(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재조 및 제2조요양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함) 단임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국민기초, 의사상자 등 제외) (조제분유)기저귀 지원 대상 중 산모의 질병, 시용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아동, 한부모가족·조산가정인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 재조 내지 재조요양에 따른 부자 또는 조산 가정에 한함 단 영양관리사업, 선천성대사 이상 환아관리 사업의 조제분유 지원과 중복되지 않아 함

구분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육아 지원사업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육아 지원사업	영유아·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미숙아·선천성이상아 등 돌관리의 및 의료비 등 지원	난창조기진단
신생아 간 및 신생 자녀	<p>(산생파자)</p> <p>그 가족 본인 또는</p> <p>-임산부 본인인 신</p> <p>청하는 것을 원칙으</p> <p>로 하며, 고위험 임</p> <p>신 등의 사유로 불</p> <p>가파하게 본인인 신</p> <p>청하기 어려운 경우</p> <p>위임장을 가지고 대</p> <p>리 신청 가능</p> <p>-가족의 범위 민</p> <p>법 제79조에 따른</p> <p>가족으로서 배우자</p> <p>자녀들 및 형제자</p> <p>매, 자계중의 배우</p> <p>자, 배우자의 자계</p> <p>중 및 배우자의 형</p> <p>제매</p>	<p>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p> <p>(신청자격)</p> <p>1)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p> <p>2) 법적 혼인 상태에 있는 난임부부로서 진수할 현재 부인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p> <p>3)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혼국인 주민등록자는 해당에서 제외)이며,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어부가 확인되는 자</p> <p>(신청관청)</p> <p>원칙적으로 난임부부 불가피한 경우 난임부부의 직계존속 또는 형제매</p> <p>- 난임부부의 직계존속이나 형제매가 신청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 및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p>	<p>영유아·사전예방적 건강관리</p> <p>미숙아·선천성이상아 등 돌관리의 및 의료비 등 지원</p>	<p>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p> <p>-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 대상자의 진단·소독·분만일자 기준에 적합한 한 환자 본인</p> <p>-환자 본인이 신청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가족관계 입증서류를 제출할 때, 배우자·2촌 이내 혈족 또는 직계 존비속의 대리신청은 가능</p> <p>*세대 간 분리 등으로 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관계 입증에 곤란할 경우에 한해,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요</p> <p>-위의 경우가 모두 곤란한 경우, 보건소장이 판단하여 방문간호사, 의료기관, 지인 등으로부터 대리 지원 신청을 받을 수 있음</p>	<p>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p> <p>(배우처 신청자격)</p> <p>국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만 2세 미만 영아</p> <p>-외국인의 경우 부모 중 어느 한쪽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경우 허용</p> <p>*자녀 제외자 부모 모두 외국 국적인 재민통합에 따른 난민, 북한이탈주민, 양육규약 사별된 본인 제외) 및 국외 이주자</p> <p>(배우처 신청관청)</p> <p>신청인이 배우처 살사양자</p> <p>-영아 부모의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자립된 배우처를 공동 사용할 수 있는 이 경우, 각각 부모 명의의 카드 발급 필요</p> <p>-부득이 부모의 신청으로 지원신청이 어렵거나, 또는 주양육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에는 영아의 양육을 주로 담당하는 자가 지원신청하여 배우처 카드를 발급 및 사용할 수 있음</p> <p>*주민등록등본상 새를 갖고있는 가족,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한 친족(촌 이 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또는 후견인, 법정대리인</p> <p>**부모 가족, 친족, 후견인 및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p>



### 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sup>25)</sup>

#### 1) 지원 내용

본 사업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7e, p. 13). 즉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에 직접 방문해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를 돌보는 것이다. 근거 법은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산후조리도우미의 지원)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임신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출산 후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하고자 하는 임신부가 신청을 하는 경우 해당 임신부의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조리를 돕는 도우미의 이용을 지원할 수 있다’(「모자보건법」)고 명시하고 있다.

#### 2) 지원 대상

본 사업은 출산가정이 대상이 되는 사업으로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이고, 예외 지원 대상은 ‘①희귀난치성질환 산모 ②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③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④셋째 아 이상 출산 가정 ⑤새터민 산모 ⑥결혼이민 산모 ⑦미혼모 산모(만 18세 이하 청소년 미혼모 해당. 다만 만 18세를 초과하더라도 미혼모 시설에 입소중인 산모는 포함) ⑧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⑨분만 취약지 산모 ⑩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최대) 출산가정’이다. 이러한 출산가정 또는 산모에 대해서는 기본

25) 보건복지부. (2017e)의 ‘2017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의 내용임.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지역별로 소득기준을 정해 지원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2017e, p. 37).

미혼모가족, 결혼이민자가 포함된 가족 등과 같이 특정 가족에 대한 예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3) 신청 자격

본 사업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바우처를 신청해야 한다. 이때 바우처 신청 자격은 '국내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이다.

신청권자는 '산모 본인, 친족 또는 후견인·법정대리인'으로 여기에서 말하는 친족의 범위는 「민법」 제777조에 근거해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보건복지부, 2017e, p. 40)을 포함한다.

### 4) 가구원 수 산정

바우처 자격 판정 원칙은 '출산 가정의 가구원 수와 소득을 종합하여 판정'하는 것이므로 가구원 수 산정이 필요하다. 가구원 수에는 '①출생 신생아(태아 포함) ②산모 ③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 배우자는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④미혼자녀(주민등록·보험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단 자녀가 본인명의의 별도 직장·지역가입자인 경우는 제외) ⑤산모 또는 배우자와 주민등록 및 건강보험이 함께 등재된 가족'을 포함한다. 이때 가족은 '직계혈족(부모, 조부모, 기혼자녀, 손자녀 등)과 형제자매를 의미하며, 단 주민등록은 함께 등재되어 있으나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이 되어 별도의 건강보험을 가지고 있는 동일세

대 가족은 가구원 수에 포함되고, 동일 주민등록·건강보험 등재자라도 해외장기체류로 확인된 가족은 가구원 수에서 제외'(보건복지부, 2017e, p. 43)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그리고 가구 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통해 산출한다.

본 사업에서는 가구원 수에 포함하는 배우자에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까지 포함하고 있다.

## 제2절 자녀 양육 영역

본 연구의 돌봄 영역에서는 보육사업과 아이돌보미사업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본 사업들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돌봄 영역에서도 중심이 되고 있다. 보육제도는 아동에 대한 양육을 가족의 기능에 많이 의존하던 기존의 형태에 더해 필요시 사회가 아동에 대한 보호 기능을 분담해주는 형식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사회가 지원을 하고는 있지만 가족의 역할이나 의무가 여전히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 아닐 수 없다.

### 1. 보육사업<sup>26)</sup>

보육사업의 근거법인 「영유아보육법」 제3조(보육 이념) 제3항을 보면, '영유아는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인종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영유아보육법」)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보육에 있어서

26) 보건복지부. (2017c)의 '2017년도 보육사업안내' 및 보건복지부. (2017d)의 '2017년도 보육사업안내 부록'의 내용임.

부모의 유무, 또는 가족의 유형에 따른 차별을 아동이 경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제4조(책임)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와 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영유아보육법」)는 조항을 보면, 아동 양육에 있어서 보호자의 책임과 역할이 강조되고 있어 가족 배경에 따른 차이가 아동 성장에 크게 반영될 수도 있다.

보육사업에서 가족이 지원받는 내용으로는 보육료 지원 내용과 가정양육수당 내용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각각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공통적인 수급권자와 신청권자를 간단히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한국은 모든 아동에게 무상보육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의 수급권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정상적으로 부여받은 만 0~5세 아동(난민은 예외적으로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대상에 포함),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번호를 불가피하게 부여받지 못한 아동), 거주불명등록가구의 아동”이다(보건복지부, 2017c, p. 294). 보육료 지원과 양육수당 모두에 대해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만 5세 아동에게 지원 자격이 주어진다.

〈표 4-11〉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자격(수급권자)

구분	내용
지원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번호를 보유한 만 0~5세 영유아</li> <li>* 단 장애아보육료, 다문화보육료 등은 해당 지원 요건을 충족한 자에 한함(단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3호에 따라 주민번호를 발급받거나, 동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는 자는 제외)</li> </ul>

자료: 보건복지부. (2017c). 2017년도 보육사업안내. p. 293.

아동의 보육료나 양육수당을 지원받기 위해 신청을 할 수 있는 신청권자를 보면, 보육료에 대해서는 급여신청 주체가 아동의 보호자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신청권자는 대상 아동의 부모로 한정하고 있다.

〈표 4-12〉 보육료·양육수당 신청권자

구분	보육료	양육수당
신청권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의 보호자로서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li> <li>- 온라인 신청은 영유아의 부모에 한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일 현재 아동(최대 84개월 미만)을 가정 양육하는 부모,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li> <li>- 온라인 신청은 영유아의 부모에 한함</li> </ul>

자료: 보건복지부. (2017c). 2017년도 보육사업안내. p. 295.

지금까지 보육료 지원과 양육수당 지원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사업의 기본 전제와 전반적인 수급권자, 신청권자를 살펴보았다. 보육료 지원과 양육수당 지원의 더욱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구분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 가. 보육료 지원

보육료 지원사업의 대상은 근거법인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직장, 가정, 협동,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가 대상이 된다(보건복지부, 2017c, p. 304).

현재 보육 서비스는 2016년 7월 이후 맞춤형 보육 시행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1~2세 영아에 대해 종일반과 맞춤형으로 나누어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때 종일반에 대해서는 아침 7:30부터 저녁 19:30까지 12시간 보육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고, 맞춤형에 대해서는 아침 9:00부터 오후 15:00까지 보육 서비스가 이루어진다(보건복지부, 2017c, p. 309). 이 종일반과 맞춤형은 0~2세반 영아 중 보육의 필요 정도가 큰 아동

(맞벌이, 다자녀, 장애, 입원·간병 등)은 종일반 보육, 그 외의 아동은 맞춤형 보육의 대상이 된다(보건복지부, 2017c, p. 307).

종일반 보육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은 자격사유 검토로 판단한다. 기본적으로 자녀의 부와 모 양쪽이 모두 일을 하거나 구직활동 및 학업을 하고 있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그러나 농·어업인이나 장애, 임신, 입원, 또는 장기부재에 대해서는 부나 모 중 일방만 증명해도 자녀의 종일반 자격이 주어지게 된다. 또 다른 종일반의 기준은 가구의 특성을 증빙하는 것이다. 여기서 가구의 특성은 '다자녀, 한부모, 저소득층, 다문화 가정'으로 이러한 가구에 대해서는 부와 모의 자격사유 고려 없이 종일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보건복지부, 2017c, pp. 309-310).

종일반 자격사유는 대분류, 중분류, 세부구분으로 구분되는데 대분류 기준을 보면, '취업', '구직·취업 준비', '돌봄 필요', '기타'로 나뉘어 있다. 이 중 대분류가 '취업'이나 '구직·취업활동'인 경우를 제외하고 보면, 대분류상 구분은 '돌봄 필요' 유형과 분류가 없는 '기타' 유형으로 나뉘게 된다(아래 표 4-13 참조). 이 중 가구 특성을 증빙해야 하는 경우는 '돌봄 필요' 유형의 다자녀 가구, 육아부담, 한부모가족, 조손 가족, 그리고 '기타' 유형의 저소득층과 다문화 가정이다. 이때 가족 특성 증명은 시스템 연계로 별도 제출은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돌봄 지원이 필요하지만 가족으로 증명되지 않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표 4-13〉 보육 서비스 종일형 자격 사유 중 돌봄 필요, 기타 유형 및 증빙서류

종일형 자격사유			증빙서류
대분류	중분류	세부구분	
돌봄 필요	장애	아동의 부모	장애인등록증
		아동, 아동의 형제자매	장애인등록증, 의사진단서(만5세 이하),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결과통지서(만8세 이하) 중 1부
		다자녀	가족관계증명서(세자녀 이상 가구)
		육아부담	가족관계증명서(어린이집 0세반, 1세반에 해당(2015. 1. 1. 출생아부터)하는 두 자녀 이상 가구)
		임신·산후관리	임신진단서 등 그 밖에 임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한부모가정	한부모가족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조손가정	가족관계증명서
	입원· 간병	아동의 형제자매	의사진단서(1개월 이상 입원 필요), 산정특례 대상(중증· 희귀난치질환) 중 1부
		조부모	의사진단서(1개월 이상 입원 필요), 장기요양인정서, 산 정특례 대상(중증·희귀난치질환) 중 1부
		부모	의사진단서(1개월 이상 입원 필요), 장기요양인정서, 산 정특례 대상(중증·희귀난치질환) 중 1부
		학업	대학, 대학원 등 재학증명서(사이버대, 방통대 불인정) *휴학기간 불인정
		장기부재	복무확인서, 입영사실확인서, 재소증명원 중 1부
		저소득층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
	다문화가정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외국인등록증 중 1부	

자료: 보건복지부. (2017c). 2017년도 보육사업안내, '종일반 보육료 신청시 제출 서류'의 일부임 (pp. 298-299).

분류상 다자녀, 육아부담, 한부모가정, 조손가정은 돌봄 필요로 분류되어 있고, 저소득층과 다문화가정은 기타로 분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자녀가구는 '연령에 관계없이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이고 육아부담가구는 '어린이집 0세반·1세반에 해당하는 자녀가 2명인 가구'를 의미한다. 한부모가족은 '부모가 이혼 또는 사망한 편부, 편모 가구'이며, 조손가족은 '부모의 이혼 또는 사망으로 조부모와 손자녀로 구성된 가구'를 의미하는 것으로 모두 가구 특성을 기준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이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증명된다. 앞서 언급한 다자녀가구나 육아부담가구에 대해서는 사실상 해당 가구 유형이지만 증빙서류로 증명이 안 되는

경우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 대한 명시가 없다. 하지만 한부모가족과 조손가족의 증빙서류 설명에 보면, 서류상 가족의 형태를 증명하는 것이 어렵지만 사실상 한부모가족이나 조손가족인 경우에는 ‘종일반 요청 자기기술서’라는 것을 제출해 해당 가족 유형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보건복지부, 2017c, pp. 313-314). 이에 따라, 아동의 부모가 별거 중이거나 함께 생활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아동이 엄마와 생활하고 있고 이때 엄마가 취업 중인 경우의 예를 생각해 보면, 증명서상 한부모가족은 아니지만 상황이 이해되고 받아들여지면 가족관계증명서로 증빙되지 않는 경우에도 종일반 보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단서조항은 서류만으로 실질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가족의 유형이나 상황이 드러나지 않는 ‘증빙 사각지대’(보건복지부, 2017d, p. 96)에 놓인 여러 상황과 다양한 가족 유형에 대한 배려가 될 수 있다.

기타 유형에는 저소득층과 다문화 가정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서 저소득층이란 ‘생계급여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의료급여 수급 가구, 법정 저소득층 아동’을 의미한다(보건복지부, 2017c, p. 315). 또한 법정 저소득층 아동은 ①「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그 가구원(의료급여 또는 자활급여 특례수급권자 포함) ②「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가정 아동 ③「아동복지법」 제 16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만 3~5세 아동 ④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 자녀(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 ⑤모·부자(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자녀 등 ⑥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보건복지부, 2017c, p. 315)를 의미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와 같이 보육사업에서는 상황별, 가족 유형별 구분이 상세하게 나타

나 있다. 자녀의 돌봄을 가족이 아닌 국가에서 하게 될 때 만 5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보편적으로 제공하면서도 그 안에서 가족의 상황을 고려한 우선순위가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 나. 가정양육수당 지원

시설보육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아동은 가정양육수당 지원을 받는다. 가정양육수당 지원 대상은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84개월 미만 전 계층 아동’(보건복지부, 2017c, p. 327)이다.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에서 월령에 따라 해당하는 지원금액을 받게 된다. 단 장애아동 양육수당과 농어촌양육수당은 월령에 따른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두고 지원한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현금지급 방식으로 해당 아동, 또는 영유아보육사업의 가구원에 포함되는 부모 등의 명의로 된 계좌로 입금 이 된다.

보육료 지원 내용에 있어서는 종일반과 맞춤형 구분으로 인해 가족 유형에 대한 증명을 통해 돌봄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가족을 기준으로 종일반 서비스가 제공되었다. 이로 인해 사업 내용 안에 가족 유형에 대한 구분과 가족 환경에 대한 상세한 조건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가정양육수당은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이 대상이기 때문에 가족 유형 등에 대한 구분 없이 아동의 월령에 따라 수당을 달리하며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가정양육수당은 여러 형태의 양육방식 중 하나로 가족 내에서의 양육을 최선으로 생각하고 그 선택을 했을 때, 그에 대한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기능을 한다. 하지만 가족의 환경에 따라 가정양육에 대한

자율적인 선택이라기보다 수당에 대한 선택이 되는 가족 상황도 존재한다. 즉 가족 양육기능에 대한 탈가족화를 택한 가족과의 형평성을 맞출 수 있는 제도인 동시에 환경에 따라서는 가족의 돌봄기능이 유지될 수밖에 없도록 유인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 2. 아이돌봄 지원사업<sup>27)</sup>

「아이돌봄 지원법」의 목적은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이다(여성가족부, 2017, p. 9).

### 1) 지원 내용 및 대상

취업 부모의 야근이나 출장 등으로 발생하는 양육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 12세 이하 아동에 대해 아이돌보미가 가정에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만 3개월에서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과 만 3개월 이상에서 만 36개월 이하 영아에 대해서는 영아종일제 돌봄을 제공한다. 취업 한부모, 장애부모,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에 대해서는 소득에 따라 차등적인 정부지원이 이루어지고,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가정은 본인부담으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여성가족부, 2017, pp. 11-13). 즉 정부지원은 기본적으로 부모의 취업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하느냐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소득기준이 충족돼도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가정에 대해서는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한부모가족인 경우 취업가족에 대해서 정부지원 자격이 있고, 부

27) 여성가족부. (2017)의 '2017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의 내용임.

모가 모두 있는 가정에서는 부모 모두가 자녀를 돌볼 수 없는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경우이면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양육공백 인정 가정을 보면, ①취업 한부모, 맞벌이 가정 ②장애부모 가정 ③다자녀 가정(부모 모두 비취업인 경우는 지원 제외) ④기타 입원, 학업, 출산 등의 이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양육 부담 가정이 우선적으로 대상이 된다. 단 다자녀 가정과 기타 양육부담 가정은 ‘부모 모두 비취업 등으로 아동 양육이 가능한 경우는 정부지원 대상에서 제외’(여성가족부, 2017, p. 27)된다. 상세한 구분과 조건은 아래 표에 제시되어 있다.

〈표 4-14〉 아이돌봄 지원사업 정부지원 자격 구분

구분	기준
취업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①사별, 이혼, 유기된 자 ②근로능력 상실자(20세 미만 중·고교생, 3급 이상 상이등급 보유 국가유공자, 장기요양 1~5급,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 ③미혼모·미혼부 ④배우자 생사불명자 ⑤가정폭력에 의한 가출자 ⑥군복무자 ⑦장기복역자 등
	조손가족
맞벌이 가족(취업증빙)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농·어업인
	기타
다자녀 가정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만 36개월 이하 아동 2명 이상
	중증(1~3급) 장애아 자녀를 포함하여 아동 2명 이상 양육(비장애아에게 돌봄 제공)
장애부모 가정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기타 양육부담 가정	장기부재·입원 등
	학교 재학
	취업 준비
	모(母)의 출산

자료: 여성가족부. (2017). 2017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정부지원 자격 여부 입증서류 및 확인 방법’의 일부(pp. 23-25)와 ‘정부지원이 가능한 양육공백 가정 기준’ 중(p. 27).

## 2) 신청권자

본 지원의 신청권자는 아동의 부모, 양육권자로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함께 거주하는 아동 부모 또는 실양육자’이다. 대리 신청의 경우는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의 등본, 취업 증빙자료 등이 필요하고 본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신청인 명의로 된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여성가족부, 2017, p. 22). 본 서비스에 대한 대리 신청인은 가족이나 혈연관계로 한정지어져 있지는 않다.

## 3) 가구원 수 산정

본 사업 중 정부지원 유형은 가구원수별 소득기준에 따라 가·나·다형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기준을 충족했을 때 지원이 이루어진다. 여기서 필요한 가구원 수 산정 시 그 범위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아동의 2촌 이내의 혈족,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여성가족부, 2017, p. 30)이다.

# 3. 초등돌봄교실

## 1) 지원 내용

초등돌봄교실은 ‘별도 시설(전용 또는 겸용 교실 등)이 갖추어진 공간에서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규수업 이외에 이루어지는 돌봄 활동’이다(방과후학교 포털시스템 홈페이지; 한국교육개발원, 2017, p. 3).

## 2) 지원 대상

초등돌봄교실 대상은 오후돌봄과 저녁돌봄에 대한 대상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오후돌봄 대상은 ①‘1~2학년은 기구축된 돌봄교실에서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 등의 돌봄이 꼭 필요한 학생’ 이고, ‘다만 시·도 및 학교 여건에 따라 담임 등이 추천한 학생(예, 일시적 실직, 일시적 경력단절 등으로 구직 중인 가정의 자녀 등)도 포함한다.’ ②‘1~2학년 학생을 수용한 후, 추가 수용이 가능한 경우 3학년 이상은 학교 여건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수용한다’. 여기서 우선순위는 예를 들어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 등의 자녀 중 2016년 오후돌봄 참여 학생, 저학년 우선, 저녁돌봄 참여 여부, 방과후학교 참여 여부 등’으로 결정한다. 그리고 저녁돌봄 대상은 ‘오후돌봄에 참여한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 등의 추가돌봄이 필요한 학생’이다(방과후학교 포털시스템 홈페이지; 한국교육개발원, 2017, p. 4).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은 ‘방과 후에 돌봄이 필요한 3~6학년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 등의 학생 중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1~2개 이상 참여하면서, 오후돌봄교실을 이용하지 않는 학생 등’이 대상이고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돌봄활동’을 의미한다(방과후학교 포털시스템 홈페이지; 한국교육개발원, 2017, pp. 3-4).

초등돌봄에서는 돌봄 공백이 있을 수 있는 가구 유형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정 가족에 대해서는 한부모가족이 대상에 포함되어 자녀 돌봄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제3절 일가족 양립 영역

일가족 양립 제도는 사회성원들이 노동시장에 충분히 참여할 수 있게 됨으로써 수입을 창출하고 사회에 충분히 참여하고, 동시에 자녀를 잘 양육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일과 가족생활의 균형 있는 조화를 촉진하고, 성평등한 고용기회를 확대하는 모든 ‘가족 친화적 정책’(OECD, 2002; 홍승아, 류연규, 김수정, 정희정, 이진숙, 2008)을 제도로 규정한 것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제도를 중심으로 하는 ‘모성보호 제도’를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도 부성이라는 관점에서 모성보호 제도의 중요한 내용으로 검토되고 있고, 유산 및 사산 휴가 역시 모성보호 측면에서 출산전후휴가에 준해서 검토할 수 있다. 또한 근로시간 유연화를 위해 도입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실제로 육아휴직제도와 연계하여 운영되는 점을 고려하면 일가족 양립 제도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일가족 양립 제도는 가정이라는 영역과 직장이라는 영역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가족정책과 직접적 관련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용과 노동의 영역과도 연계되어 있다. 특히 일가족 양립 제도는 가족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본 연구의 관점에서 중요한 함의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 1. 모성보호 제도 및 배우자(남편) 출산휴가<sup>28)</sup>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해 여성이 이용할 수 있는 휴가제도는 모성보호 제도로 출산전후휴가와 유산·사산 휴가를 포함하고 있고, 출산 시 남성 배우자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로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있다. 이상 세 가지 휴가에 대해 살펴본다.

### 가. 출산전후휴가

#### 1) 제도의 내용

출산전후휴가는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 임신부의 건강을 보호할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도입 당시부터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전후휴가를 통해 60일의 유급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이 조항은 「근로기준법」에 의무조항(‘주어야 한다’)으로 명시하고, 급여를 사용자가 지급하게 함으로써 사용자에게 강력한 의무를 부담하게 하였다(고용노동부, 2017, p. 10; 「근로기준법」 제74조).

출산전후휴가는 2001년에 중요한 변화를 겪는다. 국제노동기구(ILO)가 1952년에 처음 채택한 모성보호 협약과 권고를 2000년에 개정 채택(협약 183호, 권고 191호)하여, 출산휴가를 12주에서 14주로 연장하고 반드시 산후 6주의 휴가를 보장해야 하며, 급여는 이전 여성 임금의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하고, 재원은 사회보험 또는 공적자금으로 하여 사용자가 개인적으로 책임지지 않도록 한 것이다. 2001년 우리 정부도 국제

28) 모성보호제도 내용은 ‘2017년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업무편람’(고용노동부)의 내용과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의 내용임.

노동기구의 협약 개정 내용을 일부 반영하여 2001년 8월에 휴가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였으며, 연장한 30일분의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도록 하였다(고용노동부, 2017, p. 10; 고용보험 홈페이지).

2006년 출산전후휴가는 다시 한 번 중요한 변화의 계기를 맞는다. 2005년에 저출산 현상이 본격화되면서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게 된다. 2005년에 합계출산율이 1.08을 기록하면서 전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받게 되고, 정부는 2006년에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면서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하였다. 이 기본계획을 계기로 출산전후휴가가 가족지원의 중요한 제도적 장치라고 인식한 것이다.

2006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출산전후휴가가 포함되면서, 제도의 실질적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우선지원 대상 기업의 경우 90일 전체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하도록 변경하였다. 제도의 큰 틀은 대체로 이 시기 완비되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출산전후휴가의 총기간은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로 규정하고 있고, 사용자가 반드시 주어야 하는 의무 휴가로서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전체 90일의 휴가기간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60일 동안은 사업주가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용노동부, 2017, p. 16).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급여 지급뿐만 아니라 「고용보험법」에 따른 급여지원제도도 도입되어 있다. 우선지원 대상 기업의 경우 90일 전 기간에 대해 상한 150만 원까지 고용보험기금에서 급여를 지원한다. 우선지원 대상 기업이 아닌 대기업의 경우 마지막 30일분에 한해 고용보험기금에서 급여를 지원하며 상한액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우선지원 대상 기업은 최초 60일 동안 출산전후휴가 이용 근로자의 통상임

금이 1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만 부담하면 된다. 대규모 기업의 경우는 최초 60일 동안은 통상임금 전액을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한다. 우선지원 대상 기업과 대기업 모두 마지막 30일분에 대한 급여 부담은 없으며, 고용보험기금에서 150만 원 상한까지 근로자의 임금을 보전해 준다(고용노동부, 2017, p. 16).

## 2) 지원 대상 및 신청권자

출산전후휴가의 대상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이다(고용노동부, 2017, p. 11).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의무조항으로 취업한 근로자가 출산하는 경우라면 고용보험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제도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즉 고용보험 적용 제외 근로자 및 적용 제외 사업장의 경우도 출산전후휴가 90일을 이용할 수 있다. 고용보험 적용 근로자나 사업장 근로자의 경우는 당연히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휴가 기간 중 급여는 최초 60일 동안의 통상임금을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서 말하는 우선지원 대상 기업인 경우 90일 동안, 대규모 기업의 경우 마지막 30일 동안 고용보험 기금에서 상한 150만 원까지 급여를 지원한다. 고용보험 기금에서 급여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만약 고용보험 적용 제외 근로자 및 적용 제외 사업장의 경우 고용보험 기금의 급여 지원이 불가능하며 최초 60일 동안만 사업주가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용보험 홈페이지). 고용보험 적용 근로자 및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휴가를 이용하려면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하여 이용하여야 한다. 고용보험 적용 근로자와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은 법을 위반한 것으로

차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급해서라도 가입해야 차별을 면할 수 있다. 따라서 법을 위반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 또는 사업장이 라면 이 제도를 이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출산전후휴가 신청을 위해서는 신청서(별지 제105호 서식)를 작성하여 본인이 직접 혹은 대리인이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혹은 인터넷을 통한 신청이 가능하다(고용노동부, 2017, p. 46).

출산전후휴가는 기본적으로 근로자라는 자격에서 출발하고, 급여 지원을 위해서 고용보험 가입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제도에서 기본적으로 가족을 전제하지는 않지만 출산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주민등록등본 등 근로자와 자녀의 관계 또는 임신 사실의 증명이 필요하다.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는데, 휴가 종료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서 신청할 경우 신청기간 연장 사유를 적어야 하며 연장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의 내용 중에는 본인·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비속의 질병·부상이 포함된다. 이때 법적으로 배우자 관계와 직계존비속 관계가 증명되어야 한다(고용노동부, 2017, p. 3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4조; 고용보험 홈페이지). 따라서 출산전후휴가에서 증명이 필요한 가족관계는 혈연관계를 전제하는 모자 관계와 법적 혼인에 따른 배우자 관계, 그리고 직계존비속 관계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나. 유산·사산 휴가

### 1) 지원 내용

2006년 출산전후휴가와 같은 시기에 유산·사산 휴가가 새롭게 도입되었고 사회보험에서 급여를 지원하기 시작하였다(고용노동부, 2017, p.

46). 「근로기준법」의 출산전후휴가와 같은 조항에 유산·사산 휴가가 규정되어 있다. 유사산휴가의 도입은 모성 건강 차원에서 유산·사산을 출산과 같은 개념으로 보호할 필요성을 제도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모성의 범위를 확장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유산·사산 휴가의 경우 휴가기간은 유산·사산 시점의 임신 주수에 따라 다르다. 임신 11주 이내의 경우는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임신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는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임신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는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임신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는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임신 28주 이상인 경우는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다(고용노동부, 2017, p. 2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

급여는 출산전후휴가와 마찬가지로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사업주가 통상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고용보험 기금에서 지원되는 급여지원 내용은 출산전후휴가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용노동부, 2017, pp. 25-26; 「근로기준법」 제74조).

## 2) 지원 대상 및 신청권자

유산·사산 휴가의 대상은 ‘유산·사산한 여성 근로자’이다(고용노동부, 2017, p. 21). 이 또한 「근로기준법」에 따른 의무조항으로 취업한 근로자가 유산·사산한 경우라면 고용보험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제도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즉 출산전후휴가와 같이 고용보험 적용 근로자나 사업장 근로자의 경우는 물론이고, 고용보험 적용 제외 근로자 및 적용 제외 사업장의 경우도 유산·사산의 경우 임신 주수에 따라 정해진 휴가기간을 이용할 수 있다.

출산전후휴가와 달리 유산·사산 휴가는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부여되는 휴가로, 근로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이를 부여하지 않아도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용노동부, 2017, p. 21). 유산·사산 휴가 신청을 위해서는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급여 신청서(별지 제105호 서식)를 작성하여 출산전후 휴가급여 신청과 동일하게 신청이 가능한데, 이때 유산이나 사산을 한 것에 대한 증명을 위해 임신기간이 적혀 있는 유산이나 사산에 대한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고용노동부, 2017, pp. 46-47).

유산·사산 휴가도 출산전후휴가와 마찬가지로 신청이 휴가 종료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서 신청할 경우 신청기간 연장 사유를 적어야 하는데, 앞서 살펴본 출산전후휴가와 같이 본인·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비속의 질병·부상이 연장 사유로 인정되는 내용들에 포함(고용노동부, 2017, p. 3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4조; 고용보험 홈페이지)되어 있고 이러한 경우 관계 증명이 필요하다.

## 다. 배우자 출산휴가

### 1) 지원 내용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는 2008년에 최초로 3일 무급휴가로 도입되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제1항). 출산전후휴가는 여성에게 주어지는 제도적 보호 장치로 상대적으로 오래된 제도였으나, 이전까지는 출산 시 가족 돌봄에 남성의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 시 남성의 가족 돌봄을 제도적으로 보장한 최초의 제도로, 남성 근로자가 가족 돌봄에 참여할 기

회를 보장하는 일가족 양립 제도라고 할 수 있다.

2008년 최초 무급 3일로 도입된 이후, 2012년 8월 이후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는 3일에서 5일로 확대되었고, 당초 무급 3일이던 것이 유급 3일에 무급 2일로 확대 시행 되고 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제1항).

## 2) 지원 대상 및 신청권자

배우자 출산휴가는 취업한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에 이용할 수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3일 유급조항을 두고 있기 때문에 급여 지급의 의무는 사업주에게만 있고, 고용보험의 급여지원이 없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 자격을 따지지 않는다. 따라서 취업자라는 자격 외의 다른 자격 제한은 두지 않고 있다.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남편)의 배우자(아내)가 출산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법적인 배우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나, 법조항에서 서식이나 제출서류에 대해 규정은 없다. 사업체별 내규를 따를 것으로 보이며 배우자 관계에 대한 법적 자료 제출이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 2.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앞서 살펴본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를 포함하는 모성보호제도 한 축과 함께 중요한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는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있다.

## 가. 육아휴직

### 1) 제도 내용

정부는 근로자가 고용을 유지하면서 일정 기간 자녀 양육을 위해 휴직할 수 있는 제도로, 근로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육아휴직을 도입하였다(고용노동부, 2015).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당시 육아휴직제도가 도입되었으며, 도입 당시에는 생후 1년 미만의 영아가 있는 여성 근로자만 사용할 수 있었고, 급여는 지급되지 않았다(고용노동부, 2017, p. 94).

출산전후휴가제도와 마찬가지로 2001년 모성보호제도 개선을 계기로 육아휴직의 경우도 고용보험에서 급여지원을 시작하였다.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이용자에게 월 20만 원씩 정액으로 지급하기 시작하였다(고용노동부, 2017, p. 94).

2006년 정부가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 당시 일·가정 양립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육아휴직 이용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자 하였다(대한민국정부, 2006). 이런 정책 방향에서 육아휴직 대상 아동 연령을 만 1세에서 만 3세로 확대하였고, 2007년에 급여를 정액 40만 원에서 정액 50만 원으로 인상하였다. 2010년에는 다시 육아휴직 대상 아동 연령을 만 3세에서 만 6세까지 재차 확대하였다. 이후 2014년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경우로 확대하였다(고용노동부, 2017, pp. 94-95).

다른 한편 육아휴직제도의 남성 활용률이 낮은 것이 비판의 쟁점이 되면서 육아휴직제도의 개선이 시작되었다. 남성에 대한 관심은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돌봄의 주체가 여성만이 아니라는 주장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 남성의 돌봄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다.

실질적으로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하여 2014년 ‘아빠의 달’이라는 조치가 시행되었다. 육아휴직 특례조항을 신설하여 남성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고자 하였다. 동일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육아휴직을 순차적으로 사용할 경우, 둘째 사용자에게 첫 1개월 동안 당초 통상임금의 40%이던 급여 비율을 100%로 인상하고 상한액을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상향 지급하도록 하였다.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저조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단 1개월이라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경제적 유인을 강화한 조치로 평가할 수 있다. 2016년에 ‘아빠의 달’ 기간이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되었으며, ‘아빠의 달’ 휴직급여 상한액을 첫째자녀뿐만 아니라, 2017년 7월 이후 태어나는 둘째 자녀부터 현행 150만 원에서 200만 원(근로자 평균임금의 70%)으로 50만 원 인상하였다(고용노동부, 2017, p. 95).

현행 육아휴직제도에서 대상 아동의 연령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로 하며, 부모가 각각 1년씩 신청 가능하며 분할 사용도 가능하다. 단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상한액은 1500만 원으로 하고,

하한액은 70만 원으로 한다.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이때의 상한액은 100만 원으로 하고, 하한액은 50만 원으로 한다(고용노동부, 2017, p. 115).

## 2) 지원 대상 및 신청권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9조에 따르면, 육아휴직제도의 적용 대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이며, 이때 자녀는 입양자녀를 포함한다. 그리고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이면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만약 육아휴직 급여를 받지 않는다면 근로자라는 조건만 충족하면 된다(고용노동부, 2017, p. 112).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면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등을 신청서에 적어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해당 자녀의 출생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즉 법적으로 부모자녀 관계를 증명해야 하며, 이때 입양자녀도 포함된다(고용노동부, 2017, p. 10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1조).

만약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이때에는 배우자 관계

를 법적으로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용노동부, 2017, p. 10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또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후 휴직 개시 예정일 전에 법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육아휴직 신청은 취소된다. 법으로 정한 사유란 해당 영유아의 사망, 양자인 영유아의 파양 또는 입양의 취소,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가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는 그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영유아와 동거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육아휴직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고용노동부, 2017, p. 10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모성보호제도에서와 마찬가지로 육아휴직 급여의 신청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천재지변,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부상,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부상 등의 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이에 따르면 배우자 관계 및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관계를 증명해야 한다(고용노동부, 2017, p. 11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4조).

필요한 절차에 따라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같은 자녀에 대하여 신청인이 아닌 부(父) 또는 모(母)가 육아휴직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 및 둘째 이상의 자녀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육아휴직제도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가족관계에 대한 증명이 필요한 경우, 부모자녀 관계(입양자녀 포함), 배우자 관계, 직계존비속 관계가 있을 수 있다.

## 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1) 제도의 내용

자녀 양육기에 경제활동을 유지하면서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점차 발전하고 있다. 육아휴직제도와 함께 운영되고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여기에 해당한다.

2008년에 육아휴직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가 이를 허용할 수 있도록 재량권(‘허용할 수 있다’)을 두어 실효성에 한계를 나타냈다. 2014년에 근로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허용하여야 한다’)이 법제화되었다(고용노동부, 2017, p. 144). 2008년에 도입되었지만 당시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청구권을 법제화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강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박중서, 2017).

이 제도의 개요를 보면,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을 하는 제도’로 ‘지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므로 일·가정 양립과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용노동부, 2017, p. 143).

### 2) 지원 대상 및 신청권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이용 자격은 육아휴직 신청 자격과 동일하다. 즉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자녀 포함)가 있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남녀를 불문한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고용노동부, 2017, pp. 145-146). 대상은 남녀를 불문한 근로자로 설정하였지만, 위에 설명한 이 제도의 개요에서는 특별히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를 달성할 수 있다’고 명시해 놓아 여성이 이 제도의 주 사용자라는 전제가 엿보인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서 가족에 대한 증명이 필요한 경우는 육아 휴직의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요컨대, 부모자녀 관계(입양자녀 포함), 배우자 관계, 직계존비속 관계를 증명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 제4절 소결

본 장에서는 임신 및 출산 영역과 자녀양육 영역의 제도 및 정책에서 나타난 가족의 기준과 다양한 가족에 대한 고려 등의 기준을 가지고 논의하였다. 제3장의 소결에서와 마찬가지로 본 장의 소결에서도 지금까지 점검한 제도 및 정책의 내용에서 본 연구에서 점검하고자 하는 다양한 가족 관련 이슈를 중점적으로 정리한다.

### 1. 제도 검토 내용

#### 가. 임신 및 출산 영역

임신 및 출산 영역에서는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제도’, ‘모자보건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살펴보았다. 각각의 제도 및 사업에서 점검된 내용을 위주로 정리한다.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제도’에서는 건강보험 체납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과 이 제도를 이용하는 데 시작이라 할 수 있는 신청 부분에서 대리 신청이 가능한 자격이 가족으로 한정되어 있는 점이 발견되었다. 자세히 살펴보면,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제도’는 임신이 확진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이면 신청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어 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하다. 하지만 다양한 가족의 상황에 대한 고려가 부족해 보이는 부분은 건강보험에 체납이 6개월 이상이 되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점이다. 또한 본 제도의 지원을 받기 위해 신청을 해야 하는데 임신부 본인의 신청이 어려울 경우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대신해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모든 임신부에게 배우자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상정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는 임신 확인증을 받아서 신청한 후에 이 제도의 이용이 가능한데, 임신 사실이 두렵거나 병원에서 드는 비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에는 임신확인서를 받기 위해 초진을 받으러 가야 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출산은 어떠한 환경에서이든 국가가 확실하게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으로 만들어 나가고 하나의 생명도 소중히 여긴다면 이러한 상황이 흔히 일어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보다는 한 사람도 배제되지 않도록 세심한 부분에 대한 배려와 수정도 동반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는 부분이다.

다음으로는 모자보건사업에 포함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다.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에서는 사업 추진 배경에 청소년산모의 특성을 잘 파악해 두었다. 사회적으로 밝혀지기를 꺼려하는

경우, 부모와 관계가 끊겨 사회적 지지망이 부족한 경우 등으로 인해 산전관리가 매우 미흡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막상 서비스 신청을 본인이 하지 못하는 경우 대신할 수 있는 신청인은 「민법」의 가족 범위 기준에 따라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관계를 증명하면서 신청할 수 있어 사업에서 인지한 청소년산모의 특성을 실제 정책 작용에 반영하고 있지 못한 부분이 있다. 사업 추진 배경과 실제 신청 사이의 괴리를 찾아볼 수 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그 목적에서는 “...임신·출산의 사회·의료적 장애를 제거하고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게 하여 행복한 가정을 영위케 하고 저출산 극복 효과를 달성하기 위함”으로 설정하고 있고, 사업 추진 배경에서도 ‘아이를 원하는 가정이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 출산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의 대상인 난임부부는 ‘법적인 부부’로 그 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자녀를 희망하는 부부를 지원해 행복한 가정을 이어나가게 하는 사업의 필요성과 목적에서 그리는 가족은 법적인 부부가 꾸린 가족이 된다. 단 난임기간 산정에서는 사실혼 기간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난임기간이라는 것은 시술 지원 시에 필요한 정보로 사실혼 관계에서의 임신 시도 인정은 시술비 지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서 신청을 본인이 하지 않을 때에는 난임부부의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가 신청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고, 가족수 산정에서는 대상 부부와 동일 거주지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소득이 있어 별도로 보험료 납부하면 제외)까지 인정하고 있다.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에서는 신생아가 지원 대상이 된다. 중위 소득 180% 이하의 기준 가구 중 혼인신고가 안 된 미혼모 등이 낳은 영아

에게도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어 부모의 혼인관계가 자녀의 지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신생아 주민등록을 완료하기 전에 신청해야 하는 경우, 아버지와 어머니의 거주지가 다르면 어머니의 거주지를 우선으로 한다. 영아의 어머니 거주지상의 관할 보건소를 우선적으로 한다는 것은 모의 출산 사실은 확인이 용이하고 그에 따라 모자(母子)관계 확인이 용이하며 중복 신청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만 미혼부도 현재 자녀의 출생신고가 가능함에도 모의 거주지 우선을 명시한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가족 수 산정 시에는 대상 신생아를 포함해 신생아 부모와 동일 거주지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소득이 있어 별도로 보험료 납부하면 제외)을 포함하게 된다.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의 가족 수 산정에서는 주민등록을 같이하고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 직계존비속을 가족 수에 포함해 주민등록을 같이하고 생계와 주거를 같이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다. 하지만 이 사업에 대한 신청권자를 보면, 대리 신청이 필요할 경우 배우자, 2촌 이내 혈족 또는 직계존비속의 신청이 가능하고, 이마저도 어려운 상황에는 방문간호사, 의료기관, 지인 등의 대리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이는 다른 사업들과 견주어 보면 비교적 넓은 범위까지 지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업 신청 가능자의 범위는 임신부의 다양한 상황들을 고려해 본 사업과 같이 넓은 범위까지 포함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에서 지원 대상은 영아이고, 신청권자는 영아의 부모, 또는 주 양육자이다. 주 양육자는 주민등록등본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친척, 또는 후견인이나 법정대리인, 나아가 사회복지시설장, 위탁가정 위탁모, 관계공무원 등이 신청권자에 포함되어 이 역시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처럼 사업에 대한 신청권자의 범위가 넓은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가족 수 산정에서

는 영아와 영아의 부모, 그리고 영아의 부모와 주민등록을 같이하고,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영아의 2촌 이내 혈족, 직계존비속이 포함되어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에서의 가족 수 산정과 같음을 알 수 있다. 이때 영아의 부모는 사실혼 관계의 부부가 인정된다.

마지막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서는 예외 지원 대상에 특정한 가족 형태가 반영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미혼모 산모, 결혼이민 산모 등은 예외적으로 지원이 되는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임신·출산 지원 중 특정한 가족 형태가 예외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사업임을 알 수 있다. 산모 외의 신청권자는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하는 친족, 후견인 또는 법정대리인으로 그 범위가 비교적 넓다고 할 수 있다. 가구원 수 산정 시에는 신생아와 산모, 사실혼 관계를 포함한 배우자, 산모 또는 배우자와 주민등록 및 건강보험이 함께 등재된 직계혈족과 형제자매가 포함되어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조건은 없고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포함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임신 및 출산 영역의 사업들을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사업 중에서 사실혼에 대한 기준이 있는 사업들이 있었다. 거기에서 나타난 특성은 가구원 수를 산정해 소득요건을 판단할 때에는 사실혼을 인정하고, 부부나 가족이 대상이 되어야 하는 사업에서는 그 대상에서 사실혼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신청권자의 범위에서 가족으로 한정하는 사업과 지인까지 신청이 가능한 사업이 있었는데, 결국 신청 후 바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청 이후 심사나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가족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는 측면에서라도 신청권자의 범위를 가족으로 국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볼 여지가 있어 보인다.

## 나. 자녀 양육 영역

자녀 양육과 관련해서는 ‘보육사업’과 ‘아이돌봄 지원사업’, ‘초등돌봄 교실’에 대해 알아보았다. ‘보육사업’의 지원 대상은 영유아이고 신청권자는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이다. ‘보육사업’에서는 보육료 지원과 양육수당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보육료 지원 내용 중 종일반 보육 서비스 기준에서 특정 가족에 대한 지원을 찾아볼 수 있다. 종일반 보육 서비스 지원을 받을 자격은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에 대한 분류를 통해 부여된다. 돌봄이 필요한 가정은 장애가 있는 가족구성원이 있는 경우, 세 자녀 이상 가구, 육아부담가구, 임신과 산후관리 중인 가구,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가구원의 입원이나 간병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학업 수행 중인 경우, 장기 부재인 경우 등이 해당되고 그 외 기타로는 저소득층과 다문화가정이 종일형 자격 사유에 포함된다. 여기에서 저소득층에 한부모가족이나 보호시설에 입소한 미혼부모 가족이 포함되고 있어 특정 가족이 지원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정양육수당은 가족에서 자녀를 양육할 경우 지원을 받는 내용으로 보육료 지원과 같은 구분은 내용에서 찾아볼 수 없지만, 이 가정양육수당이라는 것 자체가 가족의 양육기능에 대한 가족화를 유지하는 유인으로 작동하기도 한다. 가정양육은 여러 형태의 양육방식 중 하나로 가족 내에서의 양육을 최선으로 생각하고 선택했을 때, 그에 대한 가족의 보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양육기능에 대한 탈가족화를 택한 가족과의 형평성을 맞추게 되는 제도인데 동시에 이 수당이 가족의 돌봄기능이 유지될 수밖에 없도록 유인제 역할을 하는 가족 구조도 있다는 것이다. 즉 가족 상황이 어려운 때에는 이 수당이 가족생활을 유지하는 비용으로 활용되기도 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신청권자는 아동의 부모, 양육권자로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함께 거주하는 아동의 부모나 실양육자이다. 이 사업에 대해 정부지원을 받으려면 정부가 인정한 양육공백 가정의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본 사업은 이 기준에서 특정 가족에 대한 지원 내용을 포함한다. 정부지원 자격에서 미혼부모 가족을 포함한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등 특정 가족에 대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다. 특정 가족 유형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가족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면도 찾아볼 수 있다. 양육자가 한 명인 가족은 갑자기 일이 생겼을 때 자녀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가장 어려운 문제이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이렇게 양육공백이 생겼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매력적인 사업이지만, 사전 예약이 필요해 계획 없이 이용하기가 어렵고, 사전 예약에도 대기가 있을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주말 등 이용 시에는 금액이 평일보다 높아 정부지원 대상인 가족이 주말에 일을 하고자 이 제도를 활용하다 보면 정부지원 금액이 부족하게 되기도 한다. 제도는 이상적이지만 현실에서는 다양한 가족의 니즈(needs)를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초등돌봄교실’에서는 한부모가족이 맞벌이나 저소득층 가정과 함께 돌봄 대상에서 특정 유형의 가족으로 대상이 되고 있다. 하지만 저녁돌봄이 부족해 돌봄교실 이후와 양육자가 일을 마칠 때까지 돌봄 공백을 메꾸기 위해 학원 등 사교육에 의지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

#### 다. 일가족 양립 영역

일가족 양립 영역에서는 모성보호제도 및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일가족 양립 제도는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지위와 고용보험 기금에서 급여지원을 위해 필요한

개인 단위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전제로 설계한 제도이다. 경제활동을 보호하고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써 노동시장 이탈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지위를 유지토록 한다는 기본적 취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제도의 기본 이념이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가족의 범위나 부부의 성역할에 대한 규범이 제도에 반영되고 있기도 하다.

먼저 출산전후휴가는 결과적으로 모자관계가 법적으로 증명되도록 되어 있고, 유산·사산 휴가까지 더해서 모성보호제도는 급여성장 사유에서 가족의 증명이 필요한 상황을 찾아볼 수 있다. 연장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중 본인·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비속의 질병·부상이 포함되어 있어, 법적으로 배우자 관계와 직계존비속 관계 증명이 필요한 상황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 모성보호제도는 출산 혹은 유산·사산한 여성근로자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제도는 준비되어 있지만, 우리 사회의 통념에 강한 영향을 받는 부분과 연관되어 출산휴가 후의 일자리 안정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이다. 만일 혼인하지 않은 여성이 출산휴가를 다녀온 경우 휴가가 단순한 휴가 처리가 아닌 권고사직 등으로 이어지는 등, 전통적인 사회적 통념에서 벗어났다고 간주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보호제도가 있어도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지 않은 경우를 찾아볼 수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의 대상은 배우자가 출산을 한 남성근로자로 이때 법적 혼인에 따른 배우자 관계일 것으로 생각되지만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공통적으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로 부모-자녀 관계 증명이 필요하고 입양자녀를 포함하고 있다. 육아휴직 변경 신청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연기 신청은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가 해당되고, 신청 철회 상황은 해당 영유 사망, 양자인 영유아의 파양 또는

입양 취소,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가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할 수 없는 경우가 포함된다.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 연장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는 모성보호 제도에서와 같이 연장 사유 중 본인·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비속의 질병·부상이 포함되어 있어, 법적으로 배우자 관계와 직계존비속 관계 증명이 필요하기도 하다. 육아휴직제도에서 다양한 가족의 상황이 고려되어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한 제도이기는 하지만 양육자가 한 명인 가족은 돌봄을 택했을 때 생기는 소득공백 격차가 커진다는 한계가 있다.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주체가 한 명인 구조의 가족에서는 그 한 사람이 일을 하게 되면 맞벌이 부부와 동일한 돌봄 공백이 일어나지만, 소득은 맞벌이 부부의 수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겉으로 드러나는 상황은 맞벌이 부부와 같지만 돌봄이 가능한 성인이 한 명인 가족 형태에서는 수입 부족 또는 시간 부족을 동시에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더욱 쉽게 일어나는데 이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부족하다 할 수 있다.

일가족 양립 영역에서 살펴본 제도를 전반적으로 보면, 지원 대상과 자격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가족의 범위는 「가족관계등록법」과 「민법」의 친족체계에 기반을 두고 있다. 「가족관계등록법」의 배우자 관계, 혈연에 기초한 부모자녀 관계와 입양에 따른 부모자녀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가족의 다양성 차원에서 형태적으로 입양에 따른 부모자녀 관계의 인정과 파양 및 입양 취소에 따른 가족관계 해체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또한 이혼 및 재혼 등과 같은 혼인관계의 변화도 고려하고 있다. 육아휴직제도에서 이혼 등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을 법규에 반영하고 있는 점도 주목할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현 「주민등록법」에서 반영하고 있는 부모자녀 관계의 비혈연관계와 이혼 및 재혼과 같은

혼인관계의 변화는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성역할 변화를 일부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도입한 점은 남성의 가족 내 돌봄 책임을 제도화한 것으로 전통적 성역할의 개념을 벗어나 양성평등적 가족 돌봄 책임 규범이 제도화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육아휴직제도에서 ‘아빠의 달 인센티브’ 도입 역시 남성의 성역할 변화를 제도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가족관계와 직접 관련은 없지만 출산전후휴가와 함께 유산·사산 휴가가 제도화된 점을 고려하면 모성의 범위가 확장된 것으로 긍정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한부모가족에 대한 고려는 아직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일가족 양립 제도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돌봄 시간을 보장하고, 휴가·휴직 기간의 가구소득을 보전해 주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는 가족 형태상 배우자가 부재한 상황에 대한 고려가 충분하지 않다. 변화된 성역할 규범을 제도가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부재한 상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배우자 출산휴가나 ‘아빠의 달 인센티브’ 제도가 가족 돌봄에 배우자의 참여를 강화하려는 조치라면, 상대적으로 배우자가 부재한 경우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 또한 고려해야 할 것이다.

## 2. 심층인터뷰를 통한 검토 내용

임신과 출산 측면에서는 앞서 제도 분석 시 사례로 제시되었던 국민행복카드와 건강보험료와의 관계에 대한 내용 외에, 심리적인 안정에 대한 사례가 있다. 제3장 건강 영역에서 심리상담 등이 필요한 가족에 대해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언급했는데, 임신한 동안 남성이 떠나 혼자 임신기간을 거치고 출산을 하게 되는 경우는 더욱 심각한 우울을 경험하기도 한

다. 이럴 때 심리지원과 함께 도움을 어디에 요청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사회적으로 널리 공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너무 힘들어도 전화할 데도 없고…그때 핸드폰이 정지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119에 진짜 전화해서 지금 너무 힘든데 말할 사람이라도 필요할 것 같다 그랬더니 그러면 어디 연락해서 해 봐라 해가지고 다른 그쪽 직원 분들이랑도 얘기하고.”(B5)*

양육 측면에서는 자녀를 돌봄에 있어서 가족 내 성인이 두 명이 아닌 상황 자체에서 오는 어려움이 있어 보였다. 아이돌봄지원사업과 같은 경우는 양육공백이 생겼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자녀 양육을 할 수 있는 성인이 가정에 혼자인 경우는 더욱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생각된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돌봄이 필요할 때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물론 시스템이 원활히 운영되기 위해서 계획이 필요하지만, 양육 시 급한 일은 대부분 갑자기 발생하고 그러한 상황에서 양육자가 혼자인 가족에게는 난감한 상황들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것도 며칠 전에 미리 해야 돼요. 급하게 아침에 할 수 없어요… 소득도 따지고… 급하게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얘기를 엄마들하고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그렇게 있었으면 정말 좋겠다.”(B1)*

*“돈을 내더라도 고정적이고, 충분히 자기가 쓸 수 있는 만큼의 시간을 쓸 수 있으면 좋는데 그런 것 자체가 사실 힘들어서. 저희 엄마들 보면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그렇게 이용하시는 분은 많지 않더라고요.”(A6)*

*“한 달 스케줄을 미리 알려줘야 되고 그 한 달 스케줄을 알려준다고 해도 사람이 없어서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확정짓지 않은 이상은 저도 일을 못 하잖아요.”(B6)*

따라서 현재 존재하는 제도를 어떤 상황을 가진 가족이든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또는 제도에서 선택의 폭을 넓히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국가가 도움은 많이 주고 있다고 생각해요...그런데 보육 면에서 폭이 좀 넓은 면...제가 원할 때 맡길 수 있고, 급하게 막 내 시간에 쫓들려가지고 내가 할 걸 못 해가면서 해야 되니까. 그게 좀...일을 나가야 되는데 상황이 이래서 맡길 데가 없어서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B4)*

일가족 양립 제도는 그 자체가 맞벌이 부부를 전제로 하는 내용들이 있어 가족 안에 부부가 없는 경우는 이 제도에서 배제되어 있는 듯한 경우도 있다. 본인이 육아휴직을 하면 생계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경우에는 제도를 활용할 계획이나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경우를 찾아볼 수 있다.

*(면담자의 육아휴직을 사용했냐는 질문) “근데, 육아휴직이라는 게 어떨 때 육아휴직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육아휴직에 대해 면담자 설명) 아예 생각도 안 했어요. 애랑 먹고살아야 하니까 그냥 계속 일할 생각만 했죠.”(B4)*

또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대상이지만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견할 수 있다. 출산전후휴가는 일하는 여성이 출산을 하면 대상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직장에서는 출산휴가 시에 생기는 업무 공백 등으로 여성 근로자의 출산을 모두 동일하게 바라보는 환경은 아닐 수 있다. 출산휴가 후 이어지는 육아휴직 등도 고려해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사업주나 직장상사 등으로 인해 제도가 있지만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혼인한 여성이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것과 혼인

하지 않은 여성이 사용하는 것을 바라보는 시선은 더 큰 차이를 보인다.

*“직장에서 휴직, 출산 제도가 안 되고 권고사직이 되고...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권고사직이 되는 거죠.” (질문)회사 입장에서는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 휴가를 가나 결혼해서 가나 똑같지 않나요? “그렇게 따지면 제가 미혼인 채로 애를 낳으면 우리 부모님 입장도 똑같아야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성 순결주의도 있고....”(A5)*

이러한 시선 자체로 인해 가족의 형태에 따라 제도 활용에 이중 제약이 가해지고 있는 상황임을 짐작할 수 있다.



제 5 장

## 다양한 가족에 대한 문화적 수용 환경

제1절 혼인 관련 인식

제2절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인식

제3절 가족 관련 전통적 이념에 대한 인식



# 5

## 다양한 가족에 대한 문화적 << 수용 환경

본 장에서는 혼인에 대한 인식 변화, 다양한 가족, 그리고 전통적으로 한국의 가족과 관련된 일반 국민의 인식을 알아보고자 한다. 국민들이 가진 인식은 문화의 근간으로 이해될 수 있고, 이 문화는 거시적인 개념에서의 제도에 포함된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비공식적인 제도인 문화적인 측면에서 우리 사회가 다양한 가족을 수용하고 있는 정도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그동안 공개된2차 자료들과 본 연구에서 실시하는 국민인식조사를 통해 다양한 가족에 대한 문화적 수용성을 알아본다.

### 제1절 혼인 관련 인식

앞서 논의했듯이 우리나라의 혼인에는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리고 혼인 상태의 변화로 인한 가족의 변화도 꾸준히 이어져 왔다. 그렇다면 그러한 변화들이 일어난 것과 연관지어 과연 국민들의 혼인에 대한 생각은 또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한국 사회에서 결혼과 관련된 생각 또는 문화가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2006년부터 2016년까지 10년 사이 일반 국민 생각의 변화를 살펴 보았다. 2006년에는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견해가 25.7%로 4분의 1 이상이 결혼을 필수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결혼을 하는 것이 좋다는 견해도 42.0%로 두 견해를 더해보면 결혼에 대해 총 67.7%, 과반을 훨씬 넘어서는 수준으로 결혼은 해야 하는 것이라는 견해가 강했다. 그러나 2016년에는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비율은 12.5%, 하는 것이 좋

다는 견해는 39.3%로 변화하였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결혼을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는 견해가 2006년에 27.5%에서 2016년에는 42.9%로 크게 상승해 결혼에 대한 견해에서 결혼은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는 견해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즉 결혼이 선택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1〉 ‘결혼’에 대한 일반 국민의 견해(2006~2016)

(단위: %, 명)

구분	반드시 해야 한다	하는 것이 좋다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하지 말아야 한다	잘 모르겠다	계(명)
2016	12.5	39.3	42.9	2.5	0.6	2.2	100.0(38,552)
2014	14.9	41.9	38.9	1.6	0.4	2.2	100.0(37,243)
2012	20.3	42.4	33.6	1.5	0.3	1.9	100.0(36,888)
2010	21.7	43.0	30.7	2.8	0.5	1.3	100.0(36,846)
2008	23.6	44.4	27.7	2.4	0.5	1.4	100.0(42,473)
2006	25.7	42.0	27.5	1.8	0.4	2.6	100.0(67,856)

주: 1) 2006~2010년 조사의 대상은 만 15세 이상, 2012년부터는 만 13세 이상 인구임.

2) 계(명)는 조사 응답자 수이며, 항목별 각 수치는 가구원 승수를 적용한 결과임.

자료: 통계청. (각 연도), 사회조사 원자료 분석.

결혼이 이제 선택이지 더 이상 필수적이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그렇다면 이혼에 대해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혼에 대한 생각은 ‘경우에 따라 이혼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견해가 가장 많았고, ‘이유가 있으면 이혼을 하는 것이 좋다’는 견해에 동의하는 비율은 10년 동안 두 배 가까이 상승하였다.

2006년과 2016년을 비교해 보면, ‘어떤 이유라도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는 19.5%에서 9.5%로, ‘이유가 있더라도 가급적 이혼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견해는 40.4%에서 30.0%로 이혼에 부정적인 견해들은 10년간 각각 약 10%포인트 정도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경우에 따라

이혼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견해는 2006년 30% 미만에서 2016년에는 40% 이상으로 그 비율이 높아졌고, ‘이유가 있으면 이혼을 하는 것이 좋다’는 견해는 2006년 7% 미만에서 2016년 현재는 14%로 그 비율이 두 배 이상 높아졌다. 이 두 견해를 더해 이혼을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의 변화로 생각해 보면, 2006년 총 36.2%에서 2016년 57.1%로 이제는 일반 국민의 과반 이상이 이혼은 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2〉 ‘이혼’에 대한 일반 국민의 견해(2006~2016)

(단위: %, 명)

구분	어떤 이유라도 이혼해서는 안 된다	이유가 있더라도 기급적 이혼해서는 안 된다	경우에 따라 이혼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유가 있으면 이혼을 하는 것이 좋다	잘 모르겠다	계(명)
2016	9.5	30.0	43.1	14.0	3.4	100.0(38,552)
2014	11.3	33.1	39.9	12.0	3.7	100.0(37,243)
2012	13.3	35.4	37.8	10.9	2.7	100.0(36,888)
2010	15.9	40.7	33.4	7.7	2.4	100.0(36,846)
2008	16.8	41.8	31.9	7.1	2.4	100.0(42,473)
2006	19.5	40.4	29.4	6.8	4.0	100.0(67,856)

주: 1) 2006~2010년 조사의 대상은 만 15세 이상, 2012년부터는 만 13세 이상 인구임.

2) 계(명)는 조사 응답자 수이며, 항목별 각 수치는 가구원 승수를 적용한 결과임.

자료: 통계청. (각 연도). 사회조사 원자료 분석.

더욱 상세하게 ‘부부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면 이혼하는 게 낫다’에 대해서 기혼 여성과 미혼 남녀의 생각은 어떠한지 살펴보았다. 부부간의 갈등이 해결이 안 된다는 가정에서는 대부분 이혼에 찬성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기혼 여성과 미혼 남성, 그리고 미혼 여성 중 이 의견에 대해 찬성하지 않는 비율은 미혼 남성이 가장 높았다. 동 의견에 대해 기혼 여성과 미혼 여성은 비슷한 비율로 찬성하고 있으나, 전적으로 찬성하는 비율과 별로 찬성하지 않는 비율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여 기혼 여성의 경우 자녀 및 가정 유지에 대한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한 응답의 결과로 미혼

여성보다는 이혼에 찬성하지 않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표 5-3〉 ‘부부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면 이혼하는 게 낫다’에 대한 유배우 여성(15~49세)과 미혼 남녀(20~44세)의 태도

(단위: %, 명)

구분	전혀 찬성하지 않음	별로 찬성하지 않음	대체로 찬성	전적으로 찬성	계(명)	
유배우 여성	5.7	28.7	53.3	12.3	100.0(11,009)	
미혼	남성	9.2	30.4	47.5	12.9	100.0(1,096)
	여성	5.1	20.7	54.0	20.3	100.0(1,287)

자료: 이삼식, 박종서, 이소영, 오미애, 최효진, 송민영. (2015). 전국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78 〈표 4-8〉, p. 381 〈표 10-27〉 재구성.

자녀가 이혼에 있어 큰 고려 대상인 만큼 자녀가 있어도 이혼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앞선 결과와 비슷하게 ‘자녀가 있어도 이혼할 수 있다’는 견해에 가장 찬성을 하지 않는 그룹은 미혼 남성이다. 그다음이 기혼 여성, 그리고 미혼 여성의 순으로 찬성을 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미혼 여성과 기혼 여성의 차이는 결혼 후에는 자녀와 가족 유지에 대한 고려를 실질적으로 함으로써 나타나는 차이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표 5-4〉 ‘자녀가 있어도 이혼할 수 있다’에 대한 유배우 여성(15~49세)과 미혼 남녀(20~44세)의 태도

(단위: %, 명)

구분	전혀 찬성하지 않음	별로 찬성하지 않음	대체로 찬성	전적으로 찬성	계(명)	
유배우 여성	7.5	31.7	52.6	8.3	100.0(11,009)	
미혼	남성	12.2	37.1	42.3	8.4	100.0(1,096)
	여성	3.7	24.2	57.5	14.6	100.0(1,287)

자료: 이삼식, 박종서, 이소영, 오미애, 최효진, 송민영. (2015). 전국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80 〈표 4-9〉, p. 381 〈표 10-27〉 재구성.

자녀가 있는 경우의 이혼은 그 자녀가 한부모가족에서 생활하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 그렇다면 어머니나 아버지 중 한쪽이 자녀를 양육하는 것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보았다. ‘아버지나 어머니 중 누구라도 혼자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기혼 여성, 미혼 남성, 미혼 여성 모두 동의하는 의견의 비율이 높았다. 미혼 여성과 기혼 여성의 의견 비율은 매우 비슷한데 반해 미혼 남성은 그 의견에 찬성하지 않는 비율이 약 40%로 혼자 자녀를 키우는 것에 대해 가장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앞서 살펴본 ‘자녀가 있어도 이혼할 수 있다’의 견해에서 대체로 찬성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는 견해와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제는 자녀를 혼자서도 잘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자녀가 있어도 이혼할 수 있다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표 5-5〉 ‘아버지나 어머니 중 누구라도 혼자서도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에 대한 유배우 여성(15~49세)과 미혼 남녀(20~44세)의 태도

(단위: %, 명)

구분	전혀 찬성하지 않음	별로 찬성하지 않음	대체로 찬성	전적으로 찬성	계(명)	
유배우 여성	3.7	29.7	56.3	10.3	100.0(11,009)	
미혼	남성	4.1	36.0	51.7	8.3	100.0(1,096)
	여성	2.8	29.3	55.7	12.3	100.0(1,287)

자료: 이삼식, 박종서, 이소영, 오미애, 최효진, 송민영. (2015).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82 〈표 4-11〉, p. 381 〈표 10-27〉 재구성.

결혼은 해야 하는 것, 혹은 하는 편이 좋은 것에서 이제는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은 선택사항이 되었다. 그리고 이혼 또한 되도록 하지 않아야 하는 것에서 경우에 따라 할 수 있는 것으로 변했다. 그렇다면 재혼은 어떠한가. 재혼에 대해서도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라는 견해의 비율

이 가장 높다. 이 견해는 2006년 50% 미만에서 2016년 60% 이상으로 10%포인트 이상 상승하였다. 그리고 또 다른 변화는 재혼을 ‘하는 것이 좋다’는 견해가 2006년 21.4%에서 2016년 13.2%로 그 비율이 하락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결혼에 대한 변화와 비슷한 패턴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과거와 비교해 사회적으로 기혼인 혼인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약화된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표 5-6〉 ‘재혼’에 대한 일반 국민의 견해(2006~2016)

(단위: %, 명)

구분	하지 말아야 한다	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하는 것이 좋다	반드시 해야 한다	잘 모르겠다	계(명)
2016	3.9	12.5	62.3	13.2	1.0	7.2	100.0(38,552)
2014	3.6	11.9	60.0	15.3	1.2	8.0	100.0(37,243)
2012	2.8	10.4	61.1	18.1	1.3	6.4	100.0(36,888)
2010	3.2	10.9	58.0	19.8	1.5	6.8	100.0(36,846)
2008	2.7	12.6	55.0	21.2	1.5	6.9	100.0(42,473)
2006	3.9	11.9	49.9	21.4	1.9	10.9	100.0(67,856)

주: 1) 2006~2010년 조사의 대상은 만 15세 이상, 2012년부터는 만 13세 이상 인구임.

2) 계(명)는 조사 응답자 수이며, 항목별 각 수치는 가구원 승수를 적용한 결과임.

자료: 통계청. (각 연도). 사회조사 원자료 분석.

사별이나 이혼을 한 후 재혼을 하는 것에 대한 견해에서는 미혼과 기혼 간 차이를 볼 수 있다. 사별이나 이혼 후 재혼에 대해 찬성하는 비율이 높다는 점은 동일하나 별로 찬성하지 않는 견해에 대해 기혼 여성은 28.6%의 비율을 보인 반면, 미혼 남녀는 각각 18.9%와 16.2%의 비율로 기혼 여성과 차이를 보인다. 사별과 이혼 후 재혼이라는 질문은 사별을 생각하는 경우와 재혼을 생각하는 경우에 따라 각기 다른 가정을 하고 응답할 수 있기 때문에 기혼과 미혼 사이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표 5-7〉 '사별이나 이혼 후에는 재혼을 통해 새 삶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에 대한 유배우 여성(15~49세)과 미혼 남녀(20~44세)의 태도

(단위: %, 명)

구분	전혀 찬성하지 않음	별로 찬성하지 않음	대체로 찬성	전적으로 찬성	계(명)	
유배우 여성	6.7	28.6	53.3	11.4	100.0(11,007)	
미혼	남성	2.7	18.9	66.8	11.7	100.0(1,096)
	여성	1.6	16.2	64.7	17.6	100.0(1,287)

자료: 이삼식, 박종서, 이소영, 오미애, 최효진, 송민영. (2015).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81 〈표 4-10〉, p. 381 〈표 10-27〉 재구성.

지금까지 결혼과 이혼 그리고 재혼에 대한 생각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이어서 법적 혼인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결혼생활을 해 나가는 동거에 대한 견해를 보면,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비율이 약간 줄어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남녀가 결혼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반대하는 비율은 2008년 28.4%에서 2016년 22.6%로 감소하였다. 전적으로 반대하는 입장과 약간 반대하는 입장을 더해 보면, 2008년 57.7%에서 2016년 52.0%로 아직 과반수 이상은 반대의 입장을 보였지만 점차 반대의 입장이 줄어들고 있는 현상을 볼 수 있다.

〈표 5-8〉 '남녀가 결혼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에 대한 일반 국민의 태도

(단위: %, 명)

구분	전적으로 반대	약간 반대	약간 동의	전적으로 동의	계(명)
2016	22.6	29.4	38.5	9.5	100.0(38,552)
2014	24.0	29.5	38.3	8.3	100.0(37,243)
2012	24.0	30.1	38.2	7.7	100.0(36,888)
2010	27.3	32.2	35.0	5.5	100.0(36,846)
2008	28.4	29.3	36.9	5.4	100.0(42,473)

주: 1) 2008년과 2010년 조사의 대상은 만 15세 이상, 2012년부터는 만 13세 이상 인구임.

2) 2008년 이전에는 해당 문항 부재.

3) 계(명)는 조사 응답자 수이며, 항목별 각 수치는 가구원 승수를 적용한 결과임.

자료: 통계청. (각 연도). 사회조사 원자료 분석.

동거에 대해 기혼자와 미혼자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았는데, 결혼할 생각이 있으면 살아 보는 동거, 즉 결혼을 전제로 한 동거에 대한 견해에서 기혼자는 반대하는 입장이 더욱 많았다. 기혼 여성은 별로 찬성하지 않는다는 입장이 가장 높은 비율을(40.2%) 차지하였고, 이에 반해 미혼 남성과 여성은 대체로 찬성한다는 견해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남: 56.6%, 여: 44.3%), 기혼자와 미혼 인구 사이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특히 미혼 남성의 경우 찬성의 비율이 68.1%로 미혼 여성(51.2%)보다도 눈에 띄게 높아 동거에 대한 개방성이 남성에게서 더욱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5-9〉 ‘남녀가 결혼할 생각이 있다면 먼저 함께 살아 보는 것도 좋다’에 대한 유배우 여성(15~49세)과 미혼 남녀(20~44세)의 태도

(단위: %, 명)

구분	전혀 찬성하지 않음	별로 찬성하지 않음	대체로 찬성	전적으로 찬성	계(명)	
유배우 여성	16.0	40.2	36.1	7.8	100.0(11,009)	
미혼	남성	6.0	25.9	56.6	11.5	100.0(1,096)
	여성	11.4	34.7	44.3	6.9	100.0(1,287)

자료: 이삼식, 박종서, 이소영, 오미애, 최효진, 송민영. (2015).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장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73 〈표 4-4〉, p. 381 〈표 10-27〉 재구성.

결혼을 전제로 한 동거와 달리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은 동거에 대해서는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지 알아보았다. 앞서 결혼을 전제로 한 동거에서 기혼과 미혼 인구 사이에 차이를 보인 것과는 달리, 이 견해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여성은 약 70%가 찬성하지 않는 의견인 데 반해, 남성은 약 50% 정도만 찬성하지 않는 견해를 보였다. 전혀 찬성하지 않는 비율은 기혼 여성이 28.0%로 여전히 동거에 대해 가장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표 5-10〉 '결혼과 무관하게 함께 살 수 있다'에 대한 유배우 여성(15~49세)과 미혼 남녀(20~44세)의 태도

(단위: %, 명)

구분	전혀 찬성하지 않음	별로 찬성하지 않음	대체로 찬성	전적으로 찬성	계(명)	
유배우 여성	28.0	44.8	23.2	3.9	100.0(11,009)	
미혼	남성	11.5	38.4	43.9	6.2	100.0(1,096)
	여성	20.6	49.5	26.4	3.4	100.0(1,287)

자료: 이삼식, 박종서, 이소영, 오미애, 최효진, 송민영. (2015). 전국출산력 및 가족 보전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74 〈표 4-5〉, p. 381 〈표 10-27〉 재구성.

앞의 조사 결과를 통해 동거에 대해서 미혼자보다는 기혼자가, 그리고 남성보다는 여성이 보수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결혼하지 않고 자녀를 가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았다. 동거에 대한 견해보다 높은 비율로 전적으로 반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대의 강도에서 변화가 약간 발견될 뿐, 많은 변화 없이 여전히 반대의 입장이 우세하다. 여전히 편견이 존재하는 사회적인 환경에서 동거 당사자인 성인 남녀는 스스로의 선택에 따른 생활방식으로 그 선택에 찬성하기도 하지만, 자녀에 대해서만큼은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실제로 동거 중이거나 동거를 경험한 참여자의 응답 결과를 제시한 연구에서 혼인신고 없이 임신이나 출산을 계획하지 않는다는 결과와 일맥상통한다(변수정, 김혜영, 백승흠, 오정아, 이재량, 2016).

〈표 5-11〉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에 대한 일반 국민의 태도

(단위: %, 명)

구분	전적으로 반대	약간 반대	약간 동의	전적으로 동의	계(명)
2016	41.3	34.5	19.7	4.5	100.0(38,552)
2014	43.8	33.7	18.7	3.7	100.0(37,243)
2012	43.4	34.2	19.0	3.4	100.0(36,888)
2010	43.3	36.1	17.9	2.7	100.0(36,846)
2008	45.6	33.0	19.1	2.4	100.0(42,473)

주: 1) 2008년과 2010년 조사의 대상은 만 15세 이상, 2012년부터는 만 13세 이상 인구임.

2) 2008년 이전에는 해당 문항 부재.

3) 계(명)는 조사 응답자 수이며, 항목별 각 수치는 가구원 승수를 적용한 결과임.

자료: 통계청. (각 연도). 사회조사 원자료 분석.

동거관계에서 자녀를 가지는 것에 대해 기혼 여성과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함께 살펴보면, 동거관계에서 자녀를 기르는 것에 대해서는 세 그룹 모두 별로 찬성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미혼 남성의 경우는 찬성하는 비율이 약 24%로 기혼 여성이나 미혼 여성에 비해 찬성하는 견해에 대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혀 찬성하지 않는 비율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았고, 그중에서도 기혼 여성이 가장 적극적인 반대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표 5-12〉 ‘결혼하지 않아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에 대한 유배우 여성(15~49세)과 미혼 남녀(20~44세)의 태도

(단위: %, 명)

구분	전혀 찬성하지 않음	별로 찬성하지 않음	대체로 찬성	전적으로 찬성	계(명)	
유배우 여성	38.7	43.2	16.0	2.0	100.0(11,009)	
미혼	남성	27.9	48.2	21.1	2.8	100.0(1,096)
	여성	34.2	48.9	13.9	3.0	100.0(1,287)

자료: 이삼식, 박종서, 이소영, 오미애, 최효진, 송민영. (2015). 전국출산력 및 가족 보전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77 〈표 4-7〉, p. 381 〈표 10-27〉 재구성.

## 제2절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인식

본 절에서는 다양한 가족에 대해 일반 국민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본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69세 이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가족의 문화적 수용성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를 하였다. 조사 대상은 총 1013명으로 행정자치부의 「2017년 7월 말 주민등록인구통계」상 시도별로 20명을 우선 할당한 후 시도, 성, 연령대로 비례 배분을 적용하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pm 3.1\%$ 포인트이다. 조사 방법은 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하여 2017년 8월 28일부터 9월 8일까지 전문 전화면접원이 1:1 전화 조사를 하였다.

〈표 5-13〉 다양한 가족의 문화적 수용성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의 주요 내용

구 분	내 용
가족에 대한 관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생활하는 남녀도 가족이다</li> <li>· 자녀가 있어야만 가족이다</li> <li>· 부모-자녀 사이는 친부모-자녀 사이여야만 가족이다</li> <li>· 다른 인종과도 가족이 될 수 있다</li> <li>· 엄마나 아빠 혼자라도 아이를 기르면서 생활하면 가족이다</li> <li>· 아이가 엄마, 아빠 없이 할머니, 할아버지랑만 생활해도 가족이다</li> <li>· 미성년이라도 아이를 낳아 직접 기르면 가족이다</li> <li>· (배우자나 배우자 가족을 제외하고) 비혈연인 사람도 가족이 될 수 있다</li> </ul>
다양한 가족에 대한 견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 및 응답자의 편견</li> <li>· ‘우리 사회가 다양한 가족보다는 전통가족이 중심이 돼야 한다’ 등의 정도</li> <li>· 고용이나 교육현장, 사회생활 등에서 가족 유형에 따른 차별 금지법의 필요성</li> <li>· 정부 차원의 소득 지원, 건강 지원, 출산 및 양육 지원, 일·가정 양립 분야에 있어서 다양한 가족과 전통가족의 지원 수준</li> </ul>
가족 역할 및 성역할, 전통가족에 대한 견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녀 양육, 부모 부양에 대한 가족과 국가의 분담 수준</li> <li>· 부부 중 가족의 주된 생계 책임 주체</li> <li>· 부모가 모두 있는 가정에서 부부 중 자녀 돌봄 주체</li> <li>· ‘아이는 부모가 모두 있는 가정에서 자라야만 잘 자란다’는 견해에 대한 동의 정도</li> </ul>

구 분	내 용	
응답자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별</li> <li>· 연령</li> <li>· 지역 크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력</li> <li>· 혼인 상태</li> <li>· 자녀 여부</li> <li>· 취업 여부</li> <li>· 가구소득</li> </ul>

조사 결과는 시도별, 성별, 연령별로 2017년 7월 「주민등록인구통계」 분포 반영 후 가중치를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가중치(weighting) 산출 공식은 다음과 같다.

$$W_{ijk} = \frac{N_{ijk}}{n_{ijk}} \times \frac{n}{N}$$

- i: 시/도를 나타내는 첨자(i = 1(서울), 2(부산), ..., 17(제주))
- j: 성별을 나타내는 첨자(j = 1(남), 2(여))
- k: 연령 그룹을 나타내는 첨자(k = 1(19~29세), 2(20대), ..., 5(60대 이상))
- $N_{ijk}$ : i 시/도, j 성별, k 연령 그룹 내의 모집단 인구 수
- $n_{ijk}$ : i 시/도, j 성별, k 연령 그룹 내의 조사된 응답자 수
- n: 조사된 전체 응답자 수
- N: 모집단 전체 인구 수
- $W_{ijk}$ : i 시/도, j 성별, k 연령 그룹 내의 가중치

본 조사를 활용하여 본 절과 다음 제3절을 구성한다. 본 조사 자료의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되, 기존에 실시된 조사 항목들 중에서 다양한 가족과 관련된 결과도 함께 활용한다.

〈표 5-14〉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비율(%)					(명)				
성별	100.0					(1,013)				
남성	50.8					(515)				
여성	49.2					(498)				
연령(만)										
19~29세	19.8					(200)				
30~39세	19.8					(201)				
40~49세	23.2					(235)				
50~59세	22.6					(229)				
60~69세	14.7					(148)				
거주지										
대도시	45.5					(461)				
중소도시	48.0					(486)				
읍면부	6.6					(66)				
교육 수준										
초졸 이하(무학 포함)	2.7					(27)				
중졸	3.9					(39)				
고졸	26.9					(271)				
대학교 졸(재학 포함)	58.2					(587)				
대학원 이상	8.3					(83)				
가구 소득										
200만 원 미만	14.3					(131)				
200만~300만 원 미만	14.7					(135)				
300만~400만 원 미만	18.7					(171)				
400만~500만 원 미만	15.7					(144)				
500만~600만 원 미만	12.0					(110)				
600만~700만 원 미만	6.4					(59)				
700만~800만 원 미만	5.0					(46)				
800만 원 이상	13.2					(121)				
취업 여부										
취업	71.6					(722)				
미취업	28.4					(286)				
혼인 상태										
미혼	25.5					(259)				
결혼생활 중	계	초혼	동거	재혼	이혼 후 동거	계	초혼	동거	재혼	이혼 후 동거
	69.4	93.0	4.0	2.9	0.1	(703)	(660)	(28)	(20)	(1)
이혼·별거	2.9					(29)				
사별	2.2					(22)				

구분	비율(%)	(명)
자녀 수		
0명	32.6	(330)
1명	15.9	(161)
2명	39.6	(401)
3명 이상	11.9	(121)

주: 모름 및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다양한 가족의 문화적 수용성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 1. 가족에 대한 관념

우선 가족에 대한 관념을 알아보았다. 가족의 조건에 대해 여러 항목들을 제시하고 각각에 대해 가족이라고 생각하는지 알아보았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생활을 하는 형태'를 가족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61.7%가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있어야만 가족이다'라는 견해에 대해서는 31.6%만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녀가 없어도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부모와 자녀 사이는 꼭 친부모와 친자녀 사이여야만 하는가'에 대해서도 34.8%만이 동의해 친부모-친자녀 사이만 가족이 아니라는 견해가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다른 인종과도 가족이 될 수 있다'에 대해서는 90.0%가 그렇다고 응답해 외국인과의 가족 구성에 대해서는 비교적 높은 수용을 보였다. 또한 '엄마나 아빠 혼자 아이를 기르는 형태'와 '아이가 부모 없이 조부모와 생활하는 형태'에 대해서도 각각 98.5%와 97.3%로 매우 높은 수준에서 다양한 형태를 가족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미성년자가 자녀를 기르는 형태'에 대해서는 부모 중 한쪽이 자녀를 기르는 경우와 조부모가 손자녀를 기르는 경우보다 가족이라고 보는 비율이 약간 낮은 수준(85.7%)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배우자나 배우자 가족이 아닌 비혈연인 사람들과도 함께 지내면 가족인가'라는 물음

에 79.3%가 동의하는 태도를 보였다.

다양한 조건을 가지고 가족을 생각해 본 결과, 과거 혼인과 혈연, 혹은 가족 안에는 성인인 부모가 모두 존재하거나 한국인끼리의 결혼으로 이루어진 가족 형태가 많았던 우리 사회는 이제 가족 안의 모습이 동일하지 않은 형태도 국민들이 가족으로 인식하는 경우의 비율이 매우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표 5-15〉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조건'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어느 정도 동의한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계	(명)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생활하는 남녀도 가족이다'	17.1	21.2	41.8	19.9	100.0	(1006)
'자녀가 있어야만 가족이다'	45.4	23.1	14.1	17.5	100.0	(1008)
'부모-자녀 사이는 친부모-자녀 사이여야만 가족이다'	40.1	25.1	16.0	18.8	100.0	(1000)
'다른 인종과도 가족이 될 수 있다'	4.8	5.2	31.5	58.5	100.0	(997)
'엄마나 아빠 혼자라도 아이를 기르면서 생활하면 가족이다'	0.6	0.9	17.1	81.4	100.0	(1013)
'아이가 엄마, 아빠 없이 할머니, 할아버지하고만 생활해도 가족이다'	0.7	2.0	14.8	82.5	100.0	(1012)
'미성년이라도 아이를 낳아 직접 기르면 가족이다'	5.1	9.3	24.3	61.4	100.0	(996)
'(배우자나 배우자 가족을 제외하고) 비혈연 사람도 가족이 될 수 있다'	8.6	12.1	38.6	40.7	100.0	(992)

주: 모름 및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다양한 가족의 문화적 수용성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본 연구에서 실시한 조사를 통해 가족에 대한 관념을 알아보았는데, 이미 실시된 다른 조사에서 구체적인 가족 형태를 제시했을 때의 결과가 있어 이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미혼 남녀는 어디까지를 가족으로 생각하

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를 살펴보았다. 입양가족, 미혼한부모 가족에 대해서는 미혼 남녀 모두 높은 비율로 가족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흥미로운 결과는 동거커플에게 자녀가 있을 때, 그리고 동성커플에 대해서도 자녀가 있을 때의 변화이다. 동거커플을 가족으로 생각하는 비율은 약 30% 정도인 데 반해, 자녀가 있는 동거커플을 가족으로 생각하는 비율은 60% 가까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동거커플에 대해서는 미혼 남성(31.5%)이 미혼 여성(26.3%)보다는 높은 비율로 가족 형태 중 하나라고 응답하였고, 자녀가 있는 동거커플도 마찬가지로 미혼 여성(57.7%)보다는 미혼 남성(59.8%)이 가족으로 생각한다는 응답 비율이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즉 여성보다는 남성이 동거커플을 가족으로 인정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동성부부에 대해서 가족으로 생각하는 비율을 보면, 미혼 남성은 16.6%, 미혼 여성은 32.8%로 두 배 가까운 비율 차이를 보였다. 동성부부에게 자녀가 있는 경우 가족으로 생각하는 미혼 여성은 40.4%, 미혼 남성은 23.4%로 나타났다. 동거커플에서와 마찬가지로 자녀가 있는 경우 가족으로 인정하는 비율이 급격히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남성보다는 여성이 전통적이지 않은 형태를 가족으로 인정하는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다. 그러나 동거가족에 대해서는 남성보다 여성이 덜 수용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동거의 결과가 지속적인 가족생활로 이어지지 않고 헤어짐으로 이어지는 부정적인 경우 동거의 결과가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회적인 환경에 따라 여성이 사회적 보호를 더 필요로 하는 연구 결과(변수정, 김혜영, 백승흠, 오정아, 기재량, 2016)와 방향을 같이한다. 이에 따라 동거를 완전한 가족으로 여기는 경향이 남성보다는 여성에게서 부족하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표 5-16〉 '가족에 포함된다고 생각하는 가구 형태'에 대한 미혼 남녀의 태도(중복 응답)

(단위: %, 명)

구분	결혼한 부부+입양 자녀	동거커플	동거커플+ 자녀	미혼부·모+ 자녀	동성부부	동성부부+ 입양자녀	비혈연 가구	명
미혼 남성	95.4	31.5	59.8	62.0	16.6	23.4	7.1	1,096
미혼 여성	97.9	26.3	57.7	71.0	32.8	40.4	9.6	1,287

자료: 이삼식, 박종서, 이소영, 오미애, 최효진, 송민영. (2015).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363-364 〈표 10-17〉 재구성.

## 2. 다양한 가족에 대한 편견

본 연구에서 실시한 조사에서 혼인한 부부와 그 자녀로 이루어진 전통적인 가족 이외의 다양한 가족에 대해 우리 사회가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보았다. 그 결과 전체응답자 중 '전혀 없다'는 입장은 2.0%, '별로 없는 편이다'는 7.5%, '약간 있다'는 40.1%, '매우 많다'는 의견은 50.4%로 나타나 90% 이상의 응답자들이 우리 사회가 다양한 가족에 대해 인식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했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편견이 있다는 의견이 약간 더 많이 나타났다. 거주지별로는 읍면부에서 편견이 없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 교육 수준에 따라서 보면, 최종 학력이 중학교 졸업 이하인 그룹이 다른 그룹, 특히 대학교 졸업 그룹과 비교해 편견이 없다는 견해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양한 가족에 대한 편견이 우리 사회에 '약간 있다'는 비율이 가장 높은 중학교 졸업 이하의 그룹을 제외하고는 다양한 가족에 대한 편견이 '매우 많다'는 견해가 그룹마다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 교육 수준에 따른 차이를 볼 수 있다.

〈표 5-17〉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 수준

(단위: %, 명)

구분	전혀 없다	별로 없는 편이다	약간 있다	매우 많다	계	(명)
전체	2.0	7.5	40.1	50.4	100.0	(1005)
성별( $\chi^2=9.3^*$ )						
남성	1.5	9.4	41.9	47.2	100.0	(507)
여성	2.6	5.5	38.3	53.6	100.0	(498)
연령						
19~29세	2.0	5.1	41.3	51.6	100.0	(199)
30~39세	1.1	6.5	27.9	64.4	100.0	(199)
40~49세	1.8	9.1	33.3	55.9	100.0	(233)
50~59세	1.7	6.6	47.5	44.2	100.0	(227)
60~69세	4.3	10.8	54.4	30.6	100.0	(147)
거주지( $\chi^2=13.0^*$ )						
대도시	1.0	8.1	38.2	52.7	100.0	(459)
중소도시	2.7	6.1	42.0	49.2	100.0	(482)
읍면부	4.5	14.0	39.1	42.4	100.0	(64)
교육 수준( $\chi^2=19.1^*$ )						
중졸 이하	2.8	13.0	53.7	30.4	100.0	(65)
고졸	3.0	9.5	38.8	48.8	100.0	(269)
대학교 졸(재학 포함)	1.5	5.8	39.1	53.6	100.0	(584)
대학원 이상	1.2	9.1	41.5	48.1	100.0	(82)
취업 여부( $\chi^2=1.6$ )						
취업	1.8	7.5	39.3	51.4	100.0	(716)
미취업	2.5	7.7	42.4	47.4	100.0	(285)
혼인 상태( $\chi^2=6.7$ )						
미혼	1.6	4.3	38.9	55.2	100.0	(256)
기혼(이혼, 별거, 사별 포함)	2.2	8.6	40.5	48.7	100.0	(749)

주: 1) \* $p<0.05$ , \*\* $p<0.01$ , \*\*\* $p<0.001$

2)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가지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chi^2$ 값을 제시하지 않음.

3) 모름 및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다양한 가족의 문화적 수용성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객관적으로 보기에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전통가족 형태가 아닌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인식적 편견이 많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그렇다면 응답자 스스로는 자신이 편견이 많다고 생각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물어보았다. 그 결과, 응답자 전체의 55.0%가 본인 스스로는 다양한 가족에 대해 편견이 없다('전혀 없다' 24.0% + '별로 없는 편이다' 31.0%)는 태도를 보였다. 편견이 '매우 많다'는 의견이 5.9%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교육 수준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였는데, 다른 학력과 비교해 대졸 학력에서 편견이 '매우 많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낮게(3.5%) 나타났다. 그리고 혼인 상태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였는데, 다양한 가족에 대한 편견이 '전혀 없다'는 의견에 있어서 미혼 그룹과 기혼그룹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미혼은 30.3%가 편견이 '전혀 없다'고 응답한 반면, 기혼은 21.8%가 '전혀 없다'고 응답해 미혼 그룹이 기혼 그룹보다 본인 스스로 다양한 가족에 편견이 '전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표 5-18〉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응답자의 편견 수준

(단위: %, 명)

구분	전혀 없다	별로 없는 편이다	약간 있다	매우 많다	계	(명)
전체	24.0	31.0	39.2	5.9	100.0	(1004)
성별( $x^2=6.1$ )						
남성	27.3	29.6	37.4	5.7	100.0	(508)
여성	20.6	32.3	40.9	6.1	100.0	(495)
연령( $x^2=19.4$ )						
19~29세	30.2	30.8	36.0	3.0	100.0	(198)
30~39세	23.8	33.8	38.9	3.5	100.0	(201)
40~49세	20.7	34.6	38.7	6.0	100.0	(234)
50~59세	22.3	25.6	43.1	9.0	100.0	(228)
60~69세	23.6	29.8	38.4	8.2	100.0	(143)
거주지( $x^2=11.2$ )						
대도시	21.9	33.1	40.5	4.5	100.0	(457)
중소도시	25.2	28.0	39.3	7.5	100.0	(482)
읍면부	29.5	38.4	28.3	3.9	100.0	(65)
교육 수준( $x^2=18.0^*$ )						
중졸 이하	23.6	30.4	36.3	9.7	100.0	(65)
고졸	24.5	26.1	39.6	9.7	100.0	(267)
대학교 졸(재학 포함)	23.4	33.6	39.4	3.5	100.0	(585)
대학원 이상	26.1	27.9	39.5	6.5	100.0	(82)
취업 여부( $x^2=3.9$ )						
취업	24.7	29.7	40.2	5.4	100.0	(717)
미취업	22.1	34.3	36.3	7.3	100.0	(283)
혼인 상태( $x^2=8.9^*$ )						

구분	전혀 없다	별로 없는 편이다	약간 있다	매우 많다	계	(명)
미혼	30.3	29.9	35.7	4.1	100.0	(257)
기혼(이혼, 별거, 사별 포함)	21.8	31.3	40.3	6.5	100.0	(747)

주: 1) \*p<0.05, \*\*p<0.01, \*\*\*p<0.001

2) 모름 및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다양한 가족의 문화적 수용성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가 생각하는 다양한 가족에 대한 우리 사회의 편견 정도와 본인이 가지고 있는 편견 정도에 대한 결과를 비교해 보았다. 객관적으로 보기에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전통가족 형태가 아닌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인식적 편견이 '있다('약간 있다' 40.1% + '매우 많다' 50.4%)'는 의견이 90.5%인 반면, 본인 스스로의 다양한 가족에 대한 편견을 물었을 때는, 편견이 '없다('전혀 없다' 24.0% + '별로 없는 편이다' 31.0%)'는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의 55.0%로 나타났다. 사회의 편견은 개인의 편견이 더해져서 형성되는 것일 수 있는데도, 다양한 가족에 대한 편견이 우리 사회에는 있다는 의견은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응답자 스스로는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 더욱 많은 것이다. 또한 각각의 물음에 대해 가장 높은 비율의 응답을 보면, 사회적 편견의 정도에 대해서는 '매우 많다'라는 견해가 50.4%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는데, 스스로에 대한 편견의 정도에서는 '약간 있다'는 응답이 39.2%로 가장 높았다.

*"동사무소에 가잖아요. 그러면 되게 귀찮다는 듯이 대해요. ...도시가스 이런 거 신청하면 절감되는 게 있다, 그게 나는 왜 안 되냐 해서 물어보러 갔더니 물어보면 되게 불친절해요. 민망하고, 신청하러 왔다고 하면 조건이 한부모세요? 그러면 수급자인데 그러면 이상하게 쳐다봐요.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주민센터에 가도 담당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그런 것도 있어요."(B3)*

〈표 5-19〉 응답자가 생각하는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본인의 편견 정도에 대한 비교

(단위: %, 명)

구분	전혀 없다	별로 없는 편이다	약간 있다	매우 많다	계	(명)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 수준	2.0	7.5	40.1	50.4	100.0	(1005)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응답자 본인의 편견 수준	24.0	31.0	39.2	5.9	100.0	(1004)

주: 모름 및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다양한 가족의 문화적 수용성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본인은 다양한 가족에 대한 편견이 없는 편이지만,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는 편견이 매우 많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환경에서 다양한 가족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고용이나 교육현장 또는 사회생활 등에서 가족 유형에 따라 차별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았다. 전체적으로 차별금지법이 '매우 필요하다'는 견해가 52.1%로 가장 많았고, '약간 필요하다'(28.5%)는 견해와 더하면, 총 80.6%가 필요성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차이를 보면, 30대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86.1%) 나타나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을 가장 강조하는 연령대로 나타났고, 반면 '필요하지 않다'는 비율은 60대 이상에서 가장 높게(27.0%)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보면, 30세 미만에서는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에 대해 79.4% 정도에서 동의를 보이다가 30대, 40대에서는 각각 86.1%, 82.5% 정도로 그 필요성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었다. 50대에는 필요성에 동의하는 비율이 80.1%, 60대 이상의 연령에서는 73.0%로 약간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 그 필요성에 대해 높은 수준으로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 외에도 교육 수준과 혼인 상태에 따른 의견 차이도 나타났다. 그중 교육 수준에 따라서는 '매우 필요

210 다양한 가족의 제도적 수용성 제고 방안

하다'의 입장에 대해 대학원 이상의 학력에서는 59.8%가 동의한 반면, 중졸 이하의 그룹에서는 40.9%가 동의해 그룹 간 차이를 보였다.

〈표 5-20〉 고용이나 교육현장 또는 사회생활 등에서 가족 유형에 따른 차별을 법적으로 금지할 필요성에 대한 생각

(단위: %, 명)

구분	전혀 필요하지 않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약간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계	(명)
전체	7.5	11.8	28.5	52.1	100.0	(995)
성별( $x^2=2.8$ )						
남성	8.6	12.5	28.7	50.2	100.0	(503)
여성	6.4	11.1	28.4	54.1	100.0	(492)
연령( $x^2=33.0^{***}$ )						
19~29세	4.9	15.7	36.4	43.0	100.0	(197)
30~39세	4.3	9.7	25.4	60.7	100.0	(199)
40~49세	9.0	8.6	24.0	58.5	100.0	(231)
50~59세	9.7	10.2	29.8	50.3	100.0	(225)
60~69세	9.8	17.2	27.3	45.7	100.0	(144)
거주지( $x^2=10.9$ )						
대도시	7.9	12.1	24.4	55.7	100.0	(455)
중소도시	6.5	11.3	32.4	49.8	100.0	(476)
읍면부	12.7	13.6	29.2	44.6	100.0	(64)
교육 수준( $x^2=18.6^*$ )						
중졸 이하	8.5	21.3	29.4	40.9	100.0	(64)
고졸	11.4	9.5	28.2	50.9	100.0	(266)
대학교 졸(재학 포함)	5.8	11.6	29.6	53.0	100.0	(582)
대학원 이상	6.4	12.9	20.9	59.8	100.0	(79)
취업 여부( $x^2=1.5$ )						
취업	8.0	11.5	27.8	52.7	100.0	(712)
미취업	6.4	12.7	30.3	50.6	100.0	(279)
혼인 상태( $x^2=7.9^*$ )						
미혼	4.3	14.9	30.5	50.3	100.0	(254)
기혼(이혼, 별거, 사별 포함)	8.6	10.8	27.9	52.8	100.0	(741)

주: 1) \* $p<0.05$ , \*\* $p<0.01$ , \*\*\* $p<0.001$

2) 모름 및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다양한 가족의 문화적 수용성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 3. 다양한 가족과 전통가족

지금까지의 결과에서 전반적으로 혼인한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을 정상 가족으로 여겨 왔던 인식과 문화가 변화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가 다양한 가족을 지향하기보다는 전통가족 중심의 문화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다양한 가족보다는 전통가족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51.8%('어느 정도 동의' 32.7% + '전적으로 동의' 19.1%), 그렇지 않다는 견해가 48.2%('별로 동의 안 함' 31.5% + '전혀 동의 안 함' 16.7%)로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이 견해에서는 연령에 따른 차이를 볼 수 있었는데, 40세를 기준으로 이전 연령과 이후 연령 사이에서 '우리 사회가 다양한 가족보다는 전통가족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견해에 차이를 보였다. 이 견해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한다'와 '전적으로 동의한다'의 의견을 더해서 '동의한다'는 의견으로 보면, 30대 미만에서는 29.0%, 30대는 37.3%로 우리 사회에서 다양한 가족보다는 전통가족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과반수 이상인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40대에서는 '동의한다'는 비율이 50.6%, 50대는 70.7%, 60대 이상은 75.2%로, 40대를 기점으로 과반수 이상이 전통가족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0대 이상은 70% 이상이 전통가족 중심의 사회에 동의하고 있어 연령별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전적으로 동의한다'의 비율은 30세 미만은 6.1%에 그쳤는데, 60대에서는 39.1%로 나타나 큰 차이를 보였다.

〈표 5-21〉 ‘다양한 가족보다는 전통가족 중심의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한 생각

(단위: %, 명)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어느 정도 동의한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계	(명)
전체	16.7	31.5	32.7	19.1	100.0	(1002)
성별( $\chi^2=2.6$ )						
남성	15.7	31.8	34.6	17.8	100.0	(507)
여성	17.6	31.1	30.8	20.4	100.0	(494)
연령( $\chi^2=151.4^{***}$ )						
19~29세	27.8	43.2	22.9	6.1	100.0	(198)
30~39세	23.8	38.9	26.8	10.5	100.0	(198)
40~49세	15.4	34.0	35.2	15.4	100.0	(232)
50~59세	9.2	20.0	41.8	28.9	100.0	(228)
60~69세	5.6	19.3	36.1	39.1	100.0	(146)
거주지( $\chi^2=6.3$ )						
대도시	16.7	33.4	32.8	17.2	100.0	(459)
중소도시	17.2	30.8	31.8	20.2	100.0	(477)
읍면부	13.2	22.4	39.2	25.3	100.0	(65)
교육 수준( $\chi^2=51.6^{***}$ )						
중졸 이하	6.3	17.1	39.7	36.9	100.0	(66)
고졸	11.7	25.7	38.0	24.6	100.0	(269)
대학교 졸(재학 포함)	20.5	35.1	30.2	14.2	100.0	(580)
대학원 이상	15.1	35.8	27.2	21.9	100.0	(82)
취업 여부( $\chi^2=6.0$ )						
취업	16.4	33.1	33.1	17.4	100.0	(713)
미취업	17.2	27.8	31.5	23.5	100.0	(284)
혼인 상태( $\chi^2=87.0^{***}$ )						
미혼	30.3	41.3	21.0	7.4	100.0	(254)
기혼(이혼, 별거, 사별 포함)	12.1	28.1	36.7	23.1	100.0	(748)

주: 1) \* $p<0.05$ , \*\* $p<0.01$ , \*\*\* $p<0.001$

2) 모름 및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다양한 가족의 문화적 수용성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다음으로 다룰 내용은 전통가족보다 다양한 가족에게 정부 차원의 여러 지원들이 더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이다. 먼저 소득 지원 부분에 대한 견해부터 보면, 전반적으로 동의하는 비율이 73.7%로 나타났다.

이 견해에 대해서는 성별, 연령, 혼인 상태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는 견해에 응답한 남성이 11.4%, 여성이 6.9%로 남성이 여성보다 다양한 가족에 대한 소득 지원에 동의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또한 연령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 동의한다’의 견해에 대해 30세 미만 그룹은 53%, 60세 이상 그룹은 35.0%로 차이를 보였다. 혼인 상태에 따라서도 견해 차이를 보였는데, ‘어느 정도 동의한다’는 견해가 미혼은 51.3%, 기혼은 41.8%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적으로 동의한다’에서는 미혼이 23.5%, 기혼이 31.5%로 나타나 결과적으로 두 그룹은 ‘동의한다’의 비율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22〉 ‘전통가족보다 다양한 가족에게 정부 차원의 소득 지원 혜택이 더 주어져야 한다’는 견해에 대한 생각

(단위: %, 명)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어느 정도 동의한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계	(명)
전체	9.1	17.2	44.3	29.4	100.0	(969)
성별( $\chi^2=10.4^*$ )						
남성	11.4	17.6	40.0	31.1	100.0	(485)
여성	6.9	16.8	48.5	27.8	100.0	(484)
연령( $\chi^2=21.4^*$ )						
19~29세	9.3	13.7	53.0	24.0	100.0	(193)
30~39세	11.0	19.5	44.1	25.5	100.0	(193)
40~49세	7.2	17.2	46.9	28.7	100.0	(227)
50~59세	7.5	15.9	39.9	36.7	100.0	(215)
60~69세	11.8	21.0	35.0	32.1	100.0	(142)
거주지( $\chi^2=10.3$ )						
대도시	8.0	20.3	42.4	29.3	100.0	(442)
중소도시	10.3	13.6	47.0	29.1	100.0	(465)
읍면부	8.5	21.9	37.3	32.4	100.0	(63)
교육 수준( $\chi^2=16.5$ )						
중졸 이하	13.8	15.0	37.4	33.9	100.0	(61)
고졸	9.0	13.5	41.9	35.6	100.0	(257)
대학교 졸(재학 포함)	8.0	18.6	47.1	26.3	100.0	(567)
대학원 이상	14.1	21.2	39.7	25.0	100.0	(80)
취업 여부( $\chi^2=5.2$ )						
취업	9.7	16.0	43.6	30.7	100.0	(687)
미취업	7.8	20.2	46.6	25.4	100.0	(277)
혼인 상태( $\chi^2=8.3^*$ )						
미혼	9.4	15.8	51.3	23.5	100.0	(251)
기혼(이혼, 별거, 사별 포함)	9.0	17.7	41.8	31.5	100.0	(718)

주: 1) \* $p<0.05$ , \*\* $p<0.01$ , \*\*\* $p<0.001$

2) 모를 및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다양한 가족의 문화적 수용성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전통가족보다 다양한 가족에게 정부 차원의 건강 지원 혜택이 더 주어  
 져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는 73.6%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앞서 소득 지원 혜택과 비슷하게 동의하는 비율이 높은 것을 볼 수 있  
 다.

건강 지원 혜택에 대한 견해에서는 성별, 연령, 교육 수준에 따라 차이  
 를 보였다. 건강 지원 혜택과 관련된 본 견해에 동의하는 비율은 남성  
 (70.5%)보다는 여성(76.7%)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전혀 동의하지 않음’  
 비율은 남성이 11.3%, 여성이 6.6%로 나타나 다양한 가족에게 정부가  
 건강 지원 혜택을 더 주는 것에 대한 반대의 입장이 여성보다 남성이 높  
 았다. 연령에 따라서는 30세 미만(80.9%)과 50대(78.4%) 그룹에서 동의  
 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0대와 40대는 각각 70.5%와  
 70.4%로 비슷한 비율로 동의하고 있었고, 60세 이상은 65.6%로 가장 낮  
 은 동의의 비율을 보였다. 하지만 ‘전적으로 동의한다’의 비율은 33.8%  
 로 60세 이상 그룹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60세 이상 그룹은 ‘전혀 동  
 의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다른 연령대와 비교했을 때 가장 높은 비율  
 (12.3%)을 보여, 양 극단의 의견이 가장 많은 그룹으로 나타났다. 교육  
 수준에 따라서는 다른 그룹과 비교해 대학원 이상의 그룹이 다양한 가족  
 에게 더 주어지는 건강 지원에 동의하는 비율(59.1%)이 가장 낮은 것으  
 로 나타났다.

〈표 5-23〉 '전통가족보다 다양한 가족에게 정부 차원의 건강 지원 혜택이 더 주어져야 한다'는 견해에 대한 생각

(단위: %, 명)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어느 정도 동의한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계	(명)
전체	9.0	17.4	42.7	30.9	100.0	(970)
성별( $\chi^2=14.5^{**}$ )						
남성	11.3	18.1	37.4	33.1	100.0	(490)
여성	6.6	16.6	48.1	28.6	100.0	(480)
연령( $\chi^2=22.2^{**}$ )						
19~29세	7.1	12.0	51.6	29.3	100.0	(193)
30~39세	10.4	19.1	42.7	27.8	100.0	(194)
40~49세	8.2	21.4	40.0	30.4	100.0	(223)
50~59세	8.0	13.6	44.7	33.7	100.0	(219)
60~69세	12.3	22.0	31.8	33.8	100.0	(140)
거주지( $\chi^2=3.6$ )						
대도시	8.0	17.9	44.9	29.2	100.0	(440)
중소도시	10.2	16.7	40.5	32.6	100.0	(468)
읍면부	7.2	18.7	43.9	30.2	100.0	(62)
교육 수준( $\chi^2=29.9^{***}$ )						
중졸 이하	10.0	26.2	25.9	37.9	100.0	(60)
고졸	10.0	11.9	40.5	37.7	100.0	(263)
대학교 졸(재학 포함)	7.7	17.7	46.6	28.0	100.0	(563)
대학원 이상	14.3	26.5	35.9	23.2	100.0	(78)
취업 여부( $\chi^2=5.1$ )						
취업	9.9	17.3	41.0	31.7	100.0	(692)
미취업	6.7	17.8	47.4	28.1	100.0	(273)
혼인 상태( $\chi^2=6.2$ )						
미혼	8.9	16.7	48.8	25.5	100.0	(250)
기혼(이혼, 별거, 사별 포함)	9.0	17.6	40.6	32.8	100.0	(720)

주: 1) \* $p<0.05$ , \*\* $p<0.01$ , \*\*\* $p<0.001$

2) 모름 및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다양한 가족의 문화적 수용성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다음으로는 전통가족보다 다양한 가족에게 정부 차원의 주거 지원 혜택이 더 주어지는 것에 대한 견해를 알아보았다. '어느 정도 동의한다'가 43.6%, '전적으로 동의한다'가 27.7%로 71.3%가 동의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 견해에 대해서는 남성과 여성이 차이를 보였다. 동의하지 않는 입장이 남성은 29.2%, 여성은 28.1%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에 남성의 12.7%, 여성의 8.0%가 응답하였고,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에서는 남성의 16.5%, 여성의 20.1%가 응답해 동의하지 않는 비율은 비슷하지만 남성이 더욱 적극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태도임을 볼 수 있다. 교육 수준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였는데, 다양한 가족에게 정부 차원의 주거 지원 혜택이 더 주어지는 것에 대해 중졸 이하 그룹은 72.9%, 고졸 그룹은 74.9%, 대졸 그룹은 71.4%로 모두 70% 이상의 비율로 동의하는 데 반해, 대학원 이상 그룹은 57.1%의 비율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적으로 동의한다'에 응답한 비율을 비교해 보면, 중졸 이하 그룹은 36.7%인 데 반해, 대학원 이상 그룹에서는 23.7%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가장 높은 대학원 이상 그룹은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17.7%)와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25.2%)라는 각각의 견해에 대해서도 다른 모든 그룹과 비교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표 5-24〉 '전통가족보다 다양한 가족에게 정부 차원의 주거 지원 혜택이 더 주어져야 한다'는 견해에 대한 생각

(단위: %, 명)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어느 정도 동의한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계	(명)
전체	10.4	18.3	43.6	27.7	100.0	(971)
성별( $\chi^2=7.9^*$ )						
남성	12.7	16.5	42.0	28.8	100.0	(496)
여성	8.0	20.1	45.4	26.6	100.0	(475)
연령( $\chi^2=17.3$ )						
19~29세	8.1	19.7	47.7	24.6	100.0	(195)
30~39세	12.6	20.4	43.2	23.8	100.0	(192)
40~49세	10.3	17.0	47.1	25.6	100.0	(221)
50~59세	10.2	14.0	39.1	36.7	100.0	(220)
60~69세	10.8	21.9	40.5	26.8	100.0	(143)
거주지( $\chi^2=9.1$ )						
대도시	7.9	18.7	46.9	26.5	100.0	(439)
중소도시	13.0	17.9	40.4	28.6	100.0	(468)
읍면부	7.3	17.9	45.0	29.8	100.0	(64)
교육 수준( $\chi^2=18.4^*$ )						
중졸 이하	7.6	19.5	36.2	36.7	100.0	(64)
고졸	11.0	14.1	43.3	31.6	100.0	(265)
대학교 졸(재학 포함)	9.5	19.1	46.1	25.3	100.0	(560)
대학원 이상	17.7	25.2	33.4	23.7	100.0	(78)
취업 여부( $\chi^2=5.8$ )						
취업	11.3	16.7	43.9	28.1	100.0	(690)
미취업	7.9	22.3	43.5	26.3	100.0	(276)
혼인 상태( $\chi^2=6.6$ )						
미혼	9.5	21.5	46.7	22.3	100.0	(254)
기혼(이혼, 별거, 사별 포함)	10.7	17.1	42.6	29.7	100.0	(717)

주: 1) \* $p<0.05$ , \*\* $p<0.01$ , \*\*\* $p<0.001$

2) 모름 및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다양한 가족의 문화적 수용성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이어서 전통가족보다 다양한 가족에게 정부 차원의 출산 및 양육 지원 혜택이 더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았다. 전체 응답자의 76.9%가 동의하는 태도를 보여 다른 소득, 건강, 주거 지원 혜택에 대한 분야에서도 다양한 가족에게 혜택이 더 주어지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앞서 다른 분야에서 주로 성별이나 연령, 또는 교육 수준이 차이를 보였던 것과는 달리 취업 여부에 따라 견해에 차이를 보였다. 다양한 가족에게 출산 및 양육 지원을 더 해야 한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비율이 취업을 한 그룹에서는 36.3%, 그렇지 않은 그룹에서는 30.2%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고,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취업 그룹은 12.1%, 그렇지 않은 그룹은 20.1%로 차이가 나타났다.

〈표 5-25〉 '전통가족보다 다양한 가족에게 정부 차원의 출산 및 양육 지원 혜택이 더 주어져야 한다'는 견해에 대한 생각

(단위: %, 명)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어느 정도 동의한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계	(명)
전체	8.8	14.4	42.2	34.7	100.0	(965)
성별( $\chi^2=4.7$ )						
남성	10.7	14.5	41.4	33.4	100.0	(488)
여성	6.8	14.2	43.0	36.0	100.0	(477)
연령( $\chi^2=13.5$ )						
19~29세	5.3	13.2	45.7	35.8	100.0	(194)
30~39세	9.6	15.3	43.3	31.8	100.0	(194)
40~49세	7.7	14.9	43.2	34.3	100.0	(216)
50~59세	8.8	12.0	42.2	36.9	100.0	(223)
60~69세	14.2	17.5	34.3	33.9	100.0	(139)
거주지( $\chi^2=4.2$ )						
대도시	7.4	15.4	42.8	34.4	100.0	(440)
중소도시	10.5	13.4	41.2	34.9	100.0	(461)
읍면부	5.7	14.7	45.3	34.3	100.0	(64)
교육 수준( $\chi^2=15.5$ )						
중졸 이하	4.9	13.6	33.7	47.8	100.0	(61)
고졸	9.7	10.0	42.6	37.8	100.0	(257)
대학교 졸(재학 포함)	8.1	16.0	43.3	32.7	100.0	(562)
대학원 이상	14.4	16.4	39.8	29.4	100.0	(79)
취업 여부( $\chi^2=11.3^*$ )						
취업	9.3	12.1	42.4	36.3	100.0	(686)
미취업	7.8	20.1	42.0	30.2	100.0	(275)
혼인 상태( $\chi^2=2.7$ )						
미혼	6.8	14.2	45.7	33.2	100.0	(252)
기혼(이혼, 별거, 사별 포함)	9.5	14.4	40.9	35.2	100.0	(714)

주: 1) \* $p<0.05$ , \*\* $p<0.01$ , \*\*\* $p<0.001$

2) 모름 및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다양한 가족의 문화적 수용성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전통가족보다 다양한 가족에게 정부 차원의 혜택이 더 주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마지막 항목으로 일가족 양립 지원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았다. 이 견해에 대해서 동의하는 비율은 74.3%로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특성에 따른 차이에서는 교육 수준에 따른 차이만 나타났다. 대학원 이상의 그룹이 69.7%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낮았고,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15.1%로 다른 그룹과 비교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전적으로 동의한다'에 대해서는 중졸 이하 그룹은 44.8%, 고졸은 37.6%의 비율을 보인 반면, 대졸 그룹에서는 26.4%, 대학원 이상의 그룹에서는 27.2%의 비율로 나타나 대졸 이상은 적극 동의하는 비율이 30% 이하로 나타났다.

〈표 5-26〉 '전통가족보다 다양한 가족에게 정부 차원의 일가족 양립 지원 혜택이 더 주어져야 한다'는 견해에 대한 생각

(단위: %, 명)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어느 정도 동의한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계	(명)
전체	9.8	16.0	43.6	30.7	100.0	(961)
성별( $\chi^2=5.8$ )						
남성	12.0	15.7	41.9	30.4	100.0	(487)
여성	7.5	16.4	45.3	30.9	100.0	(474)
연령( $\chi^2=5.3$ )						
19~29세	9.4	12.0	46.7	31.9	100.0	(191)
30~39세	9.4	18.4	42.8	29.4	100.0	(192)
40~49세	8.5	16.6	45.0	29.9	100.0	(223)
50~59세	10.3	15.9	41.6	32.2	100.0	(215)
60~69세	11.9	17.3	41.2	29.5	100.0	(141)
거주지( $\chi^2=6.2$ )						
대도시	8.3	18.1	43.7	29.9	100.0	(439)
중소도시	11.3	14.1	42.5	32.1	100.0	(460)
읍면부	8.8	15.3	50.4	25.5	100.0	(62)
교육 수준( $\chi^2=21.7^{**}$ )						
중졸 이하	7.0	16.3	31.8	44.8	100.0	(62)
고졸	10.0	12.7	39.6	37.6	100.0	(260)
대학교 졸(재학 포함)	9.1	17.6	46.9	26.4	100.0	(559)
대학원 이상	15.1	15.1	42.5	27.2	100.0	(75)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어느 정도 동의한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계	(명)
취업 여부( $\chi^2=4.8$ )						
취업	10.1	14.8	42.8	32.3	100.0	(684)
미취업	8.9	18.6	46.2	26.3	100.0	(274)
혼인 상태( $\chi^2=1.4$ )						
미혼	10.6	14.6	45.9	28.9	100.0	(247)
기혼(이혼, 별거, 사별 포함)	9.5	16.5	42.8	31.2	100.0	(714)

주: 1) \*p<0.05, \*\*p<0.01, \*\*\*p<0.001

2) 모름 및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다양한 가족의 문화적 수용성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전통가족보다 다양한 가족에게 정부 차원의 지원이 더 주어져야 하는 지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았다. 소득, 건강, 주거, 출산 및 양육, 일-가족 양립으로 다섯 분야에 대해 알아본 결과, 모든 분야에서 전체 응답자의 70% 이상이 다양한 가족에게 더 혜택이 주어지는 것에 동의하는 태도를 보였다. 가장 높은 비율로 지지를 받은 분야는 출산 및 양육 지원 분야이고, 가장 적게 동의하고 있는 분야는 주거 지원 분야인 것을 볼 수 있다.

〈표 5-27〉 '전통가족보다 다양한 가족에게 정부 차원의 혜택이 더 주어져야 한다'는 견해에 대한 생각

(단위: %, 명)

구분	계(명)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한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어느 정도 동의한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소득 지원	100.0(969)	26.3	9.1	17.2	73.7	44.3	29.4
건강 지원	100.0(970)	26.4	9.0	17.4	72.6	42.7	30.9
주거 지원	100.0(971)	28.7	10.4	18.3	71.3	43.6	27.7
출산 및 양육 지원	100.0(965)	23.2	8.8	14.4	76.9	42.2	34.7
일-가족 양립 지원	100.0(961)	25.8	9.8	16.0	74.3	43.6	30.7

주: 모름 및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다양한 가족의 문화적 수용성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차이를 정리해 보면, 소득 지원에 대한 견해에서는 성별, 연령, 혼인 상태에 따른 차이를 보였고 건강 지원 분야에서는 성별, 연령, 교육 수준에 따라 견해에 차이가 있었다. 주거 지원에 대해서는 성별, 교육 수준에 따른 차이가, 출산 및 양육 지원에 있어서는 취업 여부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일-가족 양립 지원에 대해서는 교육 수준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종합적으로 성별과 교육 수준에 따른 차이가 가장 많은 분야에서 나타났다.

### 제3절 가족 관련 전통적 이념에 대한 인식

다양한 가족에 대한 문화적 수용을 알아보기 위해 제2절에서는 일반 국민이 다양한 가족을 직접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살펴보았다. 본 3절에서는 우리 국민들이 가족과 관련된 전통적인 이념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본다. 여전히 전통적인 관념을 가지고 있는지, 혹은 시간에 따라 변화하였는지 등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부양 및 돌봄에 관한 인식과 가족 내 성역할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다. 본 절에서도 역시 본 연구에서 실시한 조사와 더불어 기존의 조사에서 찾을 수 있는 항목들에 대해서는 기존 조사의 결과를 활용하여 알아본다.

#### 1. 부양 및 돌봄에 관한 인식

부모가 생존해 있는 경우 현재 부모의 생활비를 주로 누가 제공하는지 알아본 결과, 2006년에는 54% 이상이 자녀였던 데 반해, 2016년에는 부모 스스로 해결한다는 응답이 52% 이상을 차지해 부모의 생활비 부담 주체에 변화가 생기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약 8%포인트의 변화이지만 이

변화로 2016년에는 부모 스스로 생활비를 해결하는 비율이 과반수를 확실히 넘어서게 된 것을 알 수 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개인연금 등 노후소득에 대한 보장이 강화되어 가면서 자녀의 부담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자녀 중 누가 부모의 생활비를 제공하는지에 대한 비율도 변하였다. 장남, 아들이 부모의 생활비를 책임지는 비율이 10% 이하로 줄었고, 모든 자녀가 함께 제공하는 비율이 상승하였다.

〈표 5-28〉 부모 생활비 주 제공자(2006~2016)

(단위: %, 명)

구분	자녀					부모 스스로 해결	기타	계(명)
		장남 또는 맏며느리	아들 또는 며느리	딸 또는 사위	모든 자녀			
2016	47.3	8.8	8.7	2.3	27.5	52.6	0.1	100.0 (9,337)
2014	49.5	10.1	9.1	2.6	27.7	50.2	0.3	100.0 (9,276)
2012	50.8	11.2	9.7	2.3	27.6	48.9	0.4	100.0 (9,568)
2010	51.6	12.4	11.3	1.8	26.1	48.0	0.3	100.0 (9,795)
2008	52.9	14.6	10.5	1.9	25.9	46.6	0.5	100.0 (11,697)
2006	54.6	15.6	12.1	2.1	24.8	44.8	0.5	100.0 (17,854)

주: 1) 2006년~2010년 조사의 대상은 만 15세 이상, 2012년부터는 만 13세 이상 인구임.

2)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살아 있는 경우의 가구주만 응답한 것으로 계(명)는 조사 응답자 수이며, 항목별 각 수치는 가구 승수를 적용한 결과임.

자료: 통계청. (각 연도). 사회조사 원자료 분석.

부모의 생활비에 대한 자녀의 부담이 줄어들고는 있지만, 아직 실질적으로는 자녀가 여전히 부모의 생활비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는 비율이 절반 정도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실제 생활의 점진적인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부모 부양을 누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견해에서는 더욱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006년의 결과

에서는 가족이 해결해야 한다는 견해가 63.4%로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2016년의 결과에서는 가족이 부모 부양을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은 30.8%로 절반 이상 줄어들고, 대신 가족과 정부·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견해가 45.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부모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은 2006년 단 7.8%에서 2016년 18.6%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즉 가족이 부모 부양을 책임지는 주체여야 한다는 입장에서 부모 스스로와 정부·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으로 2006년부터 매년 꾸준히 변화하고 있고, 가족이 단독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은 점차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부모 돌봄을 가족 내에서 책임지고 해결해야 했던 일상적인 생각이 확연하게 변화된 것을 알 수 있다.

〈표 5-29〉 '부모 부양'에 대한 일반 국민의 견해(2006~2016)

(단위: %, 명)

구분	부모 스스로 해결	가족	가족과 정부·사회	정부·사회	계(명)
2016	18.6	30.8	45.5	5.1	100.0(38,552)
2014	16.6	31.7	47.3	4.4	100.0(37,243)
2012	13.9	33.2	48.7	4.2	100.0(36,888)
2010	12.7	36.0	47.4	3.9	100.0(36,846)
2008	11.9	40.7	43.6	3.8	100.0(42,473)
2006	7.8	63.4	26.4	2.3	100.0(67,856)

주: 1) 2006~2010년 조사의 대상은 만 15세 이상, 2012년부터는 만 13세 이상 인구임.

2) 계(명)는 조사 응답자 수이며, 항목별 각 수치는 가구원 승수를 적용한 결과임.

3) 2006년 결과에는 '기타'가 0.1% 포함되어 있었음.

자료: 통계청. (각 연도). 사회조사 원자료 분석.

부모 부양이 가족의 책임인가, 국가의 책임인가를 좀 더 상세하게 알아 보았다. '가족이 주로 책임지며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견해가 42.9%로 가장 높게 나타나 아직 부모 부양에 대한 책임이 가족에게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또한 '가족과 국가가 동등하게'라는 견해

도 36.1%로 나타났다.

이러한 태도는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데 ‘가족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은 남성이 20.0%, 여성이 10.0%로 성별 차이를 보였고, ‘가족과 국가가 동등하게 책임져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남성이 31.7%, 여성이 40.5%의 비율로 응답해 가족의 책임에 대해서는 남성이, 그리고 국가의 책임에 대해서는 여성이 더욱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타났는데, ‘가족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서 30대는 9.3%로 가장 낮은 비율로 나타난 반면, 60대는 22.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 세대 차이를 보였고,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 30대 그룹에서 3.2%가 응답해 다른 연령 그룹과 비교해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부모 부양에 대한 연령별 응답에서 30대 그룹은 다른 연령 그룹과 비교해 가장 높거나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는 응답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가족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9.3%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고, ‘가족이 주로 책임지며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48.6%로 가장 높은 비율, ‘국가가 주로 책임지며 가족이 지원해야 한다’에 대해서는 1.7%로 가장 낮은 비율, 그리고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에 대해서는 3.2%로 다른 연령 그룹과 비교해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또한 40대에서는 ‘가족과 국가가 동등하게 책임져야 한다’는 응답이 41.3%로 다른 연령 그룹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국가가 주로 책임지며 가족이 지원해야 한다’는 견해에서도 6.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 연령이 높은 부모를 이미 부양하고 있을 확률이 높은 50대나 60대 보다는 현재 부모 부양에 대한 고민이 가장 많을 30대와 40대의 응답에서 부모 부양에 대한 국가 지원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리고 60

대에서는 ‘가족과 국가가 동등하게’가 36.0%, ‘국가가 주로 책임지며 가족이 지원’이 6.3%로 50대의 응답보다 국가의 책임이 강조되고 있음을 볼 수 있어 부양을 직접 받을 부모세대에 가까운 연령에서는 자녀가 본인들을 부양해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국가지원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나아가 40대와 60대 그룹에서는 ‘가족과 국가가 동등하게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에 응답한 비율이 ‘가족이 주로 책임지며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에 응답한 비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가까운 미래에 부모 부양을 실질적으로 경험할 40대와 그 당사자가 될 60대에서 가족과 국가가 함께 부양하는 형태를 기대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표 5-30〉 ‘부모 부양의 책임 주체’에 대한 생각

(단위: %, 명)

구분	가족이 전적으로	가족주요 & 국가지원	가족·국가 동등	국가지원 & 가족지원	국가가 전적으로	계	(명)
전체	15.1	42.9	36.1	4.4	1.5	100.0	(1004)
성별( $\chi^2=23.3^{***}$ )							
남성	20.0	43.1	31.7	3.7	1.4	100.0	(508)
여성	10.0	42.7	40.5	5.2	1.6	100.0	(497)
연령( $\chi^2=37.1^{**}$ )							
19~29세	16.5	47.6	30.7	4.4	0.7	100.0	(196)
30~39세	9.3	48.6	37.1	1.7	3.2	100.0	(199)
40~49세	10.6	39.8	41.3	6.5	1.8	100.0	(233)
50~59세	18.9	42.2	34.5	3.5	0.9	100.0	(227)
60~69세	22.1	35.0	36.0	6.3	0.6	100.0	(148)
거주지( $\chi^2=12.9$ )							
대도시	12.7	42.7	37.2	5.3	2.1	100.0	(457)
중소도시	16.1	43.8	35.1	4.2	0.9	100.0	(482)
읍면부	24.9	38.5	35.5	0.0	1.1	100.0	(65)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7.1	37.1	38.0	6.3	1.4	100.0	(67)
고졸	21.4	35.4	39.0	3.3	0.9	100.0	(269)
대학교 졸(재학 포함)	12.2	46.7	34.6	4.8	1.8	100.0	(581)
대학원 이상	13.4	46.6	34.3	4.5	1.2	100.0	(82)
취업 여부( $\chi^2=7.1$ )							
취업	15.0	40.9	37.8	4.4	1.8	100.0	(717)

구분	가족이 전적으로	가족주 & 국가자원	가족· 국가 동등	국가주 & 가족자원	국가가 전적으로	계	(명)
미취업 혼인 상태( $\chi^2=1.7$ )	15.4	48.3	31.0	4.7	0.7	100.0	(282)
미혼	15.0	44.6	33.5	5.0	2.0	100.0	(255)
기혼(이혼, 별거, 사별 포함)	15.1	42.4	36.9	4.3	1.3	100.0	(750)

주: 1) \* $p<0.05$ , \*\* $p<0.01$ , \*\*\* $p<0.001$

2)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가지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chi^2$ 값을 제시하지 않음.

3) 모름 및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다양한 가족의 문화적 수용성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이렇게 부모 부양을 오직 가족 내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책임의식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기혼 인구와 미혼 인구는 자녀에게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자녀가 있으면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견해에 대부분 찬성하지 않는 비율이 높기는 하였으나, 미혼 인구보다는 기혼 인구가 더욱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에 따라 자녀의 입장에서, 혹은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일 수 있다. 기혼 여성의 경우는 찬성하지 않는 비율이 총 74.4%로, 약 60% 미만인 미혼보다 찬성하지 않는 비율이 높았다. 미혼 인구는 자녀가 있다는 가정하에 응답을 하는 경우가 많았을 것이고, 기혼은 미혼과 같은 경우도 있겠지만 결혼 후 자녀가 실제로 있거나 결혼 생활을 통해 자신 스스로 구체적인 부모 부양에 대해 생각한 결과일 수 있다. 기혼 여성의 입장에서 자신은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지만, 앞으로 자신의 노후에 스스로는 도움을 받지 않겠다는 의지도 반영되었을 수 있다. 앞의 결과와 연관지어 생각해 보면 가족 내에서 부모를 부양하는 부담은 실제로도 줄어들고, 사회적 책임은 상대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그만큼 자녀에게 기대하거나 부담을 지우고 싶은 생각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31〉 ‘자녀가 있으면 노후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에 대한 기혼 여성  
(15~49세)과 미혼 남녀(20~44세)의 태도

(단위: %, 명)

구분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계(명)	
유배우 여성	4.0	21.6	55.6	18.8	100.0(11,007)	
미혼	남성	9.1	31.5	44.6	14.8	100.0(1,096)
	여성	7.6	34.1	47.0	11.3	100.0(1,287)

자료: 이삼식, 박종서, 이소영, 오미애, 최효진, 송민영. (2015).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421 〈표 12-9〉, p. 120 〈표 5-12〉 재구성.

부모 부양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렇다면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자녀 양육에 대한 견해는 ‘가족이 주로 책임지며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가 39.8%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는 ‘가족과 국가가 동등하게 책임져야 한다’가 36.5%로 역시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비율도 19.2%로 나타났으며, ‘국가가 주로 책임지며 가족이 지원해야 한다’는 2.8%,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견해는 1.6%의 비율로 나타났다.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 주체에 대해서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는데, ‘가족이 주로 책임지며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견해에 있어서 여성은 42.0% 남성은 37.7%, 그리고 ‘가족과 국가가 동등하게 책임져야 한다’에 대해서는 여성이 40.2%, 남성이 32.9%로 여성이 남성보다 가족과 국가의 동시 책임을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족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남성이 24.1%, 여성이 14.1%로 남성이 여성보다는 가족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표 5-32〉 ‘자녀 양육의 책임 주체’에 대한 생각

(단위: %, 명)

구분	가족이 전적으로	가족주 & 국가 자원	가족· 국가 동등	국가주 & 가족 자원	국가가 전적으로	계	(명)
전체	19.2	39.8	36.5	2.8	1.6	100.0	(1010)
성별( $\chi^2=20.1^{***}$ )							
남성	24.1	37.7	32.9	3.0	2.2	100.0	(514)
여성	14.1	42.0	40.2	2.7	1.1	100.0	(496)
연령							
19~29세	17.1	43.9	30.4	5.4	3.2	100.0	(200)
30~39세	9.4	51.3	38.4	0.0	1.0	100.0	(201)
40~49세	13.3	40.5	40.2	3.4	2.6	100.0	(234)
50~59세	25.9	33.2	38.2	2.3	0.4	100.0	(228)
60~69세	34.6	27.8	33.7	3.3	0.7	100.0	(146)
거주지( $\chi^2=10.9$ )							
대도시	17.4	40.0	37.3	3.9	1.5	100.0	(460)
중소도시	19.4	40.5	36.1	2.0	2.0	100.0	(484)
읍면부	30.7	33.8	33.8	1.7	0.0	100.0	(65)
교육 수준							
중졸 이하	30.5	26.4	40.7	2.5	0.0	100.0	(65)
고졸	28.7	32.3	34.1	2.5	2.3	100.0	(270)
대학교 졸(재학 포함)	13.8	44.5	37.4	2.7	1.6	100.0	(587)
대학원 이상	17.8	42.8	32.8	5.3	1.2	100.0	(83)
취업 여부( $\chi^2=8.7$ )							
취업	18.7	37.9	39.1	2.9	1.5	100.0	(721)
미취업	20.9	45.0	29.6	2.5	2.1	100.0	(284)
혼인 상태( $\chi^2=8.9$ )							
미혼	16.5	42.6	33.8	5.0	2.0	100.0	(259)
기혼(이혼, 별거, 사별 포함)	20.1	38.9	37.4	2.1	1.5	100.0	(751)

주: 1) \* $p<0.05$ , \*\* $p<0.01$ , \*\*\* $p<0.001$

2)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가지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chi^2$ 값을 제시하지 않음.

3) 모름 및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다양한 가족의 문화적 수용성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부모 부양과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은 가족에게 있는가 국가에 있는가  
에 대해 알아본 결과, 여전히 가족의 책임을 크게 생각하고는 있었지만,  
가족과 국가가 동등하게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도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부모 부양과 자녀 양육에 대한 내용을 비교해 보면,  
‘가족과 국가가 동등하게 책임져야 한다’는 견해가 부모 부양에 대해서는  
36.1%, 자녀 양육에 대해서는 36.5%로 매우 비슷하게 지지를 받고 있다.

반면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견해는 부모 부양에 대해서는 1.5%, 자녀 양육에 대해서는 1.6%로 이 또한 매우 비슷하게 가장 낮은 수준의 지지를 받고 있다. 부모 부양이나 자녀 양육에 대해 모두 ‘가족이 주로 책임지며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견해가 가장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가운데, 부모 부양에 대해 더 높은 비율로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가족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견해는 부모 부양보다는 자녀 양육에 대한 견해일 때 더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렇게 주체에 대해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가족에게 많은 책임이 있던 부모 부양과 자녀 양육이라는 과제가 이제는 가족과 국가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표 5-33〉 ‘부모 부양과 자녀 양육 책임 주체’에 대한 생각

(단위: %, 명)

구분	가족이 전적으로	가족주로 & 국가지원	가족·국가 동등	국가주로 & 가족지원	국가가 전적으로	계	(명)
부모 부양에 대한 책임 주체	15.1	42.9	36.1	4.4	1.5	100.0	(1004)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 주체	19.2	39.8	36.5	2.8	1.6	100.0	(1010)

주: 모름 및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다양한 가족의 문화적 수용성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 2. 가족 내 성역할에 대한 인식

우리 사회는 강한 전통 성역할 인식으로 가족 내에서 남성은 생계부양, 여성은 자녀돌봄의 이분화된 성역할이 강조되어 왔다. 하지만, 더 이상은 이러한 모델로 다양화된 가족 모습을 설명하기에는 충분하지 않게 되었다. 현재는 가족 내 성역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아내는 가정의 일을 돌보거나 내조를 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당연시되는 전통적인 성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아내는 자신의 경력보다는 남편이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견해에 대해 기혼 여성은 대체로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미혼인 남성과 여성은 모두 별로 찬성하지 않는 비율이 높았다. 미혼 여성은 전혀 찬성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27.9%로 가장 높았다.

〈표 5-34〉 ‘아내는 자신의 경력을 쌓기보다는 남편이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에 대한 유배우 여성(15~49세)과 미혼 남녀(20~44세)의 태도  
(단위: %, 명)

구분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계(명)	
유배우 여성	8.7	45.0	40.1	6.2	100.0(10,322)	
미혼	남성	2.8	21.4	57.9	17.9	100.0(1,096)
	여성	1.9	16.3	54.0	27.9	100.0(1,287)

자료: 이삼식, 박종서, 이소영, 오미애, 최효진, 송민영. (2015).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208 〈표 7-1〉, p. 354 〈표 10-12〉 재구성.

과거 가족의 부양을 책임지는 역할을 전적으로 담당했던 남편과 가정의 일을 돌보던 아내의 역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견해를 보면, 역시 기혼 여성이 미혼 남녀보다 찬성하는 비율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기혼 여성은 30.8%가 대체로 찬성하고 5.1%가 전적으로 찬성해 전체 35.9%가 전통적인 성역할에 대한 견해에 찬성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미혼 인구에서는 남성이 20.0%, 여성이 13.7%만이 찬성하는 것을 확인해 기혼자와 미혼자의 차이가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전통적인 성역할에 전혀 찬성하지 않는 비율은 미혼 여성이 34.8%로 가장 높았고, 기혼 여성은 단 11.1%만이 전혀 찬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기혼 여성과 미혼 여성의 차이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35〉 ‘남편이 할 일은 돈을 버는 것이고 아내가 할 일은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것이다’에 대한 유배우 여성(15~49세)과 미혼 남녀(20~44세)의 태도

(단위: %, 명)

구분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계(명)	
유배우여성	5.1	30.8	53.0	11.1	100.0(10,322)	
미혼	남성	2.4	17.6	55.3	24.7	100.0(1,096)
	여성	2.0	11.7	51.5	34.8	100.0(1,287)

자료: 이삼식, 박종서, 이소영, 오미애, 최효진, 송민영. (2015).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209 〈표 7-2〉, p. 356 〈표 10-13〉 재구성.

그렇다면 부부가 모두 있는 가족이라면 그 안에서 주된 생계 책임의 주체를 누구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았다. ‘남편과 아내가 동등하게 책임져야 한다’는 견해가 66.8%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그다음으로는 ‘남편이 주로 책임지며 아내가 지원해야 한다’는 견해를 23.8%가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견해는 5.3%였고, ‘아내가 주로 책임지며 남편이 지원해야 한다’는 견해는 0.2%에 그쳤다. 그리고 ‘아내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0.0%로 나타나 가족에 남성과 여성이 있다면 여성이 생계부양자라고 생각하는 일은 거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타’ 의견으로는 ‘능력 있는 쪽이 책임져야 한다’와 ‘상황에 따라서’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능력이 있는 쪽이 가족의 주된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이 3.1%를 차지하여 이제 가족의 생계에 대한 의무감에서 성별이 무의미하게 작용하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별에 따라서 보면, ‘남편과 아내가 동등하게 책임져야 한다’는 견해에 있어서 남성은 59.6%, 여성은 74.3%가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남편이 주로 책임지며 아내가 지원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 남성이 27.7%, 여성이 19.8% 동의하고 있었으며, ‘남편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남성이 8.2%, 여성이 2.4%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여성은 생계에 대한 책임에 있어서 동등한 책임을 생각하고 있는 반면, 남성이 주로 책임지거나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을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비율로 지지하고 있어 남성 스스로 생계부양자로 남성의 모습을 더욱 의식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연령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타났는데, ‘남편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 30세 미만의 그룹은 1.6%가 응답한 반면, 60대 그룹에서는 10.3%가 응답해 큰 차이를 보였다. 50대 그룹은 ‘남편이 주로 책임지며 아내가 지원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 31.7%가 지지해 다른 연령 그룹과 비교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반면, ‘남편과 아내가 동등하게 책임져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53.8%로 다른 연령 그룹과 비교해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혼인 상태에 따른 차이를 보면, ‘남편과 아내가 동등하게 책임져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 미혼 그룹은 80.4%, 기혼 그룹은 62.2%로 차이를 보였다. ‘남편이 주로 책임지며 아내가 지원해야 한다’에 대해서는 기혼 그룹의 26.6%, 미혼 그룹의 15.6%가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기대나 생각과 실제 생활의 차이를 보여주는 결과로 사료된다.

〈표 5-36〉 ‘부부 중 가족의 주된 생계 책임 주체’에 대한 생각

(단위: %, 명)

구분	남편이 전적으로	남편 주로 & 아내 지원	남편- 아내 동등	아내 주로 & 남편 지원	아내가 전적으로	기타	계	(명)
전체	5.3	23.8	66.8	0.2	0.0	3.9	100.0	(1004)
성별( $\chi^2=31.4^{***}$ )								
남성	8.2	27.7	59.6	0.2	0.0	4.4	100.0	(507)
여성	2.4	19.8	74.3	0.2	0.0	3.4	100.0	(497)
연령( $\chi^2=58.4^{***}$ )								
19~29세	1.6	13.8	83.2	0.0	0.0	1.3	100.0	(200)
30~39세	3.6	23.8	68.0	0.2	0.0	4.4	100.0	(197)
40~49세	4.5	28.1	63.9	0.4	0.0	3.1	100.0	(232)
50~59세	7.6	31.7	53.8	0.0	0.0	6.8	100.0	(228)
60~69세	10.3	18.4	67.7	0.3	0.0	3.4	100.0	(147)
거주지								
대도시	3.8	23.5	68.6	0.0	0.0	4.1	100.0	(458)
중소도시	5.7	23.9	66.7	0.3	0.0	3.3	100.0	(481)
읍면부	12.9	25.5	55.1	0.0	0.0	6.5	100.0	(65)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6.3	18.6	64.9	0.0	0.0	0.3	100.0	(67)
고졸	7.7	23.4	63.3	0.5	0.0	5.3	100.0	(270)
대학교 졸(재학 포함)	3.5	25.8	67.7	0.0	0.0	3.0	100.0	(581)
대학원 이상	1.8	16.2	73.2	0.5	0.0	8.3	100.0	(82)
취업 여부( $\chi^2=1.0$ )								
취업	5.6	24.0	66.4	0.1	0.0	3.8	100.0	(716)
미취업	4.5	23.8	67.8	0.3	0.0	3.6	100.0	(284)
혼인 상태( $\chi^2=30.4^{***}$ )								
미혼	1.7	15.6	80.4	0.2	0.0	2.1	100.0	(256)
기혼(이혼 별거 사별 포함)	6.5	26.6	62.2	0.2	0.0	4.5	100.0	(748)

주: 1) \* $p<0.05$ , \*\* $p<0.01$ , \*\*\* $p<0.001$ 2)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가지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chi^2$ 값을 제시하지 않음.

3) 모름 및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4) '기타' 의견으로는 '능력 있는 쪽'이 3.1%, '상황에 따라'가 0.8%로 나타남.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다양한 가족의 문화적 수용성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이러한 생계책임 부분 외에 자녀 돌봄 책임에 대해서는 가족 내 누구의 역할을 중요시 하는지 알아보았다. 남편과 아내가 동등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견해가 매우 높은 비율(73.0%)로 나타났다.

이 견해에 대해 유의미한 특성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찾아볼 수 있는 차이는 50대 그룹에서 25.1%가 '아내가 주로

책임지며 남편이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에 응답해 여성을 주 양육자로 인식하는 견해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읍면부와 중졸 이하의 그룹에서는 '엄마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견해가 각각 11.4%와 15.2%로 나타나 비교적 분명한 성역할 관념을 가지고 있는 그룹을 볼 수 있다.

〈표 5-37〉 '부부 중 자녀 돌봄 책임 주체'에 대한 생각

(단위: %, 명)

구분	남편이 전적으로	남편주요 & 아내지원	남편 아내 동등	아내주요 & 남편지원	아내가 전적으로	기타	계	(명)
전체	0.0	0.5	73.0	19.8	5.0	1.7	100.0	(1003)
성별( $\chi^2=3.9$ )								
남성	0.0	0.6	70.7	21.2	5.9	1.6	100.0	(510)
여성	0.0	0.4	75.5	18.3	4.0	1.8	100.0	(493)
연령								
19~29세	0.0	0.7	84.0	13.0	1.6	0.7	100.0	(199)
30~39세	0.0	0.0	75.3	20.1	2.9	1.6	100.0	(199)
40~49세	0.0	0.3	71.7	20.7	5.0	2.3	100.0	(232)
50~59세	0.0	1.3	65.3	25.1	6.9	1.3	100.0	(226)
60~69세	0.0	0.3	69.1	18.7	9.2	2.7	100.0	(148)
거주지								
대도시	0.0	0.5	75.0	18.1	4.9	1.5	100.0	(457)
중소도시	0.0	0.4	71.9	22.1	4.2	1.4	100.0	(480)
읍면부	0.0	1.7	67.3	14.7	11.4	4.9	100.0	(66)
교육 수준								
중졸 이하	0.0	1.2	58.6	23.0	15.2	2.0	100.0	(65)
고졸	0.0	0.6	72.3	21.1	4.7	1.2	100.0	(270)
대학교 졸(재학 포함)	0.0	0.2	74.3	19.4	4.3	1.7	100.0	(579)
대학원 이상	0.0	1.9	77.5	16.3	2.6	1.7	100.0	(83)
취업 여부								
취업	0.0	0.6	73.8	19.9	4.1	1.5	100.0	(713)
미취업	0.0	0.3	70.8	19.8	7.1	2.0	100.0	(284)
혼인 상태								
미혼	0.0	0.8	85.0	10.8	2.0	1.3	100.0	(256)
기혼(이혼, 별거사별 포함)	0.0	0.4	68.9	22.9	6.0	1.8	100.0	(746)

주: 1) \* $p<0.05$ , \*\* $p<0.01$ , \*\*\* $p<0.001$

2)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가지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chi^2$ 값을 제시하지 않음.

3) 모름 및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4) '기타' 의견으로는 '시간있는 쪽'이 0.8%, '상황에 따라'가 0.8%로 나타남.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다양한 가족의 문화적 수용성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부부 사이의 자녀 돌봄 책임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이 직접적으로 남성도 여성 못지않게 아이를 잘 기를 수 있다는 입장까지 이어지는지 확인해 보았다. ‘아이 는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더 잘 키울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한 응답을 통해 누군가 둘 중 한 명이 자녀를 키우게 되는 상황일 때는 어떻게 생각하는 지를 알아보았다. 유배우 여성과 미혼 남성, 미혼 여성 그룹 모두 이 견해에 ‘대체로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전체적으로 찬성하는 비율로 보았을 때에는 유배우 여성은 65.5%, 미혼 남성은 59.4%, 미혼 여성은 46.7%로 유배우 여성과 미혼 남성은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고, 미혼 여성은 그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미혼 여성들은 53.4%가 찬성하지 않는 것으로 응답해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자녀를 더 잘 양육할 것이라는 전통적인 관념에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더 높았다. 부부 중 생계 책임 주체가 누구인가에 대한 견해에서도 여성일수록, 그리고 연령이 낮을수록 가족 내 남편과 아내의 동등한 책임을 강조했던 결과와 비슷하게 미혼 여성 그룹이 전통적인 성역할에 있어서 가장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38〉 ‘아이는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더 잘 키울 수 있다’에 대한 유배우 여성 (15~49세)과 미혼 남녀(20~44세)의 태도

(단위: %, 명)

구분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계(명)	
유배우 여성	14.2	51.3	31.8	2.7	100.0(10,322)	
미혼	남성	11.0	48.4	35.2	5.3	100.0(1,096)
	여성	6.7	40.0	42.7	10.7	100.0(1,287)

자료: 이삼식, 박종서, 이소영, 오미애, 최효진, 송민영. (2015). 전국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212 〈표 7-4〉, p. 359 〈표 10-15〉 재구성.

### 3. 전통가족에 대한 인식

마지막으로 과거로부터 이상적으로 여겨져 왔던 가족의 모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아이는 부모가 모두 있는 가정에서 자라야만 잘 자란다’는 견해에 대한 응답을 통해 한 가족 내에 부모가 모두 있는 가족 안의 자녀의 모습을 정상적으로 생각하던 전통적인 가족 관념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본 결과, 71.8%의 높은 비율이 이 견해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견해에 대해서는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비율이 30세 미만은 20.3%인 데 반해, 60대 그룹에서는 59.4%로 매우 높은 비율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응답에 대해서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그 비율도 점차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어 전통적인 가족의 모습에 대한 연령별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교육 수준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었는데,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비율을 보면 중졸 이하 그룹은 58.5%, 대졸 그룹에서는 31.2%로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중졸 이하 그룹만 2.8%의 비율을 보였고, 그 외의 그룹에서는 10% 정도의 비율을 보여 교육 수준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혼인 상태에 따라서는 이 견해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의견이 미혼 그룹은 19.1%인 반면, 기혼 그룹에서는 42.1%로 나타나 큰 차이를 보였다. 또한,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에서는 반대로 미혼 그룹이 16.9%의 비율을 보였고, 기혼 그룹은 7.7%의 비율을 보여 기혼 그룹이 미혼 그룹에 비해 전통적인 가족의 모습을 강하게 지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5-39〉 ‘아이는 부모가 모두 있는 가정에서 자라야만 잘 자란다’는 견해에 대한 생각

(단위: %, 명)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어느 정도 동의한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계	(명)
전체	10.1	18.1	35.6	36.2	100.0	(1001)
성별( $x^2=3.4$ )						
남성	8.9	16.9	36.0	38.2	100.0	(507)
여성	11.3	19.3	35.2	34.2	100.0	(494)
연령( $x^2=118.0^{***}$ )						
19~29세	16.8	26.1	36.8	20.3	100.0	(199)
30~39세	12.3	29.2	38.1	20.4	100.0	(199)
40~49세	8.0	15.1	39.5	37.4	100.0	(231)
50~59세	8.4	8.6	35.1	48.0	100.0	(224)
60~69세	3.9	11.3	25.4	59.4	100.0	(147)
거주지( $x^2=5.3$ )						
대도시	10.0	18.9	36.1	35.1	100.0	(456)
중소도시	10.7	17.8	35.8	35.6	100.0	(479)
읍면부	6.2	14.3	31.0	48.5	100.0	(66)
교육 수준( $x^2=37.4^{***}$ )						
중졸 이하	2.8	10.2	28.5	58.5	100.0	(66)
고졸	10.3	12.6	34.3	42.8	100.0	(267)
대학교 졸(재학 포함)	10.5	22.5	35.8	31.2	100.0	(581)
대학원 이상	10.3	11.8	44.2	33.7	100.0	(83)
취업 여부( $x^2=2.8$ )						
취업	10.8	18.9	34.5	35.8	100.0	(713)
미취업	8.3	16.3	37.7	37.7	100.0	(283)
혼인 상태( $x^2=66.5^{***}$ )						
미혼	16.9	29.0	35.0	19.1	100.0	(256)
기혼(이혼, 별거, 사별 포함)	7.7	14.3	35.8	42.1	100.0	(745)

주: 1) \* $p<0.05$ , \*\* $p<0.01$ , \*\*\* $p<0.001$ 

2) 모름 및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다양한 가족의 문화적 수용성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부모가 모두 있는 가족에서 자녀가 성장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생각은 여전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전통가족에 대한 이데올로기가 남아있음과 함께 아이 양육에 있어 여전히 가족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해 가족 내에 부와 모가 모두 있지 않을 때 나타나는 공백이 매우 큰 사회적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제 6 장

결론 및 시사점

제1절 결론

제2절 시사점



# 6

## 결론 및 시사점 <<

### 제1절 결론

본 연구는 한국 사회에 전통적 가족으로 대표되던 핵가족 구조 외에 매우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존재하는 현재, 가족 관련 제도 및 정책들에 변화하는 가족의 모습이 반영되어 있는지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시작한다. 즉 출산과 양육, 경제적 안정이나 정서적 지지, 사회화 등 많은 일들이 생계부양자인 남성과 돌봄의 주체인 여성으로 이루어진 핵가족이라는 구조를 지닌 가족의 기능으로 해결되던 시대에서 벗어나 수없이 다른 조건들을 가진 가족들이 나타난 지금 제도와 정책은 가족을 어떻게 보고 있고 어떠한 고려까지 녹아 있는지 검토해 보았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 사회가 가족을 바라봄에 있어서 가족의 유형이나 구조를 가지고 가족을 구분하고 어떠한 가족이라고 정의 내릴 필요 없이, 우리의 제도나 문화 속에서 가족의 유형은 더없이 다양하다는 것이 당연하게 인정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현 상황을 이해해보는 기초연구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가족의 기본생활과 출산 및 양육과 관련된 분야에 대해 제도적 환경의 측면, 즉 법과 제도 및 정책에서 다양한 가족에 대한 수용성을 파악해 보는 한편, 비공식적인 제도인 문화적인 측면에서의 수용성 정도도 함께 알아보았다. 제도 및 정책(사업) 검토에 있어서는 가족생활의 기본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소득, 건강, 주거 영역, 출산 및 양육 영역에서는 임신·출산, 자녀 양육, 일가족 양립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때 기본적으로 가족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법적 혼인 또는 혈연과 관련된 기준, 가족의 정의나 범위와 관련된 기준, 남성생계부양

모델 등 성역할 구분에 대한 기준을 살펴보고, 가족의 다양성에 대한 포괄성 정도를 알기 위해서 특정 가족 유형에 대한 내용과 관련된 기준, 다양한 가족의 상황에 적절하지 않은 조건이나 내용 등과 관련된 기준을 가지고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가족의 상황에 대한 기준은 제도나 정책 내용을 검토하는 수준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어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을 통해 알아보았다. 그리고 문화적 측면에 대한 이해에서는 국민인식조사를 통해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인식, 가족 내 성역할에 대한 인식, 전통가족에 대한 인식 등을 알아보았다.

각각의 제도와 정책마다 기준이 다양한 조건마다 세부적인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어 ‘모든 제도나 정책이 어떠한가’고 결론지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정책과 제도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찾아볼 수 있었던 특징들을 정리하고자 한다.

우선 제도나 정책이 가진 가족에 대한 관점이 일관적이지 않거나 명확한 관점이 없는 경우들이 있었다. 소득 영역에서 살펴본 국민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비교적 내용이 많고 정교화된 제도이다 보니 가구나 가족에 대한 조건이 매우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대부분 배우자와 자녀가 기본이고 부모나 형제에 대한 조건은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기초적으로는 「민법」을 기준으로 가족을 보고는 있으나 제도를 관통하는 가족의 기준이 정확히 드러나지는 않아 보였다. 이는 건강 영역인 건강보험제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전체 제도에 가족에 대한 명확한 범위나 원칙에 따른 접근이 부족해 보였고 가족의 범위에 대한 각각의 가입자 조건에서 통일된 규정이 부재해 보인다. 물론 제도 설계가 과거에서부터 일어났고 제도 자체가 가진 특성으로 나타나는 결과이지만, 최근 고소득·고재산 피부양자의 지역가입자로의 전환 등에 대한 입법예고에서도 보면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제고 차원에 초점이 맞춰진 나

머지 가족에 대한 명확한 관점은 부재한 편이다.

출산 영역의 모자보건 사업 내에서 사업마다 가족 수 산정이나 범위가 상이한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혜택을 받기 위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신청 과정에서 신청 가능한 자들이 가족으로 한정되어 있는 경우를 종종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또한 신청권자의 기준이 무엇인지 불명확하고 반드시 가족으로 제한하는 것은 정책 의도나 가족의 상황과 맞지 않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신청 절차나 대리인의 기준이 다양한 가족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와 함께, 기존의 정책 및 제도가 다양한 가족의 상황을 면밀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설계되어 있는 점들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를 통해 제도가 있지만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찾아볼 수 있다. 가족 내에 부모가 모두 존재하고, 혹은 자녀 돌봄을 도와줄 수 있는 조부모나 형제자매 등의 주변 인물이 없는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 연속되는 가족의 경우까지 고려한 정책적 배려가 부족한 부분들이 발견된다. 또는 갑자기 일어나는 상황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게 도울 수 있는 정책적 보완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부족한 부분이 발견되는 것은 다양한 가족 구조를 철저히 이해하지 못하고 정책 설정이 이루어진 점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우리 사회 대부분이 어떠한 특정 형태의 가족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그 단일 가족 형태를 위주로 정책이 이루어지는 체계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이견이 많지 않을 것이다. 다양한 형태와 그에 따른 상황들을 우선 파악하고 그때 생기는 공백과 현재의 제도나 정책들에서 나타나는 사각지대를 발견하는 작업이 필요해 보이는 시점이다.

기존에 존재하는 정책들에서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가 하면, 특정 가족에게 더욱 필요하지만 현재 정책적인 측면의 지원이 부족한 부분

도 있어 보인다. 예를 들면, 기초적인 신체건강에서 나아가 성인과 그 자녀의 성장에 더욱 중요할 수 있는 정신건강에 대한 지원은 매우 필요해 보였지만 부족한 상태이다. 그리고 자녀 양육 방법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상황도 매우 많아 그러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등 단계마다의 양육 방법은 아동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데 가족이나 사회의 네트워크가 부족한 경우에는 이러한 양육 방법을 전수·전달 받을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해 보였다. 특히 영아기 자녀 돌봄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에 대한 공유는 필수적인 부분으로 보인다.

그리고 혼인관계에 대한 규정과 일관성이 부족한 부분도 있다. 현재 정책이나 제도 속에서 부부가 철저히 법적인 혼인관계만 인정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제도 내용 속에서 사실혼 관계에 대한 인정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지원 대상이 직접 부부가 되는 사업에서는 사실혼이 인정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한 제도 안에서도 어떤 경우는 인정되고 또 다른 경우는 인정되지 않는 등 혼재되어 있어 사실혼 관계에 대한 고민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사회적인 논의를 거쳐야 할 부분일 것이다.

문화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 사회는 여전히 다양한 가족 형태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개개인 스스로에 대한 평가에서는 다양한 가족에 대한 편견이 없다고 생각해 사회적 편견과 개인적 편견의 수준 사이에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차별 금지를 명문화하는 것에 대한 지지도 볼 수 있다. 가족 형태의 다양성은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것이고 그 비율 또한 줄어들지는 않을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다. 타인의 시선을 중요시 여기는 우리의 문화에서 나는 차별의식이 없지만, 타인들이 차별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은 다양한

가족에 대한 수용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사회적으로 가족 형태에 대한 편견을 제거하려는 노력이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때이고, 이를 태어난 아동이 차별받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 가는 과정의 하나로 생각한다면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발전 방향이 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의 결과는 특정 가족 형태에 대한 배려나 혜택이 아닌 결국 우리 사회의 모든 가족과 그 안의 개개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으로 되돌아가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 제2절 시사점

본 절에서는 제도에서 상정하고 있는 가족,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이해가 녹아 있지 못한 부분, 실생활에서의 제도적 한계, 그리고 가족에 대한 인식까지 본 연구를 통해 검토해 본 내용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우리 사회의 제도적, 정책적 부분들이 나아가 할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논해보고자 한다.

먼저, 제도나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법적으로 혼인한 부부와 그 자녀’를 정상적인 가족으로 상정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정 분야의 제도나 정책이 모든 가족의 어려움을 다 해결해 줄 수는 없다. 하지만 제도나 정책 안에서 가족의 유형 또는 형태에 따라서 발생하는 차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를 기본 전제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단 다양한 가족과 관련된 내용들은 사회적인 논의가 앞으로 시작되어야 하는 문제이거나 혹은 더 깊고 오랜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논쟁거리를 많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시사점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풀어나가야 할 내용들을 다수 포함할 것이다.

## 1. 가족에 대한 관점을 가진 제도 및 정책 설계

제도 검토를 통해 나타난 점들을 바탕으로 보면, 건강보험은 전체적으로 제도 안에 가족에 대한 명확한 범위나 원칙에 따른 접근이 부족해 보였다. 물론 보험료 부과와 형평성 제고 또한 중요하지만 가족에 대한 관점이 뚜렷하지 않아 보였다. 또한 모자보건사업과 같이 하나의 사업 내에 각각 가족 수 산정이나 신청권자에서 볼 수 있는 가족의 범위가 상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모자보건사업 중 가족 수 산정이 필요한 사업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는 직계존비속만 포함되는 반면,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과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은 직계존비속에 2촌 이내의 혈족이 추가로 포함된다. 그리고 사실혼 관계는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과 같이 가족 수 산정에는 포함되는 경우가 있으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과 같이 부부가 지원 대상이 되는 경우 사실혼 관계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하나의 제도나 정책을 관통하는 가족에 대한 기준이 모호한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는 제도나 정책이 가족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설계될 필요가 있다. 가족의 범위나 정의가 제도나 정책의 발전 배경 또는 필요성에 따라 다르다고 해도 한 제도나 정책 안에서 가족을 바라보는 기준이 명확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가족에 대한 범위 설정이나 그에 대한 근거가 분명해질 것이다. 한 제도 안에 포함된 여러 서비스에 대한 가족 수를 산정할 때 가족의 범위에 대해서도 기준을 설정하고 제도마다 알맞게 현대의 가족을 이해한 가족 범위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한 제도나 정책에서 생각하는 가족이란 무엇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그 안에서 가능한 한 열린 관점을 가져야 할 것이다.

## 2. 기존 제도 및 정책 개선

이미 존재하는 정책과 제도에서 다양한 가족의 상황을 이해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제도나 정책이 없어서 여러 형태의 가족들이 어려움을 경험한다기보다 가족의 어려움을 제거하기 위한 정책은 이미 존재하지만 가족의 다양한 상황이나 여건이 따라주지 않는 경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나 아이돌봄 지원사업 등은 친정이나 시댁, 또는 사회적 관계망이 부족한 가족들에게 더욱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들이다. 그리고 정책 내용 점검 결과, 다양한 환경의 가족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이를 활용할 수 없는 경제적, 환경적 상황에 있는 가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 보인다. 사회적 자본(social network)이 기본적으로 부족한 상황을 경험하는 가족들은 이러한 지원에 스스로 다가가는 힘이 부족한 경우도 있다. 혹은 지원을 찾아서 어렵게 시도했는데 활용할 수 없는 경우가 반복되면,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도 부정적 경험으로 그 제도는 활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인식하게 된다. 따라서 가족 형태에서 비롯되는 상황들을 이해하고 제도를 개선하여 도움이 더욱 필요한 가족들이 이미 존재하는 제도를 활용할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경우는 막아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서비스 신청 절차와 대리 신청에 대한 조건을 간소화하는 작업도 필요해 보인다.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은 청소년산모가 사회적 노출을 기피하고 부모와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으로 인해 산전관리에 열악한 환경이라는 것을 잘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본인 이외에 신청이 가능한 사람은 「민법」에서 제시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로 명

시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은 사업 목적 및 배경 사이에서도 괴리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가족과의 단절 상황을 이해하면서도 대리 신청은 가족의 범위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것과 같은 모순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실제 생활에서는 신청 과정에서의 조건들이 유연하게 다루어지고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더욱 현재 명시된 조건들이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 3. 혼인관계 규정·인정 및 일관성에 대한 고민

현재 우리 사회 전통가족의 기본인 혼인한 부부와 관련된 규정과 제도나 정책 안에서 규정의 일관성에 대한 고민 또한 필요해 보인다. 부부관계 규정에서 ‘사실혼 포함’을 볼 수 있으나 한 제도나 정책 안에서 사실혼에 대한 인정이 적용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는 등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족 수 산정을 통해 소득요건을 판단할 때에는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고, 부부가 대상이 될 때는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국민연금에서는 사실혼이 인정되는 부분이 있었지만, 또 다른 영역에서는 그렇지 않기도 했다. 이 사실혼에 대한 부분은 가족에 대한 관점과 범위에서 다를 수 있는 문제인 동시에 혼인관계에 대한 규정에서 다시 한번 다루어야 할 문제일 수도 있다.

부부가 대상인 지원은 결국 출산과 관계된 지원일 수밖에 없는데 국가가 출산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고려한다면, 다른 지원에서는 아니더라도 출산지원에서는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는 기준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시에도 법률적 혼인관계가 필요하지만 난임기간 산정에는 사실혼 기간을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사실혼에 대한 언급이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이 난임기간이라는 것은 시술 지원

시에 필요한 정보로 사실혼 관계에서의 임신 시도 인정은 시술비 지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규정이다. 이렇게 난임기간에는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고 있지만, 난임부부 지원에서는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등 한 제도 안에서 사실혼 관계의 인정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다. 한국은 2017년 10월부터 난임 치료에서 필수적인 시술 과정 등에 건강보험을 적용(본인부담률 30%)하고 있지만(보건복지부, 2017. 10. 26.), 사실혼 관계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일본은 이미 교토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사실혼 커플에게도 난임치료 지원을 하고 있고, 이러한 지자체의 본보기와 산부인과 및 당사자 지원단체 등으로부터의 확대 요구 의견과 함께 후생노동선 대신(장관)이 ‘다양화되고 있는 가족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등의 움직임으로 2018년부터 후생성에서 사실혼 관계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마이니치신문, 2017).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뿐 아니라 다른 제도에서도 가족 수를 산정하는 기준에서는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나 직접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등 전반적으로 사실혼 관계는 지원에서는 제외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사실혼 관계 자체는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지만, 어떠한 형태든 지원이나 혜택이 이루어지는 부분에서의 사실혼 관계 인정은 여전히 사회적으로 더욱 합의되어야 하는 부분이 남아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동거관계에 대한 등록을 제도화하는 등의 문제도 사회적으로 지속해서 논의해 나가야 할 부분이다.

#### 4. 다양한 가족의 상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책 설계 및 추가 지원 필요 영역 발굴

더 크게는 다양한 가족 구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책 설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본 연구에서 특히 돌봄과 관련된 부분 및 일가족 양립 지원 부분 검토를 통해 알 수 있었던 부분이다.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주체가 한 가족에 두 명의 성인이 아닌 한 명인 경우를 가정해 보면, 특히 영유아가 있는 환경에서 가족은 생계유지를 위해 자녀를 돌볼 수 있는 누군가가 가족 내에 존재하지 않더라도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러한 가족 상황에서 한 사람이 일을 하게 되면 맞벌이 부부와 동일한 돌봄 공백이 일어나지만, 소득은 맞벌이 부부의 수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그에 따라, 겉으로 드러나는 상황은 맞벌이 가정과 비슷해 보이지만 수입 부족, 혹은 시간 부족 현상이 돌봄 주체가 한 명인 가족에게서 더욱 쉽게 일어난다는 점을 고려해 돌봄, 생계 둘 중 하나에 대한 공백이 불가피하지 않도록 보호가 필요하다. 특히 양육자가 한 명인 가족에 대한 시간정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나아가 다양한 가족의 상황에서 요구되는 추가적인 정책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심층면접을 통해 지원이 필요하지만 현재 부족한 영역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공백을 채워 줄 수 있는 방안들을 발굴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특히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난 부분은 정신건강, 자녀 양육 스킬에 대한 지원 등이다.

부모나 아동의 심리적 안정은 아동 발달과 가족생활에 매우 중요한 상황에서, 전 배우자(동거자)의 변심, 폭력, 또는 동시에 감당하기 힘든 일(임신, 출산, 헤어짐, 폭력 등) 등을 경험한 가족 구성원이 있는 경우 심리

·정서적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정신건강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원가족에서의 경험 부족, 사회적 자본이 부족한 가족은 자녀 양육에 대한 준비나 기술 습득을 전혀 하지 못한 채 자녀 양육 과정에 들어가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제도 자체에서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가족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심층면접에서 나타난 결과들로 일상생활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개선이 더욱 절실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가족의 상황을 이해하고 이러한 문제에 대한 고민이 녹아 있는 제도나 정책 설계가 필요해 보인다.

## 5. 아동이 가족 형태와 배경에 따른 차별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

법·제도나 정책 설계에서의 이러한 가족에 대한 고민이 궁극적으로 가족 형태에 따라서 아동의 출생이나 성장이 차등화되지 않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라고 본다면, 결국 아동을 중심에 놓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즉 어떠한 특정 가족 유형에 대한 지원을 고민하기보다, 자녀 양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족에 대한 지원을 분야별로 공고히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아동을 중심 기준에 놓고, 그 아동의 양육자가 한 명일 때의 조건, 혹은 두 명일 때의 조건, 또 다른 조건을 가졌을 때의 상황 등을 각각도로 고려해 그 양육자가 돌봄을 어렵지 않게 수행할 수 있는 상황으로, 그리고 그 양육자가 일을 한다면 일과 자녀 돌봄을 동시에 무리 없이 해 나갈 수 있는 상황으로 정책을 설계해 나가는 방식을 취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한 분야의 정책만이 아니라, 여러 정책 분야의 연계 및 협력 체계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도 및 정책적 변화와 함께 다른 한 편으로 가족 형태에 따른

편견 제거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조사에서 우리 사회에 편견이 있다는 의견이 응답자의 90% 이상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가족 구성원들 또한 우리 사회의 편견에 대해 힘들어하기도 했다. 병원에서부터 아버지가 없으면 입양 계획을 질문한다거나 주민센터에서 담당직원이 기분 나쁜 시선과 함께 큰소리로 미혼모냐고 묻는 등(중앙일보, 2017) 병원이나 기관, 특히 다양한 가족들을 대할 수 있는 곳들에서 우선적으로 편견이나 차별이 사라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환경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 있을 수 있고, 개인들의 시선은 어디에든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가족의 유형에 따른 차별 최소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할 시기이다. 기본적으로 가족구성원 특히 아동은 가족의 유형에 따라 차별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노동시장, 교육환경 등에서 일어나는 차별에 대해 금지한다는 것을 명문화하는 것은 법이 지닌 강제성과 상징적인 의미가 더해져 사회적 편견을 줄이고 인식 변화에 영향을 미쳐 다양한 가족을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인식조사 결과에서 보았듯이 우리 사회에 차별이 존재하는가에 대해 질문했을 때에는 다수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지만, 응답자 본인 스스로 차별의식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 질문을 했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더욱 많은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도덕적 차원의 문제에 대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 스스로는 도덕적으로 올바른 답을 택하는 분위기를 보여준다. 이러한 우리의 사회·문화적 환경에서 차별을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차별 금지뿐 아니라 사실혼이나 동거에 대한 증거가 필요할 때마다 확인 작업을 해야 하는 불편함을 덜어주고, 기본적인 부부관계에 대한 보호와 기초적인 혜택 등을 포함하는 동거관계 인정과 관련된 제도 마련에 대한 논의도 마찬가지이다.

지금까지 논의한 변화들은 특정 가족들에게만 편리함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가족과 개개인에 대한 사각지대가 줄어들는 결과를 가져오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 결과, 가족에 따른 차이 없이 자녀를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의 구조적인 면에서 법적 혼인한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지지 않은 다양한 가족에 대한 생각을 한 것으로 가족을 이루고 있는 구성원의 특성이 다른 것에 대해서까지 고려해 논의를 하지는 못했다. 즉 장애인과 외국인 등을 포함하는 가족의 경우는 제도와 정책 속에서 더욱 다양한 조건이 존재하기 때문에 한 연구에서 다루는 데 무리가 있고, 따라서 이러한 가족 구성원의 특성까지 고려하여 더욱 포괄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표 6-1〉 (참고) 본 연구의 검토 대상 제도 및 정책(사업)별 비교

구분	분야	제도 및 정책(사업)	가족 범위 및 특성	시실혼 포함	특정가족 내용	
가족 생활 기본 영역	소득 영역	국민연금제도	부양가족연금액	○	〈부양가족〉 • 배우자(사실혼 포함) • 자녀(배우자가 혼인 전에 얻은 자녀(계자녀 포함)) • 부모(배우자의 부모, 부 또는 모의 배우자(계부모) 포함)	
			분할연금	○	〈수급 대상〉 • 배우자(사실혼 포함)	
			유족연금	○	〈유족〉 • 배우자(사실혼 포함)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동거인 제외)으로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제2항 및 「민법」 제 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람 ①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②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은 보장구에 포함하고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동거인으로 반영	○	○	
			배우자(사실혼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 • 30세 미만 미혼자녀 등			
			〈부양의무자〉 • 수급(권)자 1촌의 직계혈족과 그들의 배우자		○	
	건강 영역	국민건강보험제도	국민건강보험제도	〈피부양자〉 • 직장임자의 배우자·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과 그 배우자·형제자매	○	○
	주거 영역	주거임대 지원제도	주거임대 지원제도	〈지원 대상〉 •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포함)	○	○
		주거자금 지원제도	주거자금 지원제도	〈지원 대상〉 • 신혼부부	○	○





## 참고문헌 <<

- 강경근. (2004). 헌법(신판). 서울: 법문사.
- 강희경. (2005). '건강가정' 담론의 불건강성. 경제와 사회, 65, 155-178.
- 건강가정기본법, 법률 제14440호. 2016. 12. 20.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 (2015). 2015년판 고용노동백서.
- 고용노동부. (2017). 2017년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업무편람.
- 고용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256호. 2017. 8. 29. 일부개정.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793호. 2017. 1. 17. 타법개정.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428호. 2017. 6. 20. 일부개정.
- 국가인권위원회. (2017. 6. 12.). 인권위,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기준 개선 권고.  
    보도자료.
-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제14557호. 2017. 8. 9. 일부개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348호. 2017. 10. 1. 일부개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512호. 2017. 8. 4. 타법개정.
- 국민건강보험공단. (2017). 2016년 건강보험통계연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법률 제14880호. 2017. 9. 19. 일부개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타법개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510호. 2017. 8. 1. 일부개정.
- 국민연금공단. (2016). 2017년 알기쉬운 국민연금(사업장 실무안내).  
\_\_\_\_\_. (각 연도). 국민연금통계연보.
- 국민연금법, 법률 제14693호. 2017. 3. 21. 일부개정.
- 국민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959호. 2017. 3. 27. 타법개정.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526호. 2017. 9. 22.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2017). 2016 주택업무편람.
- 권영성. (2004). 헌법학원론(개정판). 서울: 법문사.
- 김경희, 박기남, 박찬웅, 정동철, 강은애, 홍지수. (2011). 국민연금에 대한 성별

영향평가. 여성가족부, 한국사회학회.

- 김성숙. (2006). 개정가족법의 내용에 관한 검토, 법학논총, 15, 127-145.
- 김엘립, 조승현. (2005). 생활법률.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 김용화. (2008). 가족에 대한 법적·사회적 개념의 통합 필요성. 가족법 연구, 22(2), 1-28.
- 김은지, 장혜경, 황정임, 최인희, 김소영, 정수연. (2015). 한부모가족실태조사.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인숙. (2007). 건강가정기본법 제정과정에서 나타난 가족 및 가족정책 담론. 한국사회복지학, 59(3), 253-280.
- 김자영, 강승묵. (2011). 가족법 개정과 대학생의 친족 및 姓과 本에 대한 의식변화에 관한 연구. 법학 연구, 34, 169-192.
- 김주수, 김상용. (2011). 친족·상속법-가족법. 서울: 법문사.
- 김혜영. (2012). 기로에 선 가족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여성학, 28(3), 63-94.
- \_\_\_\_\_. (2014). 유동하는 한국가족. 한국사회, 14(2), 55-94.
- \_\_\_\_\_. (2016). 동원된 가족주의 시대에서 가족위험의 사회로. 한국사회, 17(2), 3-44.
- 김희자. (2008). 서구의 가족법·가족정책의 변화와 포스트모던 가족 모형. 경제와 사회, 78, 194-222.
-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국토교통부훈령 제953호. 2017.12.19. 일부 개정.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274호. 2012. 3. 1. 일부개정.
- 근로기준법, 법률 제12325호. 2014. 1. 21. 일부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751호. 2016. 12. 30. 타법개정.
- 대한민국정부. (2006).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
- \_\_\_\_\_. (2015).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
- 대한민국헌법, 헌법 제10호. 1988. 2. 25. 전부개정.

- 마이니치신문. (2017. 7. 13.). 난임치료 사실혼도 지원 후생성 방침 내년도부터. 민법, 법률 제 14278호. 2016. 12. 2. 일부개정.
- 모자보건법, 법률 제14323호. 2016. 12. 2. 일부개정.
- 박선영, 윤덕경, 박복순, 김혜경. (2008). 여성인권보장 및 차별해소를 위한 관련 법제 정비연구(II) 가족의 다양화에 따른 관련법제 정비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박종서. (2017). 일가정양립 정책 추진 현황과 개선방향. 보건복지포럼, 249호, 18-33.
- 변수정, 김혜영, 백승흠, 오정아, 이재량. (2016). 다양한 가족의 출산 및 양육실태와 정책과제 - 비혼 동거가족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보건복지부. (2015. 7. 29.). 오늘부터 국민연금 일부연기 가능, 연기하면, 연간 7.2% 더 많은 금액 수령할 수 있다. 보도자료.
- \_\_\_\_\_. (2017. 7. 18.). 지역가입자 성·연령 보험료 없어지고, 자동차 보험료 절반 이상 줄어든다! 보도자료.
- \_\_\_\_\_. (2017. 9. 15.). 11월부터 노인·중증 장애인 가구의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된다! 보도자료.
- \_\_\_\_\_. (2017. 10. 26.). 난임치료 시술 및 치매 신경인지검사 건강보험 적용. 보도자료.
- 보건복지부. (2017a). 2017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_\_\_\_\_. (2017b). 2017 모자보건사업안내.
- \_\_\_\_\_. (2017c). 2017년도 보육사업안내.
- \_\_\_\_\_. (2017d). 2017년도 보육사업안내.부록
- \_\_\_\_\_. (2017e). 2017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 서병숙, 이정숙, 김혜경, 이신숙, 왕석순, 이현. (2002). 현대가족과 복지. 서울: 교문사.
- 서선희. (2003). 한국 사회에서 '가족중심주의'의 의미와 그 변화.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4), 93-101.

- 서수경. (2002). 서구의 '포스트모던 가족' 연구에 대한 고찰. 한국가족관계학회지, 7(1), 19-37.
- 서종희. (2010). 한국에서의 호모사케르: 동성혼. 원광법학, 26(2), 109-148.
- 성미애. (2009). 한국가족 및 친족개념에 대한 연구: 가족관련 법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7(4), 11-24.
- 성중탁. (2017). 동성(同性)혼에 관한 법적 쟁점과 전망: 미국에서의 동성혼 합법화 결정 이후의 논의를 포함하여. 가족법 연구, 31(1), 229-252.
- 손현경. (2011). 민법상의 친족 및 가족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 친족법에서 가족법으로의 전환을 위한 입법론을 중심으로. 가족법 연구, 25(3), 1-36.
- 송혜림, 성미애, 진미정, 이승미. (2005). 건강가정 개념에 대한 논의.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6), 179-190.
- 아이돌봄 지원법. 법률 제14064호, 2016. 3. 2. 일부개정.
- 안병철. (2009). 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한 일 고찰: 제정 배경, 비판, 대응을 중심으로. 사회와이론, 15, 331-349.
- 영유아보육법. 법률 제14597호, 2017. 3. 14. 일부개정.
- 양옥경. (2000). 한국 가족 개념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가족사회복지학, 6, 69-99.
- 여성가족부. (2017). 2017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 연합뉴스. (2015. 5. 11.). '양육사각지대' 싱글맘 증언...출산 지원 차별 없어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5/11/0200000000AKR201505111153500004.HTML?input=1195m>에서 2017. 9. 1. 인출.
- 왕혜숙. (2013). 가족 인정 투쟁과 복지정치: 한국의 의료보험 피부양자 제도의 변화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7(4), 67-106.
- 우병창, 안경희, 전해정. (2013). 미래가족에 대비한 가족법 및 가족관련 현행법의 정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윤홍식. (2012). 가족주의와 가족정책 재유형화를 위한 이론적 논의. 한국사회복지학, 64(4), 261-284.

- 이삼식, 박종서, 이소영, 오미애, 최효진, 송민영. (2015).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소영. (2012). 건강가정 보호의 법적 계보: 건강가정기본법의 '건강가정' 개념  
에 대한 계보학적 담론분석. 가족법 연구, 26(3), 217-254.
- 이은정. (2006). 가족의 범위. 가족법 연구, 20(1), 193-220.
- 이재경. (2004). 한국가족은 '위기'인가? '건강가정' 담론에 대한 비판. 한국여성  
학, 20(1), 229-244.
- 이진숙, 신지연, 윤나리. (2010). 가족정책론. 서울: 학지사
- 이효재. (1983). 가족과 사회. 서울: 경문사.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270호. 2017. 9.  
19. 일부개정.
- 장경섭, 진미정, 성미애, 이재림. (2013).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한국 가족주의에  
대한 진단과 정책적 함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_\_\_\_\_. (2015). 한국사회 제도적 가족주의의 진단과 함  
의: 소득보장, 교육, 돌봄 영역을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27(3), 1-38.
- 장영수. (2003). 헌법학Ⅱ(기본권론). 서울: 홍문사.
- 장혜경, 김은지, 김영란, 김소영, 선보영, 김수완. (2013). 가족의 미래와 여성·가  
족정책 전망(III).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정연택. (2010). 한국 가족법의 특수성- EU 국가와의 비교를 통한 유형 구분. 사  
회복지연구, 41(4), 161-187.
- 전경근. (2015). 다문화가족지원법제의 현황과 개선방안. 저스티스, 146(2),  
293-314.
- 정종섭. (2014). 헌법학원론. 서울: 박영사.
- 조숙현. (2008). 가족에 관한 법률 정의 및 판례의 태도분석. 젠더법학회, 젠더법  
학 세미나 제1집.
- 조은. (2008). 신자유주의 세계와 가족정치 지형. 한국여성학, 24(2), 5-37.
- 조희금, 박미석. (2004). 건강가정기본법의 이념과 체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5), 331-344.

- 조홍석. (2007). 새로운 형태의 가족: 헌법적 가능성과 한계. *공법학연구*, 8(4), 221-241.
- 중앙일보. (2017. 8. 25.). 주민센터 직원 큰소리로 “미혼모냐” 상처 입은 30대 싱글맘. 보도자료.
- 최갑선. (2003). 헌법 제36조 제1항에 의한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헌법논총*, 제14집, 497-534.
- 최경석, 김양희, 김성천, 심진희, 박정윤, 윤정향. (2008). *한국 가족복지의 이해*. 서울: 인간과복지.
- 최재석. (1976).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 서울: 개문사.
- 통계청. (각 연도). *사회조사*.
- 통계청. (2017. 4. 13.). *장래가구추계: 2015~2045년*. 보도자료.
- \_\_\_\_\_. (2017. 6. 21.). 2016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부가항목):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고용 현황. 보도자료.
- \_\_\_\_\_. (2017. 3. 22.). 2016년 혼인·이혼 통계. 보도자료.
- 한국가족학회. (1995). *복지국가와 가족정책*. 서울: 하우.
- 한국교육개발원. (2017). 2017 초등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
- 헌법재판소 판례. (1997. 7. 16. 95헌가6 내지 13(병합) 전원재판부). 민법 제 809조 제1항 위헌제청.
- \_\_\_\_\_. (2005. 2. 3. 2001헌가9·10·11·12·13·14·15, 2004헌가5 (병합) 전원재판부). 민법 제781조 제1항 본문 후단부분 위헌제청 등.
- 홍승아, 류연규, 김수정, 정희정, 이진숙. (2008). *일가족양립정책의 국가별 심층 사례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Aassve, A., Billari, F. C., & Spéder, Z. (2006). Societal transition, policy changes and family formation: Evidence from Hungary. *European Journal of Population*, 22, 127-152.

Barker, R. L. (1995). *The social work dictionary*(3rd ed.). Washington,

- DC: NASW Press.
- Familialism. (n.d.). Wikipeda. <http://en.wikipedia.org/wiki/Familialism>  
에서 2017. 10. 1. 인출.
- Iwai, N., & Yasuda, T. (2009). *Data de mita higashi Asia no kazoku-kan(Family values in East Asia in data)*, Kyoto: Nakanishiya Shuppan.
- Leslie, G. R., & Korman, S. K.(1989). *The family in social context(7th e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Lévis-Strauss, C. (1966). The family. In H. L. Shapiro(ed.), *Man, culture, and society*(pp.142-170).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Leung, P., Erich, S., & Kanenberg, H. (2005). A comparison of family functioning in gay/lesbian, heterosexual and special needs adoptions.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27, 1031-1044.
- Mendez-Luck, C. A., Applewhite, S. R., Lara, V. E., & Toyokawa, N. (2016). The concept of familism in the lived experiences of Mexican-origin caregiver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8, 813-829.
- Moroney, R. M. (1976). *The family and the state: Considerations for social policy*. London: Longman.
- Murdock, G. P. (1949). *Social Structure*. New York: Macmillan.
- National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 (1990:1995). *Ancyclopedia of social work*(12th: 19th).
- National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 (1999, August). *Statement on family policy*. Washington, DC: Author.
- Neufeldt, V., & Furalnik, D. (1997). *Webster's new world college dictionary(3rd. ed.)*, NY: Webster's New World.
- Ochiai, E. (2011). Unsustainable societies: The failure of familialism in

- East Asia's compressed modernity. *Historical Social Research*, 36(2), 219-245.
- OECD. (2002) *Babies and Bosses - Reconciling Work and Family Life(Vol.1) : Australia, Denmark, The Netherlands.*
- Sabogal, F., Marín, G., Otero-Sabogal, R., Marín, B.V., & Perez-Stable, E.J. (1987). Hispanic familism and acculturation: What changes and what doesn't? *Hispanic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s*, 9, 397-412.
- Strong, B., & Devault, C.(1992). *The marriage and family experience.* West Publishing Co.
- Trost, J. (1988). Conceptualising the family. *International Sociology*, 3(3), 301-308.
- Williamson, O. E. (2000). The new institutional economics: Taking stock, Looking ahead.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38(4), 595-613.

#### 〈홈페이지〉

-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 www.ei.gi.kr](http://www.ei.gi.kr))에서 2017. 7. 14. 인출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www.nhis.or.kr>)에서 2017. 9. 10. 인출.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http://www.nps.or.kr>)에서 2017. 6. 15. 인출.
- 방과후학교 포털시스템 홈페이지.(<http://www.afterschool.go.kr>)에서 2017. 8. 3. 인출.
-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에서 2017. 8. 3. 인출.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http://www.socialservice.or.kr>)에서 2017. 8. 3. 인출.



지금부터 '가족' 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견해에 동의하시는 정도를 말씀해 주십시오.

1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생활하는 남녀도 가족이다'라는 견해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 ①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②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③ 어느 정도 동의한다 ④ 전적으로 동의한다

2 '자녀가 있어야만 가족이다'라는 견해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 ①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②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③ 어느 정도 동의한다 ④ 전적으로 동의한다

3 '부모-자녀 사이는 친부모-자녀 사이여야만 가족이다'라는 견해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 ①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②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③ 어느 정도 동의한다 ④ 전적으로 동의한다

4 '다른 인종과도 가족이 될 수 있다'라는 견해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 ①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②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③ 어느 정도 동의한다 ④ 전적으로 동의한다

5 '엄마나 아빠 혼자라도 아이를 기르면서 생활하면 가족이다'라는 견해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 ①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②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③ 어느 정도 동의한다 ④ 전적으로 동의한다

6 '아이가 엄마, 아빠 없이 할머니, 할아버지만 생활해도 가족이다'라는 견해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 ①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②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③ 어느 정도 동의한다 ④ 전적으로 동의한다

7 '미성년이라도 아이를 낳아 직접 기르면 가족이다'라는 견해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 ①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②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③ 어느 정도 동의한다 ④ 전적으로 동의한다

8 '배우자나 배우자 가족을 제외하고 비혈연인 사람도 가족이 될 수 있다'라는 견해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 ①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②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③ 어느 정도 동의한다 ④ 전적으로 동의한다

다음은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질문입니다. ▶ 다음 지문을 응답자에게 먼저 읽어 줄 것

과거에는 '법적으로 혼인한 부부와 자녀' 로 구성된 경우를 전통적 가족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우리 주위에는 다양한 유형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하는 '다양한 가족' 이란 법적으로 혼인한 부부와 자녀 외에 미혼부, 미혼모 또는 이혼이나 사별로 인해 얼마나 아빠가 혼자 자녀를 기르는 가족, 사실상 관계나 남녀과 혼인하지 않고 동거하는 경우의 가족, 조부모가 손자녀를 기르는 가족 등 다양한 유형의 가족들을 말합니다.

9 귀하는 우리 사회가 다양한 가족에 대한 편견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없다      ② 별로 없는 편이다      ③ 약간 있다      ④ 매우 많다

10 귀하는 본인 스스로 다양한 가족에 대한 편견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없다      ② 별로 없는 편이다      ③ 약간 있다      ④ 매우 많다

11 귀하는 우리 사회가 '다양한 가족보다는 전통가족(법적으로 혼인한 부부와 자녀)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견해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 ①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②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③ 어느 정도 동의한다      ④ 전적으로 동의한다

12 귀하는 고용이나 교육현장 또는 사회생활 등에서 가족 유형에 따라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필요하지 않다      ② 별로 필요하지 않다      ③ 약간 필요하다      ④ 매우 필요하다

다음은 정부 지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13 귀하는 '법적으로 혼인한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전통가족보다 앞서서 언급한 '다양한 가족'에게 기초생활보장제도나 국민연금과 같은 정부 차원의 소득지원 혜택이 더 주어져야 한다'는 견해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 ①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②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③ 어느정도 동의한다      ④ 전적으로 동의한다

14 귀하는 '전통가족보다 '다양한 가족'에게 국민건강보험과 같은 정부 차원의 건강지원 혜택이 더 주어져야 한다'는 견해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 ①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②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③ 어느정도 동의한다      ④ 전적으로 동의한다

15 귀하는 '전통가족보다 '다양한 가족'에게 임대주택과 같은 정부 차원의 주거지원 혜택이 더 주어져야 한다'는 견해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 ①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②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③ 어느정도 동의한다      ④ 전적으로 동의한다

16 귀하는 '전통가족보다 '다양한 가족'에게 임신 출산 지원이나 보육 정책과 같은 정부 차원의 출산 및 양육 지원 혜택이 더 주어져야 한다'는 견해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 ①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②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③ 어느정도 동의한다    ④ 전적으로 동의한다

17 귀하는 '전통가족보다 '다양한 가족'에게 출산 휴가나 육아 휴직과 같은 정부 차원의 일·가정 양립 지원 혜택이 더 주어져야 한다'는 견해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 ①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②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③ 어느정도 동의한다    ④ 전적으로 동의한다

18 귀하는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을 누가 맡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가족이 전적으로  
 ② 가족이 주로 책임지며 국가가 지원  
 ③ 가족과 국가가 동등하게  
 ④ 국가가 주로 책임지며 가족이 지원  
 ⑤ 국가가 전적으로

19 귀하는 '부모 부양'에 대한 책임을 누가 맡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가족이 전적으로  
 ② 가족이 주로 책임지며 국가가 지원  
 ③ 가족과 국가가 동등하게  
 ④ 국가가 주로 책임지며 가족이 지원  
 ⑤ 국가가 전적으로

다음은 가족 내 역할에 대한 질문입니다.

20 귀하는 '부부 중 누가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남편이 전적으로  
 ② 남편이 주로 별면서 아내가 지원  
 ③ 남편과 아내가 동등하게  
 ④ 아내가 주로 별면서 남편이 지원  
 ⑤ 아내가 전적으로  
 ⑥ 기타( \_\_\_\_\_ )

21 귀하는 부모가 모두 있는 가정이라면 부부 중 누가 자녀를 돌보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엄마가 전적으로
- ② 엄마가 주로 돌보며 아빠가 지원
- ③ 엄마와 아빠가 동등하게
- ④ 아빠가 주로 돌보며 엄마가 지원
- ⑤ 아빠가 전적으로
- ⑥ 기타( \_\_\_\_\_ )

22 귀하는 '아이는 부모가 모두 있는 가정에서 자리아만 잘 자란다'는 견해에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 ①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②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 ③ 어느 정도 동의한다
- ④ 전적으로 동의한다

지금까지 질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분류를 위해 몇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 항목들은 통계적인 자료 분류 목적 이외에는 결코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D-1 귀하의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중퇴는 졸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① 초등학교 졸업 이하(무학포함)
- ② 중학교 졸업
- ③ 고등학교 졸업
- ④ 대학교 재학/졸업
- ⑤ 대학원 재학/수료/졸업

D-2 귀하의 취업 여부를 알려 주십시오

- ① 취업 (지난 1주간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을 한 경우)
- ② 비취업

**D-3** 귀하의 혼인상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 미혼  
 ② 결혼생활 중

**D-3-1** 그럼, 구체적인 혼인상태는 무엇입니까?

① 초혼      ② 동거(사실혼)      ③ 재혼      ④ 이혼 후 동거(사실혼)

③ 이혼  
 ④ 별거  
 ⑤ 사별

**D-4** 귀하는 자녀가 있습니까? 있다면 몇 명인지 자녀 수를 알려 주십시오

▶ 없는 경우 0으로 기입

		명
--	--	---

**D-5** 귀하를 기준으로 현재 함께 살고 계신 가족을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① 혼자 살고 있음  
 ② 배우자(사실혼 포함)  
 ③ 자녀  
 ④ 부모(또는 배우자의 부모)  
 ⑤ 할아버지/할머니  
 ⑥ 형제/자매  
 ⑦ 손자녀  
 ⑧ 기타( \_\_\_\_\_ )

D-6 귀하의 월평균 가구 소득을 알려 주십시오

- ① 100만원 미만
- ② 100~200만원 미만
- ③ 200~300만원 미만
- ④ 300~400만원 미만
- ⑤ 400~500만원 미만
- ⑥ 500~600만원 미만
- ⑦ 600~700만원 미만
- ⑧ 700~800만원 미만
- ⑨ 800만원 이상

◆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사 후 기록표

응답 날짜	날 짜	2016년 ( )월 ( )일			
	시 간	① 오전                      ② 오후 ( )시 ( )분 부터 ( )시 ( )분 까지 총 ( )분간 응답			
조 사 원	성 명				
	I D				
응답 특이 사항					



## 간행물회원제 안내

### ▶ 회원에 대한 특전

-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판매용 보고서는 물론 「보건복지포럼」, 「보건사회연구」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일반 서점에서 구입할 수 없는 비매용 간행물은 실비로 제공합니다.
- 가입기간 중 회비가 인상되는 경우라도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 ▶ 회원종류

- 전체간행물회원 : 120,000원
- 보건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사회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정기간행물회원 : 35,000원

### ▶ 가입방법

- 홈페이지([www.kihasa.re.kr](http://www.kihasa.re.kr)) - 발간자료 - 간행물구독안내

### ▶ 문의처

-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1~5F  
간행물 담당자 (Tel: 044-287-8157)

## KIHASA 도서 판매처

- |   |   |
|---|---|
| ■ 한국경제서적(총판) 737-7498   | ■ 교보문고(광화문점) 1544-1900  |
| ■ 영풍문고(종로점) 399-5600  | ■ 서울문고(종로점) 2198-2307   |
| ■ Yes24 <a href="http://www.yes24.com">http://www.yes24.com</a> | ■ 알라딘 <a href="http://www.aladdin.co.kr">http://www.aladdin.co.kr</a> |